2024.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토보고(부처별Ⅳ)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 문화체육관광부 ····· 3

Ⅰ. 개 관 ····· 3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6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8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0

Ⅱ. 사업별 검토 ····· 11

【총 괄】 ····· 11

1. 투자지원(펀드) 사업: 신규 출자 규모 재검토 필요 ····· 11

【일반회계】 ····· 17

<세 출> ····· 17

2.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조정 필요 등 ·· 17
3.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확대속도 조절 및 신규 센터의 설치·운영 예산 조정 필요 ····· 21

4.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ODA) 사업: 사업추진경과를 고려한 예산 조정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25
5. 청년예술인 예술활동적립계좌 사업(신규): 사업구조 재검토 필요 ····· 31
6.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사업추진 지연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35
7. K-헤리티지 밸리 조성 사업(신규):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3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42

<세 출> ····· 42

8.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 철저 필요 ····· 42
9. 섬 관광 활성화 사업: 사업추진현황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반영 필요 ····· 4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52

<총 괄> ····· 52

10. 전년도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전년도세계잉여금 적정 수준 반영 및 이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규모 조정 필요 ····· 52

【영화발전기금】 ····· 54

<총 괄> ····· 54

11. 영화발전기금: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원구조 마련 필요 ····· 54

【관광진흥개발기금】 ····· 59

<지 출> ····· 59

12.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 현장 수요와 정책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계획 규모 감액 조정 필요 ····· 59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 63

<지 출> ····· 63

13.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이용현황 및 예산 실집행현황을 고려하여 예산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63

14. 스포츠클럽디비전 사업: 신규 종목 승강제 리그 도입 관련 리그운영 여건 점검 필요 ····· 66

15.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실제 사업추진현황을 고려한 사업추진방식 개선 및 그에 따른 예산 조정 필요 ····· 69

❖ 국가유산청 ····· 72

Ⅰ. 개 관 ····· 72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72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75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77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78

Ⅱ. 사업별 검토 ····· 79

【일반회계】 ····· 79

<세 출> ····· 79

1.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79

2. 천연기념물 동물 질병관리, 먹이주기 지원 사업(신규): 기존 사업과의 중복 소지에 대한 검토 필요 ····· 83

3. 중요기록유산 국역 사업: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감액 검토 필요 ····· 87
4.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구축 사업: 자연유산보존관리 사업과 중복성 해소 필요 ····· 89
5.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단년도 지원사업에서 2년간 지원사업으로 사업방식 변경 및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9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97

<세 출> ····· 97

6.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97
7. 부여 고도 경관개선 사업: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1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105

Ⅰ. 개 관 ····· 105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05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09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111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13

Ⅱ. 사업별 검토 ····· 115

【일반회계】 ····· 115

<세 출> ····· 115

1. K-라이스벨트 구축사업(ODA): 예산집행률이 낮은 국가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 115

2. 청년인턴 국내여비 지원사업 : 국내 여비로의 편성 재검토 필요 ····· 12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22

<세 출> ····· 122

3.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 가루쌀에 대한 시장수요를 고려한 점진적 사업 확대 재검토 필요 ····· 122

4.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 사업(신규): 재정소요 계획 보완 및 유기견 관련 대책 등 마련 필요 ····· 128

5. 농촌생활인구유입 지원사업(신규) : 사업 소관에 대한 검토 및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된 사업계획 필요 ····· 136

6. 영농정착지원금 사업 : 영농정착지원금 성과분석 필요 ····· 142

7.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 예산집행률 제고방안 등 검토 필요 ····· 144

8. 농식품 바우처 사업 : 수혜계층 축소에 따른 사업설계 재검토 필요 ····· 150

9. 수입안정보험 사업: 저조한 가입률·예산집행률 개선방안 및 법률 근거 마련 필요 등 ····· 153

10.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이차보전 규모 산정 방식 개선 필요 ····· 161

1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사업: 구상채권의 회수 노력 및 보증방식과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 165

【양곡증권정리기금】 ····· 171

<총 괄> ····· 171

12. 양곡증권정리기금 : 기금의 존치 여부 검토 필요 ····· 171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174

<지 출> ····· 174

13.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예산집행률 개선방안 마련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의 통합 검토 필요 ····· 17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183

<지 출> ····· 183

14. 피해보전직불 사업: 계획안 조정 검토 및 사업일몰 이후 대책마련 필요 183

15. 연례적 사업진행 지연 및 예산집행률 저조 사업의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 187

❖ 농촌진흥청 ····· 208

Ⅰ. 개 관 ····· 208

1. 예산안 개요 ····· 208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11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213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14

Ⅱ. 사업별 검토 ····· 215

【일반회계】 ····· 215

<세 출> ····· 215

1. 라이스피아 사업: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적 성과공유 필요 ····· 215

2. 기후변화대응 꿀벌 수급안정 지원 사업: 꿀벌 증식장 구축 지연에 따른 운영비 예산안 검토 필요 ····· 221

3.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사업: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안 검토 필요 ·· 225
4.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 사업공정률 및 총사업비 협의조정 등의 상황을 고려한 예산안 검토 필요 ····· 228

❖ 산림청 ····· 232

Ⅰ. 개 관 ····· 232

1. 예산안 개요 ····· 232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34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236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37

Ⅱ. 사업별 검토 ····· 238

【일반회계】 ····· 238

<세 출> ····· 238

1. 장애인 관람동선 재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사업: 타 내역사업으로 통합편성 및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 238
2.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건립사업: 사업공정률 등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 241
3. 산림휴양등산증진 사업: 사업 진행 현황 및 예산집행률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 243
4.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 국산 헬기 신규도입 적극 검토 필요 ····· 249
5. 2026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업(신규): 지방비 확보 여부에 따른 국비 지원 검토 필요 ····· 25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54

<세 출> ····· 254

6. 어린이 목공체험관 조성·운영 사업(신규):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된 사업내용 마련 필요 ····· 254

7.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 예산 실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 257

8.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의 국가재정으로의 편입 필요성 검토 ····· 261

❖ 해양수산부 ····· 268

Ⅰ. 개 관 ····· 268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68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72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278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79

Ⅱ. 사업별 검토 ····· 280

【총 괄】 ····· 280

1. 해양수산부 소관 재해 및 안전 관련 보험 사업: 당해연도 예산으로 보험료 충당 필요 ····· 280

【일반회계】 ····· 284

<세 출> ····· 284

2. 해양경계 획정관리 사업: 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하여 예산 계상 여부 결정 필요 ····· 284

3.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연례적 인건비 이월 규모를 고려하여 출연금 일부 감액조정 필요 등 ····· 287
4.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신규): 미래 국가재정 부담을 감안한 사업추진 검토 필요 ····· 29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296

<세 출> ····· 296

5.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적 명확화 필요 ····· 296
6.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 필요 ····· 300
7.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한 연내 집행 필요 ·· 30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305

<세 출> ····· 305

8.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신규): 기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개편 필요 ····· 305
9.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사업(신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계획 보완 필요 ····· 309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312

<세 출> ····· 312

10.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구축 사업(신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 사업 재추진 여부 결정 필요 ····· 312
11. 항만보안시설 확충 사업: 현재 구축 중인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의 운영상 부작용 또는 성과 검토 후 이를 신규사업 추진 시 반영 필요 ····· 31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319

<세 출> ····· 319

12.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실집행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319

13. 청년 귀어종합타운 조성 사업(신규): 유사 사업의 지연 사례를 고려하여 사업기간 및 연부율 조정 검토 필요 ····· 326

【수산발전기금】 ····· 329

<지 출> ····· 329

14.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 실제 융자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융자 규모 조정 검토 필요 ····· 329

15.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사업: 융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 333

❖ 해양경찰청 ····· 339

Ⅰ. 개 관 ····· 339

1. 예산안 개요 ····· 339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341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343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44

Ⅱ. 사업별 검토 ····· 345

【일반회계】 ····· 345

<세 입> ····· 345

1. 기타재산이자수입: 최근 수납실적 등을 고려한 세입예산액 증액 필요 ····· 345

<세 출> ····· 347

2.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 설정을 위하여 국고보조율 조정 검토 필요 ····· 347
3. 경비대테러역량강화 사업: 드론 관련 직무교육 이수자를 드론 운영 직무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 등 ····· 350
4. 서부정비창 운영 사업: 실제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감액 필요 ····· 355
5. 함정건조 사업: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과 예산안 간 괴리 발생 ·· 35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365

Ⅰ. 개 관 ····· 365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365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368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375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77

Ⅱ. 사업별 검토 ····· 378

【총 괄】 ····· 378

1. 2024년 신규 국제협력 R&D 과제의 협약 체결 지연에 따른 2차년도 예산 감액 조정 필요 ····· 378
2. 산업기술혁신 기반조성 사업의 총 사업기간 미사용 수익금에 대한 적정 처리방안 마련 필요 ····· 383
3.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청산절차에 따른 세입 계상 필요 ····· 387

4. ODA 사업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른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편성·교부 필요 ····· 390

【일반회계】 ····· 396

<세 출> ····· 396

5. 개별지원 사업: 사업방식 개선을 통한 연내 간접보조금 집행 제고 필요 ·· 396

6. 2024년 신규과제 협약 체결 지연에 따른 2025년도 계속과제 개월수 조정 필요 ····· 399

7.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 2024년도 신규 과제 추진 지연에 따른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407

8. 국가로봇테스트필드(R&D) 사업: 설계용역 체결 지연에 따른 2차년도 인프라 구축 사업비의 감액 조정 필요 ····· 410

9.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자금 대출 수요를 감안한 적정 예산 규모 재산정 등 ····· 414

10. e모빌리티전동기재제조산업 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 센터 구축 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필요 ····· 41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421

<세 출> ····· 421

11.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 융자취급수수료의 수취 및 자체수입 계상 방식 검토 필요 ····· 421

12.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사업: 자체수입에 전기이월금 반영 필요 ····· 425

13.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사업: 총사업비 확정 이후 연부액 재산정에 따른 2차년도 사업비 감액 필요 ····· 429

14. 유전개발 사업: 매몰비용 최소화를 위한 사업관리 필요 ····· 433

【전력산업기반기금】 ·····439

<지 출> ····· 439

15. 무탄소에너지보증 사업(신규): 旣조성재원 우선활용 방안 검토 필요 ···· 439

16. 해상풍력맞춤형보증지원 사업(신규): 사업계획 및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444

1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반구축 사업: 보조금 예산편성에 따른 원활한 사업관리 수행 필요 ····· 448

18.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사업: 과제비 이월이 발생한 과제들에 대한 사업관리 철저 및 적정 예산 반영 필요 ····· 450

【무역보험기금】 ·····453

<수 입> ····· 453

19.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계획 정확성 제고 필요 ····· 453

20. 일반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의 적정 규모 검토 필요 ····· 456

❖ 특허청 ·····460

Ⅰ. 개 관 ····· 460

1. 예산안 개요 ····· 460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462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463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64

Ⅱ. 사업별 검토 ····· 46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465

<세 출> ····· 465

1. 모태조합 출자 사업: 기출자한 자금의 투자집행 비율 제고 필요 ····· 465
2. 국가 R&D 특허동향 심층분석(신규) 사업: 예산 증액에 따른 사업관리 철저 필요 ····· 469
3.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출연금 잔액 및 누적 이자수익액을 감안한 신규 출연금 교부 필요성 검토 필요 ····· 474
4. AI 심사지원시스템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 사업과의 연계 필요 등 ····· 478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483

<세 출> ····· 483

5.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예산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 강화 필요 ····· 483

❖ 중소벤처기업부 ····· 487

Ⅰ. 개 관 ····· 487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487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490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492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94

Ⅱ. 사업별 검토 ····· 495

【일반회계】 ····· 495

<세 출> ····· **495**

1. 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계정 간 전용 검토 필요 ·· 495
2.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 사업: 실제 사고율 추이를 고려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500
3.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정책 패키지 사업으로서 다른 지원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 505
4. 딥테크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신규): 대기업과의 협업 지원 시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기여방안 마련 필요 ····· 51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514**

<세 출> ····· **514**

5. 지식산업센터(자율):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 514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521**

<수 입> ····· **521**

6. 기타재산이자수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배당금 수취실적을 고려한 수입 계획안 증액 조정 필요 ····· 521

<지 출> ····· **524**

7. 정책자금이차보전지원 사업: 직접융자와 이차보전사업의 병행 및 이차보전지원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 524
8.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사업: 2024년 신규 사업의 실적 점검 후 점진적 확대 검토 필요 ····· 532
9. 점프업 프로그램 사업(신규): 사업전환 대상이 아닌 이 사업의 법적 근거 검토 및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 ····· 536

【기술보증기금】 ····· 542

<지 출> ····· 542

10. 업무용부동산취득 사업: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아닌 기술보증기금의 본사 소재 지역 합숙소 취득의 적정성 검토 필요 ····· 54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547

<지 출> ····· 547

11.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 사업(신규): 민간투자 후 정부 보조금 지급 방식의 적정성 검토 필요 ····· 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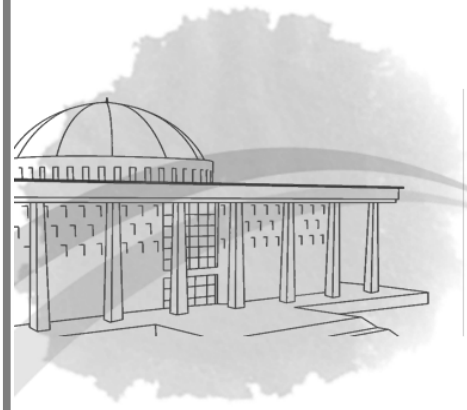
12.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신규): 민간 플랫폼사가 소상공인 육성에 참여할 유인 및 책임성에 대한 검토 필요 ····· 552

13.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신규):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의 적정성 검토 ··· 556

14.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소상공인 융자의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한 부실 이연 우려 및 K-커머스론의 금리의 적정성 검토 필요 ····· 562

15.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액 조정 검토 필요 ···· 56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은 3조 9,855억원으로, 전년 대비 8억원(0.02%) 증가함. 예산은 1,323억원으로 전년 대비 334억원(33.7%) 증가한 반면, 기금은 3조 8,532억원으로 전년 대비 326억원(△0.8%) 감소함.[1)]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989	1,323	334	33.7
기 금	38,859	38,532	△326	△0.8
총수입	39,848	39,855	8	0.0

문의 : 김혜진 예산결산조사관 khj3685@assembly.go.kr (02-6788-569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은 7조 1,2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70억원(2.4%) 증가함. 예산은 3조 8,2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6억원(3.5%) 증가하고, 기금은 3조 2,968억원으로 전년 대비 384억원(1.2%) 증가함.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36,960	38,246	1,286	3.5
기 금	32,584	32,968	384	1.2
총지출	69,545	71,214	1,670	2.4

나. 예산안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488억원으로 전년 대비 342억원(15.9%) 증가함.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769	1,074	305	39.7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특별회계	1,180	1,201	21	1.8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98	213	15	7.8
합 계	2,146	2,488	342	15.9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조 9,72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1억원(3.1%) 증가함.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3,473	33,460	△13	0.0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특별회계	1,180	1,201	21	1.8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868	5,061	1,193	30.8
합 계	38,521	39,722	1,201	3.1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5조 4,8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178억원(△5.5%) 감소함.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문화예술진흥기금	5,798	5,798	5,777	△22	△0.4
영화발전기금	1,378	1,378	937	△441	△32.0
지역신문발전기금	98	98	100	2	1.8
언론진흥기금	480	480	508	28	5.8
관광진흥개발기금	16,222	16,222	17,145	923	5.7
국민체육진흥기금	34,051	34,051	30,383	△3,668	△10.8
합 계	58,027	58,027	54,849	△3,178	△5.5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5개(449억 6,5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APEC 정상회의 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언론 취재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8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음.

‘대한민국 문화도시(지역지원, 세종)’ 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관리 및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APEC 정상회의 미디어센터 운영	3,803
2	국립전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지원	56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37,000
4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세종)	3,000
5	생태녹색관광활성화(제주)	600
총지출		44,965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등 총 23개임.[3)]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환경 구축 핵심기술 개발(R&D)	2,300	4,864	2,564	111.5
2	선도형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R&D)	4,347	5,924	1,577	36.3
3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7,417	10,649	3,232	43.6
4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8,936	13,933	4,997	55.9
5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4,121	7,145	3,024	73
6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43,179	70,120	26,941	62.4
7	정책포털시스템 운영	2,749	4,655	1,906	69.3
8	청와대 복합문화 예술공간 조성	30,024	41,724	11,700	39
9	국립청주박물관 디지털문화관 건립지원	2,461	5,712	3,251	132
10	국립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지원	3,941	8,752	4,811	122
11	국제문화 정책지원	11,307	20,987	9,950	90.1
12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5,760	10,184	4,424	76.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3	아시아 문화역량강화지원(ODA)	1,440	2,360	920	63.9
14	옛 전남도청 복원	14,803	23,864	9,061	61.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40,474	63,616	23,142	57.1
16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27,778	78,824	51,046	183.8
17	제주관광진흥지원	6,000	12,704	6,704	111.7
18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1,967	3,272	1,305	66.3
[영화발전기금]					
19	영화창제작지원	10,725	21,710	10,985	102.4
[관광진흥개발기금]					
20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14,025	18,904	4,879	34.8
[국민체육진흥기금]					
21	장애체육인복지사업	6,025	8,201	2,176	36.1
22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695	5,654	4,959	713.5
23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163,730	248,057	84,327	51.5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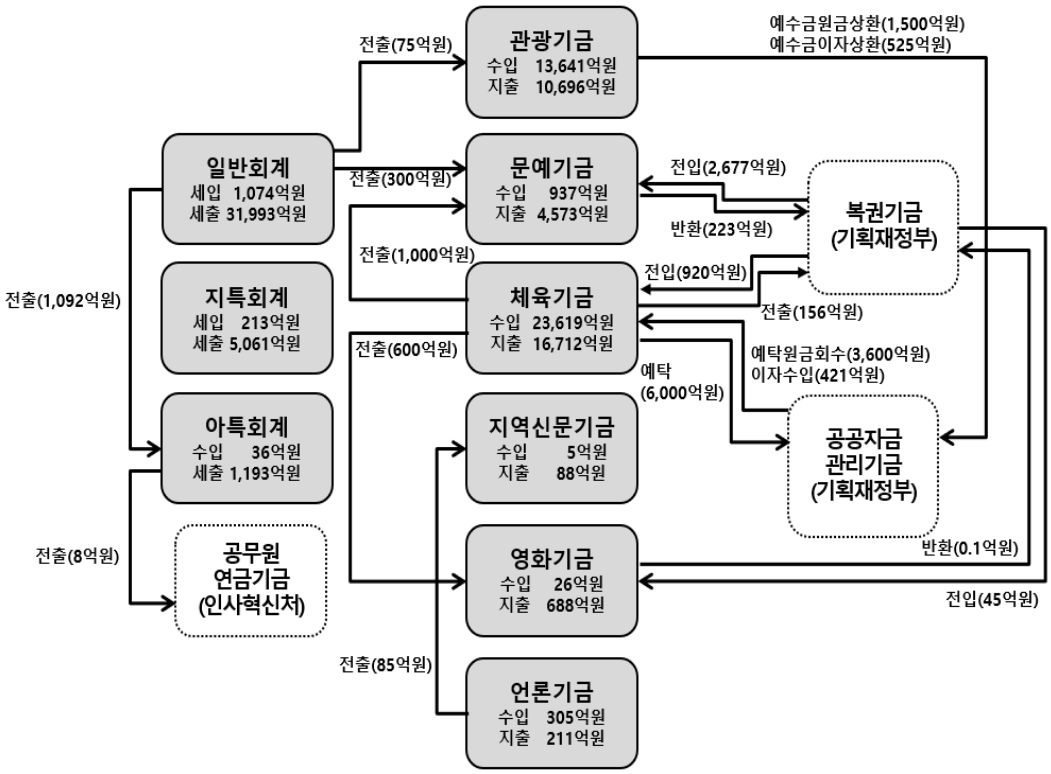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 문화예술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 1,092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30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75억원이 각각 전출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8억원이 전출될 예정임.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1,000억원, 복권기금으로부터 2,677억원을 전입받고, 복권기금에 223억원을 반환할 예정임.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920억원을 전입받고, 복권기금에 156억원을 반환할 예정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회수 3,600억원 및 예탁이자 수입 421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000억원을 예탁할 예정임.

또한 영화발전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600억원, 복권기금으로부터 45억원을 전입받고, 복권기금에 1,000만원을 반환할 예정이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금 원금 1,500억원과 예수금 이자로 525억원을 상환할 예정이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 85억원을 전입받을 예정임.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수입·총지출 기준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K-컬처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초체력 확보와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를 고려하여, 국립예술단체 청년단원을 확대하고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전반의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자본 유치 강화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을 들 수 있음.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투자지원(펀드) 사업은 기존 펀드의 결성 지연과 투자 여력 등을 고려하여 신규 출자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사업부지 인근에 남아 있는 미반환된 벙커의 반환 및 토지오염 정화작업이 완료된 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만약 2025년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도 연내 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개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이 계속 저조한 가운데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사전행정절차가 지연되어 2024년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향후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넷째, ‘스포츠클럽디비전’ 사업은 종목별 리그운영 여건을 점검하여 신규 종목(농구, 배구, 하키, 핸드볼)에 대한 승강제 리그 도입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투자지원(펀드) 사업: 신규 출자 규모 재검토 필요

가. 개 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투자지원(펀드) 사업은 문화·영화·관광·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당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모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0억원(△1.8%) 감액된 3,830억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투자지원(펀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구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4년도 본예산(당초) (A)	2024년도 예산현액 (계획현액)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K-콘텐츠 펀드 출자	340,000	340,000	320,000	△20,000	△5.9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270,000	270,000	230,000	△40,000	△14.8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25,000	25,000	35,000	10,000	40.0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45,000	45,000	15,000	△30,000	△66.7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	-	40,000	40,000	순증
체육기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30,321	30,321	30,321	-	-
	스포츠산업 펀드	30,000	30,000	30,000	-	-
관광기금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53,094	53,094	63,694	10,600	20.0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20,000	20,000	33,000	13,000	65.0
합계		390,000	390,000	383,000	△7,000	△1.8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정부재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0억원(△14.8%)이 감액된 2,300억원이 편성되었음.

4) 일반회계-K-콘텐츠 펀드 출자(1231-322)(콘텐츠정책국),
국민체육진흥기금-스포츠산업금융지원(5365-301)(체육국),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4462-313)(관광정책국)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사업은 한국영화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0억원(40.0%)이 증액된 350억원이 편성되었음.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은 투자대상의 제한 없이 시장 수요에 기반한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모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0억원(△66.7%)이 감액된 150억원이 편성되었음.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사업은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콘텐츠 정책금융의 지속적인 확대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VC가 자펀드 운용사로 참가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스포츠산업 펀드’ 사업은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자 및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국내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펀드 스포츠계정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300억원이 편성되었음.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사업은 관광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및 민간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모태펀드 관광계정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0억원(65.0%)이 증액된 330억원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문화체육관광부의 투자지원(펀드) 사업은 기존 펀드의 결성 지연과 투자 여력 등을 고려하여 신규 출자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① 모태펀드(문화, 영화, 스포츠, 관광) 출자사업의 경우 모태펀드로 정부자금이 출자되면 한국벤처투자(펀드 운용기관)는 민간 운용사를 모집하고,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자금을 조달·매칭하여 자펀드를 결성한 후 기업에 대한 투자활동을 수행하게 됨. 펀드 출자사업의 목적인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자 후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최근 자펀드 결성 지연에 따라 출자가 이루어진 당해연도(1차년도)에 조속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24년의 경우에는 8월말 현재까지 조성 계획 중인 24개 자펀드 중 10개 자펀드만 결성되는 등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투자실적도 문화계정의 자펀드 2개에서 총 25억원에 불과한 상황임.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자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원, 개)

연도	계정	예산 (A)	회수액 (B)	정부 출자액 (A+B)	자펀드 조성 규모	선정 운용사 수	펀드 결성수	운용사 선정 후 펀드결성기간		
								1차 시한	2차 시한	추가 유예
2024	문화	2,700	1,000	3,700	6,300	16	6	5 (31.3%)	1 (6.3%)	-
	영화	250	75	325	650	2	2	2 (100.0%)	-	-
	스포츠	300	74.5	374.5	535.5	4	2	2 (50.0%)	-	-
	관광	200	150	350	540	2	-	-	-	-
	계	3,450	1,299.5	4,749.5	8,025.5	24	10	9 (37.5%)	1 (4.2%)	-

주 1) 2024년 8월말 기준
2) 1차 결성시한: 3개월 이내 / 2차 결성시한: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 추가 유예기간: 6개월 초과
3) 2024년 자펀드 조성규모는 운용사 선정시 조성목표액으로 현재 조성 진행중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계정별로 투자여력을 살펴보면,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9,956억원, 영화계정은 888억원, 스포츠계정은 873억원, 관광계정은 1,349억원 등 총 1조 3,066억원의 투자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임.

[2021년~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결성규모 및 투자여력 현황]

(단위: 억원, %)

계정	출자연도	정부출자	민간	결성총액	투자집행액	투자소진율	투자여력
문화	2021	1,540	1,341	2,881	2,033	70.6	571
	2022	1,741	947	2,688	1,642	61.1	778
	2023	2,175	2,311	4,486	1,075	24.0	2,962
	2024	3,700	2,600	6,300	25	0.4	5,645
	계	9,156	7,199	16,355	4,775	29.2	9,956
영화	2021	362	199	561	675	120.3	-
	2022	436	310	746	567	76.0	104
	2023	250	280	530	282	53.2	196
	2024	325	328	653	-	-	588
	계	1,373	1,118	2,491	1,524	61.5	888

(단위: 억원, %)

계정	출자연도	정부출자	민간	결성총액	투자집행액	투자소진율	투자여력
스포츠	2021	130	55	185	136	73.5	30
	2022	254	122	376	133	35.4	206
	2023	175	89	264	83	31.4	155
	2024	374.5	160.5	535	-	-	482
	계	933.5	426.5	1,360	352	25.9	873
관광	2021	450	200.1	650.1	392	60.3	193
	2022	450	251.5	701.5	285	40.6	347
	2023	300	130	430	64	14.9	323
	2024	350	190	540	-	-	486
	계	1,550	771.6	2,321.6	741	31.9	1,349
합계		13,012.5	9,515.1	22,527.6	7,392	32.8	13,066

주 1) 2024년 8월말 기준임
2) 2024년은 운용사 선정시 결성 목표액으로 현재 조성 진행중임
3) 투자여력은 자펀드 결성규모(2024년은 결성목표액)에서 旣 투자액과 펀드 운용비(운용사 보수 등으로 청산 시 확정되며, 통상 자펀드 결성액의 10% 이상 규모임. 이 표에서는 10%로 가정)를 제외하고 실제 투자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모태펀드 출자 사업 예산을 3,280억원 편성하였고, 8월말 기준 재출자규모 추정치를 포함하면 4,120억원을 신규로 출자할 예정이므로, 기존 투자실적을 고려하여 신규출자분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계정별 조성계획(안)]

(단위: 억원)

계정	2024년 8월말 투자여력	2025년 조성계획(안)				
		정부출자금			민간	총액
		25년 예산안	회수액	계		
문화	9,956	2,300	700	3,000	2,300	5,300
영화	888	350	20	370	370	740
스포츠	873	300	-	300	128	428
관광	1,349	330	120	450	242	692
계	13,066	3,280	840	4,120	3,040	7,160

주) 2025년 재출자규모는 아직 미정으로, 현재 작성된 수치는 8월말 기준 추정치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은 운용상 제한이 없는 민간중심 펀드를 조성하여 자펀드 규모 대형화 및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5년간 정부 출자 1,500억원(문화체육관광부 9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0

억원)을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려는 계획임.

2024년에는 정부 출자 800억원(문화체육관광부 4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0억원)과 민간 출자 1,200억원으로 2,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후 자펀드 조성 단계에서 4,000억원 규모의 민간 출자를 모집하여 총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모펀드 출자자 모집이 지연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중 모펀드 출자 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자펀드 결성을 진행할 예정임.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수립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25년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예산으로 15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의 모펀드 결성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자펀드 결성도 불분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신규 출자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사업은 외국 금융기관 등 해외 출자자 참여를 필수 조건으로 하여 정부 출자액의 최소 1배수 이상을 주목적 투자에 사용하는 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 정부 출자 400억원을 바탕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역외펀드를 조성할 예정임.

그런데 운용상 제한이 없는 민간중심 펀드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24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콘텐츠 전략펀드의 모펀드 출자자 모집도 지연되고 있고,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사업에 대한 해외 VC 대상 수요조사도 실시되지 않은 상황이며, 기조성된 모태펀드 콘텐츠 분야 펀드들도 투자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충분할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글로벌 리그 펀드 개요]

○ (조성 방향) 해외 VC가 자펀드 운용사로 참가할 수 있는 ‘글로벌 리그 펀드’ 신규 조성, 해외자본 마중물 역할 수행
○ (조성계획(안)) 400억원 출자, 총 1,000억원 규모 역외펀드 조성
- (자펀드 운용사) 해외 운용사 또는 해외-국내 공동 운용사
- (기타 출자조건) 외국 금융기관 등 해외 출자자 참여 필수
○ (주목적 투자) 기업의 성장성 및 유망성에 기초하여 K-콘텐츠 중소·벤처기업에 지분 투자
- (투자비율) 정부 출자액의 최소 1배수 이상을 주목적 투자에 사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투자지원(펀드) 사업은 전년도 실질투자율이 낮음에도 다음해 투자액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경우, 펀드 출자 초기에 국가 예산이 적정한 곳에 배분되지 못하고 자펀드 결성 전까지 대기자금이 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고, 가치평가에 따른 선별적 투

자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펀드 출자사업의 경우 기 출자예산의 집행실적(기존 출자예산을 통한 자펀드 결성 실적 및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 현황 등), 투자금의 회수 및 재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적정한 출자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투자지원(펀드) 사업은 저조한 자펀드 결성 실적 및 투자 여력을 고려하여 2025년도 신규출자분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2.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조정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용산 어린이정원 인근 미군 관사 7개 동 리모델링 및 주변 실외공간 구조물 설치 등을 통해 어린이 전용 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56억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

[2025년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43,179	70,120	26,941	62.4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	25,670	25,670	순증

이 사업은 저출생 극복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문화예술 놀이 및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전용공간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사업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개요]

○ 위치: 용산 어린이정원 서편 반환부지
○ 부지/연면적: 향후 계획 수립 과정서 실측 예정
○ 주요시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 총사업비: 256억 7,000만원 / 사업기간: 2025년
○ 추진주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민간경상보조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5) 일반회계-문화예술 인프라 구축(1632-326)(문화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위한 예산 256억 7,000만원을 모두 2025년 예산안에 편성하였음.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ㅇ **공간 조성: 22,500백만원(3,214.2백만원×7개소)**
- 리모델링(설계,공사,감리 등): 1,000백만원×7개소=7,000백만원
- 건물 주변 실외 놀이·체험공간 조성: 12,000백만원
- 기자재 구입: 500백만원×7개소=3,500백만원
ㅇ **프로그램 개발·운영: 2,080백만원(297백만원×7개소)**
- 공연전시형: 80백만원×2종×7개소=1,120백만원
- 예술교육형: 40백만원×2종×7개소=560백만원
- 모델 개발 및 사례기반 연구 등: 200백만원×2식=400백만원
ㅇ **사업관리: 1,090백만원(155.7백만원×7개소)**
- 시설유지·관리: 30백만원×3개월=90백만원
- 홍보 및 사업관리 등: 1,000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검토의견

첫째, 사업부지 인근에 미반환된 벙커가 남아 있어 부지사용 및 토지오염 방지조치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벙커 반환 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미반환된 벙커로 인한 토지오염 우려 등으로 인해 실외 놀이·체험공간이 포함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벙커 반환 및 토지오염 정화 작업이 완료된 이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부지는 용산 어린이정원 서편 반환부지의 미군 관사 7개 동 및 주변 실외 공간으로, 부지 인근에 아직까지 미반환된 벙커가 남아 있고 토지오염 정화작업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

[사업 대상 부지 위치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지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단과 부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부지가 확정되었고, 향후 국방부(부지 소유)와 임시 사용승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나, 아직까지 벙커 관련 우리 정부와 미군 간에 반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임.

다만, 사업부지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미반환된 벙커를 제외하고 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부지가 벙커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벙커로 인한 토지오염 우려 등으로 인해 실외 놀이·체험공간이 포함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사업은 벙커 반환 및 토지오염 정화작업이 완료된 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6)]

둘째, 이 사업의 규모 및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콘텐츠 체험관 운영 사업의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2025년 연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개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현재 순수 사업부지 면적에 대한 실측이 필요한 상황으로,[7)] 관리주체인

6) 다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연내 벙커 반환을 완료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고, 사업부지가 군사시설이 아닌 단순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지인 점, 민간 부지와 곧바로 인접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오염 관련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7) 벙커를 포함한 부지 면적은 18,800㎡이나, 미반환된 벙커 제외 순수 사업부지에 대한 실측이 필요함. 7개 동의 연면적은 총 2,515.59㎡(7개 동 모두 단층으로 부지 면적과 연면적 동일)임.

국토교통부(LH)가 현황측량, 기초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협의 중에 있음.

또한 2024년 9월말 기준 기본구상 컨설팅 수행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 전이고,[8]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하에 국립문화시설·예술단체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나 참여할 기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9]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사업수행방식 검토 중으로 연내 전문가 자문 및 기관 협의를 거쳐 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인바,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 신규사업(예산 30억원)으로 조성 중인 콘텐츠 체험관의 경우, 용산 어린이정원 내 1개 동(연면적 370㎡)을 리모델링하고 콘텐츠를 기획·제작하여 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으로,[10] 당초 2024년 10월 개관 및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24년 12월 시운전 후 개관할 예정임.

그런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콘텐츠 체험관 운영 사업과 비교하여 건물 연면적만 비교해도 6.8배 넓을 뿐 아니라 실외공간 조성 사업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수이고 사업비 또한 8.6배에 달하고 있는바, 사업 설계 및 기획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11]

따라서 2025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향후 예상되는 절차 등을 고려하여[12] 2025년 예산안은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8) 기본구상 컨설팅('24.9.9~10.31.) 추진 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추진 예정

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운영 총괄로, 공간 전체에 대한 통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립 문화기관·예술단체 등이 어린이 프로그램 노하우를 활용하여 각 관별 전시·체험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협력할 계획임.

10) 2024년 콘텐츠 체험관 운영 사업 개요

○ 위치: 용산 어린이정원 내 카페 어울림 앞 건물 1개 동(연면적 370㎡) ○ 예산: 30억원(콘텐츠 개발 19억원, 전시환경 조성 11억원) ○ 사업내용: 콘텐츠 체험관 조성 - 콘텐츠 기획·제작: 국내 IP 기반 캐릭터·애니메이션 활용 어린이 맞춤 콘텐츠 제작 - 시설 공간 구성: 리모델링, 구조 보강, 냉난방설비, 통신 네트워크 등 - 개관 및 운영: 개관 홍보, 시설 및 장비 운영, 관람객 안내 등 ○ 추진주체: 한국콘텐츠진흥원(민간경상보조 100%)

11)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미술관 등 개별 문화시설과 달리 장르의 경계를 넘어 예술을 경험하도록 7개 동 각각이 소주제를 가지면서 실내·야외를 넘나들며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임.

12) 현황측량·구조안전진단·기초조성 등 사전절차 이행, 기본계획 수립, 국방부 사용승인,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설계·기획업체 공모 및 선정, 설계 및 기획, 공사업체 등 선정, 공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3.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확대속도 조절 및 신규 센터의 설치·운영 예산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은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현지에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1억 7,500만원(35.8%) 증액된 234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13)]

[2025년도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74,233	93,216	18,983	25.6
해외거점 운영	21,950	27,925	5,975	27.2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운영	17,250	23,425	6,175	35.8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구분	24년	25년
기존거점	총 15개소×768백만원=11,530백만원	총 25개소×852백만원=21,300백만원
신규거점	총 10개소×572백만원=5,720백만원	총 5개소×425백만원=2,125백만원
합계	17,250백만원	23,425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검토의견

첫째,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은 2025년에 5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나, 2023년~2024년 신규 15개소의 사업 운영 효과 및 추가 개소의 필요성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의 확대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13) 일반회계-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3132-304)(국제문화정책관)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1조[14]에 따라 현지 시장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콘텐츠기업 현지 진출 직·간접 마케팅 지원 및 컨설팅 등을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에 둔 센터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신규 5개소, 2024년 신규 10개소에 이어 2025년에 신규 5개소를 추가로 개소하는 등 2027년까지 총 50개로 확대할 계획임.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개소 현황]

(단위: 개)

연도	신규 개소수	누적 개소수	위치
2001	2	2	중국(북경), 일본(도쿄)
2003	1	3	미국(LA)
2016	1	4	인도네시아(자카르타)
2017	1	5	중국(심천)
2019	1	6	프랑스(파리)
2020	1	7	베트남(하노이)
2021	1	8	태국(방콕)
2022	2	10	UAE(두바이), 러시아(모스크바)
2023	5	15	영국(런던), 독일(프랑크푸르트), 미국(뉴욕), 멕시코(멕시코시티), 인도(뉴델리)
2024	10	25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오사카), 싱가포르, 튀르키예, 호주
2025(안)	5	30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폴란드, 칠레, 미국(댈러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일단 센터가 개소되고 나면 인건비 등 경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확대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2023년~2024년 신규로 계획됐던 15개소 모두 아직까지 참고할만한 사업실적이 부재한바, 2025년 5개소 추가 조성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 ·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⑤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 · 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2023년~2024년 신규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현황]

연도	국가(지역)	설립(개소)일자	파견 일자	사무실 구축 현황	사업 실적
2023년	영국(런던)	2023.12.12.	2023.07.19.	공유오피스 운영 중	**법인설립 등 신설 중으로 별도 실적 부재**
	미국(뉴욕)	2024.02.08.	2024.10.02.	코리아센터 입주예정	
	멕시코(멕시코시티)	2023.05.10.	2023.12.05.	공유오피스 운영 중	
	독일(프랑크푸르트)	2023.06.01.	2023.10.17.	공유오피스 운영 중	
	인도(뉴델리)	2024.11월 예정	2024.01.14.	사무소 계약 과정	
2024년	캐나다(토론토)	2024.03.14.	2024.07.24.	공유오피스 운영 중	
	호주(시드니)	2024.05.03.	2024.07.29.	공유오피스 운영 중	
	싱가포르(싱가포르)	2024.05.31.	2024.07.15.	공유오피스 운영 중	
	일본(오사카)	2024.06.14.	2024.08.02.	일반 임대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2024.07.30.	2024.09.02.	공유오피스 운영 중	
	스페인(마드리드)	2024.06.14.	2024.09.29.	공유오피스 운영 중	
	이탈리아(밀라노)	2024.06.28.	2024.09.25.	공유오피스 운영 중	
	스웨덴(스톡홀름)	2024.07.15.	2024.10.11.	공유오피스 운영 중	
	브라질(상파울루)	2024.10.03.	2024.10.06.	공유오피스 운영 중	
	튀르키예(이스탄불)	2024.11월 예정	2024.11월 예정	사무소 계약 과정	

주) 2024년 10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둘째, 신규 센터 예산이 실제 집행가능한 금액 대비 과다편성됨에 따라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신규 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편성받은 예산을 기존 센터에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실제 집행가능한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2023년 예산액은 101억 7,300만원으로, 기존 센터 10개소 운영을 위해 편성된 67억 8,300만원과 신규 센터 5개소 설치를 위해 편성된 33억 9,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그런데 신규 5개소 모두 개소가 지연됨에 따라 2023년 신규 센터 예산 33억 9,000만원 중 불용이 예상되는 29억 1,500만원을 당초부터 기존 10개소에 배정하여 집행하였음.[15)]

15) 2023년 보조사업자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5개소에 대한 TO확보 지연 및 센터장 선발에 난항을 겪자, 하반기 파견을 목표로 당초부터 신규 센터 1개소당 9,500만원만을 배정하고 나머지 29억 1,500만원은 기존 10개소에 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신규 센터 개소 예산의 불용예상액은 기존 10개소 센터에서 사용되었음.

[2023년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예산 편성 대비 배정 현황]

구분	예산 편성	실제 배정
기존 센터 (10개소)	67억 8,300만원 (10개소×678.2백만원)	96억 9,800만원 (10개소×969.8백만원)
신규 센터 (5개소)	33억 9,000만원 (5개소×678.2백만원)	4억 7,500만원 (5개소×95백만원)
합계	101억 7,300만원	101억 7,300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는 2024년에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2024년 신규 센터 15개소의 설치·운영을 위해 편성된 2024년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기존 10개소 및 거점 운영 예산으로 배정하였고,[16]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말 기준 2023년~2024년 신규 센터 15개소에 배정된 예산의 집행률은 낮은 상황임.

[2024년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예산 편성 대비 배정 및 집행 현황]

구분	예산 편성(A)	실제 배정(B)	증감(B-A)	10월말 기준 집행액(집행률)
기존 센터 (10개소)	76억 8,000만원 (10개소×768백만원)	105억 3,000만원 (10개소×1,053백만원)	28억 5,000만원	70억 6,600만원 (67.1%)
2023년 신규 센터 (5개소)	38억 4,000만원 (5개소×768백만원)	26억 4,000만원 (5개소×528백만원)	△12억원	6억 7,800만원 (25.7%)
2024년 신규 센터 (10개소)	57억 2,000만원 (10개소×572백만원)	30억 7,000만원 (10개소×307백만원)	△26억 5,000만원	9억 8,100만원 (32.0%)
거점 운영	-	10억 1,000만원	10억 1,000만원	4억 3,900만원 (43.5%)
합계	172억 5,000만원	172억 5,000만원	-	91억 2,400만원

주) 10월말 기준 집행률은 실제 배정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로 산출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이러한 배정 및 집행현황을 고려하여 2025년 편성된 예산 중 2024년~2025년 신규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16) 기존 센터 10개소에 추가로 28억 5,000만원을, 당초 편성되지 않은 거점 운영 예산으로 10억 1,000만원을 배정하였음.

4.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ODA) 사업: 사업추진경과를 고려한 예산 조정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인도네시아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센터 조성(6개소) 및 디지털콘텐츠 창작자 양성을 통해 콘텐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8,000만원(142.1%) 증액된 18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17)]

[2025년도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760	1,840	1,080	142.1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760	1,840	1,080	142.1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이고, 총 사업비는 60억원이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사업임.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및 유지보수: 1,100백만원
- 신규 양성센터 구축: 1,000백만원(250백만원×4개소)
- 기존 양성센터 유지・보수: 100백만원(50백만원×2개소)

○ 지역 콘텐츠 제작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740백만원
- 기존 양성센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00백만원(150백만원×2개소)
- 신규 양성센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40백만원(85백만원×4개소)
- 전문가 초청 현지 연수 등: 100백만원(100백만원×1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7) 일반회계-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ODA)(3132-303)(국제문화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2024년과 2025년에 편성된 양성센터 구축 예산을 각 편성 목적에 맞게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산은 그동안의 사업추진경과를 고려하여 실제 과업수행이 가능한 범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인도네시아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센터 2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왔으나, 인도네시아 중앙-지방 정부 간 업무협의 및 협의의사록(RD)[18]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2023년에는 양성센터 구축이 불가능하였음.

이후 자카르타 양성센터는 2024년 8월 구축이 완료되어 현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이나, 시카 지역은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중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하반기에 사업대상 지역을 변경한 후 2024년에 추가 1개소, 2025년에 4개소를 순차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임.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센터 조성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구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조성 예산 편성 연도	지역	
2023년	자카르타	- 자카르타 양성센터 구축 현황 점검(답사): '23. 6. 12. **- 양국 협의의사록(ROD) 체결: '24. 1. 31.** - 자카르타 양성센터 사전답사: '24. 5. 13. - 리모델링 공사(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24. 6. 3. ~ '24. 8. 8. **- 자카르타 양성센터 교육 개시: '24. 8. 30.** **- 자카르타 양성센터 개소식 개최: '24. 9. 6.**
	시카	- 시카 양성센터 구축 현황 점검(답사): '23. 6. 13. - 양국 협의의사록(ROD) 체결: '24. 1. 31. - 인도네시아로부터 '24년 시카 양성센터 연기희망 서한 수신: '24. 4. 26. **- 인도네시아로부터 '24년 시카 양성센터 구축 불가능(연기 희망) 서한 수신 (1차 PSC 회신): '24. 8. 17.** **- 인도네시아 지방정부 간담회를 통한 시카 대체지 논의: '24. 9. 6.** ※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및 지방정부, 2024년 잠비 또는 마카사르 양성센터 구축 희망 **-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및 시카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한 시카 양성센터 구축: '25년 중**

18) 협의의사록(RD: Record of Discussions) : 수원국과 ODA 사업의 목적 및 기간, 대상 분야, 공여국측 지원사항, 협력대상국측 부담사항 등 협력 내용에 대하여 합의한 사항을 모아서 정리하고 서명한 문서

2024년	4개소	- 사전타당성 조사 최종 결과보고서 도출: '24년 9월 중 - 외교부 대상 사업대상지 변경(암본 → 바둥 / 무아로잠비 → 잠비) 신청: '24년 9월 중 **-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및 지방정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한 '24년 시카 대체지(잠비 또는 마카사르) 및 '25년 사업대상지 확정: '24년 10월**
2025년		- 4개 지역 교육 프로그램 개발: '25년 상반기 중 - 4개 지역 조성 개시(리모델링, 기자재 구매 등): '25년 중 - 4개 지역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시: '25년 중 순차 예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편, 이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8,000만원(142.1%)이 증액된 18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초 기준으로 남은 2개소 구축 예산 및 6개소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 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으로 설명하였으나,

10월 초 기준으로는 신규 4개소 구축 및 2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6개소 모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산(기존/신규 차등 지원) 등으로 산출내역을 변경하였음.

[2025년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변경 전·후)]

구분	2025년도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변경 전(9월 초 기준)	변경 후(10월 초 기준)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 **2개소 구축: 600백만원 (300백만원×2개소)** - 유지·보수: 60백만원 (10백만원×6개소)	- **4개소 구축: 1,000백만원 (250백만원×4개소)** - 유지·보수: 100백만원 (50백만원×2개소)
지역 콘텐츠 제작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80백만원 (180백만원×6개소) -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100백만원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40백만원 (150백만원×기존 2개소, 85백만원×신규 4개소) -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100백만원
합계	1,840백만원	1,840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양성센터 2개소를 조성하고 이를 운영할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2023년~2024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9월 말 기준 1개소만 구축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5개소는 사업대상지도 미정인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4개소 구축을 위한 예산 중 2024년에 편성된 예산과 중복 계상된 2개소 구축을 위한 예산은 그 편성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19)]

19) 2024년 예산이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 및 향후 집행계획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2023년~2024년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구분	2023년	2024년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 2개소 구축: 590백만원 (295백만원×2개소)**	**- 2개소 구축: 590백만원 (295백만원×2개소)**
지역 콘텐츠 제작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 140백만원 (140백만원×1식)	- 170백만원 (170백만원×1식)
합계	730백만원	760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도 예산에는 신규 2개소 구축을 위한 필수 기자재 구입비 등이 편성되었고, 2025년도 예산안에는 필수 기자재 외에 센터 구축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자재(책상 등) 구입비가 편성되었다는 입장이므로, 향후 2024년과 2025년에 편성된 신규센터 구축 관련 예산을 각 편성 목적에 맞게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도네시아 중앙-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2024년 연내 1개소를 추가로 구축하고, 2025년 상반기 내 양성센터 4개소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나,

2024년 9월말 기준 아직까지 시카 대체지 및 2025년 사업 대상지 4곳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할 때 2025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산 규모(6억 4,000만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협의의사록이 체결되기 이전의 ODA 사업은 사업추진 여부 및 구체적인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사업의 진행상황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한편, 협의의사록 체결 및 사업대상지 확정 전에 기자재를 미리 구입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2023년 예산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중앙-지방 정부 간 업무협의 및 협의의사록(RD)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2023년 양성센터 구축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위탁용역업체의 실집행률이 100%로 나타나고 있음.

[2023년~2024년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탁용역업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금	전년도 이월액	지급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3년	730	728	725	720	5	706	-	706	706	-	-	100
2024년	760	750	750	577	-	680	-	544	(진행중)	-	-	(진행중)

주) 2024년 8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는 2023년 하반기에 양성센터 2개소(자카르타, 시카)에서 사용할 목적의 기자재를 미리 구입[20]한 것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동 기자재는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포장 후 창고에 장기간 보관(창고 이용료 발생)되었고, 자카르타 양성센터의 기자재는 2024년 8월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시카 양성센터의 기자재는 현재 인도네시아 현지 교육문화연구기술부 건물 내에 보관 중에 있음.

[인도네시아 양성센터 사용 목적 기자재 입고, 포장, 운송 및 설치/활용 일정]

1) 1차 기자재 입고: '23. 9. 6.
2) 2차 기자재 입고: '23. 11. 23.
3) 기자재 포장: '23. 11. 30. ~ '23. 12. 15.
4) 기자재 수출: '24. 5. 23.(한국 내륙 운송) → '24. 5. 27.(한국 부산) → '24. 6. 8.(인도네시아 자카르타)
5) 자카르타 양성센터 기자재 설치 완료: '24. 8. 29.
6) 자카르타 양성센터 기자재 활용(교육 개시): '24. 8. 30.
※ 시카 양성센터 기자재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보관 중(교육문화연구기술부 건물 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협의의사록이 체결되기 이전의 ODA 사업은 사업추진 여부 및 구체적인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와 같이 협의의사록 체결 전에 미리 기자재를 구입하여 보관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집행이라 할 것이고,

ODA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및 기자재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면 협의의사록 체결 이후라도 사업대상지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정된 후 기자재 구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21]

20) 기자재 구매 총액: 281,970,000원,
기자재 구매 물품: PC, LED Monitor, portable Hard Drive, UPS, NAS Storage, Video LED Wall System, DSLR CAMERA SYSTEM 등

21) 문화체육관광부는 협의의사록 체결 이후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 간에 협의된 사업지의 기자재를 미리 구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향후 ODA 사업 추진 시 협의의사록 체결 전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예산 교부를 지양할 필요가 있고, 협의의사록 체결 이후에도 기자재를 미리 구매하여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노력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 청년예술인 예술활동적립계좌 사업(신규): 사업구조 재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청년예술인 예술활동적립계좌’** 사업은 꾸준히 예술활동을 하는 청년예술인에게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형성 및 자립 여건 마련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6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2)]

[2025년도 청년예술인 예술활동적립계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87,414	82,770	△4,644	△5.3
창작역량강화	68,904	66,503	△2,401	△3.5
청년예술인 예술활동적립계좌	-	3,600	3,600	순증

이 사업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만 18~39세 청년예술인이 유효기간 내 경력정보시스템에 예술활동 증빙 시 2년간 매월 적립액(10만원)만큼 추가 지원하려는 것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정액) 사업으로 추진됨.

[청년예술인 예술활동적립계좌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만 18~39세 청년예술인이 유효기간 내 경력정보시스템에 예술활동 증빙 시, 월 적립액(10만원)만큼 추가 지원
○ (참여대상) 만 18~39세의 신진·일반 예술활동증명자 중 중위소득 120% 미만인 사람
* 예술활동준비금('25년 20,000명, 연 300만원)과 중복수혜 불가
○ (지원금액) 2년간 월 10만원 적립 시, 10만원 추가 적립(총 240만원)
○ (추진방식) 민간경상보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시중은행과의 협약체결을 통한 적립계좌 신설 예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2) 일반회계-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1633-302)(예술정책관)

[청년예술인 예술활동적립계좌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청년예술인 예술활동적립계좌: 36억원(순증) - 지원금(월 10만원 적립, 1년 기준): 3,000명×2.4백만원×50% = 36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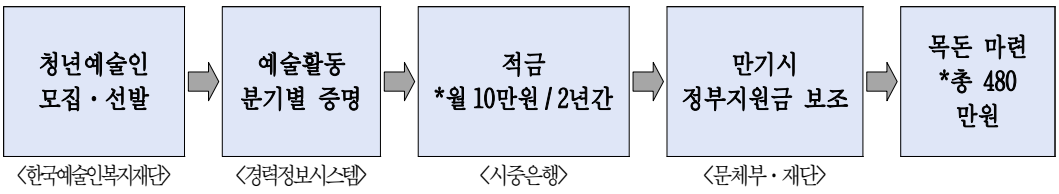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청년예술인 예술활동적립계좌 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예술인이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구조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예술인들이 정기적으로 예술활동을 증빙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저축하여 향후 창작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업을 2025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18~39세의 신진·일반 예술활동증명자 중 중위소득 120% 미만인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은 분기별로 예술활동을 증빙[23]하여야 하고, 2년 동안 매월 10만원 적립 시 정부지원금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에 목돈을 마련하게 하는 구조임.

[청년예술인 예술활동적립계좌 사업 기본구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3) 예술활동 증빙 방식
- (1안)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분기별로 예술활동 결과 및 내역 업로드
- (2안) 예술계 특성에 따라 단기적으로 예술활동의 결과가 가시적이지 않거나 예술활동을 준비중인 사람을 고려하여 분기별 예술활동 신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송하는 메일·문자의 링크에 접속하여 예술활동 지속 여부 신고
- (미증빙시) 분기별 미증빙자에 대하여 1~2회 경고, 3회 사업제외*를 통해 내실화
  * 증빙 미비자에 대해서는 적금 만기시 원금 및 시중은행 이자에 따른 금액만 지급하며, 정부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

2024년 9월 신진·일반 예술활동 증명자 중 청년 수는 총 108,118명인데,[24]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30대 이하 예술인의 경우 가구 총수입과 개인수입 중 예술활동수입이 40·50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개인수입도 예술활동수입이 아닌 비예술직업 수입을 통하여 얻는 경우가 많음.

[연간 예술인 가구 총 수입 및 개인 수입]

(단위: 만원)

구분	가구 총 수입	개인수입 중 예술활동수입	개인수입 중 예술관련 활동 수입(강의 등)	개인수입 중 비예술직업 수입
30대 이하	3,242.2	532.3	333.2	919.5
40대	4,530.4	1,000.0	701.5	1,336.8
50대	5,562.8	1,248.2	807.0	1,619.7
60대 이상	3,436.2	336.3	342.8	1,629.2
전체	3,972.2	694.6	503.8	1,271.0

주) 예술인 실태조사는「예술인복지법」제4조의3에 따라 3년 단위로 실시하는 것으로, '24년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중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출처: '21 예술인 실태조사)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이 예술활동을 직업으로 삼아 꾸준히 수입을 낼 수 있도록 예술활동 지속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신진 예술활동 증명자 중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신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25]의 2024년 신청자 중 20~30대 5,044명의 소득분포 자료를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의 0~30%(월 소득 약 67만원)가 3,133명(65.6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 사업의 지원대상인 청년예술인들이 2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꾸준히 적립하며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24) 2024년 신진·일반 예술활동 증명자 중 청년 수

구분	20대	30대	합계
신진 예술활동증명	9,333명	5,590명	108,118명
일반 예술활동증명	31,489명	61,706명	

주) 2024년 9월 1일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5)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에 신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생애 한번 200만원 지원)은 폐지하고, 신규사업으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적립계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단순 현금성 지원에서 자립형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예술활동의 직업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음.

[2024년 20~30대 신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신청자의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인원]

기준 중위소득	기준 금액(월 소득)	인원(명)	비율(%)
0% ~ 30%	668,534원	3,313	65.68
31% ~ 60%	1,337,067원	518	10.27
61% ~ 90%	2,005,601원	469	9.3
91% ~ 120%	2,674,134원	546	10.82
120%~	2,674,134원 초과	198	3.93
합계		5,044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도 증빙요건·적금방식 등으로 인해 중간 이탈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모집기준·선발방식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는 입장인바, 따라서 매월 일정액을 적립토록 하는 사업방식이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예술인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방식인지 사업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사업추진 지연 사업의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가. 개 요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은 전통종교문화 체험, 종교 유적지의 역사적 보전, 종교 화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종교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4억 2,700만원(16.2%) 증액된 389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26)]

[2025년도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종교문화시설건립	33,487	38,914	5,427	16.2

이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에는 10.27법난기념관 건립 등 총 38개 종교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보조율 30%) 예산 359억 1,400만원 및 민간자본보조(정액) 예산 30억원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지방비 미확보,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으므로, 2024년 8월말 현재 계획과 달리 착공 또는 설계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추후 보다 면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함.

이 사업의 2025년 예산안은 10.27법난기념관 건립 등 계속사업 35개와 의정부 성불사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등 신규사업 3개, 총 38개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그런데 계속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과 달리 2024년 8월말 현재까지 착공 또는 설계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26) 일반회계-종교문화시설건립(1131-302)(종무실)

[2025년도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예산안 내역사업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안	집행부진 사유
	본예산 (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B)	예산 현액 (C=A+B)	8월말 실집행액 (D)	8월말 실집행률 (D/C)		
10.27법난기념관	4,711	3,205	-	4,711	-	-	3,000	기본계획 변경 등 총사업비 조정으로 지연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200	100	600	800	97	12.1	1,600	사업부지 변경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1,440	-	-	1,440	-	-	1,410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지연
용인 전통복합문화 체험관 건립	-	-	1,100	1,100	115	10.5	1,475	실시설계 용역 중
팔공산 동화사 사명대사 체험관	2,950	1,439	-	2,950	850	28.8	1,500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 지급
진관사 전통문화 전승관	1,200	840	429	1,629	428	26.3	600	사업변경 및 사업비 증가 등으로 행정절차 지연
해월 최시형선생 생가 역사문화자원화	451	-	-	451	-	-	499 (공사비)	토지매입 지연
울릉도 회당명상문화체험관	1,200	840	200	1,400	212	15.1	700	건축 인허가 지연으로 설계 완료 및 공사 진행 지연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1,200	800	150	1,350	150	11.1	750	문화재 현상변경에 따른 설계지연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지연
구례 사성암 불교문화체험관	1,000	700	200	1,200	266	22.2	300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심의 결과 반영 및 그에 따른 설계 지연
강화 전등사 삼랑성 전통문화교육관	500	350	909	1,409	909	64.5	450	
제주 법화사 전통문화체험관	300	-	-	300	-	-	1,200 (공사비)	사찰 경내 불법건축물 양성화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
양평 기독교문화 체험관	200	-	-	200	-	-	1,600 (공사비)	지방비(군비) 미확보
포항 보경사 전통문화체험관	108	75	-	108	-	-	1,026	실시설계 용역 중
전남 영광 불갑사 전통문화체험관	80	56	-	80	-	-	1,120	실시설계 발주 지연
청주 능인정사 MZ 복합문화센터	24	16	-	24	16	66.7	213	
군산 은적사 전통문화체험관	75	52	-	75	-	-	1,425	실시설계 준비 중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안	집행부진 사유
	본예산 (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B)	예산 현액 (C=A+B)	8월말 실집행액 (D)	8월말 실집행률 (D/C)		
평창 월정세계청소년 명상센터	240	-	-	240	-	-	2,610 (공사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협의 지연
구미 도리사 시민치유센터	600	420	-	600	-	-	300	실시설계 용역 중
제주 관음사 불교역사문화교육관	650	455	-	650	-	-	2,350	사찰 경내 불법건축물 양성화 등 행정절차 이행
담양 보리암 명상센터	285	199	-	285	228	80.0	1,515	
창원 원흥사 전통문화체험관	255	-	-	255	-	-	2,423 (공사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협의 지연
울산 석남사 명상센터	42	42	-	42	29	69.0	507	
창원 정법사 불교문화체험관	200	-	-	200	-	-	550 (공사비)	사업계획 변경
천도교 문화역사관 건립	165	-	-	165	-	-	713 (공사비)	기본계획 미수립 및 보조사업자 간 협의 지연
청도 용천사 종교문화체험관 건립	20	14	-	20	-	-	463	실시설계 용역 중
평택 수도사 종교문화체험관 건립	60	42	-	60	-	-	420	실시설계 용역 중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건립	810	810	-	810	6	0.7	810	기획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서울 정릉동 봉국사 문화체험관 건립	1,170	-	-	1,170	-	-	29 (공사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
남양주 봉선사 명상체험센터 건립	1,000	-	-	1,000	-	-	2,147 (공사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지방비 확보 지연
거제 총명사 전통문화체험관	36	25	-	36	-	-	714	도 제2회 추경반영 편성(11월)
구미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90	-	-	90	-	-	855 (공사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
원주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	130	-	-	130	-	-	1,230 (공사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지방비 확보 지연
대구 달서구 임휴사 개방형 명상센터 건립	150	-	-	150	-	-	750 (공사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및 지방비 확보 지연
아산 인취사 명상수련체험관 건립	100	70	-	100	-	-	200	실시설계 용역 중
의정부 성불사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	-	-	-	-	-	360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안	집행부진 사유
	본예산 (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B)	예산 현액 (C=A+B)	8월말 실집행액 (D)	8월말 실집행률 (D/C)		
속초 신흥사 설악명상문화센터 건립	-	-	-	-	-	-	500	
예산 여사울성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	-	-	-	-	-	600	

주) 2024년은 8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지방비 미확보,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2020년~2022년 3년간 사업비 상당액을 미교부하였고,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도 실집행률이 2021년 68.9%, 2022년 61.8%, 2023년 52.5%로 최근 3년 연속 저조하였으며,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1~2년 더 연장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음.

[참고] [2020년~2024년 8월말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본예산 (A)	집행액 (B)	집행률 (B/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C)	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2020년	12,440	6,940	55.8	6,940	13,395	20,335	7,797	10,619	1,919	38.3
2021년	12,411	10,967	88.4	10,967	10,619	21,586	14,866	6,667	53	68.9
2022년	9,160	6,968	76.1	6,968	6,667	13,635	8,432	5,041	163	61.8
2023년	26,026	19,440	100.0	19,440	5,040	24,480	12,853	11,389	238	52.5
2024년	33,487	15,286	45.6	15,286	11,389	26,675	6,699	-	-	25.1

주) 2024년은 8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2025년 예산안 편성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7. K-헤리티지 밸리 조성 사업(신규):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K-헤리티지 밸리 조성'** 사업은 K-헤리티지 콘텐츠 활용 충청권 유교문화(기호유교) 중심 지역의 문화자원 원형체험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7)]

[2025년도 K-헤리티지 밸리 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8,936	13,933	4,997	55.9
K-헤리티지 밸리 조성	-	1,000	1,000	순증

이 사업은 유교 선비사상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론적 세계관을 체험하는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자체(충청남도) 자체 추진 기본계획 결과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년이고, 총 사업비는 380억원이며, 충청남도를 보조사업자로 하는 자치단체보조(보조율 50%) 사업임.

[K-헤리티지 밸리 조성 사업 개요]

○ (대상지)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97-14일원(종학당 전면)
○ (사업비) 총 380억원(국비 190억원, 도비 95억원, 시비 95억원)
○ (사업기간) 2025년 ~ 2029년
○ (사업규모) 부지면적 22,019㎡(건축면적 6,009㎡, 생태공원 3,400㎡)

주) 지자체(충청남도) 자체 추진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작성된 사업 개요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7) 일반회계-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1533-306)(문화정책관)

나. 검토의견

K-헤리티지 밸리 조성 사업은 아직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전으로,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사업계획에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계획대로 설계 공모를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2025년도 내에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설계비 및 설계공모비 예산 20억원에 보조율 50%를 적용하여 산출된 것임.

[K-헤리티지 밸리 조성 사업 25년도 예산안(10억원)의 산출내역]

□ K-헤리티지 밸리 조성: **2,000백만원** (**국비1,000백만원** / 도비 500백만원 / 시비 500백만원) ○ 설계비: 총공사비 32,819백만원 × 설계요율(4.62%)= **1,747백만원** ○ 인증비: 추가 설계인증비, 인증수수료 = **153백만원**(적용요율에 따라 변동가능) ○ 설계공모비: **100백만원**(설계비의 10%, 최대 1억원 범위 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11월 건립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2025년 1월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며, 2025년 6월 토지확보를 완료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한 뒤, 2025년 7월 설계 공모 후 8월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K-헤리티지 밸리 조성 사업 추진 계획(안)]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계획	추가 고려사항
○ 건립사업 추진방안 수립('24. 11.)	
○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 추진('25. 1.)	○ 용역 예상 소요기간: 6개월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등록 협의 필요: 소요기간 특정 곤란
○ 토지확보 완료 및 중앙투자심사 의뢰('25. 6.)	○ 토지매입 협상 예정 ○ 중앙투자심사 지연 가능성
○ 설계 공모 추진('25. 7.)	○ 설계 공모 소요기간: 최소 2~3개월 이상
○ 기본・실시설계용역 추진('25. 8. ~ '26. 8.) ○ 착공 및 시공('26. 9. ~ '28. 9.) ○ K-헤리티지 개관 준비('28. 9. ~ '29. 3.) ○ 개관('29년 상반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각 단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타당성 조사와 건축기획 용역을 통합 발주할 계획이나, 건축기획 용역은 타당성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 수행에 각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따라서 이 사업 설계 관련 예산은 타당성 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연내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8.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남부권(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의 관광자원을 관광 명소로 만드는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10억 4,600만원(183.8%) 증액된 788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28)]

[2025년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27,778	78,824	51,046	183.8

이 사업은 2022년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2023년 예산에 ‘땅끝수상복합공연장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이 최초 반영되면서 시작되었고, 2023년 7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음.

이 계획에 따르면, 부산·광주·울산·전남 및 경남(5개 시도 40개 시군)을 대상으로 2033년까지 총 3조 64억원(국비 1조 3,265억원, 지방비 1조 4,023억원, 민자 2,776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임.

2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남부권 광역관광개발(4153-315)(관광산업정책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남부권(전남・광주・부울경)의 관광자원 및 K-컬처를 활용하여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 및 지역관광 활성화
○ (사업기간) '24년~'33년
○ (총사업비) 3조 64억원(국비 1조 3,265억원, 지방비 1조 4,023억원, 민자 2,776억원)
○ (사업규모) 142개(개발 109개, 진흥 33개)
○ (지원조건/수행) 지자체보조(국비 50%) / 전남, 광주, 부산, 울산, 경남(40개 시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검토의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이 계속 저조한 가운데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사전행정절차가 지연되어 2024년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향후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관광인프라 및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수반되는 각종 행정절차(인・허가, 건축심의, 지방투・융자심사 등)의 사전 이행이 필요함.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자치단체보조(보조율 50%)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지방비 매칭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임.

그런데 2023년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예산 55억원이 전액 교부되지 않고 불용된 것에 이어, 2024년에도 9월말 기준 본예산 277억 7,800만원 중 118억 6,500만원(42.7%)만 지자체에 교부되고, 그 중 실집행액은 5억 5,100만원(4.6%)에 불과하여 집행이 매우 부진한 상황임.

[연도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예산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지자체)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실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3년	5,500	5,500	-	-	-	-	-	-	-	-
2024년	27,778	27,778	11,865	11,865	-	11,865	551	-	-	4.6

주) 2024년은 9월말 기준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는 다음과 같이 2024년 대다수 지자체의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 검토 및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을 510억 4,600만원(183.8%) 증액 편성하였음.

[2024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지역	사업명(지역)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예산안	집행부진 사유
		본예산 (A)	교부액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부산	기장드라이브관광경관명소화 ('24~'27, 14,020)	320	-	-	-	-	사업계획 변경 (부지변경) 검토중
부산	아미산낙조관광경관명소화 ('24~'27, 19,580)	2,145	220	-	-	810	사전행정절차 지연 (부지확보, 지방비 확보)
광주	예술접목야행관광공간조성 ('24~'27, 27,236)	2,507	1,353	-	-	2,726	사전행정절차 지연 (지방비 확보)
울산	장생포고래마을관광경관명소화 ('24~'27, 45,300)	1,260	-	-	-	6,417	사전행정절차 지연 (부지확보, 지방비 확보, 투자심사 이행)
울산	울주산악관광베이스캠프조성 ('24~'27, 35,860)	810	-	-	-	-	사업계획 변경 검토중
울산	울주해안도로관광경관명소화 ('24~'27, 13,360)	300	-	-	-	1,276	사전행정절차 지연 (부지확보, 지방비 확보, 투자심사 이행)
울산	강동해변도심문화놀이터명소화 ('24~'27, 20,310)	300	200	-	-	1,899	사전행정절차 지연 (부지확보, 지방비 확보, 투자심사 이행)
울산	일산해변풍류놀이터명소화 ('24~'27, 14,240)	315	215	-	-	2,042	사전행정절차 지연 (부지확보, 지방비 확보, 투자심사 이행)
전남 (해남)	땅끝수상복합공연장조성 ('24~'27, 45,606)	1,091	-	-	-	-	사업계획 변경 (사업내용) 검토중
전남 (신안)	추포도음식관광테마명소화 ('24~'27, 46,046)	1,036	-	-	-	-	사전행정절차 지연 (부지확보)

(단위: 백만원, %)

지역	사업명(지역)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예산안	집행부진 사유
		본예산 (A)	교부액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전남 (광양)	아트케이션관광스테이확충 ('24~'27, 14,410)	291	-	-	-	-	사전행정절차 지연 (부지확보)
전남 (곡성)	레저케이션관광스테이확충 ('24~'27, 10,784)	220	220	-	-	1,254	기성금 집행시기 미도래
전남 (구례)	그린케이션관광스테이확충 ('24~'27, 21,868)	486	-	-	-	-	사전행정절차 지연 (부지확보, 지방비 확보, 투자심사 이행)
전남 (구례)	섬진강레인보우워크 관광경관명소화 ('24~'27, 10,646)	240	240	11	4.6	1,000	기성금 집행시기 미도래
전남 (곡성)	인공생태형산림관광정원조성 ('24~'27, 33,362)	766	-	-	-	-	사전행정절차 지연 (부지확보, 지방비 확보, 투자심사 이행)
전남 (여수)	뷰티스파웰니스관광거점화 ('24~'27, 21,312)	491	-	-	-	1,000	사전행정절차 지연 (부지확보, 지방비 확보, 투자심사 이행)
전남 (순천)	갯벌치유관광플랫폼조성 ('24~'27, 31,960)	735	535	-	-	-	사업계획 변경 (부지변경) 검토중
전남 (무안)	도리포관광경관명소화 ('24~'27, 84,498)	345	245	-	-	2,000	사전행정절차 지연 (부지확보, 지방비 확보, 투자심사 이행)
전남 (완도)	해안도로관광경관명소화 ('24~'27, 15,038)	342	342	-	-	2,153	기성금 집행시기 미도래
전남 (강진)	달(月)관광스테이확충 ('24~'27, 5,988)	120	120	-	-	556	기성금 집행시기 미도래
전남 (강진)	가우도빛의숲관광갤러리조성 ('24~'27, 17,442)	337	-	-	-	2,000	사전행정절차 지연 (부지확보, 지방비 확보, 투자심사 이행)
전남 (나주)	빛가람호수공연장조성 ('24~'27, 12,086)	234	234	-	-	1,743	기성금 집행시기 미도래
전남 (나주)	영산강파노라마관광명소조성 ('24~'27, 17,602)	372	-	-	-	-	사전행정절차 지연 (부지확보, 지방비 확보, 투자심사 이행)
전남 (장성)	K-사찰음식관광명소화 ('24~'27, 21,360)	429	-	-	-	-	사업계획 변경 (부지변경) 검토중
전남 (진도)	인문치유관광루트명소화 ('24~'27, 15,794)	379	179	-	-	-	사전행정절차 지연 (부지확보, 지방비 확보, 투자심사 이행)
전남 (진도)	세방낙조아트문화관광명소조성 ('24~'27, 14,256)	325	325	225	69.3	1,686	기성금 집행시기 미도래

(단위: 백만원, %)

지역	사업명(지역)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예산안	집행부진 사유
		본예산 (A)	교부액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전남 (목포)	문학치유관광루트명소화 ('24~'27, 14,460)	340	-	-	-	1,400	사전행정절차 지연 (부지확보, 지방비 확보, 투자심사 이행)
전남 (담양)	문화접목야행관광공간조성 ('24~'27, 11,120)	242	242	76	31.4	1,205	기성금 집행시기 미도래
전남 (함평)	공연접목야행관광공간조성 ('24~'27, 12,528)	623	623	-	-	1,128	기성금 집행시기 미도래
전남 (화순)	화순적벽실감형관광명소조성 ('24~'27, 14,274)	289	289	-	-	1,659	기성금 집행시기 미도래
전남 (장흥)	정남진은하수로드관광명소조성 ('24~'27, 17,128)	416	-	-	-	2,444	사업계획변경 (부지변경 등) 검토중
전남 (고흥)	선셋가든관광경관명소화 ('24~'27, 10,600)	235	-	-	-	1,248	사업계획변경 (부지변경 등) 검토중
전남 (광양)	광양읍미디어아트관광명소화 ('24~'27, 5,900)	125	-	-	-	565	사전행정절차 지연 (부지확보, 지방비 확보, 투자심사 이행)
경남 (하동)	북케이션관광스테이확충 ('24~'27, 23,704)	542	-	-	-	2,262	사업계획 변경 (부지변경 등) 검토중
경남 (산청)	밤머리재전망대관광경관명소화 ('24~'27, 12,484)	280	180	-	-	280	사전행정절차 지연(지방비 확보, 투자심사 이행)
경남 (진주)	원도심관광골목명소화 ('24~'27, 21,304)	482	282	-	-	4,502	사업계획 변경 (부지변경 등) 검토중
경남 (고성)	자란관광만구축(T-UAM) ('24~'27, 42,622)	966	466	-	-	6,104	사전행정절차 지연 (부지확보)
경남 (고성)	상족암디지털놀이터명소화 ('24~'27, 14,648)	319	319	239	74.9	2,102	기성금 집행시기 미도래
경남 (통영)	통영관광만구축(T-UAM) ('24~'27, 202,650)	1,805	1,805	-	-	6,015	기성금 집행시기 미도래
경남 (통영)	사량도관광기반구축 ('24~'27, 13,528)	222	-	-	-	-	사업계획 변경 (부지변경) 검토중
경남 (창원)	진해벚꽃로드관광경관명소화 ('24~'27, 14,880)	340	-	-	-	340	사업계획 변경 (사업내용) 검토중
경남 (창원)	근대박물관마을관광경관명소화 ('24~'27, 8,320)	185	-	-	-	-	사업계획 변경 (사업부지 등) 검토중
경남 (창원)	K-예술마실섬네트워크구축 ('24~'27, 11,720)	240	-	-	-	1,000	사업계획 변경 (부지변경 등) 검토중
경남 (김해)	진영봉하마을관광명소화 ('24~'27, 13,020)	290	190	-	-	1,224	사업계획 변경 (내용변경) 검토중
경남 (밀양)	낙동선셋디지털파크조성 ('24~'27, 23,220)	510	310	-	-	3,330	사업계획 변경 (내용변경) 검토중

(단위: 백만원, %)

지역	사업명(지역)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예산안	집행부진 사유
		본예산 (A)	교부액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경남 (함양)	한방웰니스관광거점화 ('24~'27, 18,156)	413	413	-	-	2,146	기성금 집행시기 미도래
경남 (남해)	해양스포치유여행플랫폼조성 ('24~'27, 10,850)	245	245	-	-	1,554	사업계획 변경 (내용변경 등) 검토중
경남 (사천)	선상지테마관광명소조성 ('24~'27, 18,736)	423	223	-	-	2,212	사전행정절차 지연 (부지확보)
부산	K-관광콘텐츠기반 관광생태계고도화지원 ('24~'30, 11,400)	100	100	-	-	100	추진계획 검토 지연
광주	무등산권역지오달밤스테이상품화 ('24~'27, 3,300)	100	-	-	-	100	추진계획 검토 지연
광주	남도미식프리미엄투어상품화 ('24~'30, 5,600)	100	-	-	-	100	추진계획 검토 지연
울산	고부가K-관광상품및이벤트육성 ('24~'30, 4,200)	150	150	-	-	150	추진계획 검토 지연
전남	남도고택달밤스테이상품화 ('24~'33, 8,700)	100	100	-	-	100	추진계획 검토 지연
전남	명가명인연계'남도한상'상품화 ('24~'30, 8,600)	100	100	-	-	100	추진계획 검토 지연
전남/ 경남	섬진강스테이특화상품육성 ('24~'33, 8,600)	100	100	-	-	100	추진계획 검토 지연
전남/ 경남	지리산권웰니스및워케이션 상품고도화지원 ('24~'30, 7,000)	200	200	-	-	200	추진계획 검토 지연
전남/ 경남	지리산권ESG가치여행특화상품육성 ('24~'30, 4,900)	100	100	-	-	100	추진계획 검토 지연
경남	K-관광명소상품화 ('24~'30, 10,500)	150	150	-	-	150	추진계획 검토 지연
경남	K-거상관광루트상품화 ('24~'30, 6,200)	250	250	-	-	250	추진계획 검토 지연
5개 시도	광역관광루트상품화기반구축 ('24~'30, 4,000)	200	200	-	-	200	추진계획 검토 지연
5개 시도	남부권통합협의체 및 통합관리체계구축 ('24~'33, 9,000)	200	200	-	-	200	추진계획 검토 지연
5개 시도	남부권로컬투어랩운영 ('24~'33, 9,000)	200	200	-	-	200	추진계획 검토 지연
합계		27,778	11,865	551	4.6	73,332	

주) 2024년 9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사전행정절차 등이 지연되어 2024년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등 향후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9. 섬 관광 활성화 사업: 사업추진현황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반영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편의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1,500만원(△10.0%) 감액된 46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29)]

[2025년도 섬 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5,150	4,635	△515	△10.0
섬 관광 활성화	5,150	4,635	△515	△10.0

이 사업은 각 섬의 고유자원(인문, 자연, 생태)을 활용하여 섬별로 특화된 관광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지자체에 4년간 자치단체 경상보조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보조율 50%)로 수행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

[섬 관광 활성화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3년~2026년(4개년)
○ 사업방식: 지자체 보조(보조율 50%, 섬 여건 고려 차등 지원), 직접 수행
○ 사업내용: 관광자원・콘텐츠 개발(유휴시설 재생, 축제 등), 관광편의・서비스 기반 강화(숙박시설 개선 등), 정체성 구축 및 이미지 제고(브랜드 가치 구축, 홍보 등)
○ 총사업비: 506억원(국비 256억원, 지방비 250억원)
- 거문도(여수, 110억원), 말도·명도·방축도(군산, 100억원), 울릉도(울릉, 100억원), 흑산도(신안, 100억원), 백령도(옹진, 90억원) 등 5개섬(국비 50%, 지방비 50%)
- 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진행(1.5억원, 문체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관광 다양성 사업(4153-316)(관광산업정책관)

[섬 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섬 관광 활성화 지원: 44억 8,500만원(8억 9,700만원×5개소, 지자체보조 50%) ○ 섬별 맞춤형 컨설팅: 1억 5,000만원(직접수행)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검토의견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은 2023년 예산 대부분이 이월되어 2024년 9월말 기준 실집행률이 34.1%에 불과하고, 2024년 예산도 아직 교부 전이므로, 추진경과를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예산 5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대상지 선정, 섬별 관광종합계획 수립 등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2023년 연내 실집행이 불가능한 금액을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에 교부한 결과, 보조사업자 단계에서 47억 5,000만원이 2024년으로 이월되었음.

[2023년 섬 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실집행저조 사유
	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이월액	
거문도 (전남 여수)	1,000	1,000	50	5.0	950	K-관광섬 공모 선정('23.4월), 섬별 관광종합계획 수립('23.11월) 등 행정소요기간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
말도·명도·방축도 (전북 군산)	1,000	1,000	50	5.0	950	
울릉도 (경북 울릉)	1,000	1,000	50	5.0	950	
흑산도 (전남 신안)	1,000	1,000	50	5.0	950	
백령도 (인천 옹진)	1,000	1,000	50	5.0	950	
계	5,000	5,000	250	5.0	4,750	

주) 집행액: 섬별 관광종합계획수립 용역비('23년 하반기 ~ '24년 4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에도 각 지자체별로 실시설계 또는 용역 중이거나 사전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9월말 기준 2024년 예산이 아직 교부되지 않았고, 전년도 이월액 47억 5,000만원 중 실집행액이 16억 1,900만원(34.1%)에 그치고 있음.

[2024년 섬 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안	실집행저조 사유
	예산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 현액 (C=A+B)	실 집행액 (D)	실 집행률 (E=D/C)		
거문도 (전남 여수)	1,000	-	950	950	97	10.2	897	사업초기 단계로 실시설계 또는 용역 중
말도·명도·방축도 (전북 군산)	1,000	-	950	950	50	5.3	897	사업초기 단계로 실시설계 또는 용역 중
울릉도 (경북 울릉)	1,000	-	950	950	604	63.6	897	일부 사업 공고 유찰 등 지연
흑산도 (전남 신안)	1,000	-	950	950	280	29.5	897	사업초기 단계로 실시설계 또는 용역 중
백령도 (인천 옹진)	1,000	-	950	950	588	61.9	897	사업초기 단계로 사전절차 진행 또는 용역 중
계	5,000	-	4,750	4,750	1,619	34.1	4,485	

주) 2024년 9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예산을 섬별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교부할 계획인바, 따라서 이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지자체별 사업추진현황 및 2024년 예산 이월액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총 괄>

10. 전년도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전년도세계잉여금 적정 수준 반영 및 이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규모 조정 필요

가. 개 요

‘전년도세계잉여금’ 은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법에 따라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는 비목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30]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함. 2025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78억 3,600만원(△51.9%) 감소한 72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31]

‘일반회계전입금’ 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6억 4,100만원(8.6%) 증가한 1,092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32]

[2025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전년도세계잉여금	15,102	7,266	△7,836	△51.9
일반회계전입금	100,601	109,242	8,641	8.6

3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전년도세계잉여금(89-893)(문화예술정책실)

3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일반회계전입금(91-911)(문화예술정책실)

나. 검토의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전년도세계잉여금 세입예산액이 연례적으로 과소계상되어 예산 대비 초과수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년도세계잉여금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하고 이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전년도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는 과목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33]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함.

그런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서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연례적으로 편성 예산 대비 초과수납이 발생하고 있음.

[2021년~2023년 전년도세계잉여금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A)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20	5,499	5,499	-	-	-	-	-
2021	5,153	5,153	17,726	17,726	343.9	-	-
2022	10,845	10,845	31,327	31,327	288.9	-	-
2023	21,070	21,070	39,735	39,735	188.6	-	-

주) 2021년부터 전년도세계잉여금 비목으로 수입 징수함(2020년까지는 전년도이월금으로 수입 징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당해연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다음연도 예산안이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안 편성 시점에 전년도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현재와 같이 전년도세계잉여금이 과소하게 계상될 경우 상당 규모의 자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회계 내 여유자금으로 남게 되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실제 세계잉여금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전년도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3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영화발전기금】

<총 괄>

11. 영화발전기금: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원구조 마련 필요

가. 개 요

영화발전기금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함.[3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기금운용 규모는 2024년도 계획액 대비 441억 300만원(△32.0%) 감액된 936억 9,200만원임.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액(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수입	자체수입	29,716	38,449	2,607	△35,842	△93.2
	정부내부수입	80,000	35,400	64,497	29,097	82.2
	여유자금회수	57,342	63,946	26,588	△37,358	△58.4
합계		**167,057**	**137,795**	**93,692**	**△44,103**	**△32.0**
지출	사업비	69,572	46,677	56,163	9,486	20.3
	기금운영비	12,006	12,289	12,592	303	2.5
	정부내부지출	80,977	-	10	10	순증
	여유자금운용	4,502	78,829	24,927	△53,902	△68.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 · 비디오물산업의 진흥 · 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 · 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수입 감소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던 상황에서, 2025년 동 부과금 폐지 계획에 따라 기금의 주요 재원이 사라지면서 향후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조성 및 운용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의 독립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중장기적 자체 수입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영화발전기금[35]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음.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하 '영화부과금'이라 함)은 국내 영화산업 지원이라는 공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부담금[36]으로, 현재는 영화상영관 입장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고 있음.[37]

영화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함에 있어 필수적인 재원으로 기능해왔으나, 코로나19로 영화관 입장객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2019년까지 500억원 내외 규모로 유지되었던 영화부과금의 수입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

---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3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 금액은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5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019년~2024년 영화관 입장권 연간 매출액 및 부과금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말
매출액	1,913,989	510,375	584,539	1,160,213	1,261,410	842,279
부과금 수입	54,582	10,522	17,086	17,948	26,255	20,691

주)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상영관 부과금 납부연장 실시를 통해 2020년 2월~10월 발생한 부과금을 2021년 6월까지 납부유예 조치한 바 있음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2023년부터 영화관 입장권 매출과 부과금 수입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으나, 정부가 2024년 3월 27일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2025년부터 영화부과금은 폐지될 계획임.

이에 연도별 영화발전기금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자체수입 급감에 따라 여유자금 및 예탁원금 회수로 대응하다가, 2022년에는 공자기금 예수금, 2023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2024년에는 복권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정부내부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

[연도별 영화발전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 자체수입 소계	**62,982**	**14,934**	**20,724**	**22,434**	**29,716**	**38,449**	**2,607**
○정부출자수입	-	-	-	168	-	-	-
○기타재산이자수입	4,483	2,718	1,754	825	2,259	3,737	401
○가산금	16	7	2	6	12	14	9
○법정부담금	**54,582**	**10,522**	**17,086**	**17,948**	**26,255**	**29,442**	**-**
○기타경상이전수입	575	1,466	1,414	3,201	722	2,027	1,789
○기타잡수입	3,326	220	468	286	468	3,229	408
2. 정부내부수입 소계	**22,056**	**96,985**	**76,178**	**80,000**	**80,000**	**35,400**	**64,497**
○일반회계 전입금	-	-	-	-	80,000	-	-
○기금전입금	-	-	-	-	-	35,400	64,497
- 복권기금	-	-	-	-	-	5,400	4,497
- 국민체육진흥기금	-	-	-	-	-	30,000	60,000
○기금예수금	-	-	-	80,000	-	-	-
○예탁원금 회수	20,000	94,000	75,000	-	-	-	-
○예탁이자 수입	2,056	2,985	1,178	-	-	-	-
3. 여유자금회수	**178,633**	**115,309**	**105,181**	**60,533**	**57,342**	**63,946**	**26,588**
합계	**263,672**	**227,228**	**202,083**	**162,967**	**167,057**	**137,795**	**93,69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에는 영화부과금 폐지에 따라 기금 자체 수입은 26억 700만원(총 수입 936억 9,200만원의 2.8%)에 불과하고, 국민체육기금으로부터 600억원 및 복권기금으로부터 44억 9,700만원 등 총 644억 9,700만원의 기금 전입금이 편성되어, 기금사업 추진 재원의 68.8%를 정부내부수입에 의존하게 됨.

[연도별 영화발전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입	자체수입	62,982	14,934	20,724	22,434	29,716	38,449	2,607
	여유자금회수	178,633	115,309	105,181	60,533	57,342	63,946	26,588
	정부내부수입	22,056	96,985	76,178	80,000	80,000	35,400	64,497
합계		**263,672**	**227,228**	**202,083**	**162,967**	**167,057**	**137,795**	**93,692**
지출	**사업비**	62,978	110,615	129,695	91,611	69,572	46,677	56,163
	기금운영비	10,432	11,235	11,715	11,973	12,006	12,289	12,592
	정부내부지출	75,000	-	-	1,022	80,977	-	10
	여유자금운용	115,261	105,378	60,673	58,360	4,502	78,829	24,92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영화발전기금 지출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영화인, 영화관 및 배급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2022년의 기금사업비 규모는 예년에 비해 급증하였으나, 기금 재원 확보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2023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로,

2025년 계획안의 기금사업비 561억 6,300만원은 전년 대비 94억 8,600만원(20.3%) 확대된 것이나, 2019년의 기금사업비 629억 7,800만원와 비교할 때는 68억 1,500만원(10.8%) 축소된 규모임.

한편, 2024년 기금 여유자금(평잔)은 약 269억원으로, 5년 전인 2019년의 여유자금 1,658억 4,900만원의 16.2%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여유자금 183억 5,800만원은 2025년 사업비 규모(561억 6,300만원)의 32.7%에 불과하여 여유자금 측면에서도 기금 재원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연도별 영화발전기금 여유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계획안
						계획액	집행액	
여유자금운용 (평잔)	165,849	89,792	62,285	60,093	55,247	21,882	26,937	18,35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법률로서 별도 설치하는 것으로, 독립적인 수입구조가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조건임.[38]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부과금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영화산업 진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나,[39] 영화부과금 폐지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 사라지면서 향후 영화발전기금의 조성 및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40]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중장기적 자체수입 재원 확보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38)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39) 2024년 4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설명자료(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 사업은 차질없이 지원합니다)

40) 기금의 수입을 일반회계에 의존할 경우 기금운용의 독립성에 제약이 발생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한 취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안 편성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전출금 확보가 어렵게 될 수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

<지 출>

12.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 현장 수요와 정책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계획 규모 감액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시설의 확충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으로 관광사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억 3,300만원(△2.6%)이 감액된 50억원이 편성되었음.[41]

[2025년도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541,733	541,733	591,863	50,130	9.3
이차보전 운영지원	5,133	5,133	5,000	△133	△2.6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 국민은행 등 시중 12개 은행을 통해 시중 대출금리 중 일부(중소기업 3%, 중견·대기업 2.5%)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23년~'24년 선정업체 지원: 1,000억원×이차보전율 2.5% = 25억원
○ '25년 선정업체 지원: 1,000억원×이차보전율 2.5% = 25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41)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4267-300)(관광정책국)

나. 검토의견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은 현장의 대출 수요와 정책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5년 계획안을 적정 규모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융자·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세 가지 방식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융자지원은 1973년부터, 신용보증기관 출연은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재정지출 규모는 절감하되 수혜 규모를 유지·확대하려는 목적으로[42] 융자지원의 예산 일부를 이차보전 운영지원으로 전환하여 신규 추진하였음.

그런데 이차보전 운영지원은 사업준비기간 소요,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23년 집행률이 1.5%에 그쳤고, 2024년에도 9월말 기준 집행액이 9억 1,000만원(집행률 18.2%)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함.

[2023년~2024년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 예산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3	2,500	-	-	2,500	37	-	2,463	1.5
2024	5,000	-	-	5,000	910	-	-	18.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9월말 기준 이차보전 방식의 신규 대출 건수가 36건, 대출실행액은 619억 6,500만원으로, 연말까지 신규 지원 목표인 1,000억원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2024년 예산도 상당액이 불용될 것으로 보임.

[2023년~2024년 월별 이차보전 실적 및 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신규 대출실행액		연간 누적 대출실행액		전체 누적 대출실행액		이차보전 지원소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년	10월	3	3,715	3	3,715	3	3,715	37
	11월	20	11,996	23	15,711	23	15,711	
	12월	-	-	23	15,711	23	15,711	

4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에서는 4대 재정혁신(전략적 지출조정 등을 통한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 방안 중 하나로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출규모는 절감하되 수혜규모는 확대할 것을 들고 있음.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신규 대출실행액		연간 누적 대출실행액		전체 누적 대출실행액		이차보전 지원소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4년	1월	-	-	-	-	23	15,711	194
	2월	2	16,900	2	16,900	25	32,611	
	3월	4	10,600	6	27,500	29	43,211	
	4월	2	3,200	8	30,700	31	46,411	321
	5월	-	-	8	30,700	31	46,411	
	6월	2	3,930	10	34,630	33	50,341	
	7월	-	-	10	34,630	33	50,341	395
	8월	7	5,940	17	40,570	40	56,281	
	9월	19	21,395	36	61,965	59	77,67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이 사업의 예산안을 50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3년~2024년의 대출실행액 1,000억원과 2025년의 신규 대출실행액 1,000억원에 대해 이차보전율 2.5%를 적용하여 산출된 것임.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23년~'24년 선정업체 지원: 1,000억원×이차보전율 2.5% = 25억원
○ '25년 선정업체 지원: 1,000억원×이차보전율 2.5% = 25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2023년~2024년의 대출실행액의 경우, 2024년 9월 신규 대출실행액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그동안의 부진한 대출실적을 고려하면 1,000억원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4분기 대출실행액 추이를 보아 이에 대한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대출실행액에 이차보전율 2.5%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3년~2024년 실제 평균이차보전율이 2.96%로 나타나고 있는 점과, 2025년의 신규 대출실행액에 대한 이차보전금 예산 25억원은 연중 대출이 분산되어 실행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 사업의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43)]

한편, 이차보전 운영지원은 시중은행의 대출심사를 이미 거친 융자에 대해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지원대상의 신용부실로 인한 결손 위험이 적고, 재정규

43) 문화체육관광부는 누적된 데이터를 기초로 평균이차보전율(2.96%)과 평균잔액률(55%)을 반영할 경우, 이 사업의 2025년 적정 예산안은 46억 7,000만원으로 재산출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차보전 평균율 및 월잔액을 반영한 세부내역]

모 대비 수혜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음.

그러나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발생 이자가 수입으로 편입되어 기금 사업에 다시 쓰일 수 있는 직접융자와 달리, 융자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금 원금이 소진되어 중장기적으로는 기금 재원 확보에 불리하고,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소규모·초기 단계 기업이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간과할 수 없음.

대출수요 측면에서도 이차보전 사업의 대출실적은 저조한 반면 융자지원 예산은 조기 소진되고 있으므로,[44] 단순히 재정절감 규모만을 고려하기보다 정책지원의 필요성과 현장의 대출수요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지원방식별 적정 규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3년~'24년 선정업체 지원: 1,027억원×이차보전율 2.96%* = 30.4억원

○ '25년 선정업체 지원: 1,000억원×이차보전율 2.96%×'24년 연말 예측 평잔율 55%** = 16.3억원

주1) '23년~'24.9월 대출액에 대한 평균 이차보전율: 2.96%
2) '24년 9월까지의 평균잔액률 60%를 감안하여 연말치를 55%로 예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44) 2023년~2024년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 예산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3	446,500	-	-	446,500	446,336	-	164	99.9
2024	536,500	-	-	536,500	453,858	-	-	84.6

주1) 2024년은 8월말 기준
2) 2023년 상반기 융자 집행률 66.4%, 신규 신청접수 및 시설자금 집행은 10월부터 중단
3) 2024년 상반기 융자 집행률 70.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지 출>

13.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이용현황 및 예산 실집행현황을 고려하여 예산 감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와 건강증진을 위해 월 10만원 범위 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50억 4,100만원(5.0%) 증액된 1,058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45)]

[202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20,344	120,344	131,282	10,938	9.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00,799	100,799	105,840	5,041	5.0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문화체육관광부는 17개 시·도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보조율 70%)를 통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비): (’24년) 100,799백만원 → (’25년) 105,840백만원

- (’24년) 120,000명×100천원×12개월×70% → (’25년) 120,000명×105천원×12개월×7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45) 국민체육진흥기금-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5161-300)(체육국)

나. 검토의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현재 신청 인원의 99%에 달하는 인원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 있고, 이용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7% 내외의 높은 수준임에도 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2025년 계획안 규모를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률(신청인원 대비 선정인원 비율)은 2022년 96.17%, 2023년 98.25%, 2024년 8월말 기준 98.96%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원 대부분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용률(선정인원 대비 이용인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7% 내외에 달하고 있으며, 미사용하는 경우는 일부 학업 등 시간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었음.[46)]

[연도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이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신청인원(A)	선정인원(B)	선정률(B/A)	이용인원(C)	이용률(C/B)
2019년	64,529	56,291	87.23	48,562	86.27
2020년	66,404	62,647	94.34	50,675	80.89
2021년	75,135	70,384	93.68	60,099	85.39
2022년	85,713	82,432	96.17	71,897	87.22
2023년	106,968	105,101	98.25	92,028	87.56
2024년 8월말	123,210	121,925	98.96	105,989	86.9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연도별 지자체 단계에서의 예산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94.7%, 2022년 85.2%, 2023년 80.8%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4년 8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45.1%에 불과하여 현 추세라면 연도말 실집행률이 70% 내외에 불과할 것으로 보임.

46) '24년 8월 미이용 사유 조사 결과, 이용자 본인이 응답한 미이용 사유 1순위: 학업 등 시간 부족(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예산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시행주체(17개 시·도)				계획액 대비 실집행률 (C/A)
	계획액		집행액 (B)	교부현액 (B)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B)	불용액 (B-C)	
	당초	수정(A)						
2019년	21,504	21,504	21,504	21,504	21,442	99.7	62	99.7
2020년	24,395	24,395	24,395	24,395	22,534	92.4	1,861	92.4
2021년	29,120	29,120	29,120	29,120	27,589	94.7	1,531	94.7
2022년	44,983	46,051	46,051	46,051	39,218	85.2	6,832	85.2
2023년	73,096	73,096	73,096	73,096	59,089	80.8	14,007	80.8
2024년 8월말	100,799	100,799	70,559	70,559	45,480	64.5	-	45.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는 최근 예산이 급격히 증액되는 과정에서[47] 실제 집행가능한 금액 대비 다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현황 및 예산 실집행현황을 고려하여 2025년 계획안은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48]

47) ('21년) 291억 2,000만원 → ('22년) 449억 8,300만원, 전년 대비 158억 6,300만원(54.5%) 증액,
('22년) 449억 8,300만원 → ('23년) 730억 9,600만원, 전년 대비 281억 1,300만원(62.5%) 증액,
('23년) 730억 9,600만원 → ('24년) 1007억 9,900만원, 전년 대비 277억 300만원(37.9%) 증액

48) 다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자 편의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으로, 월 강좌 지원금 이월 및 결제수단 다양화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2024년 11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2025년 연구용역('25.1~5월)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 파생효과 및 예상 문제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임. 또한, 이용자 대상 원활한 민원상담을 위해 상담센터 연결 어려움, 동시신청 기간 민원 폭주 등에 대비하여 2025년 전문 상담센터 운영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14. 스포츠클럽디비전 사업: 신규 종목 승강제 리그 도입 관련 리그운영 여건 점검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스포츠클럽디비전’** 사업은 스포츠클럽 리그 형성을 통해 프로와 아마추어의 균형발전 및 우수선수 발굴의 선순환 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3억 8,100만원(6.0%) 증액된 245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49)]

[2025년도 스포츠클럽디비전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145,754	145,754	145,629	△125	△0.1
스포츠클럽디비전	23,172	23,172	24,553	1,381	6.0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클럽디비전(division) 시스템은 상위 팀은 상부 리그로 승격하고, 하위 팀은 하부 리그로 강등되는 승강제 리그 운영 방식임. 2017년 축구 종목에 처음 도입되고 2020년에 당구・야구・탁구가, 2022년에는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가 신규 종목으로 추가되었음.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추진되며,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체육회 → 축구 등 회원종목단체 → 시・도종목협회 → 시・군・구종목협회 순으로 보조금이 교부되는 구조임.

2025년 계획안에는 농구, 배구, 하키, 핸드볼 4개 신규 종목의 승강제 리그 운영을 위한 5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49) 국민체육진흥기금-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5161-301)(체육국)

[스포츠클럽디비전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축구 승강제 리그('17년~): 35억원 - 시군구리그(4부) 지원: 16억 4,000만원, 시도리그(3부) 지원: 9억원, 전국리그(2부) 지원 5억 5,000만원, 챔피언십 등 방송중계: 4억 1,000만원 ○ 당구・야구・탁구 승강제 리그('20년~): 81억 300만원 - 시군구리그(4부) 지원: 57억 6,000만원, 시도리그(3부) 지원: 14억 400만원, 전국리그(2부) 지원 9억 3,900만원 ○ 배드민턴・테니스・족구 승강제 리그('22년~): 70억원 - 시군구리그(4부) 지원: 48억 6,000만원, 시도리그(3부) 지원: 12억 4,800만원, 전국리그(2부) 지원 8억 9,200만원 ○ **신규 종목 승강제 리그: 59억 5,000만원** - 농구, 배구: 2.5백만원×120개 리그×7개월×2종목 - 하키, 핸드볼: 2.5백만원×50개 리그×7개월×2종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검토의견

신규 종목(농구, 배구, 하키, 핸드볼)에 대한 승강제 리그 도입을 위해 2025년 계획안에 5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종목별 리그운영 여건을 점검하여 승강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규 종목에 승강제 리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실행주체인 종목단체의 참여의지가 있어야 하고, 시군구 조직・시설 및 심판 확보 등 리그 운영 제반여건이 갖추어져야 함.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신규 종목 추가 도입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승강제 리그 도입을 희망한 종목은 11개(궁도, 농구, 바둑, 배드민턴, 산악, 수영, 조정, 족구, 태권도, 테니스, 힙합)였고, 당시 배드민턴, 족구, 테니스 3개 종목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승강제 리그를 도입하려는 4개 신규 종목 중 2022년 승강제 리그 도입을 희망하였던 것은 농구뿐으로, 나머지 3개 종목의 경우 시군구 조직(팀), 심판 및 시설 등 리그운영 여건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제반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종목별 시군구 조직(팀), 시설, 심판 등 현황]

종목	팀수	시설	심판수	선수수
농구	415팀	74개 시설(다목적체육관)	251명	7,024명
배구	**88개팀**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 개최지별 6개 체육관 운영 중, 스포츠클럽의 학교체육관 등을 협의를 통해 활용 가능**	**287명**	**6,078명**
핸드볼	**41개팀**	**11개 시설**	**18명**	**1,123명**
하키	**79개팀**	**인조잔디구장 15개(11인제), 실내체육관 7개(6인제)**	**30명**	**1,100명**
축구	1,440팀	328개 시설(지자체 시설 활용)	1,506명	46,160명
야구	759팀	81개 시설(17개 시도 지자체 시설 및 학교운동장)	244명	18,975명
당구	836팀	200개 시설(사설시설 이용_개인사업자 당구장)	233명	6,342명
탁구	3,237팀	281개 시설(사설시설 이용_개인사업자 탁구장)	450여명	10,005명
배드민턴	760팀	94개 시설(지자체 시설 활용)	1,935명	13,614명
테니스	754팀	94개 시설(지자체 시설 및 공공시설 활용)	154명	5,689명
족구	1,163팀	약 350개(지자체 시설)	3,720명	10,777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파리올림픽에 한국선수단이 여자 핸드볼팀 외에는 구기종목에 출전하지 못해, 올림픽 등 국제대회 참가가 가능한 단체 구기종목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신규 종목의 승강제리그는 20세 이하 중심으로 개편하여 장기적으로 올림픽 출전이 가능한 선수 발굴을 통해 종목 저변을 넓히고 전문체육의 경기력을 강화하고자 신규종목을 선정했다는 입장임.

그러나 시군구 조직(팀)·시군구 리그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심판 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리그 운영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종목별 리그운영 여건을 재점검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50]

50)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구기종목 중 승강제리그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한 후 2024년 7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존 승강제리그를 운영 중인 종목을 사전 조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2025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간담회 결과보고를 살펴보면, 종목별 경기가 가능한 시설 부족을 토로하거나, 현행 사업 지침상의 장벽 및 학생선수 훈련과 출전을 위한 교육계 협조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므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다 실효적인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도입 타당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실제 사업추진현황을 고려한 사업추진방식 개선 및 그에 따른 예산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은 전천후 훈련이 가능한 에어돔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0억원(49.5%) 증액된 60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51)]

[2025년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59,971	59,971	59,587	△384	△0.6
지역스포츠산업 지원	9,055	9,055	7,975	△1,080	△11.9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 지원	4,040	4,040	6,040	2,000	49.5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의 2025년 계획안 60억 4,000만원 중 60억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보조율 50%)로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역에 전지훈련과 생활체육, 문화활동 등이 가능한 지역 스포츠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나머지 4,000만원은 현장평가비 등 사업운영비임.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에어돔 지원(2년차): 60억원 = 30억원×2개소

○ 현장평가비 등 사업 운영비: 4,000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51) 국민체육진흥기금-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5365-302)(체육국)

나. 검토의견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실제 수요에 맞게 현재 2년인 사업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2025년 계획안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각 해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2020년 2개, 2021~2023년 1개, 2024년 2개 지방자치단체)에 에어돔 설치비 5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3년까지는 선정 당해년도에 50억씩을 전액 교부해왔음.

그러나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계속 부진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부터 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총 지원액은 50억원으로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되, 1차년도 20억원, 2차년도 30억원으로 2년간 연부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였음.

그런데 2020년~2021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3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사업기간을 살펴보면, 경주시와 춘천시는 완공까지 3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창원시는 2025년 6월 종료 계획으로 완공까지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52)]

[2020년~2021년 선정된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지자체	지원예산	선정연도	실제 사업기간	추진경과 (2024.9월말 기준)	사업추진 지연 사유
경주시	50억원	2020	2020.3.~ 2022.12.	완공(운영 중)	· 설계용역 중 추가부지 확보 사항 발생 · 설치 장비 사양 기간 설정 시간 소요
창원시	50억원	2020	2020.4.~ 2025.6.	에어돔 기반 공사 중	· 민원으로 인한 사업 위치 변경 · 설계 결과에 따른 추가 공사비 확보 ·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수급 지연
춘천시	50억원	2021	2021.4.~ 2024.6.	완공(운영 중)	·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등 기간 소요 · 내막재 부양 중 접합부 파열로 재제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2023년~2024년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2024년 8월말 기준 실집행률도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구미시와 양양군의 사업기간을 2026년 3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음.

52) 2022년 선정된 고성군은 고성군의회의 반대로 지방비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였음.

[2023년~2024년 선정된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

선정 연도	지자체	계획액	교부액 (A)	교부일	1차 연도		2차 연도		사업추진 경과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실집행액 (C)	누적 실집행률 ((B+C)/A)	
2023	보령시	5,000	5,000	'23.8.9., '23.11.15.	20	0.4	249	5.0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4	구미시	2,000	2,000	'24.4.12., '24.10.8.	-	-			공유재산관리계획 완료
2024	양양군	2,000	2,000		-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주) 2024년 10월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이 사업은 2년간 50억원을 지원하기보다 실제 수요에 맞추어 3년간 연부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재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2025년 계획안에 따른 2개 지방자치단체의 2차년도 지원액은 일정 수준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53]

53) 이미 2024년 예산으로 구미시와 양양군에 각각 1차년도 지원액 20억원이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추진 방식을 1차년도 5억원, 2차년도 20억원, 3차년도 25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재설계할 경우, 2025년도 계획안은 2개 지방자치단체에 각 5억원씩 총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국가유산청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수입은 6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억원(3.1%) 증가함. 예산은 554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억원(3.8%) 증가하고, 기금은 109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함.[1)]

[2025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534	554	20	3.8
기 금	109	109	-	-
총수입	643	663	20	3.1

문의 : 김혜진 예산결산조사관 khj3685@assembly.go.kr (02-6788-569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지출은 1조 3,8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9억원(1.6%) 증가함. 예산은 1조 2,442억원으로 전년 대비 375억원(3.1%) 증가한 반면, 기금은 1,4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억원(△9.8%) 감소함.

[2025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2,067	12,442	375	3.1
기 금	1,592	1,436	△156	△9.8
총지출	13,659	13,878	219	1.6

나. 예산안

2025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54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억원(3.8%) 증가함.

[2025년도 국가유산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525	545	20	3.8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9	9	-	-
합 계	534	554	20	3.8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조 2,442억원으로 전년 대비 375억원(3.1%) 증가함.

[2025년도 국가유산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2,067	12,146	79	0.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296	296	순증
합 계	12,067	12,442	375	3.1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1개 기금(국가유산보호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691억원으로 전년 대비 9억원(△0.5%) 감소함.

[2025년도 국가유산청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국가유산 보호기금	1,700	1,700	1,691	△9	△0.5
합 계	1,700	1,700	1,691	△9	△0.5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국가유산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3개(54억 6,600만원)의 신규 사업이 편성됨.[2)]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 사업은 천연기념물 동·식물유산의 체계적·상시적 보존 관리 강화 및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9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질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은 지질유산 맞춤형 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 및 지질유산 표본 확보 등을 통해 지정·비지정 지질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3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명승·전통조경 보존관리’ 사업은 전통조경 정책 마련, 법제화 정비 등 전통조경 진흥 체계구축 및 자원조사 등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2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가유산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	1,927
2	지질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2,339
3	명승·전통조경 보존관리	1,200
총지출		5,466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국가유산청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사업, ‘동산문화유산보존관리’ 사업, ‘매장유산보호 및관리지원’ 사업 등 총 11개임.[3)]

[2025년도 국가유산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기후변화대응국가유산보존관리 기술개발(R&D)	1,514	4,328	2,814	185.9
2	국가유산진흥원지원	13,656	20,330	6,674	48.9
3	사적관리	2,412	3,417	1,005	41.7
4	매장유산보호및관리지원	5,524	11,484	5,960	107.9
5	동산문화유산보존관리	4,564	16,341	11,777	258.0
6	근현대및국가민속문화유산관리	3,864	5,290	1,426	36.9
7	국가유산보수정비 (총액사업, 보조)	517,341	529,948	12,607	2.4
8	역사문화센터건립운영	1,685	3,346	1,661	98.6
9	경복궁종합정비	4,178	6,905	2,727	65.3
10	국가유산 정책대변	1,478	2,484	1,006	68.1
[국가유산보호기금]					
11	자연유산 보존관리 지원	1,013	3,153	2,140	211.3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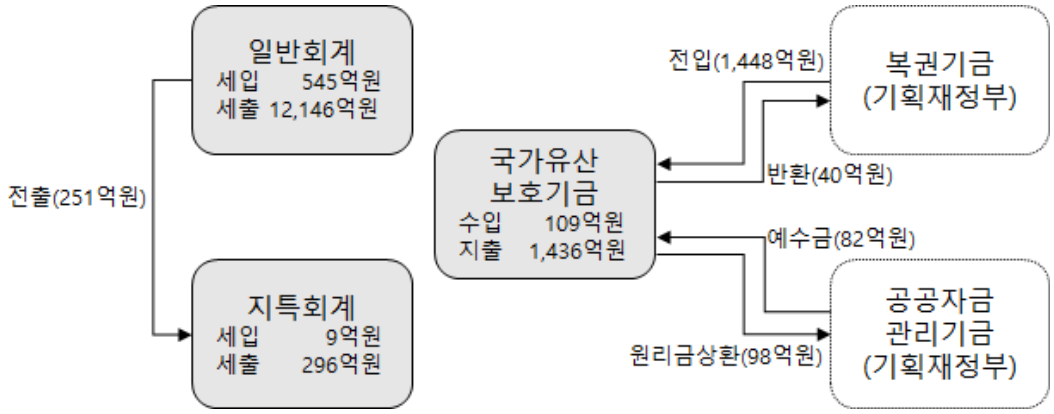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251억 800만원이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국가유산보호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1,448억원을 전입받고 40억원을 전출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는 82억원을 예수받고 98억원을 원리금상환함.

[국가유산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유산청 출범('24.5.17.)에 따른 국가유산체계 전환으로 국가유산의 글로벌 가치증진 및 문화복지 실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유산정책 수립·조정에 2,772억원을, 국가유산 유형별 가치 확대 및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 분야에 6,335억원을, 맞춤형 과학보존을 통한 미래 중요자원 육성을 위하여 자연유산 분야에 126억원을, 온전한 전승과 창의적 계승을 통한 전승기반 확충을 위하여 무형유산 분야에 543억원을, 고품격 궁능원 활용 및 관리 분야에 1,431억원을, 문화유산 보존·활용 정책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연구·전시 분야에 1,149억원을 각각 편성한 점을 들 수 있음.

2025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은 2027년까지 사업을 신속히 완료하기 위해 2025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천연기념물 동물 질병관리, 먹이주기 지원' 사업에 편성된 '구조활동, 먹이주기 등 보호활동 지원' 사업 예산은 지원대상·내용 및 사업추진방식 등이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셋째,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사업'은 당초 2024년 추진할 계획이던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4년 9월까지 발주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2025년 예산을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은 팔만대장경에 대한 디지털 기록화 및 통합 DB 구축을 통해 유사시 보수·복원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학술적·문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7억 3,000만원(687.4%) 증액된 100억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동산문화유산보존관리	4,564	16,341	11,777	258.0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1,270	10,000	8,730	687.4

이 사업은 경판 소장 사찰인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를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사업임.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24) 1,270백만원 → (’25) 10,000백만원
- (경판 기초조사) 20,000판×15만원 = 30억원
- (인경 및 인경본 디지털화) 20,000판×35만원 = 70억원

자료: 국가유산청

4) 일반회계-동산문화유산보존관리(1232-301)(문화유산국)

나. 검토의견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은 2027년까지 사업을 신속히 완료하기 위해 2025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 당시 ① 팔만대장경 81,258판에 대한 3D 스캔 등 디지털화('23~'30)[5], ② 경판 인경 누락분 약 7,000여매에 대한 인경('23~'24)[6], 경판 인경본(기존 인경본 포함) 디지털 이미지 생산 및 메타데이터 작성('25~'27), ③ 종합적 DB구축('23~'24) 및 운영('25~)[7]의 세 가지를 주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위해 최소 8개년 이상의 사업기간[8]을 예상하였음.

그러나 원본데이터 유출 및 복제 가능성, 원본의 가치 훼손 등을 우려한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23.8월)[9]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이 사업의 주요내용과 대상・기간 등을 변경하기로 결정('23.11월)하였음.

주된 변경내용은 대장경판 3D스캔 대신 경판 기초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고, 경판 인경 대상을 누락본에서 재인경 필요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인경 및 DB화 사업기간 또한 기초조사 등과 함께 2030년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연장하였음.

---

5) 경판 기록화 순서: 경판 출고 → 육안 조사 → 건식 세척 → 인문학적 조사 및 디지털 기록화 → 경판 입고

6) 인경이란 목판을 인쇄하여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의미함.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 다수 인경되었으며, 국내에 현존하는 인경본은 해인사, 통도사, 서울대 규장각 등에서 소장하고 있으나 이 중 완질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동 사업의 2023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대장경판 중 인경본이 없는 부분(약 7,000여매)에 대해서만 인경을 진행(2개년)하고, 이후 기존 인경본(약 160,000매)과 함께 DB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함.

7) 1차년도 설계('23), 2차년도 구축('24), 이후 디지털화된 부분부터 서비스 제공('25~)

8) 시범사업을 2개년으로 실시(1년차 1,000판 → 2년차 5,000판)하고, 3년차부터 연간 10,000여판 내외로 추진하여 최소 8개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9) 해인사와의 세부 협의 과정에서, 대장경판 3D스캔 시 원본데이터 유출 및 복제 가능성, 디지털화에 따른 원본의 가치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해인사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었음.

[2023년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 계획변경 전·후 비교]

사업계획(당초)	사업계획(변경)	비교
팔만대장경판 3D 스캔화 ('23~'30)	팔만대장경판 기초조사 및 안전검사, 인경 전 세척('23~'30)	사업내용 변경
경판 인경 누락본 인경 및 ('23~'24, 약 7,000매) 기존 인경본(약 160,000매)과 함께 DB화 ('25~'27)	경판 인경 누락본 및 재인경 필요본에 대해서도 인경 및 DB화 ('23~'30)	사업대상 및 사업기간 확대
종합적 DB 설계('23)/구축('24)/운영('25~)	종합적 DB 설계('25)/구축('26)/운영('27~)	사업기간 변경

자료: 국가유산청

이후 국가유산청은 변경된 계획에 따라 2023년 예산 10억 5,000만원으로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1,500판에 대한 경판 기초조사, 인경 및 DB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2024년 예산 12억 7,000만원으로는 2024년 6월부터 연말까지 2,000판[10]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2024년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 추진 현황]

편성연도	예산액	작업기간	사업 내용
2023년	10억 5,000만원	'24.1.~'24.5.	- 대장경판 기초조사, 인경 및 인경본 스캔 1,500판 - 인경과정 기록화
2024년	12억 7,000만원	'24.6.~(진행중)	- 대장경판 기초조사, 인경 및 인경본 스캔 2,000판

주) 2023년 사업 시작일은 11월 1일이나, 조사동 건축 지연 등에 따라 작업이 불가능하여 2024년 1월부터 경판 기초조사 등 사업이 시작되었음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국가유산청은 2025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 사업을 2027년까지 신속히 완료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다시 변경하고,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 대장경판 20,000판에 대한 기초조사, 인경 및 DB화 예산 100억원을 편성하였음.

10) 당초 2024년 예산은 경판 기초조사 1,500판, 인경 및 DB화 2,000판을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각각 2,000판씩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음(작업 순서 상, 인경 작업 전에 경판에 대한 건식 세척 작업이 필요하고, 세척 전·후로 경판 촬영 및 현황기록 등 기초조사가 실시되어야 함).

[2025년 이후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사업 작업계획(2024년 계획변경)]

(단위: 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안)	2026년(안)	2027년(안)	계
사업 물량	기초조사	1,500	1,500	20,000	30,000	28,258	81,258
	인경 및 DB화	1,500	2,000	20,000	30,000	27,758	81,258
인경 기록화		기록화					
DB 구축					DB구축 1차	DB구축 2차	

주) 2024년 계획은 기초조사 1,500판, 인경 및 DB화 2,000판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기초조사 또한 인경 및 DB화와 동일하게 2,000판을 작업할 계획임

자료: 국가유산청

그런데 이 사업은 대장경판 1판을 작업하는 데 약 1시간 25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11] 외부로 다량의 경판 반출 불가, 장마기·혹한기 취약한 작업환경, 사찰일정 등에 따른 공간적·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연간 작업할 수 있는 시간과 물량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실제로 그 동안의 사업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주별 작업량 판수가 2023년 사업물량의 경우 139판, 2024년 사업물량의 경우 161판에 불과하므로,[12] 2025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작업공간, 인력, 전통재료 확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업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11)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대장경판 1판당 공정별 소요시간

기초조사		인경 및 인경본 디지털화		합계
조사 및 기록화	분석조사	인경	인경본 스캔	
40분	20분	20분	5분	85분

자료: 국가유산청

12) 2023년~2024년 주별 작업량 판수

구 분	세부공정	1주별 작업량 및 인원				비고
		2023년/ 1,500판		2024년/ 2,000판		
		작업량(판)	인원(명)	작업량(판)	인원(명)	
기초조사	조사 및 기록화	43	9	50	7	
	분석조사*	64	10	60	10	p-xrf, X-ray, CT 등
인경 및 인경본 디지털화	인 경	32	1	51	5	
	인경본 스캔*	60	1	45	1	
합계		139	21	161	23	

주) 분석조사 및 인경본 스캔은 분석조사 세부항목에 따라 작업량 및 인원이 유동적임

자료: 국가유산청

2. 천연기념물 동물 질병관리, 먹이주기 지원 사업(신규): 기존 사업과의 중복 소지에 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천연기념물 동물 질병관리, 먹이주기 지원’** 사업은 천연기념물 동물 구조활동 및 먹이주기 등 보호활동과 축양동물 질병관리 및 분산 사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3)]

[2025년도 천연기념물 동물 질병관리, 먹이주기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	-	1,927	1,927	순증
천연기념물 동식물 지정 확대 및 상시관리 강화	-	1,077	1,077	순증
천연기념물 동물 질병관리, 먹이주기 지원	-	420	420	순증

이 사업은 최근 이상기후, 환경오염 등으로 천연기념물 동물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구조·치료·보호활동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천연기념물 관리단체 및 축양동물 관리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사업임.

[천연기념물 동물 질병관리, 먹이주기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5년 ~ 계속
○ 사업수행주체/방식: 천연기념물 관리단체, 축양동물 관리단체 /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 2025년 예산: 4억 2,000만원
- **구조활동, 먹이주기 등 보호활동 지원: 3억 5,000만원(70개소×500만원)**
* 조수류 47개소, 수달 14개소, 산양 6개소, 남생이 2개소
-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질병관리 및 분산사육: 7,000만원(7개소×1,000만원)
* 축양동물 관리단체 7개소

자료: 국가유산청

13) 일반회계-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1331-303)(자연유산국)

나. 검토의견

‘천연기념물 동물 질병관리, 먹이주기 지원’ 사업에 편성된 ‘구조활동, 먹이주기 등 보호활동 지원’ 사업 예산은 지원대상·내용 및 사업추진방식 등이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국가유산청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23. 3. 21., 시행 ’24. 5. 17.)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5년 신규 세부사업으로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 사업을 편성하면서, 동 사업에 천연기념물 동물 질병관리, 먹이주기 지원 사업 예산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 중 ‘구조활동, 먹이주기 등 보호활동 지원’ 사업 예산 3억 5,000만원은 조수류, 수달, 산양, 남생이 등 4개 천연기념물 관리단체의 구조활동, 먹이주기 등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집행할 계획임.

[2025년 구조활동, 먹이주기 등 보호활동 지원 사업 예산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관리단체명	전국 지회수	’25년 예산안	산출내역
한국조류보호협회	47개	170	- 45개소×2백만원 - 2개소×40백만원(경남 고성지회, 파주지회) * 독수리 대량 월동지 내 먹이공급지역
한국수달보호협회	14개	28	- 14개소×2백만원
한국산양보호협회	6개	135	- 3개소×5백만원 - 3개소×40백만원(양구, 화천, 인제, 고성, 울진지회) * ’24년 산양 대량 폐사 지역 및 산양 주요 서식지
한국남생이보호협회	2개	17	- 2개소×8.5백만원
합계		350	

자료: 국가유산청

그런데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보호기금 내 ‘자연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1332-303)에서도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사업을 199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음.

이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6억 9,800만원으로, 조수류, 수달, 산양, 남생이 등 4개 천연기념물 관리단체의 보호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사업인 바,[14] ‘구조활동, 먹이주기 등 보호활동 지원’ 사업과 지원대상·내용 및 사업추진방식 등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14) 2025년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구조활동, 먹이주기 등 보호활동 지원' 및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사업 비교]

구분	구조활동, 먹이주기 등 보호활동 지원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회계/기금	일반회계	국가유산보호기금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 (1331-303)	자연유산 보존관리 지원 (1332-303)
사업기간	2025년 ~ 계속	1998년 ~ 계속 (조수류: 1998년 ~ 계속, 수달: 2005년 ~ 계속, 산양: 2009년 ~ 계속, 남생이: 2023년 ~ 계속)
지원대상	4개 천연기념물 관리단체 (조수류, 수달, 산양, 남생이)	4개 천연기념물 관리단체 (조수류, 수달, 산양, 남생이)
지원내용	보호활동 지원 (구조활동, 먹이주기 등)	보호활동 지원 (구조 및 치료 재활 활동, 먹이주기 행사 등 보호활동,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추진방식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25 예산안	3억 5,000만원	6억 9,800만원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동일한 단체를 대상으로 중복되는 사업내용에 대한 보조금이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서 지원될 경우, 사업 간 집행용도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움에 따라 예산이 혼용되거나 중복 집행되는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각 사업별 성과를 점검하여 환류하기에도 곤란한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동물 구조활동, 먹이주기 등 보호활동 지원' 사업은 야생에 서식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먹이주기를 정기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고,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사업은 관리단체가 구조 또는 치료·재활시 발생하는 사육중인 동물에 대한 먹이공급과 홍보 및 방사행사 시 소요되는 먹이공급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중복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사업수행과정에서 이를 엄밀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지침」에서도 민

(단위: 백만원)

관리단체명	법인설립일	전국 지회수	비고 (회원수)	사업 내용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한국조류보호협회	1998. 3. 4	47개	2,000여명	- 구조 및 치료 재활 활동 - 먹이주기 행사 등 보호 활동 - 교육 및 홍보 활동 - 전국지회 활동 지원 등	334	334
한국수달보호협회	2005. 4. 8	14개	600여명		169	169
한국산양보호협회	2009.12.17	6개	100여명		125	125
한국남생이보호협회	2020.11. 9	2개	70여명		70	70

자료: 국가유산청

간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원칙적으로 보조대상 기관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하고, 신규사업은 기존의 보조사업을 대체·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보조대상 기관별로 세부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중요기록유산 국역 사업: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감액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중요기록유산 국역’** 사업은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중요기록유산을 국역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6억원이 편성되었음.[15)]

[2025년도 중요기록유산 국역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동산문화유산보존관리	4,564	16,341	11,777	258.0
동산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 사업	2,006	1,972	△34	△1.7
중요기록유산 국역	600	600	-	-

[중요기록유산 국역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중요기록유산 국역: (’24) 6억원 → (’25) 6억원, 전년동
- 300,000자×2,000원 = 6억원

자료: 국가유산청

나. 검토의견

중요기록유산 국역 사업은 2024년 장기계속계약 체결에 따라 2025년 예산안에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07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고전, 서적, 고문서 등 중요기록유산을 국역하여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통문화 기반의 콘텐츠 개발 및 학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 사업 예산은 전액 일반연구비로 편성되어 경쟁입찰을 통해 장기계속계약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2024년 계약을 체결(2024년~2026년)함에 따라 2025년 예산안에 낙찰차액

15) 일반회계-동산문화유산보존관리(1232-301)(문화유산국)

5,000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중요기록유산 국역 계약 체결 내역]

(단위: 백만원)

계약일자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부액				
			구분	'24년	'25년	'26년	계
'24. 5. 8.	'24년 ~ '26년	1,650	예산	600	600	600	1,800
			계약	550	550	550	1,650

자료: 국가유산청

4.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구축 사업: 자연유산보존관리 사업과 중복성 해소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구축’** 사업은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복원을 위해 3차원 정밀원형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34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16)]

[2025년도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국가유산디지털대전환(정보화)	14,255	13,467	△788	△5.5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구축	13,467	13,467	-	-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36년까지 총 16년이고, 총사업비는 2,253억 7,000만원으로 국가유산청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임.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구축: (’24) 13,467백만원 → (’25) 13,467백만원, 전년동
- 3D 레이저 스캐닝 DB 구축: 12,597백만원(549건)
  * 국가지정 대형(명승, 민속마을, 동굴, 천연보호구역 등) 58건×81백만원=4,698백만원
  * 국가지정 중형(사적지, 천연기념물 지형·지질 등) 142건×32백만원=4,544백만원
  * 국가지정 소형(소규모 건조물, 식물, 광물, 동물 등) 37건×15백만원=555백만원
  * 국가지정 동산(조각, 공예, 과학기기, 회화 등) 312건×9백만원=2,800백만원
- 3D 데이터 모델링 SW 등 장비도입: 30백만원(5식×6백만원)
- 디지털 아카이빙 저장매체 도입: 30백만원(3식×10백만원)
- 국가유산 원형기록 통합DB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 810백만원(27식×250만원×12개월)

자료: 국가유산청

16) 일반회계-국가유산디지털대전환(정보화)(7134-508)(국가유산산업육성팀)

나. 검토의견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구축 사업 중 자연유산에 대한 예산은 다른 세부사업인 자연유산보존관리 사업(1331-301)의 내내역사업인 디지털 데이터 및 시스템 구축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유산청이 이 사업을 통해 추진한 2021년~2024년 국가유산 3차원 정밀기록 DB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730건, 2022년 730건, 2023년 730건, 2024년 617건으로 연도별 국가유산 종목별 DB 구축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1년~2024년 국가유산 3차원 정밀기록 DB(국가유산 종목별 DB) 구축 내역]

(단위: 건)

연도	국가지정유산						국가등록 문화유산	합계
	문화유산				자연유산			
	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	명승	천연기념물		
2021	40	337	83	88	5	5	172	730
2022	40	354	70	39	12	91	124	730
2023	19	235	97	23	18	107	231	730
2024	15	231	124	65	5	36	141	617

자료: 국가유산청

한편, 다른 세부사업 ‘자연유산보존관리’(1331-301)의 내내역사업인 ‘디지털 데이터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은 자연유산의 원형데이터 확보 및 국민 향유 증대를 목적으로 DB를 구축하고 이를 보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5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17)18)]

동 사업은 ① 천연기념물(동물·식물) 및 명승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구축하는 ‘자연유산 디지털 데이터 구축’ 사업, ② 미귀속 지질유산(화석·암석 표본)의 전국

17) 일반회계-자연유산보존관리(1331-301)(자연유산국)

18) 2025년도 디지털 데이터 및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자연유산보존관리	3,961	3,976	15	0.4
천연기념물·명승 활용	1,810	1,810	-	-
디지털 데이터 및 시스템 구축	1,515	1,515	-	-
자연유산 디지털 데이터 구축	765	765	-	-
지질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500	500	-	-
천연기념물(지질) 파노라마 뷰 시스템 구축	250	250	-	-

현황조사 및 통합 DB를 구축하는 ‘지질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및 ③ 천연기념물(지질유산)에 대한 원형데이터 및 파노라마뷰를 구축하는 ‘천연기념물(지질) 파노라마 뷰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① 자연유산 디지털 데이터 구축 및 ③ 천연기념물(지질) 파노라마 뷰 시스템 구축 2개 사업은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구축’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2021년~2024년 '자연유산 디지털 데이터' 및 '천연기념물(지질) 파노라마 뷰 시스템' 구축 내역]

(단위: 건)

연도	자연유산 디지털 데이터 구축			천연기념물(지질) 파노라마 뷰 시스템 구축	계
	명승	동물	식물	지질유산	
2021	8	8	-	-	16
2022	8	4	4	-	16
2023	2	3	5	6	16
2024	3	3	4	6	16

주) 천연기념물(지질) 파노라마 뷰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됨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를 들어, 담양 소쇄원에 대한 데이터가 2021년 자연유산 디지털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수집된 데 이어, 2024년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구축 사업에서 다시 수집되었으며, 태안 난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및 광주 충효동 왕버들군 등의 경우에도 2023년에 두 사업에서 동시에 DB가 구축되었음.

['자연유산 디지털 데이터 구축' 및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구축' 사업 중복 사례]

유산 종류	유산명	사업수행 연도(DB구축 연도)	
		자연유산 디지털 데이터 구축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구축
명승	담양 소쇄원	2021년	2024년
	담양 명옥헌 원림	2021년	2023년
	화순 임대정 원림	2022년	2023년
동물	태안 난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2023년	2023년
식물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2022년	2023년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2023년	2021년
	창원 북부리 팽나무	2023년	2022년
	광주 충효동 왕버들군	2023년	2023년
	담양 대치리 느티나무	2023년	2023년
	강릉 방동리 무궁화	2024년	2024년
	순천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	2024년	2023년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진주 충무공동 익룡·새·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등 2023년~2024년 천연기념물(지질) 파노라마 뷰 시스템 구축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질유산 중 상당수가 2022년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구축 사업대상이었는데, 천연기념물(지질) 파노라마 뷰 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질유산에 대한 파노라마 뷰 구축뿐만 아니라 원형데이터(3D스캔, 3D모델링 등)를 확보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는 불과 1~2년 만에 동일한 대상에 대한 DB구축 사업이 다시 수행된 것으로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천연기념물(지질) 파노라마 뷰 시스템 구축' 및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구축' 사업 중복 사례]

유산명	사업수행 연도(DB구축 연도)	
	천연기념물(지질) 파노라마 뷰 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구축
진주 충무공동 익룡·새·공룡발자국 화석산지	2023년	2022년
남해 가인리 화석산지	2024년	
함안 용산리 백악기 새발자국 화석산지		
진주 가진리 새발자국과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사천 선전리 백악기 나뭇가지 피복체 산지		
진주 정촌면 백악기 익룡·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DB구축 사업과 자연유산보존관리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19]

19)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중복 사례로 제시된 자연유산의 사업대상 중 일부 구축 데이터 유형은 유사성이 있으나, 사업 목적과 활용 측면에서 데이터의 세부 유형과 내용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중복성 제거를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에 철저한 중복 검토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국가유산디지털데이터 구축과 서비스를 위해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5.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단년도 지원사업에서 2년간 지원사업으로 사업방식 변경 및 예산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전 국토에 매장유산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억원(100.0%) 증액된 60억원이 편성되었음.[20]

[2025년도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매장유산보호 및 관리지원	5,524	11,484	5,960	107.9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3,000	6,000	3,000	100.0

이 사업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의2[21] 등에 따라 국가 주도로 매장유산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함으로써 문화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국비 70%)임.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개요]

○ 사업내용: 국가의 선제적 정밀지표조사 수행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재
○ 사업기간 5년(2021년~2026년), 총사업비 490억원(20,617㎢*×240만원)
* 전 국토 100,364㎢ 중 기조사 지역, 산악, 하천 등을 제외한 20,617㎢ 대상, 단위면적 당 조사비용(240만원/1㎢)은 지표조사 표준품셈으로 산출
○ 추진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70%)

자료: 국가유산청

20) 일반회계-매장유산보호및관리지원(1231-303)(문화유산국)

21)「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단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2년에 걸쳐 실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추진방식을 단년도에서 2년으로 분할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2025년 예산안은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사전조사 및 준비(고문헌·고지도 조사, 기구축 매장유산 유존지역 연구내역 및 현황자료 분석) → 정밀지표조사(문화유적 현장조사, 지하층 개발 및 지형변화 분석) → 매장유산 유존지역도 제작 → 전문가 검토의 단계로 진행됨.

그런데 2024년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지 선정, 조사방법 결정, 조사기관 선정 계약절차 등 정밀지표조사 전 사전준비 과정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총 12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의 사업만 상반기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기간도 대부분 2년에 걸쳐 있어 연내 종료되는 사업이 없음.

[2024년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지자체		예산액	계약액	실집행액		계약일	종료일
				국비	지방비		
강원	강릉시	400,000	369,000	180,810	77,490	'24.08.20.	'25.08.14.
	태백시	260,000	208,000	-	-	사전조사중	
경기	광명시	220,000	198,000	97,020	41,580	'24.04.23.	'25.04.22.
경남	거제시	270,000	256,500	179,550	-	'24.07.19.	'25.07.18.
	밀양시	280,000	280,000	196,000	84,000	'24.08.28.	'25.08.27.
대구	서구	130,714	130,714	65,357	-	'24.04.12.	'25.04.14.
	달서구	170,000	168,300	88,379	37,876	'24.03.29.	'25.04.01.
전북	김제시	315,000	251,960	105,823	45,352	'24.06.26.	'25.06.26.
충남	부여군	300,000	300,000	210,000	90,000	'24.05.21.	'25.02.26.
세종시		340,000	272,000	133,280	57,120	'24.07.31.	'25.07.30.
인천광역시		900,000	774,000	270,900	161,100	'24.07.19.	'25.06.13.
대전광역시		700,000	560,000	-	-	'24.09.23.	'25.09.22.
계		4,285,714	3,768,474	1,527,119	594,519		

주) 2024년은 8월말 기준임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 또한 25개 지자체 중 2개 지자체의 사업만 당해연도 12월에 종료되는 계약이었고, 그 중에서 1건은 2024년 8월말에도 매장유산 유존지역도를 작성 중인 상황으로, 지표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보고서 정리 등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사업 완료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음.

[2023년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지자체		예산액	계약액	실집행액		계약일	종료일	'24년 8월말 진행상황
				국비	지방비			
강원	춘천시	141,429	140,000	28,812	12,348	'23.08.08.	'24.11.29.	조사중
	삼척시	250,000	203,280	101,070	43,316	'23.08.09.	'24.10.31.	조사중
	홍천군	450,000	410,000	287,000	-	'23.11.20.	'24.11.18.	조사중
	영월군	160,000	160,000	64,000	64,000	'23.06.28.	'24.12.13.	조사중
경기	수원시	330,000	321,000	157,290	67,410	'23.05.17.	**'23.12.12.**	조사완료 (보고서 정리중)
	안성시	450,000	450,000	239,624	102,696	'23.05.30.	'24.08.12.	**조사완료**
	여주시	330,000	280,500	117,810	50,490	'23.06.14.	'24.06.19.	**조사완료**
	의정부시	160,000	157,490	66,145	28,348	'23.08.30.	'24.10.12.	**조사완료**
충북	증평군	230,000	184,000	90,160	38,640	'23.10.31.	'24.10.27.	조사중
충남	공주시	410,000	410,000	287,000	123,000	'23.05.24.	'24.03.24.	조사완료 (보고서 정리중)
	보령시	300,000	297,900	99,750	42,750	'23.05.16.	'24.07.09.	**조사완료**
	천안시	260,000	254,800	89,180	38,220	'23.03.24.	'24.03.06.	조사완료 (보고서 정리중)
	태안군	150,000	150,000	105,000	45,000	'23.07.19.	'24.05.23.	조사완료 (보고서 정리중)
	홍성군	330,000	290,000	207,620	88,980	'23.07.24.	'24.07.17.	**조사완료**
전남	순천시	450,000	427,500	238,000	102,000	'23.03.28.	'24.12.27.	조사중
	해남군	170,000	161,500	99,484	42,636	'23.10.16.	'24.12.16.	조사중
	화순군	380,000	380,000	110,390	47,310	'23.10.31.	'24.12.26.	조사중
전북	전주시	200,000	183,000	64,050	27,450	'23.08.11.	'25.04.08.	조사중
경남	창원시	700,000	595,000	416,500	-	'23.08.10.	'24.12.14.	조사중
	양산시	450,000	436,500	213,850	91,650	'23.05.11.	'24.11.02.	조사중
	남해군	140,000	140,000	98,000	42,000	'23.06.01.	'24.12.31.	조사중
경북	포항시	600,000	597,089	297,550	127,521	'23.07.05.	'24.12.10.	조사중
	상주시	380,000	380,000	266,000	114,000	'23.03.22	'24.12.30.	조사중
	예천군	300,000	300,000	51,000	76,500	'23.03.06.	**'23.12.30.**	**조사완료**
부산시		850,000	850,000	595,000	255,000	'23.05.02.	'24.08.30.	**조사완료**
계		8,571,429	8,159,559	4,390,285	1,671,265			

주) 2024년은 8월말 기준임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2023년 사업이 추진된 25개 지자체 중 2024년 8월말 기준 정밀지표조사가 완료되고 보고서 정리까지 마무리된 곳은 7개 지자체에 불과하며, 매년 보조사업자 단계에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예산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가유산청			보조사업자(지자체)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실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년	3,500	3,493	3,493	3,493	-	3,493	1,577	1,916	7	45.1
2022년	7,000	7,000	7,000	7,000	1,916	8,916	5,820	3,096	-	65.3
2023년	6,000	6,000	6,000	6,000	3,096	9,096	6,943	1,988	165	76.3
2024년	3,000	3,000	3,000	3,000	1,988	4,988	1,816	-	-	36.4

주) 2024년은 8월말 기준임

자료: 국가유산청

따라서 이 사업 예산을 단년도에 모두 편성하기보다, 실제 수요에 맞추어 2년에 걸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고, 2025년 예산안은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22)]

22) 다만,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지자체의 일상감사 및 공고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당해연도 상반기에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 절차 및 방식을 개선하여 사업기간(12개월)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연도에 따른 사업 내역을 구분하거나 대가 기준을 산정하기 어렵고, 2차례에 걸친 정산, 중간보고서 작성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이를 검토할 시간 및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6.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이 간직한 고유 특성을 유적 정비 및 유적간 연계, 향유공간 조성 등을 통해 역사문화경관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1억 8,300만원(454.6%) 증액된 99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23)]

[2025년도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고도 보존 및 육성	20,161	25,108	4,947	24.5
역사문화권 정비	6,650	13,033	6,383	95.9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1,800	9,983	8,183	454.6

이 사업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20. 6. 9., 시행 ’21. 6. 10.) 제24조[24)]에 따라 역사문화권[25)]을 종합적으로 정비·육성하려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정비사업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 사업임.

이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2023년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선

2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고도 보존 및 육성(3237-309)(문화유산국)

2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사업 비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5) 역사문화권 현황(총 9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정된 4개소(나주・해남・강릉・함안)에 3년간('24~'27) 국비 총 242억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이를 위해 2024년 예산에 18억원이 편성되었고, 2025년 예산안에는 2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99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26)]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예산액	1,800	9,983
편성내역	○ (나주) 9억원×국비 50% = 4.45억원 ○ (해남) 9억원×국비 50% = 4.45억원 ○ (강릉) 9억원×국비 50% = 4.45억원 ○ (함안) 9억원×국비 50% = 4.45억원	○ (나주) 52억원×국비 50% = 26억원 ○ (해남) 51.34억원×국비 50% = 25.67억원 ○ (강릉) 52억원×국비 50% = 26억원 ○ (함안) 44.32억원×국비 50% = 22.16억원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사업은 당초 2024년 추진할 계획이던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4년 9월까지 발주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2025년도 예산을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예산 18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기획재정부는「역사문화권정비법」지원근거 미비[27)]를 이유로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였음.

26) 2024년~2026년 연도별 예산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지자체(문화권)	사업명	총사업비	2024년 (기본・실시설계)			2025년 (정비 1차년도)			2026년 (정비 2차년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강원 강릉(예맥)	강릉 초당동 유적	12,150	900	450	450	5,200	2,600	2,600	6,050	3,025	3,025
전남 나주(마한)	나주 복암리 고분군	12,150	900	450	450	5,200	2,600	2,600	6,050	3,025	3,025
경남 함안(가야)	함안 말이산 고분군	12,150	900	450	450	4,432	2,216	2,216	6,818	3,409	3,409
전남 해남(마한)	해남 읍호리 유적	12,000	882	441	441	5,134	2,567	2,567	5,984	2,992	2,992
합계		48,450	3,582	1,791	1,791	19,966	9,983	9,983	24,902	12,451	12,451

자료: 국가유산청

27)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정비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별도 정함이 없었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사업 비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2024년 5월 28일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28]하여 정비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이후 2024년 9월 12일 예산이 배정되었음.

그런데 당초 국가유산청은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 1차년도 정비사업, 2026년에 2차년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024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도 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설계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1조의2 신설)
제21조의2(정비사업의 비용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업 비용을 지원 받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비구역 내 국가유산의 조사 · 연구 · 발굴 · 복원 및 보존에 필요한 비용
2. 정비구역 내 역사문화환경 정비 · 육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부여 고도 경관개선 사업: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부여 고도 경관개선’** 사업은 부여 백제왕도 유적의 중심축인 성왕로를 백제 이미지의 역사가로로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7,000만원(△52.4%) 감액된 7억원이 편성되었음.[29)]

[2025년도 부여 고도 경관개선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고도 보존 및 육성	20,161	25,108	4,947	24.5
고도 역사도시 조성	9,256	6,333	△2,923	△31.6
부여 고도 경관개선	1,470	700	△770	△52.4

이 사업은 한옥회랑 및 유적정원 등 백제이미지 특화경관을 조성하여 세계유산 고도의 이미지 브랜딩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년이고, 총 사업비는 70억원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70%)로 추진됨.

[부여 고도 경관개선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2023년~2026년(4년)
- ○ 사업위치: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일원
- ○ 총사업비: 70억원(국비 49억원, 지방비 21억원)
- ○ 사업내용: 한옥회랑 조성, 전통정원, 백제 건축 이미지 등 백제 특화경관 조성
- ○ 사업수행주체/방식: 부여군/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보조율 70%)

자료: 국가유산청

2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고도 보존 및 육성(3237-309)(문화유산국)

나. 검토의견

부여 고도 경관개선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각 구역의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데만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으므로, 2025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관북리유적 주변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개 구역씩 한옥회랑 및 전통가로경관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실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임.

[연도별 부여 고도 경관개선 사업 예산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가유산청		사업시행주체(부여군)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3년	700	700	700	-	700	26	674	-	3.7
2024년	1,470	1,470	1,470	674	2,144	14	-	-	0.7

주) 2024년 8월말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이는 고도지역심의위원회 심의가 보류되거나 관계부서 협의불가로 사업대상지가 변경되는 등에 따른 것으로, 2023년 1구역 사업은 2024년 8월에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0월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고, 2024년 2구역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 1월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임.

[부여 고도 경관개선 사업 연차별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추진 경과]

구분		추진내용	당초 계획	실제 추진 경과	지연 사유
2023년 (1구역, 성왕 회전교차로 주변)	실시 설계	용역 발주 및 계약	'23.6.	'23.7.	
		용역수행	'23.6.~'23.8.	'23.7.~'24.8.	고도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보류 (교통문제 및 시공방법 보완)
	심의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	'23.7.	'24.6.	고도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보류 (교통문제 및 시공방법 보완)
	공사 추진	입찰계약 및 공사	'23.8.~'23.12.	'24.10. 공사 발주 예정	인도 상 회랑신축(영구시설물)에 대한 도시건축과 건축협의 지연

구분		추진내용	당초 계획	실제 추진 경과	지연 사유
2024년 (2구역, 관북리유적 주변)	실시 설계	용역 발주 및 계약	'24.1.	'24.9.	회랑신축 관련 도시건축과 협의 불발 및 관북리유적 발굴조사 등으로 사업대상지 재검토
		용역수행	'24.2.~'24.4.	'24.9.~'25.1.	사업대상지 변경 등 경관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지연
	심의	현상변경허가	'24.4.	-	-
	공사 추진	입찰계약 및 공사	'24.5.~'24.12.	-	부여군 부서간 협의 등 사업대상지 재검토로 지연

주) 2024년 8월말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이와 같은 실제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할 때, 2025년 3구역 경관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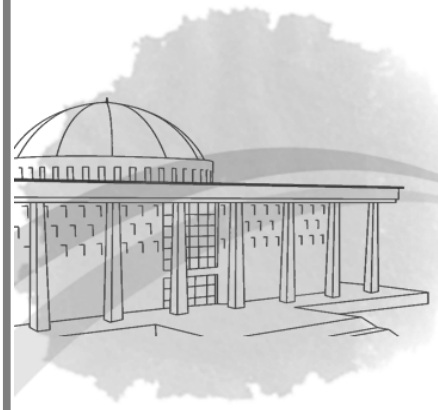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30) 부여 고도 경관개선 사업 연도별 예산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공종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국	지방	국	지방	국	지방	국	지방	국	지방
실시설계			349	244	105	49	21	69	29	32	14	94	41
공사비	한옥회랑		3,336	2,335	1,001	613	262	673	288	350	150	700	300
	전통가로 경관	전통조경시설정비	1,880	1,316	564	25	10	700	300	305	130	287	123
		백제문양 보행길 정비	1,300	910	390	0	0	0	0	0	0	910	390
감리비			131	92	39	13	6	28	12	13	5	38	16
시설부대비 등			4	3	1	1	0	1	0	1	0	0	1
합계			7,000	4,900	2,100	700	300	1,470	630	700	300	2,030	870

자료: 국가유산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수입은 13조 524억원으로, 전년 대비 4,532억원(△3.4%) 감소함. 예산은 8조 1,592억원으로 전년 대비 3,043억원(△3.6%) 감소하였으며, 기금은 4조 8,9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9억원(△3.0%) 감소함.[1)]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84,635	81,592	△3,043	△3.6
기 금	50,421	48,932	△1,489	△3.0
총수입	135,056	130,524	△4,532	△3.4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은 18조 7,496억원으로 전년 대비 4,104억원(2.2%) 증가함. 예산은 10조 4,898억원으로 전년 대비 5,935억원(6.0%) 증가한 반면, 기금은 8조 2,5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31억원(△2.2%) 감소함.

문의 : 이유미 예산결산조사관 youme0803@assembly.go.kr (02-6788-568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98,963	104,898	5,935	6.0
기 금	84,429	82,598	△1,831	△2.2
총지출	183,392	187,496	4,104	2.2

나. 예산안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총 7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6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16조 8,739억원으로 전년 대비 4,388억원(△2.5%) 감소함.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12	213	1	0.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44,906	140,135	△4,771	△3.3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430	430	-	-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	0.3	0.3	순증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18	35	△83	△70.3
양곡관리특별회계	27,460	27,925	465	1.7
합 계	173,126	168,739	△4,388	△2.5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6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23조 7,4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636억원(7.0%) 증가함.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58,042	72,673	14,631	25.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27,994	122,893	△5,101	△4.0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174	165	△9	△5.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7,953	13,624	5,671	71.3
고등·평생교육지 원특별회계	178	157	△21	△11.8
양곡관리특별회계	27,460	27,925	465	1.7
합 계	221,801	237,437	15,636	7.0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7개 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0조 4,96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767억원(△18.5%) 감소함.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농지관리기금	40,063	40,063	23,289	△16,774	△41.9
양곡증권 정리기금	15,311	15,311	5,509	△9,802	△64.0
축산발전기금	9,621	9,621	10,254	633	6.6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5,886	5,886	4,826	△1,060	△18.0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기금	30,194	30,194	31,045	851	2.8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23,948	24,063	25,978	2,030	8.5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3,704	3,704	4,059	355	9.6
합 계	128,727	128,841	104,960	△23,767	△18.5

주 1)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10개(892억 2,9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사업은 재해에는 강하면서 생산성도 높은 차세대 과원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생산기반 정비, 신품종 전환, 공동농기계, 교육·마케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2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사업은 농촌소멸 극복을 위해 농촌 체험 기회(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를 확대하고 빈집 활용을 제고(빈집은행 활성화, 빈집 재생)하여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9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지원 사업은 개식용 관련 업계의 폐업·전업 지원을 위한 이행촉진지원금, 시설 철거비용, 시설물 잔존가액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544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1,278
2	농식품기후정보통합플랫폼구축(정보화)	87
3	개식용종식폐업·전업지원	54,413
4	첨단정밀육종활용고부가산업화기술개발(R&D)	6,375
5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R&D)	6,150
6	경제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국산화기술개발(R&D)	6,375
7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R&D)	6,750
8	기후변화대응지능형농업기반관리기술개발(R&D)	4,312
9	자원순환형그린바이오기술개발(R&D)	1,500
10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1,989
총지출		89,229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농업재해보험’ 사업, ‘정부양곡매입비’ 사업 등 총 22개임.[3)]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국제농업협력(ODA)	162,128	243,926	81,798	50.5
2	농업협상대응	2,559	4,389	1,830	71.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	농업재해보험	657,104	801,929	144,825	22.0
4	농업자금이차보전	557,722	681,878	124,156	22.3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	30,000	150,000	120,000	400.0
6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구축	375	4,186	3,811	1,016.3
7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구축	940	8,566	7,626	811.3
8	그린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	5,100	30,840	25,740	504.7
9	반려동물연관산업해외수출산업화	1,840	6,690	4,850	263.6
10	종자산업교육인프라구축	2,116	6,119	4,003	189.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제주)	90	360	270	300.0
12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세종)	45	180	135	300.0
13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10,006	13,932	3,926	39.2
[양곡관리특별회계]					
14	정부양곡매입비	1,712,421	1,732,193	19,772	1.2
15	정부양곡관리비	409,078	456,100	47,022	11.5
16	쌀소비기반구축	8,258	12,043	3,785	45.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7	도매유통활성화지원	1,149	1,540	391	34.0
18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10,434	14,868	4,434	42.5
19	화훼산업진흥지역육성(시범)	200	800	600	300.0
[축산발전기금]					
20	사료산업종합지원	89,600	101,200	11,600	12.9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1	피해보전직불	5,400	21,866	16,466	304.9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2	공익기능증진직불	2,870,184	2,953,622	83,438	2.9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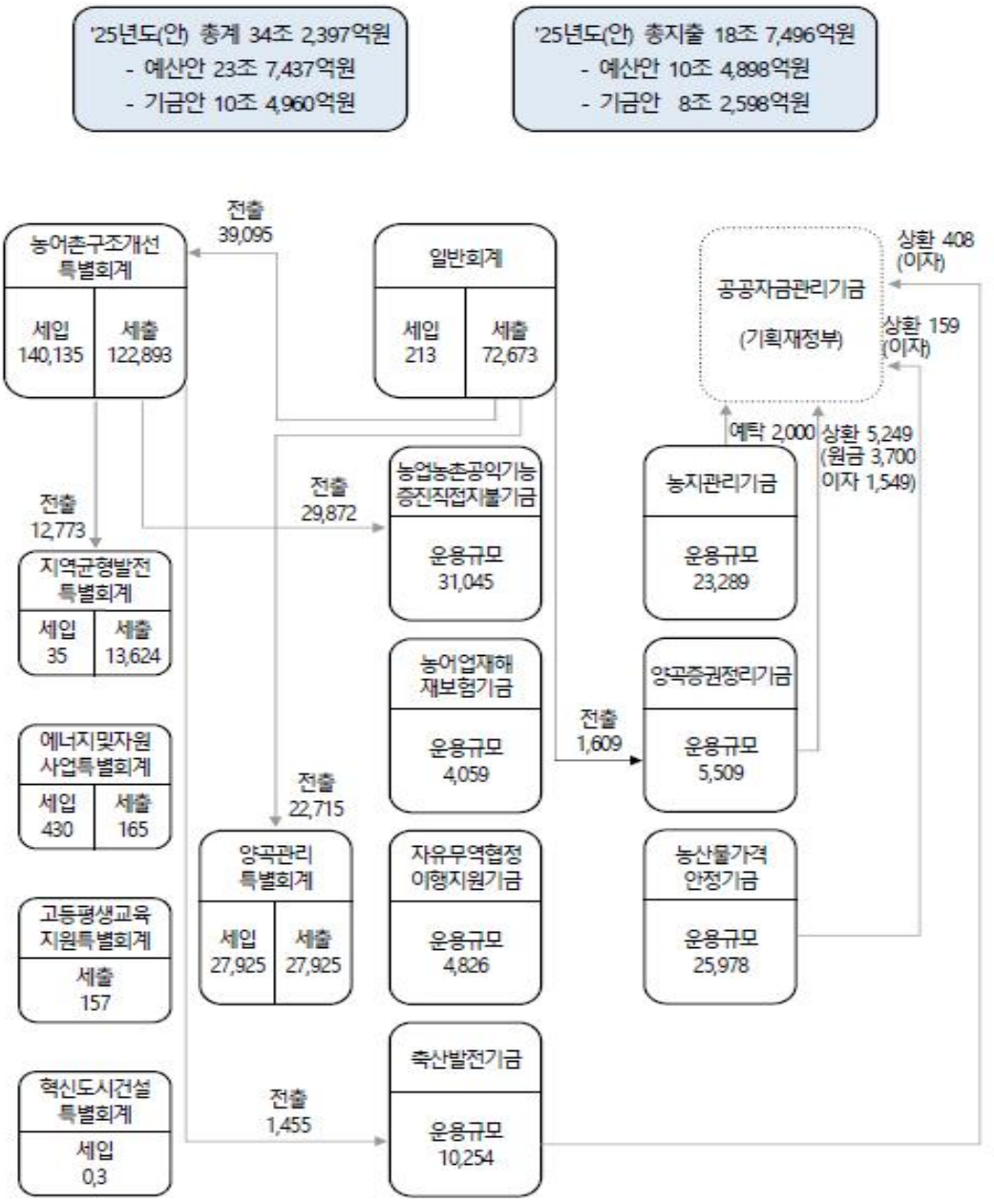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3조 9,095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로 2조 2,715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1,609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1조 2,773억원, 축산발전기금으로 1,455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으로 2조 9,872억원이 전출되었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2조 5,109억원이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농지관리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2,000억원이 예탁되었음. 또한 양곡증권정리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으로 3,700억원의 예수원금이 상환되었으며, 1,549억원의 예수이자가 상환되었음. 축산발전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으로 408억원의 예수이자가 상환되었으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으로 159억원의 예수이자가 상환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대비 2.2%(4,104억원) 증가한 18조 7,49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농업·농촌이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정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 공간) 목표를 뒷받침하면서 주요 농정과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분야,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 분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분야,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분야, 취약계층 지원 및 동물복지 강화 분야 등에 중점 투자되었음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 분야는 전년대비 3,656억원이 증액된 7조 1,70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공익기능증진직불, 농업재해보험,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이 각각 834억원, 1,448억원, 5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 분야는 전년대비 106억원이 증액된 1조 5,417억원,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분야는 전년대비 660억원이 증액된 1조 1,358억원이 편성되었음.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분야, 취약계층 지원 및 동물복지 강화 분야에도 각각 4조 7,197억원, 1,554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K-라이스벨트 구축사업은 예산집행률 및 사업공정률이 낮은 대상국가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농촌진흥청의 라이스피아 사업과 적극적 사업수행현황 및 성과 공유가 필요해 보임.

둘째, 전략작물 산업화사업은 가루쌀 시장수요의 확대를 전제로 예산안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의 성과와 가루쌀 관련 제빵·제과 등 충분한 시장수요 분석 후 사업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 사업은 개사육농장주 등의 폐업, 전업 지원을 위한 재정소요 계획 보완과 유기견 급증 가능성에 대한 대책 및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의 차등화 구간 내의 기간 확대 검토가 필요함. 또한 불법농가의 소유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등을 위해 지자체의 재원여력을 검토하며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넷째,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사업은 농촌 빈집 실태조사 사업과 매매가능 빈집 정보제공 사업의 소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농촌 빈집 재생,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

업이 기존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다섯째,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전국적 확대되었으나 오히려 시범사업 때보다 수혜계층 및 지원대상 가구가 축소되어, “더 두텁고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 이라는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설계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여섯째, 수입안정보험은 저조한 가입률과 예산집행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및 농작물재해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와의 관계 정립 등 사업 내용의 구체화,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임.

일곱째,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집행률 제고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K-라이스벨트 구축사업(ODA): 예산집행률이 낮은 국가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K-라이스벨트 구축(ODA)'** 사업은 쌀을 주식으로 소비하나 생산량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쌀 자급률 달성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억원(21.1%)이 증액된 160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K-라이스벨트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국제농업협력(ODA)	162,128	243,926	81,798	50.5
기획협력	34,902	41,544	6,642	19.0
K-라이스벨트 구축사업	13,270	16,070	2,800	21.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K-라이스벨트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벼 생산단지 조성 7개국: 140억 7,000만원(가나, 세네갈, 감비아, 기니, 우간다, 카메룬, 케냐)

○ 중고농기계 지원 및 수리센터 구축 1개국: 20억원(세네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 일반회계-국제농업협력(ODA)(5031-300)(국제협력관)

이 사업은 시설구축과 기자재 지원 등 물적 수단과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인적 수단이 결합된 방식의 중장기 지원 사업인 기획협력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아프리카 7개국을 대상으로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에 시작된 ‘가나 아크라 관개시설 현대화사업’(5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2024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2028년까지 6년간 총 635억 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160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K-라이스벨트 구축 사업 총사업비 및 연도별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국가명	2023 예산액	2024 예산액	2025 예산안	2026 계획안	2027 계획안	2028 계획안	총사업비 합 계
가 나	500	3,270	2,820	2,820	1,936	-	11,346
세네갈	-	1,900	1,800	1,800	1,800	692	7,992
감비아	-	1,200	2,000	2,000	2,000	760	7,960
카메룬	-	1,500	2,000	1,850	1,850	791	7,991
케 냐	-	1,100	1,850	1,350	1,000	500	5,800
우간다	-	1,100	1,850	1,350	1,000	500	5,800
기 니	-	2,200	1,750	1,750	1,750	468	7,918
세네갈(농기계)	-	1,000	2,000	3,000	2,700	-	8,700
합 계	500	13,270	16,070	15,920	14,036	3,711	63,50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첫째, K-라이스벨트 구축사업 대상국 중 예산집행률 및 사업공정률이 낮은 국가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 사업의 2024년 9월까지의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케냐 지원액 11억원 중 1억 8,000만원(집행률 16.4%), 우간다 지원액 11억원 중 1억 8,000만원(집행률 16.4%), 기니 지원액 22억원 전액 미집행, 세네갈(농기계) 지원액 10억원 중 1억 8,000만원만이 집행(집행률 18%)되었음.

또한 감비아, 카메룬에서의 ‘기자재 보급사업’ 또한 각각 예산액 2억 7,700만원 중 8,700만원이 집행(집행률 31.4%), 예산액 1억 6,200만원 중 3,400만원만이 집행(집행률 21.0%)되었고, 사업 수행을 관리하는 ‘사업관리’ 예산은 세네갈과 우간다를 제외하고는 2024년 9월까지 전액 미집행되었음.

[2024년 K-라이스벨트 구축사업의 국가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국가명	시설구축		기자재 보급		종자 보급		초청 연수		사업 관리		기타 (인건비, 경비 등)		2024년 예산		
	예산	실집행	예산	실집행	예산	실집행	예산	실집행	예산	실집행	예산	실집행	예산	실집행	집행률(%)
가 나	1,594	1,574	58	58	300	57	206	103	258	-	854	678	3,270	2,470	75.5
세네갈	125	125	130	72	700	398	89	89	144	144	712	682	1,900	1,510	79.5
감비아	253	220	277	87	-	-	89	63	99	-	482	220	1,200	590	49.2
카메룬	273	207	162	34	300	210	89	80	124	-	552	249	1,500	780	52.0
케 냐	**67**	**-**	**-**	**-**	**300**	**-**	**89**	**-**	**81**	**-**	**563**	**180**	**1,100**	**180**	**16.4**
우간다	**74**	**-**	**33**	**-**	**300**	**-**	**89**	**-**	**91**	**45**	**513**	**135**	**1,100**	**180**	**16.4**
기 니	**113**	**-**	**277**	**-**	**1,000**	**-**	**89**	**-**	**182**	**-**	**539**	**-**	**2,200**	**-**	**-**
세네갈 (농기계)	**156**	**-**	**111**	**-**	**-**	**-**	**68**	**-**	**83**	**-**	**582**	**139**	**1,000**	**180**	**18.0**
합 계	2,655	2,126	1,048	251	2,900	665	808	335	1,082	144	4,797	2,009	13,270	5,890	44.4

주) 2024년 실집행액은 9월 말 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국가와의 RD[5] 체결(평균 3개월 이상) 및 PMC[6] 선정(최소 3개월),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최소 4개월) 등에 기일이 소요되었고, 정권교체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K-라이스벨트 구축사업의 국가별 RD 체결일 및 착공(예정)일]

구 분	가 나	감비아	세네갈		카메룬	케 냐	우간다	기 니
			재배단지	농기계				
RD 체결일	'23.5월	'24.1월	'24.3월	'24.5월	'24.2월	'24.2월	'24.8월	마무리중
착공(예정)일	'24.5월	'24.12월	'24.12월	'24.12월	'24.12월	**'25.3월**	**'25.4월**	**'25. 하반기**

주 1) 2024년 9월 기준
2) 기니의 경우 신임 농업부 장관 임명(3월)에 따른 대규모 인사 후속 조치로 협의 지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은 가나에 대해서만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2023년 ODA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국들이 정치·사회적인 불안정성이 높은 국가들임에도 시범사업 등의 수행없이 2024년부터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하

5) RD(Recode of Discussion, 협의의사록)은 개별 프로젝트형 기술협력을 시행함에 있어 상대국 실시기관과 협력내용에 대하여 합의한 사항을 모아서 정리하고 서명한 문서임.

6)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는 현지 사업수행업체를 의미함.

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실제로 2023년에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작된 가나 아크라 관개시설 현대화 사업(2023년 예산액 5억원)의 추진 현황을 보면, 2023년 7월과 8월에 사업수행업체 선정이 두 차례 유찰되어 10월 이후에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이 완료된 바 있음.[7)]

이는 시범사업 등 소규모의 예산 지원을 통해 해당 국가들 각각의 특수성 및 사업 수행시 시행착오 등의 경험, 사업의 성과·실적 평가, 개선사항 등을 도출해내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 보이며, 특히 기니에서의 2024년 예산 전액 미집행은 사업의 첫 출발점인 대상국과의 외교적·행정적 협의 절차조차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해연도 예산액의 집행 지연 가능성이 높아 보임.

이와 같이 사업 첫해에는 대상국과의 기본적 외교·행정절차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사전준비절차 및 용역업체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으로 인하여 설계를 완료하기에도 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이 사업의 경우 외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현지 하도급 업체의 선정 등으로 더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2년차인 2025년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2024년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국가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진행현황 및 예산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둘째, K-라이스벨트 프로그램에서 종자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농촌진흥청의 라이스피아 사업과 적극적 사업수행현황 및 성과 공유가 필요해 보임.

농림축산식품부의 ‘K-라이스벨트 구축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①시설구축(관개수로, 송수관, 양수장 조성, 수리센터 등), ②기자재(트랙터, 사무장비 등 농기계 등) 지원, ③ 전문가 파견 등이고, 사업시행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임.

한편, 농촌진흥청의 ‘라이스피아 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①종자생산(전문가 파견, 비료 등 농자재 지원), ②기반조성(트랙터 등 농기계, 농기계창고, 종자 저장시설 및 건조기 등 종자 정선시설), ③교육훈련 등이고 사업시행주체는 KOPIA[8)] 센터임.

---

7) 국회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23.10.)

8)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 협력 추진 체계]



자료: 농촌진흥청

['K-라이스벨트 프로그램'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소관 주요 사업 내용]

농림수산식품부 K-라이스벨트 구축사업 (생산단지 조성, 종자보급)	**농촌진흥청 라이스피아 사업 (종자 생산)**
시설구축 · 관개수로 · 송수관 · 양수장 구축, **종자보급 창고** 등	종자생산: **전문가 파견**, 농자재(비료 등) 지원
기자재 지원: **농기계(트랙터)** 등	기반조성: **농기계(트랙터 등)**, 창고, **종자 저장시설**, 종자 정선시설(건조기 등)
전문가 파견, 성과관리, **초청연수,** 사업관리 등	**교육훈련**: 역량강화 및 운영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재구성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K-라이스벨트 구축사업'은 종자 생산단지 구축 등 생산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의 '라이스피아' 사업은 종자 생산을 위한 농기자재 및 종자 저장시설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나, '트랙터 등 기자재 지원' 및 '교육 등을 위한 전문가 파견' 등은 두 부처가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음.

또한 기반구축 내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보급창고를, 농촌진흥청은 종자보관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두 시설유형의 조성시 연계하여 구축한다면 예산효율화 및 사업수행의 성과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임.

벼 종자보급 및 생산을 위한 일련의 지원사항들이 분절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점과 현지에서의 사업시행주체가 각각 다르다는 측면(한국농어촌공사 및 KOPIA)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면밀한 사업 추진계획 및 적극적 사업 수행상황 공유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임.

2. 청년인턴 국내여비 지원사업 : 국내 여비로의 편성 재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청년인턴 국내여비’는** 청년인턴들의 국내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000만원(95.9%)이 증액된 1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5년도 청년인턴 국내여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4,390	3,905	△485	△11.0
청년인턴 운영비 지원	2,512	2,069	443	△17.6
청년인턴 국내여비	73	143	70	95.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인턴 국내 여비 지원 예산안 세부내역]

○ 청년인턴 국내여비(220-01): (’24) 73백만원 → (’25) 143백만원, 70백만원 증액
- 일비・식비 82백만원(5만원×6개월×2회×121명 + 5만원×3개월×2회×31명) + 교통비 61백만원 (1.85만원×6개월x2회x왕복x121명 + 1.85만원×3개월x2회x왕복x31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청년인턴의 공무상 여행(현장 방문)이 주로 행사 및 박람회 방문인 점, 관련 활동 결과가 문서화되지 않아 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청년인턴들의 공무상 여행을 국내 여비(220-01)로 편성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공무원 여비 규정」[10)]에 따르면 여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9) 일반회계-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7033-326)(정책기획관)

10)「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도 지급이 가능하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여야 함.

그런데 청년인턴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의 단기간으로 근로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6개월 내 2회(121명), 3개월 내 2회(31명)의 빈도로 공무상 여행을 할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2024년 청년인턴들의 주요 방문기관을 살펴보면, 주로 행사 및 박람회 등에의 참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단순히 기관 및 행사장 방문이 청년들의 일경험과 국정참여 기회제공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11]

[2024년 청년인턴 국내 출장 건수(4월~9월) 및 주요 방문 기관 등]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건수	24건	18건	16건	45건	26건	39건
주요 방문 기관 (활동)	-농촌소멸대응 현장간담회 참석 -가루쌀 홍보 행사 참관 -우수급식 외식산업전 관람	-HACCP교육 참석 -가루쌀 품평회 참석 -K-라이스벨트 역량강화 초청 연수 참석	-소속기관 현장 방문 -스마트팜 관련 기업 및 간담회 참석	-수해복구 일손돕기 -2024 농식품 테크스타트업 박람회 방문 -aT 현장방문	-농수산대 현장 방문 -2024 에이팜쇼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견학 -공공서비스디자인 워크샵 참석	-방역본부 및 축산관계시설 방문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석 -2024 청년의 날 행사 참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청년인턴들이 기관 방문 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문서) 등이 부재하여, 사업의 효과성 분석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청년인턴 운영비 지원 사업에 편성된 청년인턴 국내여비(220-01)의 편성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12]

11)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인턴들이 현장방문 후 기관 인터뷰, 카드뉴스 제작, SNS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12)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년인턴 사업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편성하여 각 부처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함.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 출>

3.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 가루쌀에 대한 시장수요를 고려한 점진적 사업 확대 재검토 필요

가. 개 요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은 국산 밀·콩 및 가루쌀 자급률 제고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제품개발,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신규사업이며,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0억 4,400만원(17.8%) 증액된 533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13)]

[2025년도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전략작물 산업화		45,264	53,308	8,044	17.8
	교육컨설팅 지원	6,325	6,850	525	8.3
	시설장비 지원	17,500	17,500	-	-
	제품화패키지 지원	8,380	9,850	1,470	17.6
	전략작물가공확대 지원	3,200	6,400	3,200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역사업인 **‘교육컨설팅 지원’**은 밀·콩·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육성을 위하여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2,500만원(8.3%) 증액된 6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내역사업인 **‘시설장비 지원’**은 밀·콩·가루쌀 등 논타작물 재배 및 밭작물 연계를 위한 작물체계 전환 등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공동영농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1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전략작물 산업화(2131-350)(식량정책관)

구입 및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175억원이 편성되었음.

내역사업인 **‘제품화패키지 지원’**은 밀·콩·가루쌀을 활용하여 제품개발·시제품 생산·마케팅 등을 사업체에 지원하여 수요발굴 및 소비확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억 7,000만원(17.6%) 증액된 9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내역사업인 **‘전략작물가공확대 지원’**은 밀·콩·가루쌀 산업초기 제분기반 조성과 소비확대를 위해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사용량에 대한 제분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2억원(100.0%) 증액된 64억원이 편성되었음.

[교육컨설팅, 시설장비지원, 제품화패키지지원, 전략작물가공확대지원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교육컨설팅) 교육컨설팅(밀 100, 콩 등 180, 가루쌀 160)440개소×30백만원×국비50% + 사업운영비 250백만원 ○(시설장비지원) 70(밀 6, 콩 등 34, 가루쌀 30)개소×500백만원×국비50% ○(제품화패키지지원) (밀 19+콩 12개소)×300백만원×국비50% + 가루쌀 30개소×200백만원×국비80% + 판로지원 5개소×50백만원×국비80% + 사업운영비 200백만원 ○(전략작물가공확대지원) 밀 12천톤×40만원/톤×국비50% + 가루쌀 20천톤×40만원/톤×국비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가루쌀 시장수요의 확대를 전제로 2024년·2025년 예산안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의 성과와 가루쌀 관련 제빵·제과 등 충분한 시장수요 분석 후 사업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략작물 산업화사업의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안 중 특징은 가루쌀의 생산 및 가공, 제품화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액된 것임.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가루쌀 지원 개소는 2024년 130개에서 2025년 160개소, 제품패키지화 지원사업에서의 가루쌀 지원 개소는 2024년 28개소에서 2025년 30개소, 전략작물가공확대지원 사업의 경우 2024년 가루쌀은 1만톤에서 2025년 2만톤 지원이 계획되어 있음.

[2024년도 및 2025년도 전략작물 산업화 내역사업의 예산 편성 내용]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교육컨설팅지원 사업	6,325백만원(305개소)	6,850백만원(440개소)
	・밀 교육컨설팅 85개 ・콩 교육컨설팅 190개 **・가루쌀 교육컨설팅 130개**	・밀 교육컨설팅 100개 ・콩 교육컨설팅 180개 **・가루쌀 교육컨설팅 160개**
시설장비 지원 사업	17,500백만원	17,500백만원
	・밀 시설・장비지원 6개소 ・콩 시설・장비지원 34개소 **・가루쌀 시설・장비지원 30개소**	좌동
제품패키지화 지원 사업	8,380백만원	9,850백만원
	・밀 15개소 ・콩 7개소 **・가루쌀 28개소**	・밀 19개소 ・콩 12개소 **・가루쌀 30개소**
전략작물가공확대지원 사업	3,200백만원	6,400백만원
	・밀 6,000톤 **・가루쌀 10,000톤**	・밀 12,000톤 **・가루쌀 20,000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쌀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이 사업이 지원하고 있는 밀, 콩, 가루쌀의 생산현황(실적) 및 생산목표를 비교할 때, 가루쌀에 대한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과다한 측면이 있음.

2023년 실적 기준, 밀과 콩의 경우 재배면적이 각각 11.6천ha, 64.0천ha이나, 가루쌀의 경우 2천ha이고, 생산량 또한 밀과 콩이 각각 51.8천톤, 129.9천톤이나 가루쌀의 경우 7.4천톤임.

밀과 콩은 재배면적과 생산량 목표 등이 각각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수준으로 계획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밀의 재배면적/생산량은 2024년 25천ha/100천톤 → 2025년 30천ha/120천톤 → 2026년 36천ha/144천톤→ 2027년 42천ha/168천톤, 콩의 재배면적/생산량은 2024년 67.7천ha/141.5천톤 → 2025년 69.6천ha/134.3천톤 → 2026년 71.5천ha/137.9톤 → 2027년 80.8천ha/147.1톤).

그러나 가루쌀의 경우 밀과 콩에 비해 재배면적 및 생산량, 생산단지 등 사업규모가 적고 2023년 현황 대비 목표를 다소 상향으로 설정(가루쌀의 재배면적/생산량은 2024년 8.2천ha/40천톤 → 2025년 15.8천ha/75천톤 → 2026년 및 2027년 42.1천ha/200천톤)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밀과 콩에 비해 사업비를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지원하

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밀 생산량 및 생산목표]

구분		'22실적	'23 실적	'24	'25	'26	'27
재배면적(천ha)		8.3	11.6	25	30	36	42
생산량(천톤)		33.5	51.8	100	120	144	168
식량자급률(%)		1.4	2.(p)	4.2	5.0	6.3	8.0
생산 단지	천 ha	7	10	12	15	18	21
	개소	51	73	91	100	120	140
비축 계획(천톤)		17	19	25	30	40	50
계약재배물량(천톤)		6	8	10	12	14	1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콩 생산량 및 생산목표]

구분		'22실적	'23 실적	'24	'25	'26	'27
재배면적(천ha)		54.4	64.0	67.7	69.6	71.5	80.8
논콩		10.7	12.6	18.3	23.6	24.6	24.6
밭콩		43.8	51.4	49.4	46.0	46.9	56.2
생산량(천톤)		110.8	129.9	141.5	134.3	137.9	147.1
식량자급률(%)		28.6	33.6(p)	38.8	39.7	40.8	43.5
생산 단지	천 ha	7	9	11	12	13	14
	개소	122	159	190	200	210	220
비축 계획(천톤)		19	25	35	45	50	55
계약재배물량(천톤)		20	28	30	30	35	40
콩종합처리장(개소)		16	18	21	24	27	30

주) 재배면적·생산량·식량자급률은 양곡년도 기준(수요량 338천톤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 생산량 및 생산목표]

구분		실적			목표		
		'22	'23	'24	'25	'26	'27
재배면적(천ha)		0.1	2	8.2	15.8	42.1	42.1
생산량(천톤)		0.4	7.4	40	75	200	200
식량자급률(%)		-	-	-	-	-	-
생산 단지	천 ha	-	2	8.2	15.8	42.1	42.1
	개소	-	38	135	180*	420**	420
비축 계획(천톤)		-	10	50	75	미정	미정

주 1) * 180개소 : 신규단지(45개소) × 50ha + 기존 생산단지(135개소) × 100ha
2) ** 420개소 : 단지별 평균 100ha 목표 / 당초 계획('22년)에서는 200ha를 목표로 했으나, '23~'24년 운영 결과 목표 하향 조정
3) '23년 단지 현황(38개소) : (50~100ha 미만) 16개소, (50ha 미만) 22개소
'24년 단지 현황(135개소) : (200ha 이상) 1개소, (100~200ha 미만) 26개소, (50~100ha 미만) 36개소, (50ha 미만) 72개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 판매량과 관련하여, 2023년 가루쌀은 7,400톤 생산되었으나, 2023년산 가루쌀의 판매량('23.11.~'24.10.)과 종자용 판매량(395톤)을 합계하면 3,212톤이고, 2024년산의 생산량(목표)은 40,000톤[14]으로 전년 대비 5.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수요량(판매량)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업체의 수요 확대, 신규 수요업체 발굴 등으로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3년 가루쌀 생산량 및 2023년산 정부매입량과 판매량]

(단위: 톤)

2023년 생산량	2023년 정부 매입량	2023년산 판매량													
		종자용	2023. 11월	12월	202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
7,400	6,890	395	52	12	59	30	20	37	87	344	333	473	562	808	3,212

주) 2024.10월은 예상판매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①가루쌀의 밀가루 대체 부적합성 및 재배 적응성과 시장성에 대한 문제, ②검증된 성과 없이 생산량과 재배면적 목표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등 로드맵 변경에 따른 정책 신뢰도 저하, ③시장 수요가 저조함에도 가루쌀 산업의 적극 육성이 오히려 가루쌀 과잉생산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 ④가루쌀 재배로 인한 소득이 일반쌀보다 적은 점 등이 제기되었음.[15]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Ⅰ」('23.7.발간) 및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Ⅰ」('24.8.발간)에서는 ①가루쌀의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을 정부가 진행하는 것은 타 품목과의 형평 및 가루쌀의 시장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②가루쌀 수요가 불확실하여 식품기업 및 소비자 등에게까지 가루쌀에 대한 가치 인정 전략이 필요함을 적시하고 있으며, ③ '가루쌀 제품화 판로지원 사업' 등을 통해 관련 제품(면류, 빵류 등)이 순차적으로 출시되고는 있으나 아직 시장의 호응이나 화제성 등은 미진한 부분이 있고, ④가루쌀과 국산밀의 상호 대체효과 방지가 필요하

14)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 목표 생산량을 기존 47,500톤에서 40,000톤으로 하향 조정함.

15)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적응성·시장성 논란" (KBS뉴스, 2022. 10.12) / "가루쌀, 밀가루 대체 부적합" (문화일보, 2023.10.9.) / "가루쌀 과자 제조 쉽지 않네...15개 업체 중 SPC등 6곳만 제품 출시" (뉴데일리 경제, 2023.12.27.) / "가루쌀 활성화, 촘촘한 로드맵 구축이 먼저다" (무등일보, 2023.10.26) / "가루쌀 시장수요 저조…과잉생산으로 추가 매입·보관비만 늘어" (2024.10.7.뉴스1) / "정부육성 가루쌀, 쌀보다 ha당 230만원 소득 감소" (2024.10.7.연합뉴스)

며, ⑤공공비축제도를 주로 활용하여 정부가 매입하고 보관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재고 누적 등의 문제를 가져오고 자칫 결과적인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가 두 차례 실시('23.1. 및 '24.1)한 식품업계의 의견청취 결과 또한 가루쌀에 대한 시장수요 불확실성 및 제품 적합성, 가루쌀 제품 개발 기간이 짧아 충분한 테스트가 어려웠던 점, 가루쌀 보관시 균일한 품질관리 필요성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초기 판로 문제 해소를 위해 생산된 가루쌀 전량을 비축할 계획이라고 하나, 공공비축의 우선순위 관점에서 가루쌀과 같이 중간재로 활용되는 양곡보다는 직접적 주식(主食)인 양곡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일반미 또는 밀, 콩에 비해 아직 수요가 불확실하고 대체제인 '국산 밀'이 있는 가루쌀의 중요성이 아직까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루쌀의 전량 비축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가루쌀에 대한 충분한 시장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다한 생산량·재배면적 증가 목표 등을 설정하고,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할 경우, 가루쌀의 과잉생산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급격한 사업 확대보다는 일정 기간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해 본 후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규모를 점차 확대해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4.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 사업(신규): 재정소요 계획 보완 및 유기견 관련 대책 등 마련 필요

가. 개 요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 사업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의 제정 및 공포('24.2.6.)에 따라 2025년 신규로 편성되었음.[16)]

개식용종식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24년 8월부터 효력)[17)], 위반시 징역·벌금('27년 2월부터 효력)[18)]등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도축업자의 폐업·전업에 필요한 지원[19)]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 종식 이행 과정에서 전·폐업이 불가피한 개사육농가 및 개식용도축업자의 업종전환 유도를 위해 이들에게 폐업·전업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2025년도 예산안 544억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1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3741-400)(동물복지환경정책관)

17)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①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벌칙)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한 자

19)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년도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지원	-	54,413	54,413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개사육농장주 폐·전업 지원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28,097백만원)

· 1식 x 56,194백만원 x 국비50% =28,097백만원

-철거비, 시설물 잔존가액, 감정평가비(19,000백만원)

· 철거비 : 35백만원 x 200농가 x 국비50%=35백만원

· 시설물 잔존가액 : 61백만원 x 500농가 x 국비50%=15,250백만원

· 감정평가비 : 100백만원 × 500농가 × 국비50%=250백만원

-잔여견 보호관리 (1,500백만원)

· 30만원(보호관리비) x 1만두 x 국비50%

○ 개식용도축업자 폐·전업지원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비 (5,416백만원)

· 시설물 잔존가액 : 42개소 x 160백만원 x 국비50%=3,333백만원

· 철거비 : 42개소 x 100백만원 x 국비50%=2,083백만원

○ 교육·홍보 등

- 교육홍보비 160백만원, 연구용역 등 230백만원, 일반수용비 1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첫째,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을 위한 재정소요 계획 보완 및 유기견 급증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개식용종식법의 2027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사육농가 및 개식용도축업자의 업종전환 유도를 위해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24.9.),

2025년 예산안에 이들에 대한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철거비용 및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금 등을 편성하였음.

기본계획에 따르면, '식용목적 개 사육규모' 는 46.6만 마리('24.8.기준)이고, 지원기준을 "사육마릿수 × 폐업 시기별 지원단가 × 조정률"로 하며, "사육마릿수"는 이행계획서를 통해 신고한 연평균 사육마릿수 기준으로, "적정 사육두수"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면적(㎡) × 면적당 적정 두수(1.2마리/㎡)로, "지원단가"는 폐업 시기 구간별 지원단가(30만원×지원기간) 차등 적용을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 따른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지원 기준]

◈ **지원기준** : **사육마릿수 × 폐업 시기별 지원단가 × 조정률**

- (사육마릿수) 신고한 연평균 사육마릿수 기준(단, 적정 사육두수*를 상한으로 적용)
- (적정 사육두수)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면적(㎡) × 면적당 적정 두수(1.2마리/㎡)
- (지원단가) 폐업 시기 구간별 지원단가(30만원×지원기간) 차등 적용

폐업시기	'24.8.7.~ '25.2.6.	'25.2.7.~ '25.8.6.	'25.8.7.~ '25.12.21.	'25.12.22.~ '26.5.6.	'26.5.7.~ '26.9.21.	'26.9.22.~ '27.2.6.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지원단가 (지원기간)	60만원 (2년)	52.5만원 (1.75년)	45만원 (1.5년)	37.5만원 (1.25년)	30만원 (1년)	22.5만원 (0.75년)
예산편성구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	

* 「개식용종식법」 공포('24.2.6.) 이후 법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시행('24.8.7.) 이전까지 폐업한 농가 포함

* 지원단가 30만원은 실태조사('24년)를 통해 도출한 마리당 순수익

* (조정률) 농지 전용 미신고 등 「농지법」 위반 확인 시 50% 감액 적용

* 농장주에 한정하여 사육 마릿수(연평균, 신고 기준)당 폐업 시기 구간별 22.5~60만원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24.10.)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계획 발표 이후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의 연차별 재정소요액 및 2025년 예산안 산출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지원단가 차등지급 6개 구간을 1년차(2025년)에는 1-2구간, 2년차(2026년)에는 3-4구간, 3년차(2027년)에는 5-6구간으로 설정하여 연차별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재정소요액을 편성하였음.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 따른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연차별 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국비기준 예산	2025년	2026년	2027년	3년 총액
이행촉진지원금(합법)	18,731	15,947	10,041	44,719
이행촉진지원금(불법*)	9,366	7,973	5,020	22,359

주) 이행촉진지원금(불법*)은 농지법 위반 경우를 의미하며, 합법 농가의 50%로 설정하였다고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한 '6개의 폐업시기 구간'과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지급 예산안 편성을 위한 구간'이 부합하지 않음. 예를 들어 3구간 시기는 2025.8.7.~2025.12.21.이나 2025년 8월 초에 폐업한 개사육농장주에게 지급될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은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지급이 가능하게 됨.

또한 5구간 시기는 2026.5.7.~2026.9.21.이나 2026년 5월 초에 폐업한 개사육농장주에게 지급될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지급되게 되어 구간 차등화 의도가 충분히 구현되기 어렵고 원활한 개식용종식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2025년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세부내역을 보면, 합법 농가와 농지법 위반농가 비율을 각각 50%, 1년차 폐업비율(2025년 예산으로 지급될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을 30%, 1구간 출하비율을 40% 및 2구간 출하비율을 60%로 가정하였음.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 따른 2025년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세부내역]

(2025 국비지원분) 28,097백만원 = ①합법농가 18,731백만원 + ②농지법위반농가 9,366백만원

①(합법) 18,731백만원 = 45만두×30%(1년차폐업비율)×[(60만원(1구간지원단가)×40%(1구간출하비율)+52.5만원(2구간지원단가)×60%(2구간출하비율)]×50%(합법농가비율)×국비50%

②(불법*) 9,366백만원 = 45만두×30%(1년차폐업비율)×[(60만원(1구간지원단가)×40%(1구간출하비율)+52.5만원(2구간지원단가)×60%(2구간출하비율)]×50%(합법농가비율)×국비50%×감액비율50%

주) (불법*)은 농지법 위반 경우를 의미하며, 합법 농가의 50%로 설정하였다고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이러한 비율을 설정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미비하여, 사업 시행 초기에 지원금이 소진될지 여부 또는 오히려 과다하게 책정되었는 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사육농장주가 농장업을 종료하고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모든

개를 완전히 출하하여야 하지만,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이미 개식용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20], 농장주 사육 포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잔여견을 인수하더라도 관리보호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농장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보호비용이 부담스러운 농장주가 사육견을 무단 유기(遺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둘째,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의 차등화 구간 개수를 줄이고, 구간 내의 기간을 늘려 농장주들의 폐업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의 지급단가를 2024년 8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의 기간을 6구간으로 구분하여, 사업초기년도에는 최대 60만원을 2년간 지급하고, 구간이 지날수록(늦게 폐업할수록) 사육 두수당 7.5만원을 추가적으로 감액하여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함.

농림축산식품부의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의 차등 지원 계획은 사업 초기에 폐업을 유도하려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나, 구간당 개월수가 짧은 측면(최장 6개월, 최단 4개월)이 있음.

즉, 최대한 많은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개사육농장주들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단기간 내에 농장업을 폐업할 경우, ① 사육견의 도축 및 출하 물량이 한꺼번에 급증하여 이를 처리하기 어려울 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의 50%를 재정부담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지급 지체에 따른 개사육농장주들의 불만 증가, ③ 사육견 출하 후 관리되지 않은 개사육농장의 급증 및 우범지대화, ④ 농장을 모두 비워야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사육견 출하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사육견들이 유기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차등 구간 개수를 줄이고 구간 내의 기간을 늘려주어 농장주들이 폐업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농장주들의 폐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유기견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등 보다 안정적으로 개식용종식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유통업의 경우 취급 축산물 등 전환을 통한 전업 희망 비율이 79.4%, 음식점의 경우 취급 메뉴 전환 등을 통한 전업을 희망하는 업자 비율이 80.9%로 높은 상황임.

셋째, 불법 개사육농가들이 소유견을 유기(遺棄)하거나 불법 도축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제8조[21]에 따르면,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농지법」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건축법」, 「가축분뇨법」 위반시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고, 「농지법」위반의 경우는 50% 감액지원하며, 시설물 잔존가액은 지원하되, 시설비 철거비용은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함.

[개사육농장에 대한 관련법령별 위반행위 확인 시 폐업지원 불이익 사항]

(단위: 백만원)

법령	위반행위	폐업이행 촉진금	시설물 잔존가액	시설물 철거비용
「건축법」	·농장이 무허가 또는 미신고(제11조, 제14조, 제20조) 건축물인 경우 ·농장이 사용승인(제22조)을 받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지원배제	지원	지원배제
「가축분뇨법」	·신고(제11조제3항전단)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지원배제	지원	지원배제
「농지법」	·농장이 농지전용신고(제35조 전단)를 하지 않은 부지에 설치	50%감액	지원	지원배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24.9.)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사육농가(농장)는 1,537개[22][23]로서, 이 중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

21)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개사육농장이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2. 해당 개사육농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3. 해당 개사육농장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경우
4. 해당 개사육농장이 **「농지법」 제35조 전단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부지에 설치**된 경우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2)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합법적(「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상 신고를 한)인 농가는 896개소이며,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은 1,500개소, 철거비용 지원 대상 농가는 600개소(1,500농가 × 40% 합법)가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이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사육농가 1,537개소 중 427개 농가는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법 농가이며, 이러한 불법농가는 시설물 철거비용 또한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및 시설물 철거비용 등을 지급받지 못한 불법 개사육농가들이 사육견을 처분(출하 등)하지 못하는 경우, 유기견 발생 및 불법 도축, 불법 혐오 시설물 잔존 등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넷째,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및 동물보호 인프라 마련 등을 위해 지자체의 재원여력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함.

개사육농장 및 개식용도축업을 폐·전업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사육농가 및 개식용도축업자의 폐·전업을 짧은 기간 내에 완료하려면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지원금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하여 진행될 예정임.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 사업 국비 및 지방비 배분 비율]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5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개사육농장 주 폐업·전업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48,597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개식용도축업자 폐업·전업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5,416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3) [이행계획서 제출 현황('24.8.기준)]

(단위: 단위, 건)

구 분		농 장	도 축	유 통	식품접객
신고 건수	5,898	1,537	221	1,788	2,352
이행계획서	5,898 (100%)	1,537 (100%)	221 (100%)	1,788 (100%)	2,352 (100%)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330목)의 경우 많은 사례가 지방비 미확보의 문제로 사업의 진행 속도 및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이 사업 또한 지방비 미확보 문제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예산집행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개식용종식법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유기견 관리와 관련하여 동물보호센터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될 수 있으나, 현재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된 사업들은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적고 지방비 등의 확보가 어려워 연례적으로 예산집행률이 낮음.

구체적으로 '동물보호시설환경개선사업(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2023년 예산집행률이 11.1%, 2024년 8월까지 3.3% 집행되었으며, '동물보호센터설치지원사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한 2023년 예산집행률이 5.3%, 2024년 8월까지 3.5% 집행되는 등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임.

[동물보호시설환경개선(농특) 및 동물보호센터설치지원(지특)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안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동물보호시설환경개선(농특)	1,800	200 (11.1)	1,552	2,160	72 (3.3)	1,152
동물보호센터설치지원(지특)	7,041	374 (5.3)	655	6,023	212 (3.5)	5,643

주) 2024년은 8월말까지의 집행액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여건을 검토하고 법 집행의 신속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육견(肉犬) 사육자 단체를 중심으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에 법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바,[24] 농림축산식품부는 원활한 법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도축업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계속해야 할 것임.

24)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24.10.)에 따르면 개사육업·도축업에 종사자들은 유통업·음식점업 종사자들과는 달리, 대부분 영세 고령농이고 타 축종 병행 사육 비중이 작으며, 오랫동안 개사육업에 종사하여 전·폐업 이행에 애로가 있다고 함.

5. 농촌생활인구유입 지원사업(신규) : 사업 소관에 대한 검토 및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된 사업계획 필요

가. 개 요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사업은 농촌 빈집 활용 제고, 농촌 체험 기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며, 예산안은 19억 8,900만원임.[25)]

[2025년도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농촌생활인구유입 지원	-	1,989	1,989	순증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	1,350	1,350	순증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지원	-	189	189	순증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	450	450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생활인구유입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지자체경상보조(330-01) : 1,350,000천원
-빈집 실태조사 (800,000천원) : 20개 시・군x80백만원x국비50%
-매매가능 빈집 정보 제공 등 (550,000천원) 거래활성화 : 2,200호x50만원x국비50%

○ 지자체자본보조(330-03) : 639,000천원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지원(189,000천원): 3개소×21억원×1년차10%×국비30%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450,000천원): 3개소×30억원×1년차10%×국비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4160-448)(농촌정책국)

나. 검토의견

첫째, 농촌 빈집 실태조사 사업과 매매가능 빈집 정보제공 사업의 소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세부내역인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지역의 빈집 정보조사 및 매물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비용(8억원) 및 빈집 정보 제공(5억 5,000만원) 등에 국비보조(50%)로 1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실태조사 800백만원(20시・군x **80백만원** x국비50%)
○ 매매가능 빈집 정보 제공 등 550백만원(2,200호x **50만원** x국비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실태조사(8억원)과 관련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64조(빈집정비계획수립),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제64조의5(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제65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66조(자진철거자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빈집에 업무 권한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짐.

즉 빈집의 관리 업무 소관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지자체의 재정여력을 고려하고 실태조사 균질화를 위해서 일부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다음, **‘매매가능 빈집 정보 제공’** (5억 5,000만원) 사업의 경우 현지 부동산업자들의 빈집 현장방문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활동비용(5일간 총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것임.

['매매가능 빈집정보 제공'사업의 50만원 산출 근거]

○ 매매가능 빈집 정보 제공 등 550백만원(2,200호x**50만원**x국비50%)에서 50만원 산출근거
-부동산업 관계자의 빈집 매물 정보화를 위한 현장방문(2일) 및 빈집 관리(3일) 등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
-50만원=100천원(부동산 하위 25% 연봉 26백만원을 일단위로 환산) × 5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빈집 현장방문 및 관리는 빈집 매매 성사시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부동산 사업자들의 사적 업무영역이고, 이에 대해 활동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특히 빈집 방문 등으로 활동비(2일분), 관리비(3일분)를 받은 후 해당 부동산업

자들이 적극적으로 빈집 매매 등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매매 성사 등 후속 관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일회성 경비지급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둘째, 농촌 빈집 재생,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기존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 사업(3개소, 1억 8,900만원)’ 은 빈집 밀집지역을 체류시설, 공동이용시설(마을공원・체험공간)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조성 시범사업(3개소, 4억 5,000만원)’** 은 거주공간・영농체험・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화한 시범단지 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조성 시범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25년 예산안 1억 8,900만원, 신규)
-산출근거: 3개소×21억(빈집 리모델링 15억, 공동시설 조성 6억)×1년차10%×국비30%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조성 시범사업(’25년 예산안 4억 5,000만원, 신규)
-산출근거: 3개소×30억(주거형 주택 20~25개동 설치)×1년차10%×국비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이 사업들과 유사한 목적과 세부 내용을 포함한 사업들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도 다수 편성되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2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편성된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4160-431)”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촌공간정비’(2025년 예산안 1,044억 5,000만원, 전년대비 364억 5,000만원 증액, 34.9% 증가)는 공간계획과 사업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며, 주요 내용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공원 등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임대주택 등의 조성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빈집・폐창고 등 장기방치 건물 등을 정비대상 시설범위로 확대할 계획임.

26)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 개편”(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4.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편성된 "농촌공간 정비사업" 주요내용]

(지원내용)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재구조화를 위해 난개발 정비·이전에 필요한 철거비 등 지원

- ㅇ 난개발을 철거한 공간을 지역 주민 대상 생활서비스 제공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 ㅇ 그 밖에 정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마을 안길·하천 등 복원, 담장·주택 등 정비, 마을숲·완충녹지 조성 등을 지원

('25년 예산안 산출근거) 농촌공간정비(104,450백만원)

- (1년차) 30개소×10,000백만원×국비 50%×연부율 5% = 7,500백만원
- (2년차) 25개소×10,000백만원×국비 50%×연부율 10% = 12,500백만원
- (3년차) 30개소×10,000백만원×국비 50%×연부율 15% = 22,500백만원
- (4년차) 33개소×14,000백만원×국비 50%×연부율 25% = 57,750백만원
- (5년차) 4개소×14,000백만원×국비 50%×연부율 15% = 4,20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농촌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창업공간·사회서비스 제공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4160-300, 4160-302)" 사업에 2025년 20억 9,500만원이, 농어촌 취약지역에 주택정비, 생활·위생인프라, 노후 불량주택 수리 및 빈집정비 등을 위한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4180-301, 4180-370)" 사업에 2025년 1,050억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음.

또한, 농촌 지역에 문화·복지·교육 등 복합서비스 거점 조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4180-360, 4180-360, 41800-300)사업"에 2025년 5,277억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성된 농촌 정주여건개선시설 조성 사업 종류 및 2025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5년 예산안	세부내역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자율,4160-302)	2,770	1,555	(계속) 6개소×450백만원×국비 50%×2년차 80% (신규) 10개소×450백만원×국비 50%×1년차 20% 1개소×250백만원×국비 50%×1년차 20%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제주,4160-300)	45	180	1개소×450백만원×국비 50%×1년차 80%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세종,4160-300)	90	360	2개소×450백만원×국비 50%×1년차 80%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자율, 4180-370)	104,121	104,501	(계속) '24년 선정 2년차(33,221) = 108개소×13.9억원×22.1% '23년 선정 3년차(36,000) = 80개소×15억원×30% '22년 선정 4년차(20,421) = 57개소×12.9억원×27.8% (신규) '25년 선정 1년차(14,859) = 104개소×14.3억원×10%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세종, 4180-301)	879	499	(계속) '22년 선정 4년차(358) = 1개소×13.1억원×27.3% (신규) '25년 선정 1년차(141) = 1개소×14.1억원×10%
일반농산어촌개발 (자율, 4180-360)	565,350	512,509	
-농촌중심지활성화	230,134	205,652	122개소 × 2,408백만원 × 국비 70%
-기초생활거점조성	215,776	223,559	430개소 × 743백만원 × 국비 70%
-시군역량강화	22,026	23,509	102개소 × 329백만원 × 국비 70%
-농촌신활력플러스	57,405	19,789	23개소 × 1,229백만원 × 국비 70%
-권역단위거점개발	40,009	40,000	44개소 × 1,298백만원 × 국비 70%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 4180-369)	10,006	13,932	
-농촌중심지활성화	1,233	7,120	4개소 × 2,543백만원 × 국비 70%
-기초생활거점조성	866	1,852	2개소 × 1,323백만원 × 국비 70%
-시군역량강화	377	374	2개소 × 267백만원 × 국비 70%
-농촌신활력플러스	1,470	-	-
-권역단위거점개발	6,060	4,586	4개소 × 1,638백만원 × 국비 70%
일반농산어촌개발 (세종, 4180-300)	3,082	786	
-농촌중심지활성화	3,035	509	1개소 × 727백만원 × 국비 70%
-기초생활거점조성	-	172	1개소 × 246백만원 × 국비 70%
-시군역량강화	47	105	1개소 × 150백만원 × 국비 7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작성

이와 같이 농촌유입 인구증대 및 농촌거주 여건개선 등을 위해 생활기반 및 복합서비스 시설 조성·확충을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세부사업을 통해 상당한 국비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수행되고 있는 사업과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6. 영농정착지원금 사업 : 영농정착지원금 성과분석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은 청년창업농 및 영농초기 농업인을 선발하여 창업과 조기 경영 안정화를 통한 농업·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1억 7,500만원(21.8%) 증액된 1,015억 4,500만원임.[27)]

[2025년도 영농정착지원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95,724	113,662	17,938	18.7
영농정착지원금	83,370	101,545	18,175	21.8

[영농정착지원금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영농정착지원금 (101,545백만원)
-영농정착지원금:(신규5,000명×9개월×1.1백만원×70%×95%)+(2년차5,000명×12개월×1.0백만원×70%×95%)+(3년차 4,000명×12개월×0.9백만원×70%×95%) = 101,545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2018년에 최초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들의 의무영농종사기간(6년)이 본격적으로 종료되는 연도가 2024년이므로, 청년농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의 성과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사업 초기에는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23년부터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으로 지급단가를 인상하였음.

2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1120-436)(농업정책관)

신규 지급 대상자 또한 2018년에 1,600명이었으나, 2022년부터 2,000명, 2023년에는 4,000명, 2024년도 예산부터 5,000명에 대한 신규 신청자 지원금 예산이 편성되었음. 이에 2025년 예산안에는 신규 5,000명, 2년차 5,000명, 3년차 4,000명 등 총 14,000명에 대한 지원금 1,015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28)]

[연도별 신규 영농정착선발인원 및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신규 선발인원(명)	1,600	1,600	1,600	1,800	2,000	4,000	5,000	5,000
영농정착 지원금 규모(백만원)	7,794	20,132	30,199	32,188	37,549	52,458	83,370	101,54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청년농 등은 지급 기간만큼 영농에 종사할 의무를 가지며, 의무종사기간(6년) 중 영농을 중단할 경우 지급받았던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함.

이에 실질적으로 의무종사기간 동안은 지원금 반납 회피를 위해 영농에 종사하여할 유인이 있지만, 2018년에 최초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들의 의무영농종사기간(6년)이 본격적으로 종료되는 2024년부터의 영농정착률이 실질적으로 본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금 증액 및 신규 영농인 선발 규모 확대 등 사업의 양적 확대와 함께 현재까지 지급된 지원금을 통한 청년농들의 장기적 영농정착률 및 이들이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28)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발표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목표로 매년 선발 인원 및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함.

7.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 예산집행률 제고방안 등 검토 필요

가. 개 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청년층을 대상으로 단독주택형 임대주택을 조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6억원(102.6%) 증액된 308억원임.[29)]

[2025년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15,200	30,800	15,600	102.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23년 선정지구 4개소 3년차 사업비 (6,400백만원)
· 4개지구x8,000백만원x국비50%x3년차 40%=6,400백만원
○ '24년 선정지구 8개소 2년차 사업비 (14,400백만원)
· 8개지구x9,000백만원x국비50%x2년차 40%=14,400백만원
○ 신규지구 10개소 1년차 사업비 (10,000백만원)
· 10개지구x10,000백만원x국비50%x1년차 20%=10,00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첫째, 청년농촌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규모 확대가 청년농의 안정적·장기적 정착 및 영농종사율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년농촌보금자리 임대주택 입주자의 귀농 유도를 위한 연계강화 등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4160-433)(농촌정책국)

이 사업은 2019년 4곳의 대상지구(충북 괴산, 충남 서천, 전남 고흥, 경북 상주)를 선정하여 2022년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되었고, 후속 사업으로 2022년 신규지구 1곳(밀양), 2023년 신규지구 4곳(삼척, 공주, 김제, 음성), 2024년에는 신규지구 8곳(인제, 정선, 보은, 부여, 남원, 순창, 곡성, 하동)을 선정하여 사업이 추진중이고, 2025년에 10개소의 신규지구 지원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1)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 분석)」 보고서('23.10.)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실시한 연구용역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에 입주한 주요 동기는 귀농 42명(38.5%), 귀촌 63명(57.8%), 기타 이유 4명(3.7%)으로 조사되었음. 귀촌의 이유로 입주를 결정한 응답자 63명(57.8%)을 대상으로 그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녀 양육·교육이 24명(38.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업 및 일자리, 거주환경이 각각 19명(30.2%), 기타 1명(1.6%) 순이었다고 함.

이에 이 보고서는 입주자의 입주 목적이 귀촌에 머무른다면 낮은 임대료의 조건으로 좋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해 보고 임대기간 종료 후 또는 더 좋은 자녀 교육환경이나 다른 주거 요건에 따라 거주지를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 입주 동기]

(단위: 명, %)

귀농	귀촌					기타
		자녀양육·교육	직업 및 일자리	거주환경	기타	
42(38.5)	63(57.8)	24(38.1)	19(30.2)	19(30.2)	1(1.6)	4(3.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성과평가」, 2022.12.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 귀농귀촌 실태조사」('23.3.)에 따르면 2021년까지 귀촌 인구가 늘어나다가 2022년에 감소하였음. 청년농 대상인 40세 미만의 경우 또한 2022년 감소했는데 그 감소폭이 전체 감소폭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연도별 귀촌인구 현황]

(단위: 명, %)

연도	전체		40세 미만	
	귀촌인구	전년대비 증감률	귀촌인구	전년대비 증감률
2018	472,474	-	236,310	-
2019	444,464	△5.9	220,686	△6.6
2020	477,122	7.3	228,912	3.7
2021	495,658	3.9	232,062	1.4
2022	**421,106**	**△15.0**	**191,675**	**△17.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2023)

이러한 귀농귀촌 관련 통계자료를 볼 때 청년농촌보금자리에 입주한 주된 동기가 귀농보다는 귀촌이고, 그 중에서 자녀 양육(교육) 등이며, 청년농 포함 전체 귀촌 인구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개수 확대가 청년농들의 귀농 및 안정적 영농정착률 제고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임.[30)]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에 이 사업을 전년도에 비해 신규 조성 지구 개수를 2개소 더 확대(2024년 8개소→2025년 10개소)하고, 지원단가 또한 지구당 1억원씩 증액(2024년 지구당 9억원→2025년 10억원)하여, 전년 대비 156억(102.6%)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신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개수 및 지원규모 확대가 청년농의 안정적·장기적 정착 및 영농종사율 증가 등 청년농 지원사업의 내실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농촌보금자리 임대주택 입주자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의 성과지표를 청년농 육성과 정착에 관련된 내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의 성과지표를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조성수” 및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준공 개소수”로 제시하고 있음.

30)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 청년농촌보금자리 대상지역 선정시 ‘영농 일자리사업 연계’ 항목에 가점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함(기존: 2점 → 변경: 10점).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조성수(누적) (단위: 개소)	목표	4	4	-	-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누적 조성 개소수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결과	지자체 결과보고
	실적	4	4	-	-	-			
	달성도	100	100	-	-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준공 개소수(누적) (단위: 개소)	목표	-	-	4	4	9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누적 준공 개소수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결과	지자체 준공결과보고
	실적	-	-	4	-	-			
	달성도	-	-	100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을 통해 40세 미만 청년농들에게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목적은 이들이 귀농하여 농업 등에 종사함으로써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함임.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과지표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을 통해 청년농들이 귀농하여 농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지,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설정되어야 함.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의 성과지표를 단순히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준공) 개소수' 등 국비지원의 확대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양적 지표인 조성 개소수로 설정하여, 이 사업의 내실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보조사업연장평가" ('24.5.)에서도 사업목표에 보다 충실한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귀농·귀촌 청년현황과 관련이 있는 성과지표 활용을 요청하였는 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의 성과지표를 청년농육성과 정착에 관련된 내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저조한 예산집행률을 고려하여 기존 지원 대상의 연부율 조정 등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의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시작년도인 2022년부터 연례적으로 집행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2022년 예산액 8억원(1개소) 중 2,200만원이 집행(집행률 2.7%)되었고, 2023년 예산액 48억원(5개소) 중 5억 9,300만원(집행률 12.3%)이 집행되었음. 2024년 예산액 152억원(13개소) 중 8월 말까지 집행액은 5억 4,000만원(집행률 3.5%)에 불과함.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2년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경남 밀양	800	800	800	800	800	22	778	
합계	800	800	800	800	800	22	77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단위: 백만원)

구분	23년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경남 밀양	1,600	1,600	1,600	1,600	1,600	93	2,285	-
강원 삼척	800	800	800	800	800	19	781	-
충북 음성	800	800	800	443	-	443	357	-
충남 공주	800	800	800	800	800	24	776	-
전북 김제	800	800	800	800	800	14	786	-
합계	4,800	4,800	4,800	4,443	4,443	593	4,98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단위: 백만원)

구분	24년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경남 밀양시	1,600	1,200	1,200	1,200	1,200	391	-	-
강원 삼척시	1,600	1,200	1,200	-	-	6	-	-
충북 음성군	1,600	1,200	1,200	33	-	33	-	-
충남 공주시	1,600	1,200	1,200	1,200	1,200	15	-	-
전북 김제시	1,600	1,200	1,200	1,200	1,200	50	-	-
강원 인제군	900	600	600	10	-	10	-	-
강원 정선군	900	600	600	600	600	-	-	-
충북 보은군	900	600	600	34	-	34	-	-
충남 부여군	900	600	600	600	600	1	-	-
전북 남원시	900	600	600	-	-	-	-	-
전북 순창군	900	600	600	600	600	-	-	-
전남 곡성군	900	600	600	-	-	-	-	-
경남 하동군	900	600	600	-	-	-	-	-
합계	15,200	10,800	10,800	5,477	5,400	540	-	-

주) 2024년은 8월 말까지 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절차 지연 및 지방비 미확보, 사업대상지 변경 등을 사업지연 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최근 3개년간의 예산집행실적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여력 등을 고려하여 기존 지원 대상의 연부율 조정 등을 검토하고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농식품 바우처 사업 : 수혜계층 축소에 따른 사업설계 재검토 필요

가. 개 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33억원(157.4%) 증액된 381억원임.[31)]

[2025년도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농식품바우처	14,800	38,100	23,300	157.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일반수용비(210-01) : 5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5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32)] : 3,007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35,083백만원
- 농식품바우처 지원 (32,087백만원)
· 87천여가구×7.9만원×10개월×국비 50%(서울 30%)
- 지자체 사업운영 (2,996백만원)
· 229시・군・구×26.2백만원×국비 50%(서울 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식품바우처(3041-385)(유통소비정책관)

32) 사업시행주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며, 산출근거는 “지자체 사업운영 2,996백만원(229시・군・구×26.2백만원×국비 50%(서울 30%))”, “전담기관 사업운영 2,503백만원(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1,227백만원, 전담기관 사업운영 1,276백만원)”, “사업성과분석 504백만원” 및 “자문회의 등 경비 10백만원” 등임.

나. 검토의견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오히려 시범사업 때보다 수혜계층 및 지원대상 가구가 축소되어, “더 두텁고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설계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 사업은 2020년 4개 시·군·구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4년 24개 시·군·구 지역으로, 2025년에는 전국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33]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에서 2025년 본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농식품바우처 지급대상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32%이하(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 포함된 가구”로 축소하였음.

[연도별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지급대상 계층 및 가구수 변경 내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국비 기준)	35억원	89억원	89억원	148억원	148억원	381억원
지원 지자체수	4개 시·군·구	10개 시·군·구	15개 시·군·구	18개 시·군·구	24개 시·군·구	229개 시·군·구(전국)
지원 가구수	1만 5천 가구	3만 3천 가구	4만 7천 가구	6만 6천 가구	**9만 7천 가구**	**8만 7천 가구**
지원기간	4개월	12개월	8개월	10개월	6개월	10개월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이하(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
지원금액	1인 가구 월 4만원 / 4인 가구 월 8만원					1인 가구 월 4만원 / 4인 가구 월 10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저소득층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더 두텁고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34]”을 위한 중점사업임에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 포함된 가구”로 축소함에 따라 실제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는 2024년 97,000여 가구에서 2025년 87,000여 가구로 줄어들 예정임.

33) (’20) 4개 시·군·구(15,000 가구) → (’21) 10개 시·군·구(33,000 가구) → (’22) 15개 시·군·구(47,000가구) → (’23) 18개 시·군·구(66,000가구) → (’24) 24개 시·군·구(97,000 가구)

3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2024.8.)

즉, ①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32%~50%에 속한 가구) 및 ②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없는 가구의 경우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받았으나, 2025년부터는 제외될 예정임.

[20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

- 지원대상 변경: (2024)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 (2025)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 - 2025년 제외대상 가구: ①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32% 초과 ~ 50% 이하) ②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구** - 대상 축소 사유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2024.1.) 결과[35] **생계급여 인상을 고려한 지원대상 조정, 식품지원 시급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대상 조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결과(2024.1.)가 생계급여 인상(2024년 대비 6.4% 인상, 1인가구 기준 2,200만원→2,341만원), 식품지원의 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조정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원 대상을 변경하고 수혜 계층을 축소하였다고 함.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및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지급단가를 상향(4.8만원→7.9만원)하고 지원 기간을 확대(6개월→10개월)하였지만, 지원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두텁고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정책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설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가 있음.

35)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예비타당성 결과(2024.1.)의 주요 내용으로, ①생계급여 인상을 고려한 지원대상 조정, ②수요자 접근성을 고려한 전달체계 보완, ③사업성과 지표 보완 필요 등이며, 이 사업은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되었음.('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0조제6항에 따라 복지분야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B/C 분석은 하지 않고 있음)

9. 수입안정보험 사업: 저조한 가입률·예산집행률 개선방안 및 법률 근거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수입안정보험’**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에 따른 품목별 수입감소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임.

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과 비교시, 농작물 품목별로 가입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인한 피해만을 보전한다면, 수입안정보험은 재해 피해 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시의 피해도 보전하는 구조임.

즉 기준수입(과거 5년간의 수확량과 시장가격으로 산출) 대비 당해 수입이 일정수준(보험상품별 60%-80%) 이하로 하락하면, 하락분의 전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농작물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수입안정보험을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대상품목과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일부 품목을 본사업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97억 1,700만원(2,465.6%) 증액된 2,078억 1,700만원임.[36)]

[2025년도 수입안정보험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농업재해보험	657,104	801,929	144,825	22.2
수입안정보험	8,100	207,817	199,717	2,465.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업재해보험(1031-300)(농업정책관)

[수입안정보험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민간경상보조(320-01) : 207,817백만원 -'25년 보험료 지원 = 175,739백만원 ('25년 예상보험료 351,477 × 국고지원비율 50%) -'25년 운영비 지원 = 30,578백만원 - 수입파악 기반구축 = 1,500백만원 * 대상품목/본사업 품목 : ('24) 9개/0개 → ('25) 15/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첫째, 저조한 가입률과 예산집행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농작물재해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가격차보전 기능)와의 관계 정립 등 사업 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함.

이 사업은 2015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2024년까지 9개 품목[37]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고, 2023년까지 25억원 규모로 예산편성되어 왔으나, 2024년 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24% 증액편성되었음. 그러나 2024년 9월까지의 예산실집행액은 7억 5,000만원으로 예산액 81억원 대비 9.3%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38]

37)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옥수수, 보리 등 9개 품목

38)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보험료 지원 예산규모가 큰 마늘, 양파, 포도의 가입기간이 10-11월임에 따라 아직 보험료 지원이 일부 품목에서만 이루어져 실집행실적이 낮다고 설명함.

[2024년 수입안정보험의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농식품부			사업관리기관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농작물재해보험	535,584	285,469	285,469	285,469	285,469	285,469	-	-
가축재해보험	112,220	65,256	65,256	65,256	65,256	62,256	-	-
수입안정보험	**8,100**	**1,550**	**1,550**	**983**	**750**	**750**	-	-
가축질병치료보험	1,200	718	718	718	718	718	-	-
합계	657,104	352,994	352,994	352,426	352,193	349,193	-	-

주) 2024년은 9월말까지 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이 보험의 연도별 가입률을 보면, 2015년 12.4%, 2019년 3.7%, 2023년 3.3%, 그리고 2024년 9월 현재 2% 수준으로 가입률이 저조함.

[2015~2024.9. 수입안정보험 가입률 현황]

* 연도별 가입률: ('15) 12.4% → ('17) 20.3 %→ ('19) 3.7% → ('21) 3.0 %→ ('22) 3.2%→ ('23) 3.3%→ ('24.9.) 2%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품목별 주산지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입률이 저조했다고 설명하면서, 2025년에 운영품목을 현재 9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채소가격안정제(가격차보전 기능) 사업과의 통합운영 및 농작물재해보험에서의 수입안정보험으로의 이동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2025년 목표 가입률을 전국 운영하는 본 사업 품목은 25%,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운영하는 품목은 15%로 설정하였다고 함.

[2025년 수입안정보험 목표가입률 25.0%(가입면적 950,683ha) 운영 시나리오]

(단위:ha)

대상면적	가입 면적 (채소가격안정제→수입안정보험)	가입 면적 (농작물재해보험→수입안정보험)	가입률
950,683	6,281	231,661	2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그동안 수입안정보험의 추진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과 농작물재해보험 대비 낮은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입률 확대전망은 가입 대상 농민들의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선호도 및 수요 확대에 근거한 산출 방식이 아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험사업(채소가격안정제 및 농작물재해보험)의 통합·이관에 따른 가입률 산출방식이므로, 가입률 상승 근거로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39].

한편, 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채소가격안정제(가격차보전 기능)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특히 보상기준과 관련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량감소시 평년 수량의 60~90%(보험가입시 농업인이 선택) 미만 감소시 보상하는 반면,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량감소 및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품목별 농가 수입이 평년수입의 60~80%(보험가입시 농업인이 선택) 미만 감소시 보상하는 것이며, 채소가격안정제는 농업인의 납입금과 정부·지자체·농협이 매칭으로 기금 조성 후, 가격이 평년가격의 80% 미만 감소시 차액을 보전하는 구조임.

[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채소가격안정제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수입안정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채소가격안정제
기본 개념	○ 상호부조 성격의 보험	○ 상호부조 성격의 보험	○ 농민 납입금과 정부·지자체·농협의 매칭 자금 내에서 본인이 수혜 받는 적립방식
정부 지원	○ 순보험료의 50% * 지자체에서 평균 30~40% 지원, 농가는 10~20% 부담 중	○ 순보험료의 50% * 지자체에서 평균 30~40% 지원, 농가는 10~20% 부담 중	○ 약정물량 가액의 30% * 지자체 30, 농협 20, 농가 20
보상 기준	○ **자연재해로 인한 수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품목별 수입이 평년수입의 60~8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체 보상	○ **자연재해로 인해 당해연도 수량**이 평년수량의 60~90% 미만으로 감소시 감소분 전체 보상	○ **농업인-농협이 출하 약정**하고 약정물량 가액의 20% 수준을 **사전 기금 조성**한 후 **가격이 평년가격의** 80% 미만으로 **감소시** 차액을 보전 (평년가격의 60%까지만)
가입률 ('23)	3.3% (가입면적/대상면적)	52.0% (가입면적/대상면적)	17.7% (약정물량/전국생산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마늘, 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의 가격차보전 기능[40]'을 수입안정보험으로 통합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일부 가입자를 수입안정보험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39)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으며, 보험상품의 필요성과 재가입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두 보험의 가입자의 77%가 재가입자), 현장에서 보험확대 요구가 있다고 설명함.

4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3031-326)" 사업의 내역사업인 "채소가격안정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다만, **채소가격안정제사업**은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가입 유인 감소, 대상 품목 과잉생산 미발생, 농협 부담분 조성 여력 한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유동성 부족 등으로 연례적으로 예산집행률이 저조[41](’22년 예산현액 대비 7.6% 집행률, ’23년 8.5% 집행률, ’24년 8월까지 2.5% 집행률)하며, 가입률이 2023년 기준 17.7%(약정물량/전국생산량)에 머물고 있는 점, 2025년 사업비(207억 1,600만원)가 전년대비 344억 7,400만원 감소(△62.5%)한 점[42] 등은 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가격차보전 기능)의 통합 운영 시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

농작물재해보험은 2024년 현재 73개 품목 및 농작물 재배시설에 적용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만큼 이와 유사한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수입안정보험으로의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품목별로 두 보험의 작동방식과 효과가 다르므로, 농가가 이를 면밀히 비교 분석해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음.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상당수 농민이 수입안정보험으로 이동할 것을 가정하고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안을 전년 대비 860억원(순보험료 감소분 1,720억원×국비지원율 50%) 감액 편성하였음.

수입안정보험 가입률이 정부의 예측치보다 낮을 경우 예산 감축으로 인한 미지급금이 현재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43], 과거년도의 미지급금이 상당한 규모로 예산 편

41)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최근 3년간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농협, aT)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년	40,443	19,594	60,037	54,598	5,439	54,598	11,482	**66,080**	**5,032**	40,666	20,382
2023년	55,190	-	55,190	22,061	33,129	22,061	40,666	**62,727**	**5,341**	32,389	24,997
2024년	55,190	-	55,190	843	추진중	843	32,389	**33,232**	**843**	추진중	추진중

주) 2024년은 8월말까지 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2)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2025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55,590	21,116	△34,474	△62.0
채소가격안정지원	55,190	20,716	△34,474	△62.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3) 2024년 예산에는 22,959백만원, 2025년 예산안에는 14,496백만원이 과거년도 미지급금으로 편성됨.

성되어야 하고, 민영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보험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농민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안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 보험료 지원 469,686*+ 과거 미지급금 14,496 * {('24년 예상보험료 1,025,250 × 주요품목 국고보험료 증가율 108.4%) - 수입안정보험 확대에 따른 수요감소분 172,000} × 국고지원비율 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따라서 수입안정보험은 저조한 가입률과 예산집행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및 농작물재해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사업과의 관계 정립 등 사업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함.

둘째, 수입안정보험의 본 사업으로의 전환 및 2,000억원 규모로 예산안이 편성된 점, 기재부의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의 법률적 근거로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재정지원)[44] 조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수입안정보험의 법률적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아 보임.

동법 제1조는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함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재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44)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의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1. **농작물·임산물 재해보험**: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2. **가축 재해보험**: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

자료: 국가종합법령센터

즉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뿐만 아니라 '시장가격하락' 으로 인한 수입감소도 보장해주는 "수입안정보험" 에 대한 내용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2021년 및 2024년 기재부의 보조사업연장평가에서도 수입안정보험의 법률적 근거미비를 지적한 점, 수입안정보험의 본 사업으로의 전환 및 2,000억원 예산 규모로 편성된 점,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차보전 기능과의 통합 운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기재부의 보조사업 연장평가 주요 내용]

○ ('21년) 본 사업은 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 또는 가격 하락으로 발생하는 수입 감소를 보험제도를 통해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일부 내역사업의 법률적 근거 부족, 사업 실적 부진,** 부정수급 관리의 미흡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사업 성과 및 효과성을 제시하는 지표 및 근거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

○ ('24년) 본 사업은 농가 소득보장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농업인·농업법인의 재해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농작물재해보험 미지급금 발생 예방을 위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수입안정보험 법적 근거 마련**, 보험계약의 정확성 관리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자료:농림축산식품부

10.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이차보전 규모 산정 방식 개선 필요

가. 개 요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41억 5,600만원(22.3%) 증액된 6,818억 7,800만원임.[45)]

[2025년도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557,722	681,878	124,156	22.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① 24,049,000백만원('25년 추정 대출평잔) × 이차율[기준금리(4.09%)-대출금리(0~3.0%)] + ② '23년 정산 미지급금 129,057백만원 + ③ 한우농가 상환유예 따른 이차보전액 6,143백만원 * ‘기준금리’ 는 이차보전 대상기간 중 농협(수협)에서 가장 많은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이며, ‘대출금리’ 는 대출할 때의 금리를 의미함[4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1)(농업정책관실)

46)「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3. **“기준금리“**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금융기관 자체자금 또는 조합 상호금융자금의 경우에는 이차보전 대상기간 중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준금리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 또는 전체조합의 전체 대출금잔액 산정 시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 등의 지침에 의한 저리대출금과 예·적금 담보대출금, 농업인 또는 공공기관에 특별히 저리로 대출한 대출금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차입한 자금인 경우에는 조달금리 (취급수수료 포함)
다.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금리 적용 시 금융기관 자체자금으로 산정한 금리와 농협은행 자체자금으로 산정한 금리가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한다.
(1) 금융기관 자체자금 금리가 농협은행 자체자금 금리보다 높은 경우 농협은행 자체자금으로 산정한 금리를 기준금리로 한다.
(2) 금융기관 자체자금 금리가 농협은행 자체자금 금리보다 낮은 경우 당해 금융기관 자체자금으로 산정한 금리를 기준금리로 한다.
4. “**대출금리“라 함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정책자금을 대출할 때의 금리**를 말한다.

나. 검토의견

매년 미지급금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차보전액 산정방식을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2025년 예산안의 주된 증액 사유는 2023년 농협에 대한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 1,290억 5,700만원을 편성한 것임.

최근 10년간의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의 미지급금 및 불용액 규모를 살펴보면, 해마다 미지급금과 불용액 발생 여부 및 그 규모는 다르나, 2022년에는 578억 7,000만원, 2023년에는 1,290억 5,7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음.

[연도별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의 미지급금과 불용액 발생 현황 및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A)	376,803	320,446	341,499	217,459	210,544	221,647	421,858	284,481	332,452	288,209	451,461
정산액 (B)	242,355	217,985	195,698	213,730	251,782	297,685	311,069	270,931	243,154	346,078	580,519
차이 (A-B)	134,448	102,461	145,801	3,729	△41,238	△76,038	110,789	13,550	89,298	△57,870	△129,05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차보전 사업과 다른 부처의 이차보전 사업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

이차보전에 대한 정의를 농림축산식품부(및 해양수산부)는 정책자금의 저리(低利) 운용을 통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인 반면, 다른 부처의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 금리(이차보전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하는 것임.

즉,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준금리를 설정하고, 농업인들이 농협의 대출상품을 이보다 2.0%p 정도 낮은 대출금리(고정금리, 통상 2.0~2.5%)[47]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농협의 손실액을 이차보전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및 국토교통부의 이차보전 사업은 별도의 기준금리를 설정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수취하는 변동금리를 대출금리로 설정하며, 이 변동금리에 지원금리(이차보전율)을 고정하여 이차보전하고 있음.

47)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대출이용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나, 신규대출 기준 90% 이상이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함.

[주요 부처별 이차보전 사업 운용 방식]

구분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국토부
이차보전 정의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저리(低利)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		실수요자가 정책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하는 것	
대출금리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대출할 때의 금리** * 고정금리는 통상 2.0~2.5% * 대출금리는 농협은행 가계담보대출 평균금리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양도성예금증서, 은행채 금리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	
기준금리	이차보전 대상기간 중 **농협/수협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 (단, 해수부의 경우, '24년도부터 농협은행과 수협은행간 조달금리차(0.56%P)를 반영하여 기준금리 설정)		**별도의 기준금리 정의 없음**	
신용도 적용 여부[48]	대출 금리에 대출 이용자의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고정금리로 대출 운용		대출 금리에 대출 이용자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대출 금리를 변동하여 적용하여 운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기준금리를 4.5%로 예상하여, 정부가 2.5%에 해당하는 손실보전(이차보전)을 하고, 농업인들에게는 고정금리 2%로 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지만, 실제 금리가 상승하여 기준금리가 5%가 되었을 때, 농업인들은 고정금리 2%로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는 0.5%p 더 많은 3%에 해당하는 손실보전(이차보전)을 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결국 당해연도 이차보전액 예산이 그 만큼 편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이 발생하게 됨.

그러나 다른 부처의 이차보전 상품의 경우, 예산편성 당시 금리를 4.5%로 예상하여, 정부는 2.5%에 해당하는 고정 이차보전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하고, 대출 이용자가 2%로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계획되었지만, 실제 금리가 상승하여 5%가 되었을 때, 정부는 이차보전율 2.5%를 고정하였으므로, 대출 이용자가 예산편성 당시보다 0.5%p 더 높은 2.5%로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구조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의 경우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예산 편성당시의 기준금리' 보다 '정산시의 기준금리' 가 높아 금리간 차이가 발생하였고, 고정금리로 旣대출된 이차액 비중이 커지면서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다고 함.

48) 신용도에 따른 대출 금리 차등화 여부에 대한 규정(지침)은 없고,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중임.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차보전 사업은 타 부처와 달리 기준금리 및 대출금리를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2022년 및 2023년도와 같이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상승할 경우 농협에 대한 이차보전 규모가 커지고 미지급금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예상보다 기준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차보전 예산의 불용액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되는 사업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차보전 방식은 적은 예산으로 재정융자와 동일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재정지출 축소가 가능하나, 결과적으로 원금 회수 없이 재정지출만 발생하게 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미지급금과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차보전액 산정방식을 재검토하여 재정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1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사업: 구상채권의 회수 노력 및 보증방식과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가. 개 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사업’ 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00억원(400%) 증액된 1,500억원임.[49)]

[2025년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	30,000	150,000	120,000	4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4) 30,000백만원 → (’25) 150,000백만원*
*’25년 말 기금운용배수 16.5배 수준 추정 (1,500억원 출연 시/ 보증잔액 181,480억원, 기본재산 10,998억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정부 출연금 지원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방안과 함께 구상채권의 회수 노력, 보증방식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최근 10년간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대위변제비율(’19년 2.0%→’23년 2.3%) 및 보증잔액(’19년 16조 1,117억원→’23년 17조 6,420억원), 운용배수(’19년 15.4배→’23년 16.8배)가 상승하였으며, ’23년은 정부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았음.

4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1120-437)(농업정책관실)

[최근 10년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운용현황]

(단위: 억원, 배)

구분	출연금			대위변제		보증 잔액	기본 재산	운용 배수
	정부	금융기관	합계	금액	비율			
'14	△5,000	2,129	△2,871	1,303	1.3%	101,471	24,513	4.1
'15	△1,000	1,237	237	1,544	1.4%	110,122	25,252	4.4
'16	△3,000	1,207	△1,793	1,473	1.2%	121,804	22,974	5.3
'17	△3,000	1,222	△1,778	2,092	1.6%	133,968	19,357	6.9
'18	△2,000	1,240	△760	2,776	1.9%	148,906	15,306	9.7
'19	△2,000	1,269	△731	3,265	2.0%	161,117	10,449	15.4
'20	1,000	1,386	2,386	3,073	1.9%	164,399	9,847	16.7
'21	1,300	1,833	3,133	3,021	1.9%	163,585	10,792	15.2
'22	1,300	1,971	3,271	2,904	1.7%	171,852	11,741	14.6
'23	-	2,118	2,039	4,074	2.3%	176,420	10,476	16.8

주) 운용배수: 보증잔액 / 기본재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시행령[50]에 따르면,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이며, '신용보증규정' [51]에는 보증총액한도의 적정한 수준을 12.5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9년 이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는 보증잔액 증가 및 기본재산 감소로 15.4배~16.8배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구상채권 회수규모는 2023년 711억원(실적), 2024년은 1,605억원(계획) 및 2025년 계획안은 1,062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5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보증의 한도) ①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1조의2(보증의 한도)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로 한다.

51) 「신용보증규정」
제12조(보증총액한도) ① 관리기관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총액 한도는 기금의 20배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증총액 한도의 적정한 수준을 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증총액한도의 적정한 수준은 12.5배로 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회수 규모]

① '23년 구상채권 회수규모
ㅇ 구상채권 원금* 665억원, 손해금** 46억원, 총 711억원 회수
* 회수가 불가능하여 구상채권 상각기준에 따라 상각한 특수채권 회수액 포함
** 구상채권 상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② '24, '25년 목표 규모
ㅇ '24년(계획) : 구상채권 원금 1,542억원, 손해금 63억원, 총 1,605억원
ㅇ '25년(계획안) : 구상채권 원금 1,023억원, 손해금 39억원, 총1,062억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운용배수를 결정하는 항목들의 산출방식에 대해, '기본재산'은 전년도 기본재산(자본)에 당년도 당기손익 추정액과 자본조정항목 추정액을 가감하여 산출하고, '보증잔액'은 보증종류별 전년도말 추정 보증잔액에 당해 연도 신규 및 상환되는 추정금액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구상채권 회수규모'는 전년도말 추정 구상채권잔액과 당해 연도 추정 대위변제 금액을 합산하고 과거 회수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대위변제'는 보증종류별 전년도말 추정 보증잔액에 추정 대위변제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음. 그리고 이렇게 산출되어 나오는 금액에 최근 3-4개년 평균 금액 및 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보증잔액, 구상채권 회수, 대위변제 등 규모산출 방식]

① **(기본재산)** 전년도 기본재산(자본)에 당년도 당기손익 추정액*과 자본조정항목 추정액**을 가감하여 산출 * 보증료 및 이자 수입 등 수입과 구상채권상각비 및 관리업무 등의 지출액 추정액 등 ** 금융기관출연금, 정부출연금, 유가증권평가손익 추정액 등 ② **(보증잔액)** 보증종류별* 전년도말 추정 보증잔액에 당해 연도 신규** 및 상환***되는 추정금액을 가감하여 산출('25년 예산안은 최근 3개년도 평균 금액 및 비율을 적용) * 일반보증 : 농림어업인 등의 영농림어업 활동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보증 우대보증 : 농어업 생산성 향상, 조기영농 정착 등을 위해 보증 조건을 우대 특례보증 : 재해, 부채대책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보증 조건을 우대 ** 과거년도 평균 순신규 보증액 + 갱신보증액(만기보증 × 과거년도 평균 갱신율) *** 전년도 보증잔액 × 과거 년도 상환 비율 ③ **(대위변제)** 보증종류별 전년도말 추정 보증잔액에 추정 대위변제율* 을 곱하여 산출('25년 예산안은 최근 3개년도 평균 비율을 적용) ④ **(구상채권 회수)** 전년도말 추정 구상채권잔액과 당해 연도 추정 대위변제 금액을 합산하고 과거 회수율*을 곱하여 산출('25년도 예산안은 최근 4개년도 평균 비율을 적용) * '21~'23년 회수율 하락에 따라 과거 4개년도로 추정하여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반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운용배수를 결정하는 기본재산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 ① 정부출연금의 회수('14년~'19년까지 6년간 농신보 여유 자금 1조 6천억원을 농특회계로 반환) ② 대위변제의 증가(금융비용이 큰 일반자금대출의 대위변제율 상승 등 농어업인에 대한 대위변제 지속 증가 등), ③ 구상채권 회수액 감소('21년: 1,051억원 → '22년: 874억원 → '23년: 711억원)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회수 규모]

① (정부출연금 회수) '14년~'19년까지 6년간 농신보 여유 자금 1조 6천억원을 농특회계로 반환 * ('14) △5,000억원, ('15) △1,000, ('16) △3,000, ('17) △3,000, ('18) △2,000, ('19) △2,000 ② (대위변제 증가) '19 : 791억원 → '20 : 3,073 → '21 : 3,021 → '22 : 2,904 → '23 : 4,074 * 대위변제율: '19 : 2.0% → '20 : 1.9%→ '21 : 1.9%→ '22 : 1.7%→ '23 : 2.3% - 고물가, 고금리 및 경기침체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일반자금대출의 대위변제('23년도 정책 : 1.3%, 일반 : 3.9%) -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 대위변제 지속 증가(개인 1.8%, 법인 6.4%)

- 유류비 등 경영비 상승 및 어획량 감소 등으로 수산분야 대위변제 지속 증가(농업 1.1%, 어업 4.2%)
③ (구상채권 회수액 감소) '19 : 791억원 → '20 : 885억원 → '21 : 1,051억원 → '22 : 874억원 → '23 : 711억원
-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경매 유찰 과다 및 낙찰가율 하락
- 법원경매 낙찰가율(%) : '21년(78.9) → '22년(77.5) → '23년(71.8)
- 실물경기 악화로 회생, 파산 등 추심금지채권 발생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대위변제 금액('19년 3,265억→'23년 4,074억원) 및 비율('19년 2.0%→'23년 2.3%)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상채권 회수 실적('21년 1,051억원→'23년 711억원)은 감소하고 있으나 회수하여야 할 구상채권 규모('24년 1,605억원 및 '25년 1,062억원)는 증가되고 있어, 기본재산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어려워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2025년 예산안에 전년 대비 1,200억원(400%) 증액된 1,50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출연금 지원 뿐만 아니라 구상채권의 회수 노력과 함께 보증방식 및 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비교]

(단위: 억원, 배, %)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농신보	보증잔액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순신규보증	39,180	38,531	29,668	26,101	35,389 *(25,588)	33,758 *(27,025)
	기본재산	15,306	10,449	9,847	10,792	11,741	10,476
	정부출연금	△2,000	△2,000	1,000	1,300	1,300	0
	운용배수	9.7	15.4	16.7	15.2	14.6	16.8
	대위변제(율)	2,776 (1.9)	3,265 (2.0)	3,073 (1.9)	3,021 (1.9)	2,904 (1.7)	4,074 (2.3)
신보	보증잔액	505,371	522,161	671,531	785,888	833,691	816,227
	순신규보증	112,792	118,100	176,818	135,778	123,806	121,388
	기본재산	50,909	53,377	81,922	88,791	104,238	112,442
	정부출연금	1,416	1,510	33,266	4,406	10,650	837
	운용배수	9.9	9.8	8.2	8.9	8.0	7.3
	대위변제(율)	19,134 (3.8)	12,616 (2.4)	12,136 (1.8)	10,995 (1.4)	10,790 (1.3)	20,227 (2.5)
기보	보증잔액	224,426	221,122	257,045	264,929	266,989	282,803
	순신규보증	52,465	48,480	78,208	49,276	42,638	60,957
	기본재산	16,761	16,751	21,504	29,625	34,215	35,341
	정부출연금	200	1,030	4,883	3,500	1,320	0
	운용배수	13.4	13.2	12.0	8.9	7.8	8.0
	대위변제(율)	8,164 (3.6)	7,959 (3.6)	6,420 (2.5)	4,906 (1.9)	4,946 (1.9)	9,596 (3.4)

주) *( )는 사료값 폭등으로 지원된 사료특례보증 제외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곡증권정리기금】

<총 괄>

12. 양곡증권정리기금 : 기금의 존치 여부 검토 필요

가. 개 요

‘양곡증권정리기금’ 은 「양곡관리법」제25조[52]에 근거하여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9,801억 9,200만원(△64.0%) 감액된 5,509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52) 「양곡관리법」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제25조의3(기금의 운용 · 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 · 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채의 상환
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20년~2025년 양곡정리기금 수입·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항목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안
수입	ㅇ 사업운용수입	1,428	496	1,202	3,317	287	287
	- 이자수입	1,428	496	1,202	3,317	287	287
	ㅇ 정부내부수입	1,235,186	195,455	493,150	993,402	1,511,094	530,902
	- 공자기금예수금	1,040,542	-	301,616	832,500	1,350,192	370,000
	- 일반회계전입금	194,644	195,455	191,534	160,902	160,902	160,902
	ㅇ 여유자금회수	30,653	29,636	46,308	59,542	19,715	19,715
수입 합계		1,267,267	225,587	540,660	1,056,261	1,531,096	550,904
지출	ㅇ 정부내부지출	1,237,631	179,279	481,118	1,018,579	1,531,096	524,901
	- 공자기금예수금원금상환	1,140,542	100,000	401,616	932,500	1,427,000	370,000
	- 공자기금예수금이자상환	97,089	79,279	79,502	86,079	104,096	154,901
	ㅇ 여유자금운용	29,636	46,308	59,542	37,682	-	26,003
지출 합계		1,267,267	225,587	540,660	1,056,261	1,531,096	550,90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목적인 양곡증권 부채와 차관양곡 원리금 상환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정부 내부거래의 투명성·효율성 측면에서 이 기금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양곡증권정리기금은 1999년 제정된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양곡관리사업 및 양곡관리비, 부채상환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었으나 2000년부터 양곡증권의 발행이 중단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로 통합 발행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양곡증권 원리금이 상환 완료되어 양곡증권이 최종 정리되었음.

이에 2024년 9월 현재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검토해보면, 매년 내부거래 수입(일반회계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및 내부거래 지출(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로만 구성되어 있음. 즉 이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중 상환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다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하거나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 상환하고 있음.

이 기금의 주요 기능인 양곡증권 부채와 차관양곡 원리금은 이미 상환되어, 기금의

역할을 모두 완료한 상황이고, 정부 내부거래의 통로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잔존부채 3조 7,949억원(2025년 계획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내부 거래의 투명성·효율성 측면에서 양곡증권정리기금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023년~2025년 양곡정리기금 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말 실적	2024년말 계획		2025년말 계획(B)	증감 (B-A)
		당초	수정(A)		
1. 유동자산	37,924	20,185	20,185	26,290	6,105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단기금융상품	37,682	19,898	19,898	26,003	6,105
○ 미수채권	242	287	287	287	-
2. 고정자산	-	-	-	-	-
(1) 운용자산	-	-	-	-	-
자산총계(가)	**37,924**	**20,185**	**20,185**	**26,290**	**6,105**
1. 유동부채	1,435,192	380,168	380,168	9,985	△370,183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1,427,000	370,000	370,000	-	△370,000
○ 기타유동부채	8,192	10,168	10,168	9,985	△183
2. 고정부채	2,444,658	3,424,850	3,424,850	**3,794,850**	370,000
○ 장기차입부채	2,444,658	3,424,850	3,424,850	**3,794,850**	370,000
부채합계(나)	**3,879,850**	**3,805,018**	**3,805,018**	**3,804,835**	**△183**
1. 자본금	-	-	-	-	-
2. 자본잉여금	-	-	-	-	-
3. 이익잉여금	1,355,670	1,412,763	1,412,763	1,419,051	6,288
4. 자본조성	△5,197,596	△5,197,596	△5,197,596	△5,197,596	-
자본합계(다)	△3,841,926	△3,784,833	△3,784,833	△3,778,545	6,288
자본 및 부채 총계	**37,924**	**20,185**	**20,185**	**26,290**	**6,10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지 출>

13.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예산집행률 개선방안 마련 및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로의 통합 검토 필요

가. 개 요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함)에 따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행되는 사업임.

이 사업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7조 및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등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되어 있음.[53]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세부 구성 현황]

공익기능 증진직불 사업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54]	소규모농가 직접직불금(정액)	0.1ha-0.5ha 이하 소규모농가에 정액 지급(‘24년 기준 130만원)
		면적 직접직불금(역진적)	0.5ha 초과 농가에 지역 및 면적에 따른 역진적 지급
	선택형 공익직접 지불[5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도	유기축산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도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 감소분 보전
		전략작물 직접지불제도[56]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시 지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예산정책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보고서(2024.7)” 참조

53)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기본직접지불제도”라 한다)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선택직접지불제도”라 한다)로 구성한다.

54)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834억 3,800만원(2.9%) 증액된 2조 9,536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음.[57]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의 계획액은 2020년 2조 3,610억원에서 2024년 2조 8,702억원, 2025년 계획안은 2조 9,536억원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비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0년 14.96%에서 2025년 15.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2027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비를 5.0조원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함.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의 기본형 직불(소규모농가 및 면적 직불금) 계획액은 2020년 2조 2,816억원에서 2025년 2조 6,335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선택형(친환경농업・축산・경관보전 및 전략작물 직불금)의 경우 2020년 794억원에서 2025년 3,201억원으로 증가하였음.

기본형 직불금이 전체 계획액 중 90%이상(2025년은 89.2%)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선택형 직불금의 비중(2020년 3.4%, 2024년 8.2%, 2025년 10.8%)이 높아지고 있음.

제7조(**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과 그 밖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55)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2.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 ·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 · 군수 · 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57)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공익기능증진직불제(1071-302)(농업정책관)

[2020년~2025년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 사업비 및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 대비 비중]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도 계획액	2021년도 계획액	2022년도 계획액	2023년도 계획액	2024년도 계획액	2025년도 계획안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예산+기금)	157,743	162,856	168,767	173,574	183,392	**187,496**
-공익기능증진 직불사업(비중)(B)	23,610 (14.96)	23,610 (14.49)	23,610 (13.98)	27,269 (15.71)	28,702 (15.65)	**29,536 (15.8)**
·기본형 직불(C) (C/B)	22,816 (96.6)	22,805 (96.6)	22,805 (96.6)	25,805 (94.6)	26,335 (91.8)	**26,335 (89.2)**
·선택형 직불(D) (D/B)	794 (3.4)	805 (3.4)	805 (3.4)	1,464 (5.4)	2,367 (8.2)	**3,201 (10.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첫째,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계획액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 매년 90%이상(2023년의 경우 89.2%)이 집행되고 있지만, 점차 집행률은 2020년 99.8%, 2022년 95.8%, 2023년 89.2%로 감소되고, 계획액의 불용률 또한 2020년 0.1%, 2022년 3.4%, 2023년 8.0%로 증가되고 있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2020년~2024년 8월까지의 집행액 및 집행률]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계획액	2021년 계획액	2022년 계획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8월 계획액	2025년 계획안
계획액(A)	2,360,984	2,360,984	2,360,984	2,726,884	2,870,184	2,953,622
집행액(B) (집행률)	2,358,736 (99.9)	2,339,968 (99.1)	2,303,728 (97.6)	2,508,129 (92.0)	12,904 (0.4)	-
실집행액(C) **(실집행률)**	2,355,432 **(99.8)**	2,306,947 **(97.7)**	2,262,452 **(95.8)**	2,433,224 **(89.2)**	12,274 (0.4)	-
불용액(D) **(불용률)**	2,248 **(0.1)**	21,016 **(0.9)**	57,256 **(3.4)**	218,755 **(8.0)**	-	-

주) 2024년은 사업절차 진행중으로, 지급대상자 확정 이후 집행 예정(11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기본형 직불금 뿐만 아니라 선택형 직불금의 실집행률 또한 감소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은 2020년 99.8%에서 2023년 91.3%, 친환경축산직불금은 2020년 77.0%에서 2023년 65.3%, 경관보전직불금은 2020년 98.2%에서 2023년 83.9%, 전략작물직불금은 2020년 99.3%에서 2023년 86.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등 예산집행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음.

[기본형 직불사업과 선택형 직불사업의 2020년~2024년 8월까지의 집행액 및 집행률]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집행액	2021년 집행액	2022년 집행액	2023년 집행액	2024년 8월 집행액	2025년 계획안
기본형	소계	2,278,756 **(99.8)**	2,339,968 **(97.7)**	2,228,457 **(95.8)**	2,369,601 **(89.4)**	-	2,633,487
선택형	친환경농업 **(실집행률)**	23,232 **(99.8)**	24,370 **(99.2)**	22,218 **(96.3)**	21,020 **(91.3)**	-	31,913
	친환경축산 **(실집행률)**	1,220 **(77.0)**	1,121 **(70.7)**	1,027 **(64.8)**	1,035 **(65.3)**	425 **(20.0)**	4,085
	경관보전 **(실집행률)**	8,884 **(98.2)**	9,144 **(98.1)**	8,601 **(86.9)**	8,474 **(83.9)**	11,812 **(70.2)**	16,830
	전략작물* **(실집행률)**	46,644 **(99.3)**	47,300 **(98.4)**	43,425 **(92.3)**	107,999 **(86.2)**	-	244,000
	탄소중립 **(실집행률)**	-	-	-	-	667 **(1.6)**	23,307
	소계	79,980	81,935	75,271	138,528	12,904	320,135

주 1) *2023년 전략작물제도로 개편

2) 2024년은 사업절차 진행중으로, 지급대상자 확정 이후 집행 예정(11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및 신청면적 감소, 이행점검 후 부정수급 적발 등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예산실집행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함. 특히 선택형 직불금의 경우 사업 기간 중 전업·폐업 등으로 친환경농업 중단, 인증 기준 미준수 적발에 따른 친환경 인증 취소등의 사유가 주요한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음.

기존 직불제 사업지원이 '쌀'이라는 특정 품목에 집중되면서 쌀의 공급과잉 및 타작물 재배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면적에 비례한 직불금 지급의 중소농에 대한 소득안정화 기여 미흡 및 친환경농업·경관개선·환경보전 및 공동체유지 등의 공익적 역할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된 현재의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선택직불제"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58]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7월 발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 중 기본형 직불의 경우 준수사항 이행을 통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도모를 위주로 하는 수동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반면, 선택형 직불의 경우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능동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수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공익직불제를 확대·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통한 농가지원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음.

또한 최근 발의된 다수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선택적 직불 사업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음.

[선택적 직불 사업의 다양화·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

개정 법률명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주요내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2112375)	선택직불제를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 탄소중립 직불제 명문화
	윤준병의원 (2122052)	공익직불제도의 효과적 추진 위해 다양한 선택직불제도 확충 필요하며, 탄소중립·가격보전·경영이양 직접직불제 추가
	이원택의원 (2123882)	사업 활성화 위해 시행령 규정사항인 전략작물직불제를 법률로 상향
	안호영의원 (2124432)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법률로 상향
	이원택의원 (220090)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적 측면의 작물 재배 활성화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 법으로 상향
	윤준병의원 (2201028)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직불제와 경축순환 직불제 도입이 필요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농에 대한 소득보전효과 개선과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축산직불 및 전략작물직불 등 선택형 직불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예산집행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의 신축성·탄력적인 운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의 통합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8) “공익직불제 미사용 예산 증가 이유 보니…” (농민신문, 2024.7.) 및 국회예산정책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보고서(2024.7)”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은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하 ‘공익직불기금’이라 함)에 편성되어 있음.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르면 공익직불기금의 재원[59]은 정부출연금, 「양곡관리법」에 따른 수입이익금, 차입금 및 기금운용수익금,「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등임.

기금의 용도[60]는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그 밖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공익직불기금의 수입과 지출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수입항목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단일 항목이 전체 수입의 96%~99%(2020년-2025년)를 구성하고 있으며[61], 기타 재원으로부터의 수입은 매우 미미함. 또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이 2020년 2조 6,234억원에서 2025년 2조 9,87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지출항목에서 또한 ‘공익기능증진직불’ 단일 사업이 2020년 2조 3,600억 8,400만원 규모에서 2025년 2조 9,536억 2,200만원 규모로 기금전체 사업비의 89%~95%를 매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직불제이행점검 및 사업관리비가 5% 내외를 구성하고 있음.

---

5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6.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및 과태료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6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61) 2023년 한 해에 일시적으로 42억원의 법정부담금(「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이 반영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및 2025년은 수입계획이 없다고 함.

[농업농촌공익증진직접지불기금의 수입 및 지출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항목	2020년도 계획액	2021년도 계획액	2022년도 계획액	2023년도 계획액	2024년도 계획액	2025년도 예산안
수입	기타재산수입	45 (-)	500 (0.02)	500 (0.02)	800 (0.03)	800 (0.03)	3,076 (0.10)
	과태료	4,000 (0.15)	2,000 (0.08)	2,000 (0.08)	2,000 (0.07)	2,000 (0.07)	2,000 (0.06)
	법정부담금	- (-)	- (-)	- (-)	4,200 (0.15)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	- (-)	1,990 (0.08)	1,990 (0.07)	1,990 (0.07)	1,990 (0.06)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	22,800 (0.94)	23,885 (0.99)	26,734 (0.94)	27,396 (0.91)	110,182 (3.55)
	특별회계전입금	**2,627,383 (99.85)**	**2,391,906 (98.95)**	**2,393,811 (98.83)**	**2,821,872 (98.75)**	**2,987,213 (98.93)**	**2,987,213 (96.22)**
	기금전입금	- (-)	- (-)	- (-)	- (-)	- (-)	- (-)
합계		**2,631,428**	**2,417,206**	**2,422,186**	**2,857,596**	**3,019,399**	**3,104,461**
지출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238,400 (0.09)	- (-)	- (-)	- (-)	- (-)	- (-)
	직불제이행점검	19,566 (0.74)	19,737 (0.82)	21,603 (0.89)	25,054 (0.88)	28,421 (0.94)	29,987 (0.97)
	공익기능증진직불	**2,360,984 (89.72)**	**2,360,984 (97.67)**	**2,360,984 (97.47)**	**2,726,884 (95.43)**	**2,870,184 (95.06)**	**2,953,622 (95.14)**
	사업관리비	11,132 (0.42)	11,232 (0.46)	11,471 (0.47)	11,465 (0.40)	10,377 (0.34)	11,253 (0.36)
	인건비	173 (0.01)	198 (0.01)	224 (0.01)	228 (0.01)	234 (0.01)	242 (0.01)
	기타경비	2 (-)	2 (-)	2 (-)	1 (-)	1 (-)	1 (-)
	예수원금상환	- (-)	- (-)	- (-)	65,400 (2.29)	- (-)	- (-)
	예수이자상환	1,171 (0.04)	1,168 (0.05)	1,168 (0.05)	1,168 (0.04)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	23,885 (0.99)	26,734 (1.10)	27,396 (0.96)	110,182 (3.65)	109,356 (3.5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전체 기금지출액의 89%~95%를 차지하고 있는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 중 고정적인 지출에 해당하는 기본형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4.8%~93.8%인 점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의 특징인 신축성·탄력성[62]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연도별 기본형 공익직불 계획액 및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익직불기금 계획액(A)	2,651,121	2,417,206	2,422,186	2,857,596	3,019,399	3,104,461
기본형 공익직불 계획액(B)	2,280,487	2,280,487	2,280,487	2,580,487	2,633,487	2,633,487
B/A	86.0	93.8	92.0	82.9	87.2	84.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즉, 현행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이 시작된 2020년부터 이 기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관련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므로, 현재의 수입재원구조 상황하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액시켜야 하는 상황임.

또한 이 기금에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 이외에 다른 주요사업은 편성되지 않고 있으며, 지출의 대부분을 고정지출 사업에 지출하는 이 기금의 신축성 운용이 용이하지 않는 등의 측면에서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의 통합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가 2021년 및 2024년 5월 발표한 기금존치평가에서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및 변동성이 크지 않은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 등을 적시하며, 자체수입 증가방안 강구 및 신규수입재원 마련 등 재원구조의 다변화 필요성과 이 사업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조건부 존치로 평가결과를 제시하였음.

62)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주요 내용]

구분	2021년	2024년
평가결과	**조건부 존치**	**조건부 존치**
	・본 기금의 재원은 농특회계 전입금이 대부분으로 자체수입 증가 방안 및 신규 수입원 마련 등 재원구조의 다변화 필요 ・기금으로서의 유효성에 대한 관련 부처 간 협의는 필요해 보이지만, '19년 법 개정에 따른 신규 기금으로 추진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존치를 판정	・기금의 설치목적 중 하나인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기준 및 방식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제도개선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 일정 수준의 자체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 ・일정수준의 자체수입원 확보가 어렵다면 기금은 폐지하고 사업은 농특회계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지 출>

14. 피해보전직불 사업: 계획안 조정 검토 및 사업일몰 이후 대책마련 필요

가. 개 요

‘피해보전직불사업’ 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량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63]하는 것으로, 2025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64억 6,600만원 증액된 218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64]

[2025년도 피해보전직불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계획액 (A)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B-A)/A
피해보전직불	5,400	21,866	16,466	304.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피해보전직불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24년 추정액(43,732백만원)의 50% ⇒ 21,866백만원
’24년 추정액 43,732백만원의 내역
- 한우 : 285,608T× 413원/kg× 29.3%= 34,561백만원
- 한우송아지 : 275,595원/마리×78,763마리×37.9%= 8,227백만원
- 육우 : 25,555T× 126원/kg× 29.3%= 943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피해보전직불(1072-392)(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나. 검토의견

최근 3년간의 사업비 집행률 저조 및 사업의 예비비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계획안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2026년 말 일몰 이후 농어업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 사업은 수입피해모니터링 품목 식량분야 11개, 축산분야 9개, 원예특작분야 17개, 임업분야 5개 등 총 42개 품목에 대해 피해보전직불의 수급요건 3가지(국내산 가격이 평년치의 90% 이하로 하락할 것, 전체 수입량이 평년치 보다 많을 것,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을 것 등)[65]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예비비 성격의 재원임.

[수입피해모니터링 품목 42개]

구분	구체적 품목
식량분야(11개 분야)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축산분야(9개 분야)	한우, 육우, 송아지가 해당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원예특작분야(17개 분야)	참깨, 체리, 키위, 시설재배와 노지재배되는 만감류등의 감귤, 노지재배와 시설재배되는 포도,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임업분야(5개 분야)	호두와 밤, 잣, 은행 대추

주 1) 2024년 8월 기준
2) 품목은 매년 변경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재구성

6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1.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2.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고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 해당 연도 총수입량과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하고 기준총수입량과 기준수입량은 연간 기준총수입량과 기준수입량에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피해보전직불의 수급요건]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 ○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 사업의 최근 3년간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22년 예산액 200억원은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2023년 예산액 180억원 중 수급조건을 충족한 생강 1개 품목에 대해 3억 600만원만이 집행(집행률 1.7%)되었으며, 2024년 예산액 54억원 중 8월까지 행정비용 3억 2,600만원만이 집행되었음.

[피해보전직불 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년	20,000	-	-	-	-	20,000
2023년	18,000	332	332	306	-	26
2024년	5,400	326	326	-	-	-

주 1) 2022년은 피해보전직불 지급요건 충족품목 없음 불용처리
2) 2023년은 피해보전직불 지급요건 충족품목: 생강 1개로 지원금액 적음
3) 2024년은 8월말까지 실적
4) 2024년은 직불금 지급규모 10월 확정,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며 8월 말 기준 각 지자체에 행정비 배정된 상태(현지조사·이의신청 관련 심사위원회 비용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보전직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없어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이렇게 매년 사업비의 대부분이 미집행 및 불용처리 되고 있는 점, 수급요건 발동 시 지급되는 예비비 성격의 사업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2025년 계획안 218억원은 과다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계획안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피해보전직불 사업은 10년간 지원되는 한시사업이므로, 2026년 말까지 시행되고 일몰될 예정[66]인데, 재정적 지원은 종료되지만 농수산물의 수입 확대로 인한 농어업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66)「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연례적 사업진행 지연 및 예산집행률 저조 사업의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의 많은 사업들이 민간경상보조(320목) 또는 지방지차단체보조(330목)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연례적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다수 있음.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의 최근년도의 예산집행현황 및 사업진행 지연 사유를 살펴보고,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 검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함.

나. 검토의견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을 당해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하고, 편성된 사업비가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및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실집행 부진 사유에 대하여 부지확보, 인허가, 시공계약, 건축물 시공 등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공사 과정에서 사업지 주변 민원 발생으로 인한 주민 설득 및 인허가 보완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 포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지확보, 사전절차이행 등 보조사업 수행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에 반영하여 추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집행 측면에서는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부지확보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교부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을 당해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하고, 편성된 사업비가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및 사업의 체계적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하에서 논의하는 사업들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공정률이 낮은 사업들로서, 예산안(계획안)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농기계를 실증할 수 있는 현장 실증단지 조성과 실증데이터 분석실 및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76억 2,600만원 증액(증가률 811.3%)된 85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67]

[2025년도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940	8,566	7,626	811.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설계비(기본계획, 실시설계): 3,518백만원×국비 67% = 2,375백만원
○ 시설부대경비(감리비, 영향평가, 운영비 등): 2,789백만원×국비 67% = 1,869백만원
○ 공사비(부지조성, 건축, 토목 등): 6,478백만원×국비 67% = 4,34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의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예산액 19억 2,700만원 중 4억 1,700만원이 집행(집행률 21.6%)되었으며, 2024년 예산액 9억 4,000만원이 8월 말까지 전액 미집행되었음.

예산집행률 저조사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예산 비목변경(2023년) 및 사업시행주체・지역변경(김제시, 2023년), 총사업비 조정 관련 기획재정부 협의(2024년) 등으로 설명함.

6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1067-333)(농식품혁신정책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927	1,927	1,927	417	1,510	-
2024년 8월말	940	940	940	-	-	-

주) 2024년은 8월말까지 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 사업의 경우 ① 2024년 9월 현재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이고, ② 총사업비 협의 이후에도,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실시설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가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③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에 따르면, 대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공사비가 반영되어야 하고, ④ 2023년으로부터의 이월된 사업비 및 2024년 8월까지 예산액 전액 미집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4년 예산편성된 설계비 및 시설부대경비 9억 4,000만원은 대부분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2025년 예산안 중 공사비 일부를 조정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 당초 계획 및 현재 추진 현황(2024.9.)]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예산	1,927백만원	940백만원	8,566백만원	37,050백만원	24,717백만원
당초 계획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설계 용역 추진	기본계획 수립/측량,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토목·건축 설계, 감리용역 발주	토목·건축 설계 완료 및 공사 발주/ 기계장비 설계 발주	토목·건축·기계 장비 구축 추진	준공
추진 현황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23.11)	기본계획 수립/측량,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동물용의료기기산업화 지원센터구축사업

내역사업인 **'동물용의료기기산업화 지원센터구축사업'**(경북 경산)은 국내 동물용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품 개발, 생산 인프라 구축, 전문기업 성장 등을 지원하는 것임.[68]

이 사업의 총사업기간은 2024~2026년, 총사업비는 140억원이며,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8억 7,300만원 증액(1,070.2%)된 20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동물용의료기기산업화 지원센터구축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6,036	13,725	7,789	127.4
	동물용의료기기산업화 지원센터구축	175	2,048	1,873	1,070.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료기기산업화 지원센터구축사업 세부내역]

○ 동물용의료기기산업화 지원센터구축(경북 경산) 2,048백만원
-1개소×13,650백만원×국비 보조율 50%×1년차 30%
* 전체사업비(국비) 6,825백만원 1년차 2,048백만원(30%), 2년차 4,778백만원(7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료기기산업화 지원센터구축사업의 2024년 9월까지의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1억 7,5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음.

[동물용의료기기산업화 지원센터구축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4년 9월 말	동물용의료기기 산업화지원센터구축	175	175	175	-	-	-

주) 2024년은 9월 말까지 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미집행 사유가 지방비 미확보이며, 2024년 9월 기준

6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3940-349)(농식품혁신정책관, 방역정책국)

해당 지방자치단체(경북 경산)가 이 사업의 진행을 포기하였다고 설명함. 이에 동물용 의료기기산업화 지원센터구축사업의 2025년 예산안 20억 4,800만원의 전액 삭감이 필요함.

(3)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5,200원 증액(5.9%)된 44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69]

[2025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계정)	4,237	4,489	252	5.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14개소 × 1,069백만원 × 국비보조율 30% = 4,489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액 50억원 중 14억 700만원만이 집행(집행률 28.2%)되었고, 2023년 예산액 50억 7,100만원 중 33억 2,000만원이 집행(집행률 65.5%)되었음. 2024년 예산액 42억 3,700만원 중 9월까지의 집행액은 11억 7,100만원(집행률 27.6%)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년	5,000	4,707	4,707	1,407	3,295	5
2023년	5,071	5,071	5,071	3,320	1,296	455
2024년 9월말	4,237	4,237	4,237	1,171		

주 1) 2022년까지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
2) 2023년부터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
3) 2024년은 세종지역 사업자 1개소 선정됨에 따라 지특회계 세종계정으로 분리
4) 2024년은 9월 말까지 집행액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친환경농업기반구축(2274-301)(농식품혁신정책관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포기, 사업부지 관련 민원 및 소송, 지방비 미확보 등을 사업지연 사유로 설명하고 있고, 실제 2024년 사업비를 교부받은 각 지자체별 2024년 9월 기준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예산 교부액 대비 실집행 현황이 저조한 측면이 있음.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므로 국비가 다음연도에는 동일한 지역으로 지원되지 않지만, 연례적으로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고려했을 때, 2025년 신규 사업지구 선정 개소수를 조정하여 사업준비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을 충실히 진행할 수 있는 지자체를 엄격하게 선별하여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20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예산액의 지방자치단체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2024년 예산액	2024년 9월 기준 실집행액
경기도	600	217
충청북도	382	-
충청남도	756	93
전북특별자치도	249	158
전라남도	2,250	703
합계	4,237	1,171

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차별은 해당사항 없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사업

내역사업인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사업’**은 무병종묘 등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 및 장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억 5,000만원 감액(△10.0%)된 4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70][71]

[2025년도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계획액(A)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종자산업기반구축	10,296	9,846	△450	△4.4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4,500	4,050	△450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4,050백만원(1,000백만원×지자체보조 50%(일부 지역 30%)×8개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사업의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액 64억 8,900만원 중 34억 2,100만원만이 집행(집행률 52.7%)되었고, 2023년 예산액 50억원 중 38억 3,600만원이 집행(집행률 76.2%)되었음. 2024년 예산액 45억원 중 9월까지의 집행액은 7억 6,700만원(집행률 17.0%)임.

\

7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종자산업기반구축(2261-322)(농식품혁신정책관)

71) 씨감자, 고구마종순, 약용작물, 과수묘목, 마늘종구 등 12개 작물을 대상으로 종자생산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하우스, 건조시설, 정선시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등)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 가공 · 유통 관련 시설 · 장비 등 지원하는 사업임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사업 계획액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시행주체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년	6,489	6,489	6,489	6,489	6,489	3,421	3,060	8
2023년	5,000	5,000	5,000	5,000	5,000	3,836	1,139	25
2024년 9월말	4,500	4,500	4,500	2,770	2,770	767	-	-

주) 2024년은 9월 말까지 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미확보, 인허가·실시설계·입찰 등의 행정절차 등을 사업지연 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2024년 8월 현재 각 지자체별 예산집행률 또한 부진하므로, 2025년 계획안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72)]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사업 2024년 계획액 지방자치단체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2024년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강원	653	653	653	402	402	-	-	-
충북	1,670	1,670	1,670	1,028	1,028	143	-	-
전남	570	570	570	351	351	6	-	-
경북	450	450	450	277	277	-	-	-
경남	617	617	617	380	380	-	-	-
제주	540	540	540	332	332	47	-	-
합계	**4,500**	**4,500**	**4,500**	**2,770**	**2,770**	**196**	-	-

주) 2024년은 8월 말까지 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72) 기재부의 보조사업 연장평가('22) 결과 우수종묘증식보급사업의 실집행이 저조하므로, 사업의 일정수준 감축 필요성 의견 제시됨.

(5)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은 원예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용수, 전기, 부지정지, 도로 등) 지원을 통해 노후·영세한 재배시설을 이전·집적화하거나, 신규로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억 1,600만원 감액(△47.4%)된 31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73]

[2025년도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5,935	3,119	△2,816	△47.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3,119백만원)
- 1년차 신규 : 20ha×500백만원×70%×10%*=700백만원
- 2년차 계속 : 9.8ha×500백만원×70%×70%=2,419백만원

*2025년 신규사업부터 연부율 조정(기존 : 1년차 30%, 2년차 70% → 변경 : 1년차 10%, 2년차 30%, 3년차 6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의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액 32억 7,300만원 중 11억 5,600만원만이 집행(집행률 35.3%)되었고, 2023년 예산액 59억원 3,500만원 중 19억 8,800만원이 집행(집행률 33.5%)되었음. 2024년 예산액 59억 3,500만원 중 8월까지의 집행액은 4억 2,800만원(집행률 7.2%)에 불과함.

7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2230-370)(유통소비정책관)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년	3,273	3,029	3,029	3,029	3,029	1,156	2,223	-
2023년	5,935	5,935	5,935	5,935	5,935	1,988	6,170	-
2024년 8월말	5,935	4,748	4,748	3,960	3,960	428	-	-
-경남 창원	1,470	1,470	1,470	1,470	1,470	328	-	-
-전북 무주	2,032	1,332	1,332	1,332	1,332	-	-	-
-전남 신안	1,396	973	973	973	973	-	-	-
-전남 고흥	1,037	973	973	185	185	100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미확보 및 설계발주 지연, 관계기관간 업무조율 등을 사업지연 사유로 설명하고 있고, 이에 2025년 신규대상지부터는 연부율을 조정(기존 : 1년차 30%, 2년차 70% → 변경 : 1년차 10%, 2년차 30%, 3년차 60%)로 하였다고 함.

그러나 스마트원예단지의 과거 준공현황을 살펴보면, ① 1차년도부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 ②이로 인해 사업 집행과정에서 설계변경, 기반조성 공사 지연 등으로 당초계획보다 1-2년 지연되고 있는 점, 및 ③ 2025년 2년차 사업대상지인 전남 고흥의 경우 예산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2024년 9월 기준 아직 설계 추진 중임.

또한, ④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는 지적(2022년 결산), 기재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실제 사업진척 정도에 따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2022.5, 사업방식 변경),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사업의 성과지표가 부적정하며 사업성과 제고 노력 및 제도개선 실적이 필요하다는 지적(2023.4. 미흡) 등을 예산안 심사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업 준비가 충분한 지자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기존 대상지 등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 준공 및 추진 현황]

사업 대상지구	총사업비(백만원)	당초계획	추진현황
충남 부여	7,000	'17~'18	'20 준공
경기고양(원당)	3,220	'19~'20	'20 준공
강원 평창	3,780	'19~'20	'23 준공
경북 포항	2,464	'20~'21	'22 준공
전북 고창	4,302	'20~'21	'22 준공
경기 고양(주교)	1,873	'21~'22	'22 준공
경북 성주	2,100	'22~'23	'24 준공
충남 당진	4,291	'22~'23	'24.1 착공, '24.12 준공예정
경남 창원	2,100	'23~'24	'23.12 착공, '24.12 준공예정
전남 신안	1,995	'23~'24	'24.4 착공, '24.12 준공예정
전북 무주	2,903	'23~'24	'24.9~10월 착공, '25 상반기 준공예정
전남 고흥	3,456	'24~'25	세부설계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원예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원예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추비가림재배시설, 특용작물생산시설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2억 7,600만원 감액(△24.3%)된 70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74]

[2025년도 원예시설현대화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계획액(A)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원예시설현대화 사업	9,349	7,073	△2,276	△24.3
고추비가림재배시설	2,079	2,079	-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7,270	4,994	△2,276	△31.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시설현대화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 42ha × 250백만원 × 국비 20% = 2,079백만원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 (특용작물(버섯 등)시설현대화) 노후재배사개보수 80동 × 60백만원 × 국비 20% + 노후기자재교체 76동 × 30백만원 × 국비 20% = 1,414백만원

·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123개소 × 50백만원 × 국비 20% = 1,230백만원

· (버섯배지관리센터) 1개소 × 5,000백만원 × 국비 50% × 40%(2년차) = 1,000백만원

·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1개소 × 6,000백만원 × 국비 50% × 45%(3년차) = 1,35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시설현대화사업(고추비가림 재배시설+특용작물시설 현대화)의 예산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이월액) 165억 2,800만원(34억 7,500만원 + 130억 5,300만원) 중 75억 8,800만원만이 집행(집행률 45.9%)되었고, 2023년 예산현액 198억 400만원 중 98억 6,000만원이 집행(집행률 49.8%)되었음. 2024년 예산현액 158억 6,200원 중 8월까지의 집행액은 28억 4,500만원(집행률 17.9%)에 불과함.

7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원예시설현대화사업(3034-350)(유통소비정책관)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계획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3,300	3,300	-	-	3,300	175	3,475	1,944	488	1,043
	특용작물시설현대화	11,540	10,340	-	1,200	10,340	2,713	13,053	5,644	6,443	966
	합 계	14,840	13,640	-	1,200	13,640	2,888	16,528	7,588	6,931	2,009
2023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2,970	2,970	-	-	2,970	488	3,458	1,917	573	968
	특용작물시설현대화	9,903	9,903	-	-	9,903	6,443	16,346	7,943	6,938	1,465
	합 계	12,873	12,873	-	-	12,873	6,931	19,804	9,860	7,511	2,433
2024년 8월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2,079	1,725	-	-	1,725	573	2,298	1,003	-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7,270	6,626	-	-	6,626	6,938	13,564	1,842	-	-
	합 계	9,349	8,351	-	-	8,351	7,511	15,862	2,845	-	-

주) 2024년은 8월말까지 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 유찰, 농가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 포기 등을 사업지연 사유로 설명하고 있으나, 연례적인 사업진행 부진 및 2024년 예산집행실적, 사업추진 현황 등을 검토하여 2025년 계획안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사업

내역사업인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사업’**은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공동이용시설을 에너지 절감형으로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농촌 마을 단위의 RE100[75]을 실증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00만원 증액(증가률 0.4%)된 27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76]

[2025년도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2,816	3,128	312	11.1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2,766	2,778	12	0.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농업농촌RE100실증지원사업(330-03): 2,778백만원

-마을발전소: 1,562백만원

· 976백만원×4개소×국비 50%×2년차 80%

-농업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720백만원

· 450백만원×4개소×국비 50%×2년차 80%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496백만원

· 310백만원×4개소×국비 50%×2년차 8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사업의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지자체 교부액 34억 7,200만원 중 8억 6,800만원이 집행(집행률 25.0%)되었고, 2024년 예산액 27억 6,600원은 8월까지 전액 미집행되었고 2025년도로 이월될 예정임.

75)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하거나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는 것을 의미

7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2240-401)(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년	1,800	1,800	1,800	961	1,600	961	639	-
2023년	3,672	3,672	3,672	668	3,472	868	2,804	-
2024년 8월말	2,766	1,236	1,436	-	1,286	-	2,766	-

주 1) 2022년은 지자체자본보조 1,600백만원, 컨설팅(민간경상보조) 200백만원으로 구성
2) 2023년은 지자체자본보조 3,472백만원, 컨설팅(민간경상보조) 200백만원으로 구성
3) 2024년은 지자체자본보조 2,566백만원, 컨설팅(민간경상보조) 200백만원으로 구성
4) 2024년은 8월말까지 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의 출발지점인 마을법인의 설립에 마을주민들 간의 의견수렴에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되었고, 전력계통 여유 용량 소진 및 사업자 선정 지연 등도 주요한 사업진행 미진 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이 사업은 국회 예결위 및 상임위에서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및 국고보조금 교부율 조정 필요(예결위, 2022년), RE100 실증지원 사업의 수요 부족 및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사업재검토 필요(예결위, 2023년), 사업관리 강화,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 방식 개선 필요(상임위, 2023년) 등의 지적을 받았음.

또한, 기재부의 보조사업연장평가에서도 내역사업인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10억원)' 의 2024년말 폐지로 세부사업인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30억원)의 2025년 예산은 높은 수준으로 감축이 필요하다는 지적 및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등 효과성 제고 노력이 필요(2022년, 보조사업연장평가)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도 성과목표치 부적정 및 집행률 부진(2022년, 2023년 미흡) 등의 지적이 적시되었음.

이에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사업의 연례적인 예산집행실적 부진 및 2024년 예산액의 2025년 이월예정 등을 고려할 때 2025년 예산안 조정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77]

77)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2025년 사업추진 대상자를 선정완료한 점을 고려할 때, 2025년 예산안 조정과 함께 연부율 조정(1년차 20%, 2년차 20%, 3년차 60%) 또한 필요해보임.

(8)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내역사업인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교육·체험·소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5억 5,000만원 감액(△62.3%)된 2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78)]

[2025년도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식품산업인프라강화사업	26,245	20,510	△5,735	△21.9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조성	7,300	2,750	△4,550	△62.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2년차 200백만원, 3년차 1,700백만원, 4년차 850백만원

- 1개소×400백만원×국비50%(2년차, 전남) + 1개소×3,400백만원×국비50%(3년차, 경북) + 1개소×1,700백만원×국비50%(4년차, 경남*)

* 건축비 연부율 조정을 반영하여 경남은 ’25년 건축비로 850백만원만 지원

(’24) 2,550백만원 : 2,550백만원 : 3,400백만원 → (’25안) 1,700백만원 : 1,700백만원 : 5,10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의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액 120억 8,400만원 중 60억 3,600만원이 집행(집행률 49.9%)되었고, 2023년 예산액 113억원 중 54억 9,400만원이 집행(집행률 48.6%)되었음. 2024년 예산액 73억원 중 8월까지 3억 4,300만원이 집행(집행률 4.7%)되었음.

7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식품산업인프라강화사업(2832-380)(식품산업정책관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2022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충북	1,385	1,385	1,385	1,385	-	-
전남	2,799	2,799	2,799	2,799	-	-
경기	4,000	4,000	4,000	117	4,383	-
전북	3,400	3,400	3,400	1,513	4,651	-
충남	200	200	200	154	200	-
경남	300	300	300	67	233	-
합계	**12,084**	**12,084**	**12,084**	**6,036**	**9,46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단위: 백만원)

지역	2023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경기	4,000	4,000	4,000	1,010	7,373	-
전북	2,550	2,550	2,550	3,673	3,528	-
충남	4,250	4,250	4,250	602	3,848	-
경남	200	200	200	41	392	-
경북	300	300	300	168	132	-
합계	**11,300**	**11,300**	**11,300**	**5,494**	**15,27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단위: 백만원)

지역	2024년 8월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경기	-	-	-	3,170	-	-
전북	-	-	-	2,151	-	-
충남	4,250	2,500	2,500	**119**	-	-
경남	2,550	2,550	2,550	**146**	-	-
경북	200	200	200	**78**	-	-
전남	300	300	300	**-**	-	-
합계	7,300	5,550	5,550	5,664	-	-

주 1) 2024년은 8월말까지 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설계 확정 전 여러 법정 절차 등의 이행기간 소요, 인건비 상승 및 레미콘 업체 파업 등으로 인한 공사 순연, 시행계획 용역 발주 전 사전

행정절차 소요 등으로 사업비 이월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여 2025년 예산안에는 연부율을 조정하여 일부 감액편성하였다고 함.

그러나 사업비 지원을 받은 지역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재이월된 사업비가 당해연도가 되어서야 집행소요가 완료되는 등(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2022년에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43억 8,300만원이나 2023년 집행액은 이보다 적은 10억 1,000만원이고, 2024년이 되어서야 31억 7,000만원이 집행되는 등 2022년에 발생한 이월액 소요가 완료됨) 사업진행 및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9) 김치원료 공급단지구축 및 절임염수재활용 설비구축사업

내내역사업인 김치원료 공급단지구축사업 및 절임염수재활용 설비구축사업(2024년 신규사업)은 국산김치 보급확대 및 소비촉진 사업확대 등을 위해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절임염수재활용 설비구축보급지원을 하는 것임.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의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7억 2,000만원 감액(△36.9%)된 46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절임염수재활용 설비구축보급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5억원이 편성되었음.[79)]

[2025년도 김치원료 공급단지구축 및 절임염수재활용 설비구축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18,476	15,610	△2,866	△15.5
김치산업육성	8,860	8,860	-	-
김치원료공급단지구축	7,360	4,640	△2,720	△36.9
절임염수재활용설비구축	1,500	1,500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김치원료 공급단지구축 및 절임염수재활용 설비구축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김치원료공급단지 : 29,000백만원x2개소x40%x4년차(15%) +29,000백만원x1개소x40%x2년차(10%)=4,640백만원
○ 절임염수재활용설비보급사업 : 20개소×250백만원×30%=1,50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김치원료 공급단지구축 및 절임염수재활용 설비구축사업의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의 2022년 예산액 11억 6,000만원 중 2,200만원이 집행(집행률 1.9%)되었고, 2023년 예산액 58억원 중 9억 4,400만원이 집행(집행률 16.3%)되었으며, 2024년 예산액 88억 6,000만원이 8월까지 전액 미집행되었음.

2024년 신규사업인 절염염수재활용 설비구축사업의 예산액 15억원 또한 8월까지 전액 미집행되었음.

7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2832-310)(식품산업정책관실)

[김치원료 공급단지구축 및 절임염수재활용 설비구축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년	김치원료공급단지구축	1,160	1,160	1,160	22	22	22	1,138	0
2023년	김치원료공급단지구축	5,800	5,800	5,800	944	944	944	5,994	0
2024년 8월말	김치원료공급단지구축	8,860	0	0	0	0	0	-	-
	절임염수재활용설비구축	1,500	834	834	0	0	0	-	-

주) 2024년은 8월까지의 집행액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행정정차 지연 및 설계업체 재선정, 사업부지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지연 및 예산집행이 미진하였다고 설명하며, 연부율 조정(기존 : 1년차 5%, 2년차 25%, 3년차 30%, 4년차 40% → 변경 : 1년차 5%, 2년차 25%, 3년차 30%, 4년차 15%, 5년차 25%) 및 사업기간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특히 김치원료 공급단지구축사업은 지난 2022년도부터 이월된 사업비가 2024년 8월말까지도 소진되고 있지 못하며, 2024년 예산액의 전액 미집행 상황 고려 시 2025년 예산안의 편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촌진흥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수입은 147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3.9%) 감소함.[1)]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53	147	△6	△3.9
총수입	153	147	△6	△3.9

문의 : 이유미 예산결산조사관 youme0803@assembly.go.kr (02-6788-568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지출은 1조 616억원으로 전년 대비 358억원(△3.3%) 감소함.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0,974	10,616	△358	△3.3
총지출	10,974	10,616	△358	△3.3

나. 예산안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7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3.9%) 감소함.

[2025년도 농촌진흥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17	120	3	2.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1	11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5	16	△9	△36.0
합 계	153	147	△6	△3.9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조 616억원으로 전년 대비 358억원(△3.3%) 감소함.

[2025년도 농촌진흥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0,046	9,409	△637	△6.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75	69	△6	△8.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853	1,138	285	33.4
합 계	10,974	10,616	△358	△3.3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농촌진흥청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8개(723억 57백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중점관리병해충선제대응및피해경감기술실용화(R&D)’ 사업은 문제 병해충 피해경감 기술의 현장 실용화와 중점관리 병해충의 선제 대응 기반 기술 확보 등을 통한 국가 병해충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79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원예작물수급안정을위한이상기상대응기술고도화(R&D)’ 사업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피해경감 기술을 개발하여 주요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60억원이 편성되었음.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분리 이관된 ‘신기술보급사업(보조, 지원지원)’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389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농촌진흥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중점관리병해충선제대응및피해경감기술실용화(R&D)	7,900
2	밀자급률도약생산소비연계핵심기술개발(R&D)	4,400
3	원예작물수급안정을위한이상기상대응기술고도화(R&D)	6,000
4	농업기초기반전문기술인재양성(R&D)	2,400
5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R&D)	3,750
6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R&D)	4,000
7	농산부산물Eco순환기술개발(R&D)	5,0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	신기술보급사업(보조, 지역지원)	38,907
총지출		72,357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농촌진흥청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파속채소연구소구축(R&D)’ 사업, ‘현장맞춤형밭농업기계고도화(R&D)’ 사업, ‘시험연구활동지원(R&D)’ 사업 등 총 6개임.[3)]

[2025년도 농촌진흥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신품종 지역적응연구(R&D)	15,529	20,529	5,000	32.2
2	시험연구활동지원(R&D)	5,092	6,998	1,906	37.4
3	현장맞춤형밭농업기계고도화(R&D)	1,700	4,440	2,740	161.2
4	수출전략형신작물보호제기반기술개발(R&D)	4,000	5,332	1,332	33.3
5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R&D)	5,331	7,005	1,674	31.4
6	파속채소연구소구축(R&D)	3,830	12,310	8,480	221.4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농촌진흥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거래는 없음.

[농촌진흥청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단위 : 억원)

일 반 회 계	
세입	세출
120	9,40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11	6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세출
16	1,138

주) 총계 기준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전체 사업 중 R&D 사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임. 99개 세부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42개가 R&D 사업으로, 금액으로는 1조 974억원 중 5,673억원(53.7%)임.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총 87개 사업 중 39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총 4개 사업 중 1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 8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R&D 사업으로 일반회계 비중이 높음.

2024년도 농촌진흥청 일반회계 사업 중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수소기반 농업시설 에너지 공급시스템 개발 및 실증(R&D)’ 사업과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사업(R&D)’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에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되어 편성되었으며, 규모는 총 424억원임.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라이스피아’ 사업은 지원대상 국가인 ‘기니’에서의 사업진행상황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2025년 지원예산안 일부에 조정이 필요함.

둘째,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사업’과 ‘축산자원개발부이전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예산집행률(사업공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R&D)’ 사업은 2025년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되어 편성되었으나, 여러 내역사업들이 기후대응기금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라이스피아 사업: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적 성과공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라이스피아[4]'** 사업은 다수확 벼 종자 공급 확대로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에 직접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신규사업이고,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0억원(20.1%) 증액된 119억 5,000만원임.[5]

[2025년도 라이스피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R&D, ODA)	40,766	43,843	3,077	7.5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운영	30,028	30,113	85	0.3
라이스피아	9,950	11,950	2,000	20.1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202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6] 중 하나인 라이스피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5개국(세네갈, 감비아, 기니, 가나, 케냐)을 대상으로 현지의 벼 전문가 양성, 농기계 투입 및 종자 저장시설 구축 등을

4) 라이스피아(RiceSPIA): Rice Seed Production Improvement for Af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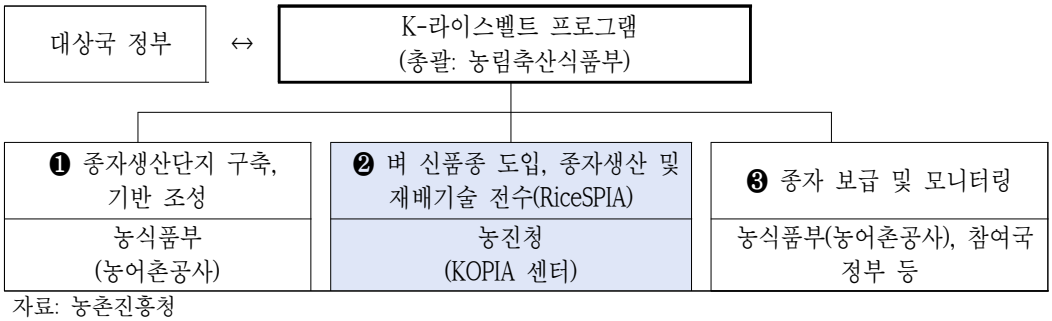
5) 일반회계-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1136-312)(기술협력국)

6)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은 쌀 생산량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쌀 생산 관련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ODA 사업임(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통해 2027년까지 아프리카 986ha에서 매년 벼 종자 1만톤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2025년 예산안에는 5개국에 대한 농기계 및 농기자재 구입, 전문가 파견 등을 위한 경비 11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 협력 추진 체계]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라이스피아 사업 국가별 2025년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가나	세네갈	케냐	감비아	기니	합계
					(세네갈센터 관장)		
합계		**2,180**	**1,950**	**1,940**	**2,950**	**2,930**	**11,950**
종자 생산	**소계**	**760**	**530**	**520**	**520**	**500**	**2,830**
	전문가 파견	520	400	400	400	400	2,120
	농자재(비료 등)	240	130	120	120	100	710
기반 조성	**소계**	**1,000**	**1,000**	**1,000**	**2,010**	**2,010**	**7,020**
	농기계(트랙터 등)	-	-	-	1,760	1,760	3,520
	농기계 창고		-	-	250	250	500
	종자 저장시설	-	-	-	-	-	-
	(추가) 종자 정선시설 (건조기 등)	1,000	1,000	1,000	-	-	3,000
교육 훈련	**소계**	**420**	**420**	**420**	**420**	**420**	**2,100**
	역량강화 및 운영비	420	420	420	420	420	2,100

자료: 농촌진흥청

나. 검토의견

첫째, 라이스피아 사업의 대상국가 중 기니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2025년 사업비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 사업의 2024년 8월까지의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기니에서 7억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음.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기니의 정부 행정시스템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함.

[2024년 농촌진흥청 라이스피아 사업의 국가별 예산집행실적 및 연차별 지원계획안]

(단위: 백만원)

국가명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사업비
	예산액	실집행액	예산액	실집행액	예산안	계획액	계획액	계획액	합계
가나	1,000	1,000	3,360	2,614	2,180	900	920	-	8,360
세네갈	-	-	2,650	2,043	1,950	700	750	750	6,800
케냐	-	-	2,600	2,018	1,940	650	670	680	6,540
감비아	-	-	640	495	2,950	730	780	780	5,880
기니	**-**	**-**	**700**	**-**	2,930	770	820	820	6,040
합계	1,000	1,000	9,950	7,170	11,950	3,750	3,940	3,030	33,620

주) 2024년은 8월말까지 실적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의 라이스피아 사업과 함께 2024년부터 신규추진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K-라이스벨트 구축사업(5031-300)' 또한 2024년 9월까지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케냐 11억원 중 1억 8,000만원, 우간다 11억원 중 1억 8,000만원, 세네갈(농기계 지원) 10억원 중 1억 8,000만원만이 집행되었고, 기니 22억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음.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해당 국가와의 RD[7] 체결(평균 3개월 이상) 및 PMC[8] 선정(최소 3개월)이 소요되므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7) RD(협의의사록, Recode of Discussion)은 개별 프로젝트형 기술협력을 시행함에 있어 상대국 실시기관과 협력내용에 대하여 합의한 사항을 모아서 정리하고 서명한 문서임.

8)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는 현지 사업수행업체를 의미.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K-라이스벨트 구축사업의 국가별 예산집행실적 및 연차별 지원계획안]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총사업비
	예산액	실집행액	예산액	실집행액	예산안	계획액	계획액	계획액	합 계
가 나	500	500	3,270	2,470	2,820	2,820	1,936	-	11,346
세네갈	-	-	1,900	1,510	1,800	1,800	1,800	692	7,992
감비아	-	-	1,200	590	2,000	2,000	2,000	760	7,960
카메룬	-	-	1,500	780	2,000	1,850	1,850	791	7,991
케 냐	**-**	**-**	1,100	180	1,850	1,350	1,000	500	5,800
우간다	**-**	**-**	1,100	180	1,850	1,350	1,000	500	5,800
기 니	**-**	**-**	2,200	-	1,750	1,750	1,750	468	7,918
세네갈(농기계)	**-**	**-**	1,000	180	2,000	3,000	2,700	-	8,700
합 계	500	500	13,270	5,890	16,070	15,920	14,036	3,711	63,507

주) 2024년은 9월까지의 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대상국들이 정치·사회적인 불안정성이 높은 국가들임에도 농촌진흥청은 가나 및 세네갈에 대해서만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ODA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등의 수행없이 2024년부터 대규모의 예산지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라이스피아 사업대상국 가나 및 세네갈 대한 벼 관련 기존 ODA 사업 내용]

국가	과제명	사업 구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천USD)	사업내용 및 성과
가나	가나 벼 종합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체계 확립	기술 개발	'19~'22 (완료)	90	가나 주요 벼 재배지역 비옥도 조사 및 재배기술(시비기준 설정) 확립 *기술효과: 생산성 17% 증대
	가나의 지속가능한 쌀 생산을 위한 주요병해충 종합관리 매뉴얼 개발	기술 개발	'22~'24 (진행중)	150	병해충 모니터링 및 경제적 피해 조사를 통한 재배기술(병해충 관리) 확립
	가나 벼 종자생산 및 재배 기반조성 패키지 사업	협업 사업 (대규모 확산)	'23~'27 (진행중)	5,000	('23년 상반기) 2.6ha에서 종자(원종) 11.5톤 생산 *하반기 종자(보급종) 311톤 생산 예정 ⇒ 라이스피아 사업으로 추진
세네갈	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네갈 남부지역의 벼 신품종 확산	농가 실증	'21~'23 (완료)	100	신품종 보급 확대(97개 농가, 21ha), 재배기술(재식거리) 투입을 통한 벼 생산성 향상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농촌진흥청 소관)('23.10.)

시범사업 등 소규모의 예산 지원을 통해 해당 국가들 각각의 특수성 및 사업수행시 시행착오 등의 경험, 사업의 성과·실적 평가, 개선사항 등을 도출해내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니에서의 2024년 예산 전액 미집행은 사업의 첫 출발점인 대상국과의 외교적·행정적 협의 절차조차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해 연도 예산액의 집행 지연 가능성이 높아 보임.

이와 같이 사업 첫해에는 대상국과의 기본적 외교·행정절차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사전준비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으로 인하여 설계를 완료하기에도 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유사 ODA 사업을 이미 추진한 국가(가나 및 세네갈)에 대한 성과평과와 분석 등을 기반으로 라이스피아 사업이 시범사업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규 3개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기니에 대한 2025년 예산안 29억 3,000만원은 2024년 예산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성과 증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K-라이스벨트 사업과 적극적 성과공유가 필요함.

농촌진흥청의 '라이스피아 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①종자생산(전문가 파견, 비료 등 농자재 지원), ②기반조성(트랙터 등 농기계, 농기계창고, 종자 저장시설 및 건조기 등 종자 정선시설), ③교육훈련 등이고 사업시행주체는 KOPIA[9] 센터임.

농림축산식품부의 'K-라이스벨트 구축사업'의 주요 지원내용 또한 ①시설구축(관개수로, 송수관, 양수장 조성, 수리센터 등), ②기자재(트랙터, 사무장비 등 농기계 등) 지원, ③ 전문가 파견 등이고 사업시행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임.

[농촌진흥청 '라이스피아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K-라이스벨트 사업'의 주요 내용]

농촌진흥청 라이스피아 사업	농림수산식품부 K-라이스벨트 사업
종자생산: **전문가 파견**, 농자재(비료 등) 지원	시설구축:관개수로·송수관·양수장 구축, **종자보급 창고** 등
기반조성: **농기계(트랙터 등)**, 창고, **종자 저장시설**, 종자 정선시설(건조기 등)	기자재 지원: **농기계(트랙터)** 등
교육훈련: 역량강화 및 운영비	**전문가 파견**, 성과관리, **초청연수,** 사업관리 등

자료: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9)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의 ‘라이스피아’ 사업은 농기자재 및 종자 저장시설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의 ‘K-라이스벨트 구축사업’ 은 종자 생산단지 구축 등 생산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고 하나 ‘트랙터 등 기자재 지원’ 및 ‘교육 등을 위한 전문가 파견’ 의 경우 두 부처가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음.

또한 기반구축 내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보급창고를, 농촌진흥청은 종자보관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두 시설유형의 조성시 연계하여 구축한다면 예산효율화 및 사업수행의 성과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임.

벼 종자보급 및 생산을 위한 일련의 지원사항들이 분절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점 및 현지에서의 사업시행주체가 각각 다르다는 측면(KOPIA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24년부터 수행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라이스피아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K-라이스벨트 구축사업’의 면밀한 사업 추진계획 및 적극적 사업 수행상황 공유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임.

2. 기후변화대응 꿀벌 수급안정 지원 사업: 꿀벌 증식장 구축 지연에 따른 운영비 예산안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기후변화대응 꿀벌 수급안정 지원'** 사업은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개발하는 우량 꿀벌 품종을 증식·보급하고 ICT 기반 스마트 사육환경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7억 3,000만원(△62.9%) 감액된 21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10)]

[2025년도 기후변화대응 꿀벌 수급안정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15,668	7,818	△7,850	△50.1
기후변화 대응 꿀벌 수급안정지원	5,925	2,195	△3,730	△62.9

자료: 농촌진흥청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2025년에 꿀벌 우수품종의 확대를 위해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을 운영하고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관련 경비 2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음.

[기후변화대응 꿀벌 수급안정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예산안 21억 9,500만원

-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운영 3억 7,500만원(5개소 × 1억 5,000만원 ×보조율 50%)**
-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보급 시범 9억원(9개소 × 2억원 ×보조율 50%)
-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 9억 2,000만원(6개소 × 3.83억원 ×보조율 40%)

자료: 농촌진흥청

10) 일반회계-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2231-300)(농촌지원국)

나. 검토의견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5개소 운영비 3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 10월 현재 증식장 5개소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5개소 운영비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촌진흥청은 2025년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5개소(2023년 충남 보령, 전남 영광, 경북 통영 및 2024년 전북 군산, 전남 진도)의 운영을 위한 예산안 3억 7,500만원(5개소 × 1억 5,000만원 ×보조율 50%)을 편성하였음.

2025년 운영비 예산이 편성된 5개소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구축 진행 현황을(2024년 9월말 기준) 살펴보면, 2023년 예산(3개소)으로 추진되고 있는 '충남 보령 삽시도 증식장' 의 경우 착공 부지변경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2024년 8월에야 비로소 착공이 시작되었음.

'전남 영광 낙월도 증식장' 또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경북 통영 사량도 증식장' 은 부지 선정 등으로 2024년 4월에 착공하는 등 당초 계획 대비 6개월-1년 정도 증식장 준공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9월말 기준, 2023년 예산액 36억원 중 7억 5,000만원이 집행(집행률 20.8%)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2023년 사업비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구축 사업 추진 현황(3개소)]

(단위: 백만원, %)

지역	당초 추진 계획	실제 추진 현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충남 보령	사업지 선정('23.3.)	사업지 선정('23.9.)	1,200	300	1,168	-	25.0
	기획용역('23.4.)	기획용역('23.12.)					
	실시설계('23.5.)	실시설계('24.3.)					
	업체선정('23.10.)	업체선정('24.7.)					
	착공('23.10.)	착공('24.8.)					
	준공('23.12.)	준공('24.12.)					
전남 영광	사업지 선정('23.3.)	사업지 선정('23.4.)	1,200	220	1,154	-	18.3
	기획용역('23.4.)	기획용역('23.7.)					
	실시설계('23.5.)	실시설계('23.9.)					
	업체선정('23.9.)	업체선정('24.4.)					
	착공('23.9.)	착공('24.4.)					
	준공('23.12.)	준공('24.12.)					
경북 통영	사업지 선정('23.3.)	사업지 선정('23.6.)	1,200	230	1,200	-	19.2
	기획용역('23.4.)	기획용역('23.10.)					
	실시설계('23.5.)	실시설계('23.12.)					
	업체선정('23.11.)	업체선정('24.4.)					
	착공('23.11.)	착공('24.4.)					
	준공('23.12.)	준공('24.12.)					
합 계			3,600	750	3,522	-	20.8

주) 2024년 9월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또한 2024년 예산(2개소)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북 군산 증식장' 및 '전남 진도 증식장'의 경우, 2024년 예산집행률(2024년 9월 기준)은 각각 8.2%, 0%로 상당히 부진함.

[2024년 사업비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구축 사업 추진 계획안(2개소)]

(단위: 백만원, %)

지역	당초 추진 계획	실제 추진 현황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률	추진 현황 주요 내용
전북 군산	사업부지확보('24.1~6.)	'24.1~9.	1,200	98	8.2	-도서지역 사업부지(폐교부지)교육청과의 협의 완료 -연구소 내 양봉사 증축공사는 설계용역 진행중('24.6.)
	설계용역('24.6~8.)	'24.10.				
	종합공사발주('24.8.)	'25.3.				
	공사준공('24.12.)	'25.6.				
	양봉장비구입('24.6.)	'25.6.				
	장비납품완료('24.12.)	'25.6.				
전남 진도	사업지 선정	'25.6.	1,200	0	0	도서격리지역(가사도) 활용 가능한 사업부지(군유지)를 변경하여 사유지 매입 완료
	기획용역('24.3.)	'24.10.				
	실시설계('24.5.)	'24.11.~'25.2.				
	업체선정('24.8.)	'25.3.				
	착공('24.8.)	'25.3.				
	준공('24.12.)	'25.6.				

주) 2024년 9월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구축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음에도 농촌진흥청은 5개소(2023년 추진 3개소 +2024년 신규추진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예산안 3억 7,500만원(5개소 × 1억 5,000만원 ×보조율 50%)을 편성하였음.

이에 2025년에 편성된 운영비가 연내에 집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5개소에 대한 운영비는 증식장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사업: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안 검토 필요

가. 개 요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사업은 치유농업의 확산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억 8,900만원(△31.2%)이 감액된 32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2025년도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4,780	3,291	△1,489	△31.2

자료: 농촌진흥청

이 사업은 총사업비 291억원, 총사업기간은 5년(2021년~2025년)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연구동 등 본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비 29억 9,200만원, 감리비 2억 9,600만원, 부대비 300만원 등 총 32억 9,100만원이 반영되었음.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 32억 9,100만원**
- 공사비 29억 9,200만원
- 감리비 2억 9,600만원
- 시설부대비 300만원

자료: 농촌진흥청

11) 일반회계-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1136-330)(농촌지원국)

나. 검토의견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사업기간연장 협의 중이고, 토지수용 재결·보상·공탁 등의 행정절차로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었으며, 2024년 공사비 이월액이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최초 사업 계획 시 2024년 12월 완공 목표였으나, 2021년 사업 시작 이후 사전행정절차 및 설계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2024년 9월말 기준, 완공 예정 시기는 2026년 8월으로 변경되었음.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사업 당초 계획 대비 현재 추진 현황(2024.10.)]

구 분	최초 계획일정 ('21년 편성기준)	실제 추진 현황	비 고 (변동 사유 등)
기본계획	'21.5.	'21.5.	
부지선정	'21.4.	'21.7.	
계획·중간설계	'21.10 ~ '22.4.	'22.1 ~ '23.4.	설계 입찰 재공고(유찰)
실시설계	'22.5. ~ '22.8.	'23.5 ~ '23.11.	중간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지연
공사 입찰 및 계약	'22.11. ~ '22.12.	'23.9 ~ '24.1.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재공고(유찰)
용지보상	'22.5. ~ '23.3.	'22.5 ~ '24.10.	일부 토지소유주 보상 협의에 따른 조정 지연 (보상금액 상향 요청)
착공	'23.1.	'24.11. 예정	
준공	'24.12.	'26.8. 예정	기획재정부와 사업기간연장 협의 중

자료: 농촌진흥청

예산집행현황 또한 2023년 예산액 72억원 중 42억 4,500만원만 집행(집행률 58.9%)되었고, 2024년의 경우는 예산현액 73억 5,900만원(전년도 이월액 25억 7,900만원 포함) 중 3억원 6,800만원만이 집행(집행률 5.0%)되었음.

또한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4년 예산액의 2025년도로의 이월예상액은 40억 5,200만원, 불용예상액은 25억 1,100만원임.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사업 2023년 및 2024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년도	농촌진흥청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2023년	-	7,200	4,245	**58.9**	2,579	376
2024년	2,579	7,359	368	**5.0**	**4,052(예정)**	**2,511(예정)**

주 1) 2024년은 9월 말까지
2) 농촌진흥청은 '24년 최종집행액을 7억 9,600만원으로 설명함.
자료: 농촌진흥청

사업 지연 및 집행실적 저조 사유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2023년은 착공 중단에 따른 공사비 이월 및 2024년은 건립부지 매입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수용재결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2024.10.2.)함에 따라 조속히 착공을 추진(11월)할 계획이라고 함.

그러나 이 사업은 2024년 10월 현재까지도 기획재정부와 사업기간연장 협의 중이고, 토지수용 재결 및 보상, 공탁 등의 과정 등으로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었으며, 2024년 공사비 예산현액이 2023년도 이월액 25억 7,900만원 포함하여 73억 5,900만원으로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 사업공정률 및 총사업비 협의조정 등의 상황을 고려한 예산안 검토 필요

가. 개 요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전라남도 함평군으로 이전하여, 가축전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며, 관련 연구 시설 등을 보강한 기관으로 구축하기 위해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0억 2,100만원(△41.0%)이 감액된 402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12)]

[2025년도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68,725	40,254	△28,021	△41.0

자료: 농촌진흥청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 예산안]

○ **축산자원개발부이전사업 402억 5,400만원**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96백만원
- 실시설계비(420-02) : 1,912백만원
- 공사비(420-03) : 34,188백만원
- 감리비(420-04) : 3,558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500백만원

자료: 농촌진흥청

나. 검토의견

토지보상 협의 및 사전행정절차 진행 지연 등으로 사업공정률이 저조하고, 총사업비 협의 조정 등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안 검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42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

12) 일반회계-축산자원개발부 이전(1232-305)(축산자원개발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 연차별 사업비 현황]

(단위: 억원)

사업기간	2021까지 기투자액	2022	2023	2024	2025(안)	2025이후 투자계획	계
2021~2027	38.72	112.47	939.76	682.75	402.54	6,248.42	8,424.66

자료: 농촌진흥청

사업이 시작된 2021년부터 사업 부지 지역의 주민들로부터의 토지 출입 부동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사전행정절차,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간의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기본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 토지보상비 등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예산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였는데, 2022년 예산현액 166억 7,600만원 중 89억 5,600만원만 집행(집행률 53.7%)되었음.

[2022년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내역)	2022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건설보상비	2,000	-	2,000	1,842	92.1	158	-
기본조사설계비	24,340	-	12,525	5,364	42.8	2,098	5,063
감리비	2,509	-	1,876	1,475	78.6	35	366
시설부대비	3,094	-	275	275	100	-	-
합계	**31,943**	**-**	**16,676**	**8,956**	**53.7**	**2,291**	**5,429**

주) 2022년 예산액 31,943백만원→16,676백만원으로 추경 감액 사유는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 및 기본설계 용역계약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및 2022년도 용역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임

자료: 농촌진흥청

2023년 예산현액 962억 6,600만원 중 917억 3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대부분 건설보상비(410목) 집행이었으며,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 예산현액 58억 9,800만원 중 30억 5,200만원만이 집행(집행률 52%)되었고, 실시설계비(420-02목) 12억 5,5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2023년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내역)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건설보상비	85,781	158	88,601	88,309	99.7	292	-
기본조사설계비	3,800	2,098	5,898	3,052	51.7	2,093	753
실시설계비	1,255	-	1,255	-	-	-	1,255
감리비	2,950	35	323	236	73.1	86	-
시설부대비	190	-	190	106	55.8	-	84
합계	93,976	2,291	96,266	91,703	95.3	2,471	2,092

자료: 농촌진흥청

2024년 9월말까지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건설보상비(410목) 예산현액 518억 4,000만원 중 422억 1,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1.4%)되었고,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 및 실시설계비(420-02목), 공사비(420-03목), 감리비(420-04목)는 전액 미집행되었음.[13)]

[2024년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내역)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건설보상비	51,548	292	51,840	42,214	81.4	-	-
기본조사설계비	-	2,093	2,093	-	-	-	-
실시설계비	10,508	-	10,508	-	-	-	-
공사비	3,219	-	3,219	-	-	-	-
감리비	2,500	86	2,586	-	-	-	-
시설부대비	500	-	500	13	2.6	-	-
합계	68,275	2,471	70,746	42,227	59.7	-	-

주) 2024년은 9월말까지

자료: 농촌진흥청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① 토목공사 및 대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기본조사설계·실시설계·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공사비를 반영하고, ② 2025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된 경우 예외적으로 설계비와 공사비를 함께

13) 총사업비 협의·조정 지연 등으로 인해 현재 사업 진행은 중단된 상태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③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는 사업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2가지 이상 비목의 동시계상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이 사업이 2024년 9월 기준 총사업비 조정 및 기본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예산안에 기본조사설계비 9,600만원, 실시설계비 19억 1,200만원, 공사비 341억 8,800만원, 감리비 35억 5,800만원 등을 동시계상하였음.

또한 농촌진흥청은 2025년 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소요액 재추계를 통해 토지보상비 및 이주단지조성공사 계약 사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을 위해 2025년 예산안 일부의 비목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에 이 사업의 사업공정률 및 예산집행률 현황 및 총사업비 협의조정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산림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총수입은 4,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287억원(△6.3%) 감소함.[1)]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4,562	4,275	△287	△6.3
총수입	4,562	4,275	△287	△6.3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총지출은 2조 6,2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원(0.5%) 증가함.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26,126	26,246	120	0.5
총지출	26,126	26,246	120	0.5

문의 : 이유미 예산결산조사관 youme0803@assembly.go.kr (02-6788-568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은 총 4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조 1,4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원(△0.9%) 감소함.

[2025년도 산림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970	985	15	1.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9,867	9,756	△111	△1.1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728	719	△9	△1.2
합 계	11,565	11,460	△105	△0.9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4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조 6,406억원으로 전년 대비 602억원(1.7%) 증가함.

[2025년도 산림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1,446	21,958	512	2.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9,867	9,756	△111	△1.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763	3,973	210	5.6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728	719	△9	△1.2
합 계	35,804	36,406	602	1.7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산림청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7개(375억 4,4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R&D)’, ‘디지털 기반 산림 우수종자 생산공급 기술개발(R&D)’, ‘임업현장 맞춤형 푸드테크 기술개발(R&D)’ 사업은 산림분야 현안 연구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총 70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자율, 세종)’ 사업은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실연을 통해 목재이용 확대를 위한 것으로, 기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된 사업이며, 2025년도 예산안은 215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정원도시 조성(자율, 세종)’ 사업은 정원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환경개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된 사업이며, 2025년도 예산안은 88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산림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R&D)	4,445
2	디지털 기반 산림 우수종자 생산공급 기술개발(R&D)	1,649
3	임업현장 맞춤형 푸드테크 기술개발(R&D)	1,0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자율)	21,320
5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세종)	250
6	정원도시 조성(자율)	8,580
7	정원도시 조성(세종)	300
총지출		37,544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산림청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사방사업’, ‘산림병해충방제’, ‘국립수목원 운영’ 등 총 9개임.[3)]

[2025년도 산림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국립수목원 운영	12,237	22,708	10,471	85.6
2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R&D)	3,475	4,633	1,158	33.3
3	고성능 목재수확 기계장비 개발(R&D)	2,000	2,667	667	33.4
4	산림휴양등산증진	16,887	25,748	8,861	52.5
5	산림복원	26,723	34,744	8,021	30.0
6	사방사업	251,019	278,373	27,354	10.9
7	산림공간정보기반조정	7,495	10,998	3,503	46.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	산림병해충방제	117,357	139,998	22,641	19.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	새만금수목원 조성	16,500	24,150	7,650	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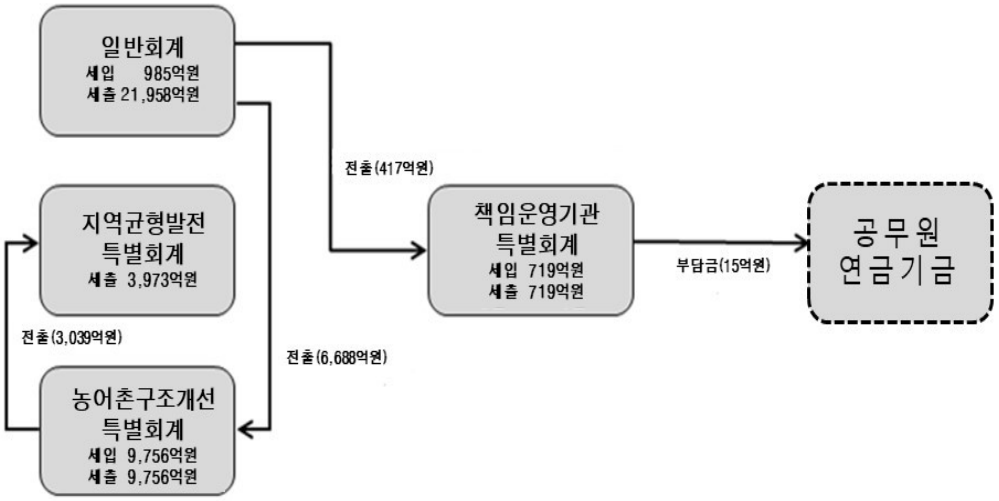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산림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각각 6,688억 2,300만원, 417억 2,000만원이 전출되었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3,039억 4,800만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부담금 15억 500만원이 전출되었음.

[산림청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 주요 특징으로는 산림재난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산림산업(임업·목재산업·산림복지전문업) 지원, 기후변화·지역소멸 대응 및 국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사방댐 등 기반시설을 늘리고, 산림헬기, 국산 고성능 산불 진화차 등 진화장비 확충 및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수종전환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음.

2025년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장애인 관람동선 재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고 예산규모가 큰 다른 내역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통합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및 산림휴양등산증진사업은 사업 진행률(공정률)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어린이 목공체험관 조성·운영사업은 이미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공간과 학교체험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함.

넷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법적 근거 없이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금운용 등은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 자금을 국가재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장애인 관람동선 재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사업: 타 내역사업으로 통합편성 및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장애인 관람동선 재정비 및 안전관리시설 확충’** 사업은 장애인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시설 구축 및 개방확대에 따른 관람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억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장애인 관람동선 재정비 및 안정시설 확충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국립수목원운영	12,237	22,708	10,471	85.6
수목원안전관리시설구축	363	364	1	0.3
장애인 관람동선 재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300	300	-	-

자료: 산림청

[수목원안전관리시설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장애인 관람동선 재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 300백만원**
- 관람동선 재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 4kmx50백만원=200백만원
- 위험목 제거 및 안전조치 : 50그루x2백만원=100백만원

자료: 산림청

4) 일반회계-국립수목원 운영(1131-300)(국립수목원)

나. 검토의견

“장애인 관람동선 재정비 및 안전관리시설 확충사업” 은 2024년 8월까지의 집행내역을 고려할 때, 타 내역사업인 ‘노후시설개선’ 사업에 편성·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여지는 바, 이를 위한 예산안 편성 및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은 2024년 및 2025년 예산안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구체화된 예산세부내역 없이 ‘장애인 관람동선 재정비 및 안전관리시설 확충’ 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이 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수목원 내 장애인 관람동선 재정비 및 안전관리시설 확충을 위해 어떤 시설 재정비에 재원이 지원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예산 지원의 규모에 대한 과부족 여부를 예산심사시 판단하기 어려우며, 예산이 확정된 후에도 집행된 내역이 ‘장애인 관람동선 재정비 및 안전관리시설’ 에 부합했는 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음.

2024년 8월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야생화명소 데크공사에 5,000만원, 의무실 설치에 2,700만원, 진입로 포장공사에 4,800만원, 광릉숲길 전기공사에 1,600만원 등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관람동선 재정비 및 안전관리시설 확충”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2024년 장애인 관람동선 재정비 및 안전관리시설 확충 사업 예산 및 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2024년 예산(=2025년 예산안)	2024년 집행내역(8월까지)	
ㅇ 장애인 관람동선 재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 300	노후데크 도장	10
	위험목 고사지제거	30
- 관람동선 재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 4kmx50백만원=200	야생화명소 데크공사	50
- 위험목 제거 및 안전조치 : 50그루x2백만원=100	의무실 설치	27
	광릉숲길 전기공사	16
	진입로 포장공사	48

자료: 산림청

오히려 이 사업은 국립수목원 시설 관련 개선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내역사업인 ‘노후시설 개선사업(2025년 예산안 185억 900만원)’ 에 포괄적으로 편성·집행되는 것이 적절해 보이므로, 이를 위한 예산안 편성 및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노후시설 개선사업 주요 내용 및 예산안]

ㅇ**노후시설 개선**: ('24) 9,058백만원 → ('25) 18,509백만원, 9,451백만원 증 - 주요 내용: **국립수목원 노후시설 개선** 및 난대온실 2차년도 공사비, 광릉숲길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한 공사비 - 산출 내역: **· 노후시설 보수 771백만원 ×1식 = 771백만원** **· 광릉숲 시설 개선 1,200백만원 × 1식 =1,200만원** · 난대온실 2년차 공사비 = 16,538백만원

자료: 산림청

2.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건립사업: 사업공정률 등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건립’** 사업은 양묘전문 교육 보급 등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을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양묘사업소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0억원이 편성되었음.[5)]

[2025년도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건립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묘목생산	21,549	18,611	△2,938	△13.6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건립	2,000	2,000	-	-

자료:산림청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건립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건립 : 2,000백만원 - 공사비(420-03) : 1,691백만원 - 감리비(420-04) : 8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1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300백만원

자료: 산림청

나. 검토의견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건립사업은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예산안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조성계획은 2022년~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2022년은 예산액 4억원 중 3억 2,600만원(집행률 81.5%), 2023년에는 예산현액 16억 7,100만원 중 7,800만원(집

5) 일반회계-묘목생산(1533-300)(산림산업정책국)

행률 4.6%), 2024년 8월까지의 집행액은 예산현액 35억 7,400만원 중 1억 1,000만원(집행률 3.1%)만 집행되었으나, 2025년도 예산안에 20억원이 편성되었음.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조성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60	4	16	20	20
내용	-	설계	조성(1년차)	조성(2년차)	조성(3년차)

자료: 산림청

[2022~2024년 8월까지의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	집행률(B/A)
2022년	400	400	326	71	**81.5**
2023년	1,600	1,671	78	1,574	**4.6**
2024년 8월말까지	2,000	3,574	110	-	**3.1**

자료: 산림청

산림청은 사업 진행 지연 및 예산집행률 저조에 대해 설계공모 추진 지연에 따른 계약체결 순연, 공사발주 및 농지전용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2024년 10월까지 1년차(2023년 예산액)에 해당하는 공사가 마무리 될 계획이라고 함.

그러나 산림청에 따르면, 2년차에 해당하는 공사비 2024년 예산액이 2025년에 소요될 계획인 점 및 이후 공사 계획이 다소 무리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6)]

이에 2025년 예산안에 조성 3년차 재정소요 2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 10월 현재 공사 진행현황이 1년차에 해당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2025년 예산안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산림청은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조성공사를 10월 내 1년차 공사 완료 및 2년차 공사 착공 예정이라고 함.
* (1년차) '24.3.15~10.25(준공일 10.29) / (2년차) '24.10.30~'25.5월 / (3년차) '25.5월~12월

3. 산림휴양등산증진 사업: 사업 진행 현황 및 예산집행률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산림휴양등산증진’ 사업(1743-301)은 다양한 산림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립문경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 ‘국립강릉산림레포츠센터 조성’, ‘국립보은등산학교조성’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7)]

내역사업인 **‘국립문경산림레포츠진흥센터조성’** 사업은 경상북도 문경시에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억 9,100만원(106.1%)이 증액된 58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내역사업인 **‘국립강릉산림레포츠센터조성’** 사업은 강원도 강릉시에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억 3,500만원(190.7%)이 증액된 27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내역사업인 **‘국립보은등산학교조성’** 사업은 등산문화에 대한 교육시스템 구축 및 산악사고예방을 위하여 충청북도 보은에 국립등산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5,000만원(△20.0%)이 감액된 3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산림휴양등산증진 주요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산림휴양등산증진	16,887	25,748	8,861	52.5
국립문경산림레포츠진흥센터조성	2,819	5,810	2,991	106.1
국립강릉산림레포츠센터조성	962	2,797	1,835	190.7
국립보은등산학교조성	3,750	3,000	△750	△20.0

자료: 산림청

7) 일반회계-산림휴양등산증진(1743-301)(산림복지국)

[주요 내역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국립문경산림레포츠진흥센터조성 5,810백만원 - 실시설계비 465백만원 + 공사비 4,718백만원 + 감리비 454백만원 + 부대비 173백만원 ○ 국립강릉산림레포츠센터조성 2,797백만원 - 공사비 2,750백만원 + 감리비 40백만원 + 시설부대비 7백만원 ○ 국립보은등산학교조성 3,000백만원 - 부지면적16,636㎡×178,271원/㎡≒3,000백만원(토지매입비)

자료: 산림청

나. 검토의견

첫째, 국립문경산림레포츠진흥센터조성 사업과 국립강릉산림레포츠센터조성 사업의 사업공정률 고려시 2025년 예산안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국립문경산림레포츠진흥센터조성사업(2022년~2026년, 총사업비 357억원)의 예산집행 현황을 검토해보면, 2022년은 예산액 5억원 중 3억 4,200만원이 집행(집행률 68.4%)되었고, 2023년은 예산현액 16억 800만원 중 6억 9,800만원이 집행(집행률 43.4%)되었으며, 2024년은 8월말까지 예산현액 37억 2,500만원 중 6억 9,200만원이 집행(집행률 18.6%)되었음.

[국립문경산림레포츠진흥센터조성 사업 2022년~2024년 8월말까지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	산림청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예산현액(이전용등)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2022년	500	500	342	500	-	500	342	**68.4**	98	60
2023년	1,510	1,608	698	1,608	98	1,608	698	**43.4**	906	4
2024년 8월말까지	2,819	3,725	692	3,725	906	3,725	692	**18.6**	-	-

주) 2024년은 8월말 실적까지
자료: 산림청

국립강릉산림레포츠센터조성사업(2023년~2026년, 총사업비 250억원)의 예산집행 현황을 검토해보면, 2023년은 예산액 3억 7,000만원 중 2억 9,900만원 집행(집행률 80.8%)되었고, 2024년은 예산액 9억 6,200만원이 8월말까지 전액 미집행되었음.

[국립강릉산림레포츠센터조성 사업 2023년~2024년 8월말까지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	산림청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예산현액(이전용등)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실집행율 (B/A)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70	370	299	370	-	370	299	80.8	-	71
2024년	962	962	-	962	-	962	-	-	-	-

주) 2024년은 8월말 실적까지
자료: 산림청

산림청은 두 레포츠센터 조성사업의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및 공공건축심의·설계공모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 소요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이에 사업추진 기간 또한 1년씩 연장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국립문경산림레포츠진흥센터조성 사업은 당초계획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에는 조성공사 1년차 및 2년차에 해당하는 사업 공정률을 보여야 하지만, 2024년 9월 기준 현재 2023년말에 종료되었어야 할 실시설계가 진행중(2025년 3월까지)이고, 또한 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인허가 용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이러한 절차 완료 후 1차 년도에 해당하는 조성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변경된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국립문경산림레포츠진흥센터조성 사업 당초 계획 대비 현재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당초계획	500 · 건축기획 및 타당성 조사 ('22.03~'22.12)	1,510 · 실시설계 ('23.01~'23.12)	16,845 · 조성공사(1년차) ('24.01~'24.12)	16,845 · 조성공사(2년차) ('25.01~'25.12) · 준공('25.12)	-
추진중	500 · 건축기획 및 타당성 조사 ('22.07~'23.02)	1,510 · 건축기획 및 타당성 조사 ('22.07~'23.02) · 실시설계 ('23.09~'25.03)	2,819 · 실시설계 ('23.09~'25.03) · 환경·재해영향평가, 인허가 용역 ('24.03~'24.11)	5,810 · 실시설계 ('23.09~'25.03) · 조성공사(1년차) ('25년 예정)	25,061 · 조성공사(2년차) ('26년 예정) · 준공('26년 예정)

자료: 산림청

국립강릉산림레포츠센터조성 사업 또한 당초계획에 따르면 2024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에는 1차년도 조성공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2024년 9월 현재 2024년말에 종료되었어야 할 실시설계를 2025년까지 진행하고,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2026년에서야 1차년도 조성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경된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국립강릉산림레포츠센터조성 사업 당초 계획 대비 현재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당초 계획	370 · 건축기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23.01～'23.12)	962 · 실시설계 ('24.01～'24.12)	8,920 · 1차 공사 ('25.01～'25.12)	14,748 · 2차 공사 ('26.01～'26.12)	
추진중	370 · 건축기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23.07～'23.12)	962 · 실시설계 ('24.09～'25.12)	2,797 ·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 이행('24.09～'25.12)	9,823 · 1차 공사 ('26년 예정)	11,048 · 2차 공사 ('27년 예정)

자료: 산림청

따라서 국립문경산림레포츠진흥센터조성 사업과 국립강릉산림레포츠센터조성 사업의 2025년 예산안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국립보은등산학교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증액 및 토지매입을 위한 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 예산안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2024년에 편성되었으나 미집행된 실시설계비 37억 5,000만원은 불용처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립보은등산학교 조성사업은 속초 국립등산학교(2015년~2017년 조성), 밀양 국립등산학교(2021년-2024년 조성)에 이어 3번째로 조성하고 있는 국립등산학교로서 충청북도 보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당초 2023년~2025년(2026년 개관 계획), 총사업비는 80억원이었음.

국립보은등산학교의 2023년의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5억원 중 3억 8,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7.2%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4년은 예산현액 38억 3,700만원이 9월 기준 전액 미집행되고 있음.

[국립보은등산학교조성 사업 예산 2023년~2024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년도	산림청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예산현액(이전용등)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2023년	500	500	386	500	-	500	386	77.2	87	27
2024년	3,750	3,830	-	-	87	3,837	-	-	-	-

주) 2024년은 9월말 실적까지
자료: 산림청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실시설계 도중 총사업비가 당초 80억원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시설계를 중단하였고, 국립보은등산학교와 '숲길 허브 육성' 기능 수행을 위한 대상지 변경(이전)을 위해 2025년에는 토지매입비(30억원)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 예산액 37억 5,000만원[8]은 이월하여 토지매입 후 집행할 예정이라고 함(사업종료시점도 당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순연됨).

[국립보은등산학교 조성사업의 변경된 연차별 재정소요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업비(국비)	11,000	500	3,750	3,000	3,750
국립등산학교	8,000	500	3,750	-	3,750
토지매입비	3,000			3,000	
사업내용	-	-기본계획, 실시설계	-실시설계('23.12-'24.10) -1차시공 등('24.12-'25.12)	-토지매입 ('25.2 계획)	-1차시공 등 ('26.1.-'26.12)

자료: 산림청

그러나 ① 대상지 변경 사유인 '숲길 허브 육성'은 이미 2023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동서트레일조성사업[9]'의 일부분으로써, 2023년 사업이 시작된 국립보은등산학교의 대상지 선정시부터 고려되었어야 하는 사안이고,

② 또한, 총사업비가 80억원(당초계획)인 대규모 공사사업의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예산액 반영한 이후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가로 토지매입비를 편성하는 등

8) 산림청에 따르면, 2024년 예산현액 38억 3,700만원 중 2023년도로부터의 이월액 8,700만원은 2024.10월 실시설계 완료 후 집행예정이라고 함.

9) '동서트레일 조성사업(2023년~2026년)'은 경상북도 울진에서 충청남도 태안까지 총 849㎞를 연결하여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1,100만원(51.5%)이 감액된 6억 7,000원이 편성되었음.

총사업비 증액 및 토지 매입을 위한 여러 사전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발생된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2025년 토지매입비 진행 절차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편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10] 2024년에 편성되었으나 미집행된 실시설계비 예산액 37억 5,000만원은 불용처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산림청에 따르면, 2025년 토지매입 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25.1.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의결('25.2.) → 매수계약('25.2.) 등의 일정으로 진행 예정이라고 함.

4.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 국산 헬기 신규도입 적극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산림헬기 도입・교체’** 사업은 동시다발적이고 대형화하는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중진화가 가능한 산불진화 헬기를 도입・교체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억원(△27.6%) 감액된 525억원이며, 신규 헬기 2대 도입을 위한 1년차 예산안 88억원이 포함되어 있음.[11)]

[2025년도 산림헬기 도입·교체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산림헬기 도입・운영	112,344	93,858	△18,486	△16.5
산림헬기 도입·교체	72,500	52,500	△20,000	△27.6

자료: 산림청

[산림헬기 신규 도입 예산안 세부내역]

○ 신규 헬기 2대 도입을 위한 1년차 예산안 88억원
- 대형헬기('25년-'27년) 55,000백만원× 1대×10%(1년차) = 5,500백만원
- 중형헬기('25년-'27년) 33,000백만원× 1대×10%(1년차) = 3,300백만원

자료: 산림청

나. 검토의견

산림헬기 신규도입시 헬기 부품・정비에 따른 대외리스크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국산 헬기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헬기・부품 공급선의 다변화를 통해 산림 헬기 운영의 효율성 및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신규 헬기 도입은 최근 산불의 대형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으로 러시아산 KA-32헬기(29대) 부품의 수급이 불가하여 가동중단이 늘어 산불 진화 역량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임.

11) 일반회계-산림헬기 도입・운영(2333-300)(산림항공본부)

산림청에 따르면, 러시아산 KA-32헬기가 산림청 보유 헬기의 60%(29대/48대)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가동률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실제로 2023년도 KA-32헬기 4대, 2024년도 KA-32헬기 8대는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예측되며, 2025년 이후 계속해서 가동중단이 예상되는 KA-32 헬기는 2025년도 9대, 2026년도 14대, 2027년도 15대로 증가하여 산림헬기의 가동률 하락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산림헬기 운영 현황]

구분	계	본부	익산	양산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	울진	제주	비무장지대
계(대)	48	5	3	5	4	4	4	4	5	6	3	3	1	1
S-64(대형)	7	2	1	-	-	1	1	1	-	-	-	1	-	-
KA-32(중형)	29(8)	3(2)	2(1)	2(1)	2(1)	3(1)	3	3(1)	3(1)	2	2	2	1	1
KUH-1FS(중형)	1	-	-	-	-	-	-	-	-	-	1	-	-	-
Bell 206(소형)	7	-	-	3	-	-	-	-	-	4	-	-	-	-
AS 350(소형)	4	-	-	-	2	-	-	-	2	-	-	-	-	-

주) ( )는 가동 중단 헬기수 : KA-32, 8대(2024.8월 기준)
자료: 산림청

[KA-32헬기 가동중단 예측 및 현황]

구 분 (대, 누적)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예상 가동중단	8	8	8	8	8	8	8	9	14	14	14	14	15	15	15	15
실제 가동중단	8	8	-	-	-	-	-	-	-	-	-	-	-	-	-	-

주) 2024년 8월 기준
자료 : 산림청

이와 같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진화헬기 주력기종인 러시아산 KA-32헬기의 부품수급 곤란으로 인해 동 기종 다수가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산 헬기 기종의 경우 부품수급 및 정비를 위한 계약 및 조달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2024년 산림헬기 외주정비 예산집행률 또한 저조함(2024년 8월 기준 예산현액 131억 8,600만원 중 15억 5,800만원 집행, 집행률 11.8%).

[산림헬기 외주정비 사업 2024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	24년									
	산림청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예산현액(이전용등)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실집행율 (B/A)	이월액	불용액
외주정비	13,629	13,186 (△443)	1,558	-	1,057	13,186	1,558	11.8	-	-

주) 2024년은 8월말 실적까지
자료: 산림청

따라서 향후 산림청은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산림헬기 2대 도입시 헬기 부품·정비에 대외리스크 영향을 크게 받지 않도록 국산 헬기 도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12], 헬기·부품 공급선의 다변화를 통해 산림 헬기 운영의 효율성 및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12) 국산 헬기 도입 통한 부품·정비 대외리스크 해소 필요성 등의 내용이 2023회계년도 산림청 소관 상임위 결산심사 제도개선 사항이었음.

5. 2026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업(신규): 지방비 확보 여부에 따른 국비 지원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업은 세종시가 2026년 유치·개최를 추진하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76억 8,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3)]

[2025년도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정원조성관리		24,690	20,748	△3,942	△15.9
	2026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	7,688	7,688	순증

자료: 산림청

나. 검토의견

지방비 확보를 통해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해지게 될 때 국비지원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 사업은 세종시가 2026년 유치·개최하려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업에 대해 정원조성비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84억 4,000만원이며, 국비 20%(2025년 신규 예산안 76억 8,800만원), 지방비 40%, 수입금 40%로 계획되어 있음.

13) 일반회계-정원조성관리(1943-300)(산림보호국)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업비 소요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4	2025	2026
계	38,440	1,501	22,554	14,385
ㅇ 국비(20%)	**7,688**	**0**	**7,688**	**-**
ㅇ 지방비(40%)	15,376	1,501	10,253	3,622
ㅇ 수입금(40%)	15,376	0	4,613	10,763

자료: 산림청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세종시 의회는 지난 2024년 10월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업' 추경예산안 14억 100만원(박람회 조직위 출연금 및 계획용역비)을 전액 삭감하여 2026년 박람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14)]

따라서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를 통해 정상적으로 개최가 가능해지게 될 때 국비지원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14) 산림청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2회 추경을 통해 요구된 '2026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예산안이 세종시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며('24.9.10.), 다시 3회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안이 편성요청 되었으나 세종시 의회 상임위 전액 삭감, 예결위 미의결 및 자동 산회('24.9.23.)되었고, 이후 '24.10.11.개최된 세종시 의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됨.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 출>

6. 어린이 목공체험관 조성·운영 사업(신규):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된 사업내용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어린이 목공체험관 조성·운영’** 사업은 어린이부터 부모까지 이용할 수 있는 목공체험 복합공간을 국산목재로 구축하고, 국산목재로 만들어보는 국가 표준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2025년에 예산안 41억 6,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5)]

[2025년도 어린이 목공체험관 조성 및 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목재이용증진	8,826	9,826	1,000	11.3
어린이 목공체험관 조성·운영	-	4,169	4,169	순증

자료: 산림청

[어린이 목공체험관 조성 및 운영 예산안 세부내역]

○ 2025년 예산안(4,169백만원) = 공사비(4,070백만원) + 운영비(99백만원)
- 공사비 : 4,070백만원(설계비 177백만원 + 공사비 3,851백만원 + 감리비 42백만원 = 4,070백만원)
- 운영비 : 99백만원(목재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33백만원 × 3개월 = 99백만원)

자료: 산림청

1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목재이용증진(1535-304)(산림산업정책국)

나. 검토의견

이미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공간과 학교체험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목공체험관 조성·운영” 사업이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함.

어린이 목공체험관 조성 및 운영 사업의 사업계획·일정에 따른 재정 소요액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에 대상지 선정, 2025년 1월~9월까지 설계·공사 진행 및 2025년 10월~12월까지 3개월분의 운영비 및 인건비 등 41억 6,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어린이 목공체험관 조성 및 운영 사업의 2025년 사업계획 및 재정소요액]

사업계획	대상지 선정		설계·시공		운영
일정	(~'24.12월)	→	('25.1~9월)	→	('25.10~12월)
재정소요액	-		4,070백만원		99백만원

자료: 산림청

산림청은 어린이 목공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을 2025년 단년도에 시설 완공 및 운영비까지 편성하였지만, 2025년 예산안 확정 후 공모를 통한 대상지 선정에 2-3개월이 소요되고, ‘기본설계-실시설계-시설공사-감리’ 까지의 체험관 조성·구축 공사가 현실적으로 몇 개월 내에 완료되기 어려우며, 완공 직후 인건비 등 3개월(10월~12월)분의 운영비까지 편성하는 등 사업추진 일정이 무리하다고 보임.

또한 세부사업 내에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목재의 탄소흡수 기능에 대한 이론교육과 국산 목재를 활용해 생활소품·가구·장난감 등을 만드는 목재체험 활동을 하며 교육활동에 필요한 목재 꾸러미, 교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목재체험교실’이 별도로 매년 운영되고 있는데(34개교, 5,000명 규모, 2025년 예산안 1억 5,600만원)[16], 신규 사업인 “어린이 목공 체험관 조성 및 운영” 사업과 목적·내용이 일정 부분 유사해 보임.

['목재체험교실' 사업 내용]

○ 사업목적 : 국산목재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방법을 배우며 목재 기능과 활용법 익힘을 통해 목재를 친숙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함
○ 모집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총 34개교, 1개교당 최대 100명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역: 목재체험교실프로그램 교재 및 체험자료(국산목재), 프로그램 강사 지원(목재교육 전문가)
○ 2025년 예산안 : 31,200원 × 5,000명 = 156,000천원

자료: 산림청

16) 산림청 보도자료, “나무로 뚝딱뚝딱 ! 재미있게 배우고 탄소중립 실천하는 ‘목재체험교실’ 신청하세요!” (2024.8.2.)

또한 목재의 생산부터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과 직접체험을 통해서 목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 전국 49개소 운영되고 있음.

[전국 목재문화체험장 현황(전국 49개)]

지역	목재문화체험장 소재지	지역	목재문화체험장 소재지
경기도(4개)	안성 목재문화체험장	경상북도(7개)	상주 목재문화체험장
	이천 목재문화체험장		영천 목재문화체험장
	남양주 목재문화체험장		영양 목재문화체험장
	용인 목재문화체험장		예천 목재문화체험장
강원도(6개)	철원 목재문화체험장		봉화 목재문화체험장
	인재 목재문화체험장		영덕 목재문화체험장
	삼척 목재문화체험장		의성 목재문화체험장
	양구 목재문화체험장	경상남도(9개)	합양 목재문화체험장
	화천 목재문화체험장		합천 목재문화체험장
	정선 목재문화체험장		진주 진양호 목재문화체험장
인천(1개)	인천 목재문화체험장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충청북도(3개)	충주 목재문화체험장		거제 목재문화체험장
	음성 목재문화체험장		창원 목재문화체험장
	청주 목재문화체험장		하동 목재문화체험장
충청남도(4개)	청양 목재문화체험장		진주 월아산 목재문화체험장
	공주 목재문화체험장		김해 목재문화체험장
	보령 목재문화체험장	전라남도(8개)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금산 목재문화체험장		고흥 목재문화체험장
전라북도(3개)	장수 목재문화체험장		목포 목재문화체험장
	임실 목재문화체험장		구례 목재문화체험장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광양 목재문화체험장
대전(1개)	대전 목재문화체험장		순천 목재문화체험장
대구(2개)	대구 목재문화체험장		장흥 목재문화체험장
	대구 달서 목재문화체험장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제주(1개)	제주 목재문화체험장		

자료: 산림청

이미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공간과 학교체험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목공체험관 조성·운영” 사업이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함.[17]

17) 산림청은 ‘어린이 목공체험관’을 공공기관 내부에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시행·운영되고 있는 ‘목재체험교실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함.

7.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 예산 실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은 지역목재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도시의 건축, 거리 및 생활환경을 전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목재이용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액(0.1%)된 69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18)]

[2025년도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목재산업육성	32,264	12,280	△19,984	△61.9
목재산업육성	29,628	10,617	△19,011	△64.1
목재친화도시조성	6,938	6,945	7	0.1

자료: 산림청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목재친화도시조성 2년차 1개소 × 250백만원 × 50% = 125백만원
○ 목재친화도시조성 3년차 4개소 × 1,500백만원 × 50% = 3,000백만원
○ 목재친화도시조성 4년차 5개소 × 1,500백만원 × 50% = 3,750백만원
○ 목재친화도시조성 지원단 10개소 × 700백만원 × 100% = 70백만원

자료: 산림청

나. 검토의견

목재친화도시조성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연차별 지원율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2년에 5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에 4개소, 2024년에 1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였으며, 각 지역마다 4년간 총 5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각

1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목재산업육성(1535-303)(산림산업정책국)

각 50%씩 지원함.

산림청은 이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연차별 지원율을 2024년(2년차)부터 1·2년차 각각 5%, 3·4년차 각각 45%로 연차소요액을 조정하였음.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2년에 선정된 5개소에 대한 4년차 사업비 37억 5,000만원(5개소×7억 5,000만원), 2023년에 선정된 4개소에 대한 3년차 사업비가 30억원(4개소×7억 5,000만원), 2024년에 선정된 1개소에 대한 2년차 사업비(1개소×1억 2,500만원)가 각각 계상되어 총 69억 4,500만원(지원단 예산안 7,000만원은 별도)으로 편성되었음.

예산안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2022년과 2023년에 선정된 지역의 실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5개소에 각 2억 5,000만원씩 총 12억 5,000만원(지원단 예산 3,500만원 별도)이 편성되었으나 그 중 2억 4,200만원(19.4%)만 실집행됨으로써 집행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났음.

2023년에는 신규 1년차 4개소에 10억원과 2년차 5개소에 37억 5,000만원 등 총 47억 5,000만원(지원단 예산 5,600만원 별도)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10억 8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57억 5,800만원 중 14억 3,400만원이 실집행되어 24.9%의 예산실집행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2024년 8월까지의 실집행실적 또한 신규 1개소 및 2년차 4개소, 3년차 5개소에 총 68억 7,500만원(지원단 예산 6,300만원 별도)이 교부되었지만, 실집행실적은 2억 1,000만원에 불과(실집행률 1.9%)함.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산림청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	불용액	B/A
2022년	1,250	1,250	1,250	-	1,250	242	1,005	3	19.4
2023년	4,750	4,750	4,750	1,008	5,758	1,434	4,324	-	24.9
2024년 8월	6,875	6,875	6,875	4,324	11,199	210	-	-	1.9

자료: 산림청

이 사업은 사업 초년도부터 연속하여 실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산림청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지연, 지방비 미확보 등을 주요 사업 지연 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2023년 사업대상 지역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전라남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0.0%~18.6%의 예산집행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4년 8월까지의 예산집행실적 또한 0.0%~4.3%의 예산집행률을 보여주고 있음.

[2023년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 대상 지역별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지역)	2023년									
	산림청				사업집행주체					
	예산액	예산현액(이전용등)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대구광역시	250	250	250	250	-	250	-	-	250	-
대전광역시	1,000	1,000	1,000	1,000	49	1,049	178	17.0	871	-
강원도	750	750	750	750	250	1,000	49	4.9	951	-
충청북도	500	500	500	500	-	500	93	18.6	407	-
전라북도	750	750	750	750	250	1,000	42	4.2	958	-
전라남도	750	750	750	750	250	1,000	987	98.7	13	-
경상북도	750	750	750	750	209	959	85	8.9	874	-
합계	4,750	4,750	4,750	4,750	1,008	5,758	1,434	24.9	4,324	-

자료: 산림청

[2024년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 대상 지역별 예산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지역)	2024년									
	산림청				사업집행주체					
	예산액	예산현액(이전용등)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대구광역시	875	875	875	875	250	1,125	28	2.49	-	-
대전광역시	1,500	1,500	1,500	1,500	871	2,371	-	-	-	-
강원도	750	750	750	750	951	1,701	52	3.6	-	-
충청북도	1,500	1,500	1,500	1,500	407	1,907	36	1.9	-	-
전라북도	750	750	750	750	958	1,708	73	4.3	-	-
전라남도	750	750	750	750	13	763	-	-	-	-
경상북도	750	750	750	750	874	1,624	21	1.3	-	-
합계	6,875	6,875	6,875	6,875	4,324	11,199	210	1.9	-	-

주) 2024년은 8월말까지 실적

자료: 산림청

산림청은 사업 지원 대상 지역들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동일한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음. 이는 보조사업의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지방비 부담 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이월금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또는 교부하도록 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및「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9]등에 부합하지 않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임업계정의 2025년 세입 예산안이 전년 대비 111억 200만원(전년대비 △1.1%) 감소되어, 불요불급한 재정 소요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고[20], 사업계획 초기부터 정해진 연차별 지원율을 그대로 지원하려는 2025년도 예산안은 이 사업의 사업추진 실적을 감안할 때 계획대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차별 지원율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19)「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25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계정) 세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1,030,386	986,698	975,596	△11,102	△1.1

자료: 산림청

8.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의 국가재정으로의 편입 필요성 검토

가. 개 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함)” 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21]에 따라 산림청장이 자금의 설치·운용 주체이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산림환경보호·산림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조성에 사용되고 있음. 산림청은 2025년도 녹색자금의 운용계획안을 전년대비 42억 7,800만원이 증액된 775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녹색자금)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4.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의 조성·운영사업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7.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25년 녹색자금 수입지출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	수 입			구분 (내역)	지 출		
	2024년	2025년	증감		2024년	2025년	증감
복권기금전입	72,967	77,528	77,528	사업비용	73,268	77,528	4,260
비배분수익*	12	1	△12	기타지출	2	21	18
이월금**	291	20	△271				
합계	**73,270**	**77,549**	**4,278**	**합 계**	**73,270**	**77,549**	**4,278**

주) * 이자수입, 사업집행잔액 반납액 등 / ** 복권기금이월금
자료: 산림청

나. 검토의견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금운용 등은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 자금을 국가재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17조[22]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53조[23]에 규정된 사항(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 차관물자대 세입예산 초과분,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액의 세출예산 초과분 등 5가지), 「국고금관리법」제34조[24](국고금통합계정 운용수익

22)「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3)「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 1. 1.>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국고금 관리법」

금), 「정부기업예산법」제13조[25](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을 규정하고 있음.

'예산총계주의 원칙' 이 요구되는 이유는 예산의 투명성·명료성·책임성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운용이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의 시정요구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국가재정법」 및 개별 법률에 근거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사항]

(단위: 억원)

근거법률	재정 외 운영자금 내역	'23년 운용규모
「국가재정법」제53조	수입대체경비의 초과 지출	364
	현물투자	28,228
	외국차관의 전대	0
	차관물자대의 세입예산 초과분	0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액의 세출예산 초과분	0
「국고금관리법」제34조	국고금통합계정 운용수익금	1,805
「정부기업예산법」제13조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15,061

주) '24년 운용규모는 집계 중
자료: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의 자료 재작성

그러나, 산림청의 녹색자금의 경우, 자금의 집행 계획을 산림청 소관 심의기관인 녹색자금운용심의회[26]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집행하며, 결산의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5)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58조제4항에 따른 녹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 25.>

에 결산보고서를 보고[27]하는 것으로 완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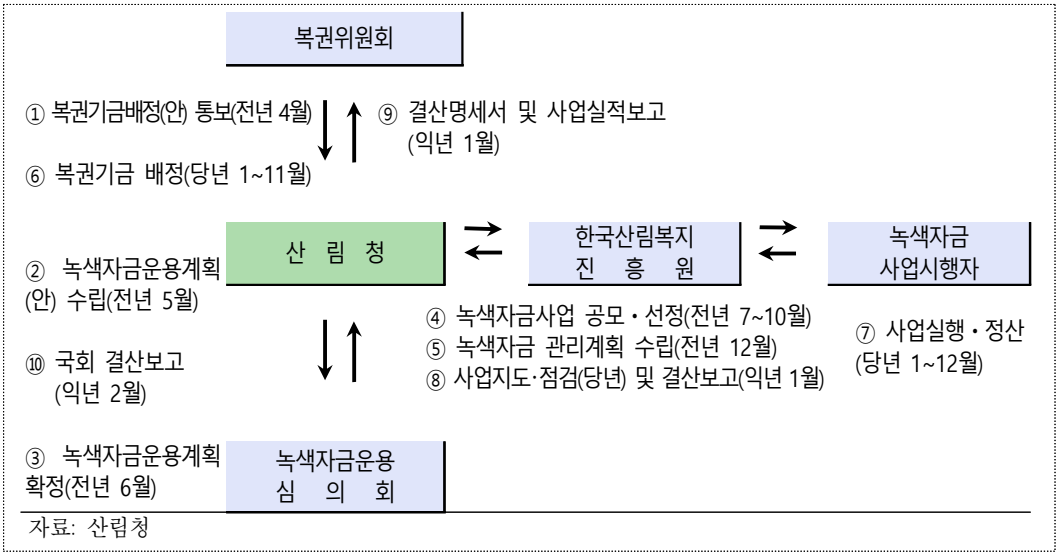
즉, 녹색자금에 편성·집행되는 사업의 경우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어, 다른 국가재정 사업에 비해 민주적 통제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녹색자금의 사업 추진체계 및 시행체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녹색자금 운용심의회 개최	산림청	◦ 녹색자금운용계획 확정·통보
② 공모사업 공고	진흥원	◦ 공모사업 공고 → 공모설명회 개최 → 공모사업 신청
③ 공모사업 사전심사 및 사업자 선정	진흥원	◦ 사전심사위원회 구성 → 산림청 승인 → 사전심사 → 사업자 심사결과 보고
④ 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진흥원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시행자) → 검토확정(진흥원)
⑤ 사업자 확정 통보	산림청	◦ 사업자 확정 통보(진흥원 → 사업시행자)
⑥ 복권기금 사업추진	사업시행자	◦ 사업자금 신청 및 배정
⑦ 사업실적 정산·평가	진흥원	◦ 사업실적 정산·평가(진흥원 → 사업시행자)
⑧ 복권기금 국회결산	산림청	◦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진흥원 → 복권위원회) ◦ 국회결산 보고(진흥원 → 산림청 → 국회)

③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녹색자금 결산명세서
3.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자료: 산림청

또한 녹색자금 재원 대부분이 국가 재정인 복권기금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고[28], 지출 사업의 내용 또한 산림청 일반회계 등에 편성되어 국회의 예산심의 및 집행 후 결산심사를 받는 사업들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 외로 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28) 2024년 729억 6,700만원, 기금전체 수입액 732억 7,000만원의 99.6% / 2025년안 775억 2,800만원, 기금전체 수입액 775억 4,900만원의 99.9%임.

[녹색자금에 편성된 사업 내역 및 2025년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	2024년	2025년	증감
합계	**73,268**	**77,528**	**4,260**
ㅇ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41,165**	**41,507**	**342**
- 복지시설나눔숲 조성	15,277	12,530	△2,747
- 무장애나눔길 조성	14,732	12,567	△2,165
- 치유의숲 조성	4,814	2,830	△1,984
- 민간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편의개선사업	1,308	1,308	전년동
- 체험교육나눔숲 조성	4,390	11,692	7,302
- 수목장림나눔숲 조성·지원	644	580	△64
ㅇ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32,103**	**36,021**	**3,918**
- 숲체험·교육사업	21,176	24,982	3,806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8,073	8,585	512
- 기타 숲체험·교육 지원	2,854	2,454	△400

자료: 산림청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서, 녹색자금 운용을 기금 설치를 통해 자금 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자금 소관 주체와 운용 주체를 산림청으로 일원화하여 사업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녹색자금을 산림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덧붙여, 녹색자금과 같이 세입·세출 외로 운용되던 자금들이 국가 예산 또는 기금에 편입된 사례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소관의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물에 따른 '기술료 징수액', 원자력 관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징수하던 '출국납부금', 자동차보유자들의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등이 재정 외로 운용되고 있었으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원자력안전법」,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의 법률 개정으로 각각 기금 수입으로 편입되었음.

[국가 재정 외로 운영되던 재원들이 국가 재정 내로 편입된 사례]

재정 외 운용자금	편입 후 편성 내용	근거 법률	편입 시점
기술료 징수액	산업기술진흥기금의 산업기술혁신계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	2015년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 등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	2016년
출국납부금	국제질병퇴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	2017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	2017년
중독예방 치유부담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	2018년
공익사업 적립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법률 제15261호〉 제3조 등	2018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보고서(2024. 7)

해양수산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수입은 1조 3,449억원으로, 전년 대비 4,380억원(48.3%) 증가함. 예산은 6,559억원으로 전년 대비 3,755억원(133.9%) 증가하고, 기금은 6,89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5억원(10.0%) 증가함.[1)]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2,804	6,559	3,755	133.9
기 금	6,265	6,890	625	10.0
총수입	9,069	13,449	4,380	48.3

문의 : 양경화 예산결산조사관 yang717@assembly.go.kr (02-6788-568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지출은 6조 7,837억원으로 전년 대비 958억원(1.4%) 증가함. 예산은 5조 9,8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2억원(1.9%) 증가한 반면, 기금은 7,9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원(△1.8%) 감소함.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58,779	59,881	1,102	1.9
기 금	8,100	7,956	△144	△1.8
총지출	66,879	67,837	958	1.4

나. 예산안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6,559억원으로 전년 대비 3,755억원(133.9%) 증가함.

[2025년도 해양수산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533	4,231	3,698	693.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318	322	4	1.3
교통시설 특별회계	1,838	1,918	80	4.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77	50	△27	35.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8	38	-	-
합 계	2,804	6,559	3,755	133.9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5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5조 9,8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2억원(1.9%) 증가함.

[2025년도 해양수산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8,778	18,424	△354	△1.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6,799	16,711	△88	△0.5
교통시설 특별회계	17,531	17,736	205	1.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038	6,392	1,354	26.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633	618	△15	△2.4
합 계	58,779	59,881	1,102	1.9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1개 기금(수산발전기금)의 수입계획안은 6,89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5억원(10.0%) 증가함.

[2025년도 해양수산부 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수산발전기금	6,265	6,265	6,890	625	10.0
합 계	6,265	6,265	6,890	625	10.0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1개 기금(수산발전기금)의 지출계획안은 7,9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원(△1.8%) 감소함.

[2025년도 해양수산부 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수산발전기금	8,100	8,100	7,956	△144	△1.8
합 계	8,100	8,100	7,956	△144	△1.8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해양수산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20개(598억 1,6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한-미 공동해조류바이오매스생산시스템개발(R&D)’ 사업은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탄소 저감 기술 개발로 국가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 및 해조류 바이오매스 스마트 생산 효율화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7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은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어구 및 국내 침적 폐어구 상시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0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해양수산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관리체계 구축	2,770
2	남극해급격한온난화대응남극해빙예측기술개발(R&D)	2,600
3	아열대해양환경적응시나리오개발대응책및활용체계구축(R&D)	2,000
4	해양마이크로바이옴기반생태환경관리기술개발(R&D)	1,700
5	해양생물독생산및기능성활용기술개발(R&D)	3,100
6	한-미공동해조류바이오매스생산시스템기술개발(R&D)	7,450
7	해양수산딥테크육성기술개발(R&D)	4,125
8	해양블루테크미래리더양성프로젝트(R&D)	4,350
9	어선원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2,124
10	국제사회IUU어업예방을위한원양어선전자모니터링기술개발(R&D)	3,000
11	수산부산물산업활용성기술개발사업(R&D)	2,500
12	수산업현장맞춤형기술고도화사업(R&D)	1,70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
13	지속가능한우량김종자생산및육상양식기술개발(R&D)	6,000
14	해양아쿠아포닉스기반에너지절감형육상양식시스템구축및운용기술개발(R&D)	2,050
15	스마트항만기술산업경쟁력강화핵심기술개발(R&D)	4,400
16	한국형연안재해정밀예측기술개발(R&D)	4,300
17	항만서비스산업선진화지원	1,470
18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지원	75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	소비지유통시설지원	375
2	감척어선공공활용	3,045
총지출		59,816

한편, 해양수산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어촌신활력증진’,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군장항(2단계)’ 사업 등 총 69개임.[3)]

[2025년도 해양수산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심해저 광물자원 기술개발(R&D)	7,094	10,000	2,906	41.0
2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R&D)	7,384	16,466	9,082	123.0
3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R&D)	4,100	5,530	1,430	34.9
4	고품질준실시간해양그리드데이터서비스체계개발(R&D)	2,217	3,067	850	38.3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5	천해용 수중 모빌리티 기술 개발(R&D)	1,000	2,597	1,597	159.7
6	극한지개발및탐사용협동이동체시스템기술개발(해수부)(R&D)	2,207	2,970	763	34.6
7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국산화 기술개발(R&D)	3,220	5,115	1,895	58.9
8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R&D)	2,000	3,000	1,000	50.0
9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장기전망 연구(R&D)	3,392	5,475	2,083	61.4
10	해양무인시스템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R&D)	3,959	8,314	4,355	110.0
11	해저활성단층 특성 규명 연구(R&D)	2,550	4,500	1,950	76.5
12	(다부처)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연구개발및실증(R&D)	500	2,000	1,500	300.0
13	민군 활용 AI기반 융복합 해양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및 보안 플랫폼 구축(R&D)	2,400	3,200	800	33.3
14	생태계기반수산정책지원기술개발(R&D)	1,920	2,700	780	40.6
15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관리기술개발(R&D)	2,855	5,630	2,775	97.2
16	블루카본 증대를 위한 세라믹계 융합소재 활용 해양인공 구조물 개발(R&D)	525	1,600	1,075	204.8
17	CO2 수송-주입복합기능선박 기술개발(R&D)	1,347	1,800	453	33.6
18	순환적응형연안침식관리기술개발(R&D)	2,134	2,988	854	40.0
19	연안관리정보구축(정보화)	691	1,038	347	50.2
20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1,320	2,001	681	51.6
21	청사시설관리	4,954	7,078	2,124	42.9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	수급 위기관리체계 구축	1,500	2,850	1,350	90.0
2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	460	2,760	2,300	500.0
3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3,750	6,379	2,629	70.1
4	친환경양식어업육성	36,907	48,762	11,855	32.1
5	내수면자원조성	6,667	17,117	10,450	156.7
6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3,502	6,923	3,421	97.7
7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12,191	17,556	5,365	44.0
8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	166,077	192,757	26,680	16.1
9	원양어업활성화	5,122	8,593	3,471	67.8
10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162,607	220,567	57,960	35.6
11	국가어항	306,328	337,786	31,458	10.3
12	양식장임대	397	5,832	5,435	1369.0
13	AI 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R&D)	2,996	4,996	2,000	66.8
[교통시설특별회계]					
1	LNG벙커링동시작업기술개발(R&D)	720	1,220	500	69.4
2	스마트 항로표지 및 연계기술 개발(R&D)	4,725	7,125	2,400	50.8
3	국제표준기반지상파-위성통합 VDES체계기술개발(R&D)	2,636	3,436	800	30.3
4	해양디지털항로실증기술개발(R&D)	3,909	8,448	4,539	116.1
5	선박배출온실가스(GHG)통합관리기술개발(R&D)	3,000	7,774	4,774	159.1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6	지상파항법시스템고도화기술개발(R&D)	2,430	7,070	4,640	190.9
7	부산항 진해신항	404,734	434,650	29,916	7.4
8	평택,당진항	27,330	71,755	44,425	162.6
9	목포신항	14,231	19,423	5,192	36.5
10	동해신항	32,361	99,960	67,599	208.9
11	인천남항	9,400	30,023	20,623	219.4
12	목포항	10,917	18,529	7,612	69.7
13	목포북항	7,061	18,865	11,804	167.2
14	군장항(2단계)	24,165	116,422	92,257	381.8
15	항만건설관련 연구용역	10,213	14,277	4,064	39.8
16	일반항	69,614	98,779	29,165	41.9
17	광양(여천)항	10,180	23,165	12,985	127.6
18	울릉(사동)항	2,783	13,812	11,029	396.3
19	여수신항	450	607	157	34.9
20	기타항만 재개발	5,543	7,591	2,048	36.9
21	여객터미널 운영	12,113	16,488	4,375	36.1
22	항만보안시설 확충	6,718	10,673	3,955	58.9
23	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 협력	4,395	5,745	1,350	30.7
24	표지시설(측위원)	5,391	7,332	1,941	36.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연안정비	55,221	87,210	31,989	57.9
2	산지유통시설지원	360	3,195	2,835	787.5
3	어촌신활력증진	96,180	225,734	129,554	134.7
4	국가어항(제주)	6,746	11,744	4,998	74.1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5	제주외항(2단계)	4,535	6,757	2,222	49.0
6	화순항	6,222	8,842	2,620	42.1
7	제주일반항건설	13,711	32,009	18,298	133.5
[수산발전기금]					
1	우수수산물지원(융자)	132,401	148,946	16,545	12.5
2	수산물수매지원(융자)	115,370	152,743	37,373	32.4
3	산지 및 소비지유통 자금(융자)	118,686	131,286	12,600	10.6
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786	1,086	300	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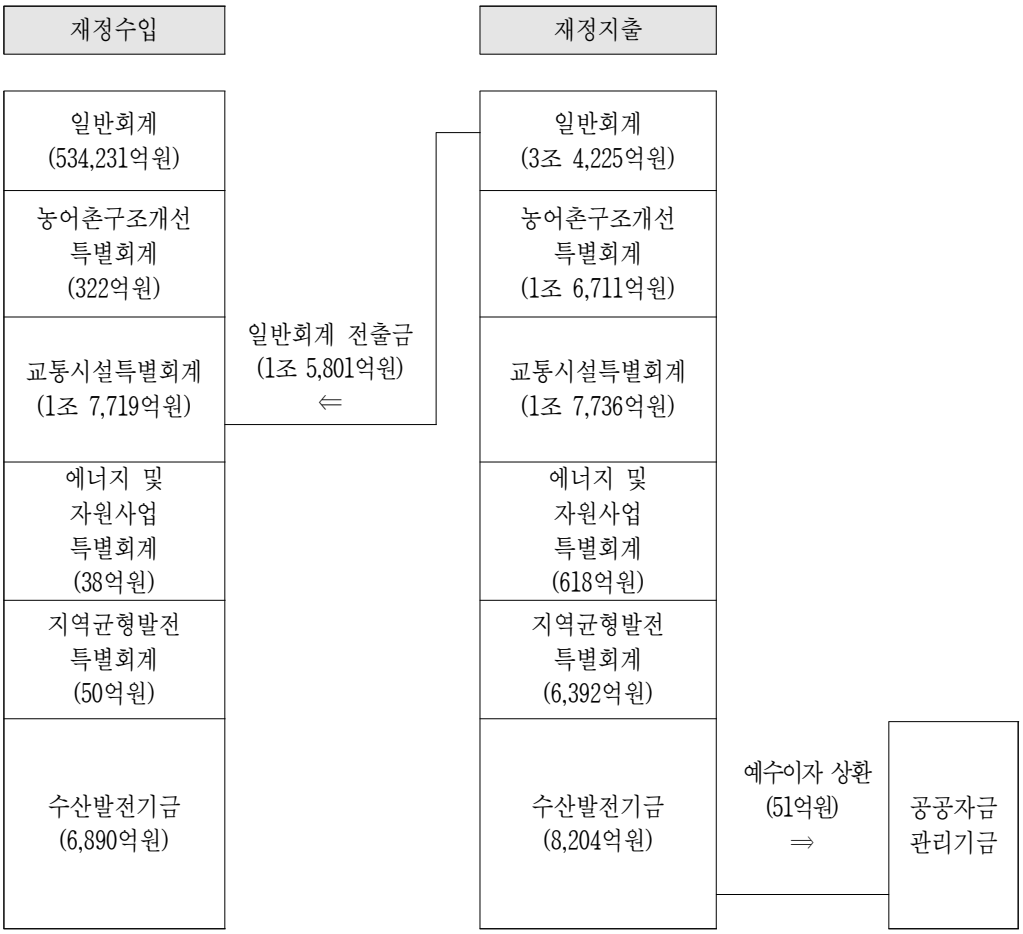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수산발전기금 1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1조 5,801억원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수산발전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1억원 예수이자 상환되었음.

[해양수산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살기 좋고 찾고 싶은 바다 생활권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과 수산업·항만의 스마트 전환 등 체질개선을 통한 역동경제 구현,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 및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기후위기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양식어업 재해보험 사업·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 및 어업인 안전보험 사업은 2023년 국고보조 미지원액을 2025년 예산안에 편성하였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수요를 면밀히 예측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이·전용 등 법률에 규정된 방식을 통해 연내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은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부담 증가 및 재정운용상 경직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셋째,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종전에 타당성재조사 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된 바 있으므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넷째,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후속 성격 사업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의 추이와 유사하게 실집행단계에서 과도한 유보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해양수산부 소관 재해 및 안전 관련 보험 사업: 당해연도 예산으로 보험료 충당 필요

가. 개 요

해양수산부 소관 재해 및 안전 관련 보험 사업은 2025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양식어업 재해보험 사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 및 어업인 안전보험 사업 등 3개 사업에 편성되었음.

‘양식어업 재해보험’ 사업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식수산물 및 그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9,100만원(3.7%) 증액된 250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은 연근해 어선소유자의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을 이행하는 한편 재해어선의 복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6억 8,000만원(16.1%) 증액된 1,927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5)]

‘어업인 안전보험’ 사업은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안전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7,200만원(8.3%) 증액된 22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6)]

---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양식어업 재해보험(3443-300)(수산정책실)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3443-301)(수산정책실)

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어업인 안전보험(3443-368)(수산정책실)

[2025년도 양식어업 재해보험 사업·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
어업인 안전보험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양식어업 재해보험	24,110	25,001	891	3.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166,077	192,757	26,680	16.1
어업인 안전보험	2.071	2,243	172	8.3

[양식어업 재해보험 사업·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어업인 안전보험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양식어업 재해보험 250억 100만원**
- 순보험료 지원 154억 4,700만원 + 운영사업비 지원 84억 2,200만원 + 양식보험 사업관리 위탁 4억 300만원 **+국고보조 미지원액 7억 2,900만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1,927억 5,700만원**
- 어선원 순보험료 지원 695억 7,000만원 + 어선 순보험료 지원 501억 4,700만원 + 부가보험료 지원 468억 4,400만원 + 합병증 등 예방관리 4억 7,400만원 + **국고보조 미지원액 257억 2,200만원**

○ **어업인 안전보험 22억 4,300만원**
- 보험료 지원 13억 6,200만원 + **국고보조 미지원액 8억 100만원** +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8,00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양식어업 재해보험 사업·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 및 어업인 안전보험 사업은 2023년 국고보조 미지원액을 2025년 예산안에 편성하였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수요를 면밀히 예측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이·전용 등 법률에 규정된 방식을 통해 연내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양식어업 재해보험의 2025년도 예산 편성액 205억 100만원 중 3.6%인 7억 2,900만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2025년도 예산 편성액 1,927억 5,700만원 중 13.3%인 257억 2,200만원, 어업인 안전보험의 2025년 예산 편성액 22억 4,300만원 중 35.7%인 8억 100만원은 전전년도(2023년) 국고보조 미지원액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양식어업 재해보험의 경우 2025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은

2006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그리고 어업인 안전보험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시부터 전전년도 국고보조 미지원액이 있을 경우 이를 차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이러한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 재해보험의 경우 2021년부터 양식보험의 가입률이 증가하였으나 예산액은 감소함에 따라 2023년 예산액 대비 보험가입증가에 따른 순보험료 초과분을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는 입장임.[7] 또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과 어업인 안전보험의 경우 확정 예산액 대비 실제 가입자 수 및 평균 가입금액이 크기 때문에 국고보조 미지원액이 발생하여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여 왔다는 입장임.

그리고 양식어업 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어업인 안전보험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국고보조 미지원액의 차차년도 예산 편성의 근거라고도 설명하였음.

[농어업재해보험·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어업인 안전보험 관련 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국가 등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지원 근거로 제시한 법률 조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해연도 예산 부족 발생 시 부족분에 대하여 차차년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양식어업 재해보험 사업·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 및 어업인 안전

7) 양식보험 가입률: ('21) 29.7%, ('22) 37.0%, ('23) 39.8%
양식어업 재해보험 예산액: ('21) 282억 8,900만원, ('22) 253억 100만원, ('23) 230억 2,900만원

보험 사업은 어업인의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다른 국가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당초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되어야 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는 재해 및 안전 보험 사업에서 사업수요를 면밀히 예측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이·전용 등 법률에 규정된 방식을 통해 연내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2. 해양경계 획정관리 사업: 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하여 예산 계상 여부 결정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해양경계 획정관리’** 사업은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을 획정·관리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5,000만원(△26.9%) 감액된 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5년도 해양경계 획정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해양공간 통합관리	4,819	4,443	△376	△7.8
해양경계 획정관리	1,300	950	△350	△26.9

[해양경계 획정관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해양경계 획정관리 9억 5,000만원**

- 획정 대상해역 기초자료 조사 및 공간정보 구축(일반연구비) 9억 5,00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8) 일반회계 - 해양공간 통합관리(1031-305)(해양정책실)

나. 검토의견

첫째, 해양경계 획정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2025년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해당 법률안의 입법추진이 몇 차례 있었으나, 부처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이견 등으로 실제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하여 예산 계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획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493호)이 발의(2024. 10. 2.)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임.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획정 대상해역 기초자료 조사 및 공간정보 구축 등을 위하여 일반연구비 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해양경계 획정과 관련한 입법추진은 2006년부터 그동안 몇 차례 있었으나 부처 간(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업무 조정에 관한 이견과, 전체회의 논의 중 이견 등으로 실제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해양경계 획정 관련 입법 추진 경과]

구 분	내용 및 경과
2006년~ 2007년	○ 행정안전부가 국가기본도 상 지자체 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법률안 마련을 추진하였으나 갈등 촉발 우려로 추진절차를 중단하였음
제19대 국회	○ 행정자치부는 분쟁 해결 업무를 포함한 지자체 해양 관할구역 설정 업무는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해양수산부는 「정부조직법」 상 지자체간 분쟁 및 관할구역 조정 업무는 행정자치부 소관이므로 해양수산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안전행정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회부되었으나 상정되지 않고 임기만료폐기됨
제21대 국회	○ 관련 법안의 농해수위 상정 당시 행정안전부는 공유수면의 지자체 관할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이후 해양수산부는 행정안전부와 부처 간 업무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밝힘 ○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개정안 3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2023. 9. 20.)하였으나, 전체회의(2023. 9. 21.)에서 위원 간 이견(소위 의결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으로 의결 보류. 이후 임기만료 폐기(2024. 5. 29.)

자료: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2023.2.)와 국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이 사업은 향후 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하여 예산 계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이 사업은 2024년 예산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일반연구비 1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근거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해당 예산을 집행한 문제가 있음.

이 사업은 2024년 예산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기본·추진 계획 수립, 국내외 사례 분석, 매뉴얼 마련 및 시범조사와 육·해상 연계 해양지형 분석 등을 위하여 일반연구비 13억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이 사업은 2023. 9. 21.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근거 법률안의 의결이 보류되고, 2024년 5월 29일 법률안이 임기만료 폐기되었음에도 2024년 3월 26일 연구용역을 시작(12억 2,900만원)하여 2024년 8월말 기준 예산액의 90.0%인 11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음.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 개요]

- 기간: 2024. 3. 26.~2025. 3. 20.
- 용역금액 및 용역사: 12억 2,900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요내용
  1)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본계획(안) 마련
  2) 해양관할구역 획정 추진계획(안) 마련
  3)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 및 업무처리 규정(안) 마련
  4) 시범해역 현황조사 및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술 검토

자료: 해양수산부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편성된 이 사업의 예산을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법안소위 의결안을 기반으로 하여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사전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당초 2024년 예산이 근거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기본·추진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소위 의결안을 기준으로 사전연구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제22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법률안의 논의 방향이 큰 폭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에 수행한 연구용역이 활용되지 못할 우려도 있어 재정적 효율성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3.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연례적 인건비 이월 규모를 고려하여 출연금 일부 감액조정 필요 등

가. 개 요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은 국립해양박물관·국립해양과학관·미래해양과학관 등을 건립 및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0억 4,500만원(△23.8%) 감액된 800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5년도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105,112	80,067	△25,045	△23.8
국립해양과학관 운영	8,266	9,173	907	11.0
미래해양과학관 운영	-	4,749	4,749	순증

내역사업인 **‘국립해양과학관 운영’**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700만원(11.0%) 증액된 91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립해양과학관 시설 개요]

○ 총사업비 및 건립기간: 971억원(국비 852억원, 지방비 119억원), ’15.1.~’19.12.
○ 시설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
○ 시설규모: 부지 111,000㎡, 건축연면적 12,345㎡*
  * 과학관(지상 3층 9,515㎡), 바닷속전망대(739㎡), 해상통로(1,306㎡), 숙박동(지상 2층 785㎡)
○ 법인출범 및 개관: ’20.5.,’20.7.
○ 조직 및 인력: 2본부 5실 8팀, 정원 43명

자료: 해양수산부

또 다른 내역사업인 **‘미래해양과학관 운영’**(신규)은 2025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미래해양과학관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7억 4,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9) 일반회계 -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2031-308)(해양정책실)

[미래해양과학관 시설 개요]

○ 시설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2-4 일원(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 사업기간: '20~'25('25년 하반기 개관예정) ○ 사업규모: 부지 15,406㎡, 건축 14,980㎡(지하 1층, 지상 3층) * 해양탐구관, 해양누리관, 오션판타지관, 키즈디스커버리관, 오션갤러리, 오션라이프 등 ○ 총사업비: 987억원(국비 912억원, 지방비 75억원)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국립해양과학관 운영 91억 7,300만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67억 2,800만원 = **인건비 38억 3,800만원** + 기관운영비 29억 4,400만원 - 사업출연금(350-02) 23억 9,100만원 = 전시사업 19억 8,300만원 + 교육사업 4억 800만원 ○ **미래해양과학관 운영 47억 4,900만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30억 3,700만원 = 인건비 19억 2,200만원 + 기관운영비 11억 1,500만원 - 사업출연금(350-02) 17억 1,200만원 = 사업비 6억 8,900만원 + 위탁용역비 10억 2,30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첫째, 국립해양과학관 운영 사업은 연례적 인건비 이월 규모를 고려하여 기관운영출연금 일부를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국립해양과학관의 2021년~2023년 인건비 편성 및 집행 내역을 보면, 매년 약 10억원 내외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10]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예산현액이 아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여도 집행액이 본예산에 지속적으로 미달하고 있음.

[2021년~2023년 국립해양과학관의 인건비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A)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잔액(B-C)
2021년	2,767	3,213	2,425	**788**
2022년	3,652	3,779	2,762	**1,017**
2023년	3,744	4,761	3,228	**1,533**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0) 인건비 잔액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결산잉여금 처리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음.

그러나 국립해양과학관 운영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인건비의 연례적 이월을 고려하지 않고 2024년과 동일한 규모인 38억 3,800만원의 인건비를 반영하였는데 이는 최근 3년간의 집행액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임. 이에 따라 2025년에도 인건비의 이월이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중앙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을 추계하여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연금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침상의 이러한 규정이 명확히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2025년 예산안은 전년 예산액을 기초로 편성되어 전년과 같은 규모의 인건비를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그리고 국립해양과학관 인건비의 연례적 이월 지적에 공감하며, 2024년에는 예상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인건비 11억 5,100만원을 미배정하여 인건비의 이월을 방지할 계획임을 밝혔음.

그런데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국립해양과학관의 결원은 2명으로, 2025년 결원이 해소되더라도 인건비 소요는 34억 1,100만원일 것으로 추정되어 2025년 인건비 예산 편성액인 38억 3,800만원에 미달함.

[정원 대비 현원 100% 가정 시 2025년 소요 인건비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연봉, 제수당, 성과급	퇴직금, 4대 보험	합계
임원(2명)	338	42	380
정규직(36명)	2,483	338	2,821
공무직(5명)	186	24	210
합계	3,007	404	3,411

자료: 해양수산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국립해양과학관 운영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인건비를 반영함으로써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받는 기관운영출연금 일부를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고 향후 합리적인 인건비 예산 편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미래해양과학관 운영 사업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사업으로, 법률 개정 관련 심사 경과를 고려하여 예산 계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미래해양과학관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2020년~2021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5년 4월 준공하여 2025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임.

이 사업은 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전제로 2025년도 예산안에 운영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아직 현행법상 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미래해양과학관도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2024. 6. 21.,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782호)되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임.

그런데 2024년 8월 28일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명칭 관련 이견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의결이 보류되었음.

따라서 미래해양과학관 운영 예산은 해당 개정안의 심사 및 논의 경과를 고려하여 계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4.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신규): 미래 국가재정 부담을 감안한 사업추진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은 선령 20년이 도달한 노후 국고여객선의 대체건조를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국고여객선 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8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1]

[2025년도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국고여객선 건조	9,980	10,850	870	8.7
국고여객선 펀드	-	8,400	8,400	순증

이 사업은 정부 30%, 민간 70%로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펀드를 조성하여 국고여객선을 건조하려는 것으로, 선박건조 완료 후 국가는 매년 용선료를 납부함.

2025년 예산안에는 기준선령 20년이 도래한 선박 4척, 소음 및 진동이 심한 선박 1척, 항로 단절 대응에 필요한 예비선 2척 등 총 7척의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국고여객선 펀드 출자액 84억원이 편성되었음.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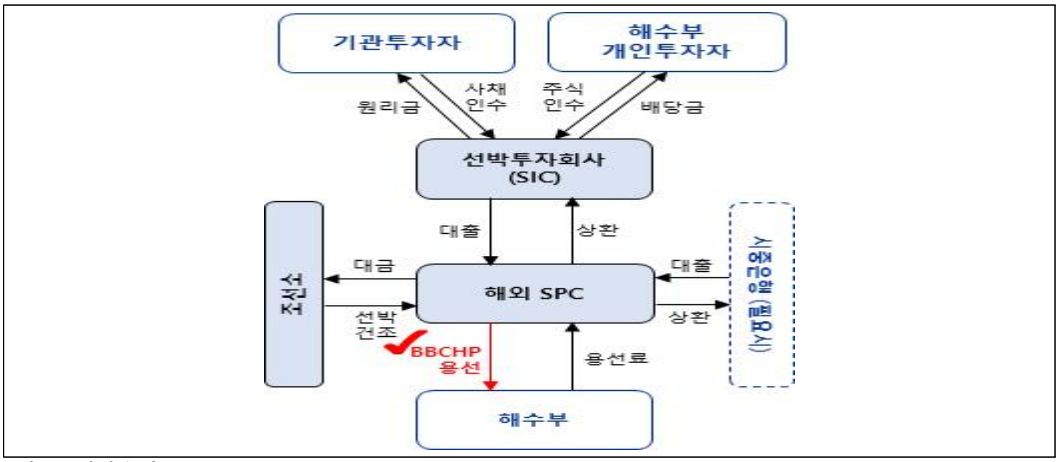
○ **여객선 7척 건조를 위한 출자금 84억원**
- 7척(노후 국고여객선 4척 + 안전우려 여객선 1척 + 예비선 2척) × 척당 건조단가 80억원 × 30%(정부출자비율) × 50%(1차년도)

자료: 해양수산부

국고여객선 펀드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선가의 30%를 국비로 출자하고, 70%를 민간자본으로 조달하여 선박의 건조 자금을 확보함. 선박투자회사는 해외 SPC 형태의 선박대여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선박을 건조하여 국가에 용선하며, 국가는 선박대여회사에 용선료를 지급하고 20년간 운영한 뒤 선박을 취득함.

11) 일반회계 - 국고여객선 건조(6134-302)(해운물류국)

[국고여객선 펀드 모형 추진 체계]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국고여객선 건조를 위한 펀드 신설의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부담 증가 및 재정운용상 경직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국고여객선 펀드는 국가재정만으로 건조해 온 국고여객선을 민간자본을 활용한 펀드를 조성하여 건조함으로써 단기적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국고여객선을 적기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음.

해양수산부는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 시 선박건조 비용 외에 용선료와 펀드 운영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나 선박 건조 및 운용기간을 고려하여 총 지출을 현재가치로 환산 시 선박 1척당 9,700만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함.

[국고여객선 건조 방식 비교]

(국비) 국고여객선 1척당 '25~'26년(2년간) 80억원 ⇒ 이를 사회적 할인율 4.5%를 반영하여 지출 현재가치로 환산 시, '25년 40억원, '26년 38억 2,800만원 등 총 **78억 2,800만원**
(펀드) 국고여객선 1척당 '25~'26년(2년간) 24억원 출자, '27~'46년(20년간) 108억 9,000만원 용선료 등 132억 9,000만원 ⇒ 상환액 재투자('27~'46년)를 반영한 순현금흐름은 107억 4,000만원이며, 이를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하여 현재가치 환산 시 **77억 3,100만원**

주) 공공투자사업의 사회적 할인율 4.5% 적용, 건조 및 운용기간을 22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해양수산부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2037년까지 국고여객선 펀드에 국고를 출자하고 2038년 이후부터는 추가 출자 없이 펀드 용선료 중 국고 수취분을 재투자에 활용하여 펀드를 운영할 예정임.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해운법」에 따른 기준선령 도달 시 국고여객선의 대체건조가 필요하며, 갑작스러운 항로 단절 등 신규 선박 필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보다 유연한 재원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런데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 계획을 보면 국가재정으로 매년 출자액 외에 용선료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그 규모가 2027년 35억원 수준에서 2035년부터는 100억원을 초과함.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 계획 및 국고 부담액]

(단위: 척수, 백만원)

구분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계
선령 20년 도달척수		4	1 1	1	1	-	1	1 1	-	1	2	2	4	1	21
예비선		2	-	-	-	-	-	-	-	-	-	-	-	-	2
신조선 척수		7	3	-	-	-	2	1	-	5	-	-	4	2	24
국비 부담분		8,400	12,000	3,600	-	-	2,400	3,600	1,200	6,000	6,000	-	4,800	8,400	56,400
전기이월		-	-	-	450	1,305	2,258	2,021	582	433	436	473	2,084	2,650	-
예산	출자	8,400	12,000	3,600	-	-	1,200	1,200	-	4,800	4,800	-	3,600	3,600	43,200
	용선료	**-**	**-**	**3,506**	**6,098**	**6,473**	**6,343**	**6,212**	**7,088**	**7,767**	**7,764**	**10,092**	**10,698**	**10,463**	**82,505**
	- 펀드	-	-	630	1,110	1,200	1,200	1,200	1,380	1,530	1,560	2,010	2,160	2,160	16,140
	- 민간	-	-	2,876	4,988	5,273	5,143	5,012	5,708	6,237	6,204	8,082	8,538	8,303	66,365
	합계	8,400	12,000	7,106	6,098	6,473	7,543	7,412	7,088	12,567	12,564	10,092	14,298	14,063	125,705
예치이자		-	-	-	5	13	23	21	11	14	17	20	27	34	184
재투자		-	-	-	-	-	1,200	2,400	1,200	1,200	1,200	-	1,200	3,600	12,000
기말잔액		-	-	450	1,305	2,258	2,021	582	433	436	473	2,084	2,650	824	-

주 1) 선령 20년 도달 척수는 대체선 건조기간 2년을 고려한 척수임
2) 신조선 척수는 최소 3척 단위로 묶어서 발주하되, 펀드 잔액 소진을 위하여 1~2척 개별 발주 시 공모 대신 기관투자자(선순위 은행)를 활용함
3) 출자 = 국비 부담금(척당 선가 30%의 50%×척수) - 전기이월 - 예치이자 - 재투자(펀드 용선료)
4) 용선료(민간수익률)는 4.5%로 설정

자료: 해양수산부

대형 투자가 필요한 선박 건조에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국가재정 여건상 선박펀드를 통한 재원조달 방식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이후 용선료 명목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의무적인 지출로 계상되므로 시급한

투자가 필요한 새로운 분야에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게 되는 등 재정운용상 경직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12)]

또한 2038년부터는 추가적인 출자 없이 기 출자액 중 회수액을 활용하여 선박펀드를 운영하고 국고여객선을 건조할 계획인데, 이 경우 국고여객선 펀드를 통해 건조하는 국고여객선의 척수를 국회에서 심의할 수 없음에도 그 결과로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용선료는 의무적인 지출로 예산에 계상되므로 결과적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를 제약하게 될 우려가 있음.

그리고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 시 최소 공모 적정 금액(약 200억원)으로 인하여 최소 3척 단위로 묶어서 발주할 예정인데 이 경우 선박 교체 시기(20년 주기)가 일시에 도달하여 이후 선박 교체 시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음.

[국고여객선 펀드로 건조하고자 하는 국고여객선의 건조 척수]

(단위: 척)

구분	건조 시작연도	건조 필요 척수	건조 척수(예정)
대체건조	2025년	5	**5**
	2026년	1	**3**
	2027년	1	-
	2028년	1	-
	2029년	-	-
	2030년	1	**2**
	2031년	2	**1**
	2032년	-	-
	2033년	1	**5**
	2034년	2	-
	2035년	2	-
	2036년	4	**4**
	2037년	1	**2**
	2038년	1	-
	2039년	1	**3**
	2040년	2	-
	2041년	-	-
	2042년	1	**4**
	2043년	1	-
	2044년	2	-
신조(예비선)	2025년	2	**2**
* 이후 20년 주기 대체 건조			

자료: 해양수산부

12)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국고여객선을 건조하게 되므로 용선료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전액 국가재정으로 건조할 때에 비하여 건조비에 대한 재정소요가 적게 발생하여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국가재정의 부담 증가 및 재정 운용상 경직성 우려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의 필요성·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 출>

5.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적 명확화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관리를 받는 단위해역의 수산물 안심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1,200만원(△17.4%) 감액된 33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13)]

[2025년도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수산물 위생관리	25,510	24,489	△1,021	△4.0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16,609	15,834	△775	△4.7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4,093	3,381	△712	△17.4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33억 8,100만원**
- 200개 단위해역관리 33억 7,300만원 + 사업추진비 80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1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물 위생관리(3041-303)(수산정책실)

나. 검토의견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은 2023년 예비비를 배정받아 신설된 후 사업의 내용 및 목적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으로, 2025년도 예산안의 사업 추진 방향이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수행 중인 타 사업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고, 사업의 목적도 신설 당시와 달리 모호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적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은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예비비 6억원을 배정받아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2023년 7월 예비비 신청 시에는 방사능 검사 필증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필증 부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등으로 예비비 배정 1개월 후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사업으로 사업 명칭 및 수행 방식을 변경하였음.

[방사능 검사 필증 지원 사업과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 비교]

분류	방사능 검사 필증 지원 사업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
개념	양식장 수산물 방사능 검사 후 인근 양식장 어업인에게 거래처, 어상자, 활어차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안전필증 스티커 발급	주기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받는 해역을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로 지정하고 안심관리 마을 생산자에게 ‘수산물 안심관리마을 확인서’ 발급

자료: 해양수산부

그러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여 예비비 배정액의 4.7%인 2,8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95.3%는 불용되었음.

그리고 2024년 예산안에 정식 편성되었는데, 2023년 사업 추진 방식과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검사·관리를 받는 해역을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로 지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40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4년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40억 9,300만원
- 수산물 안심마을 관리 등 40억 8,500만원: 40,851건×10만원
- 방사능 검사 관련 업무협의: 80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방식이 일부 변경되어 안심관리 마을에 대한 ‘홍보물품 제작 및 소비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 9월말 현재 예산액 대비 실집행실적은 54.1%임.

2025년에는 오염수 방류 장기화(30년)에 따라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

확보는 타 유해물질과 함께 일상업무로 인식하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추진 방식 및 목적을 재차 변경하여, 관리 항목을 방사능 뿐만 아니라 농약 등 유해물질로 확대하고 모든 단위해역[14]에 대해 안전성을 관리하며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33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4년과 2025년의 사업 추진 방식 비교]

구 분	2024년		2025년
관리 항목	방사능		방사능 + 유해물질(농약 등)
관리 방식	단위해역별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신청 해역을 지정 및 지정확인서 발급		모든 단위해역에 대해 주기적 안전관리 및 지정서 발급
안전성 확보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로 지정된 해역의 주기적 방사능 검사(월 3회)	⇒	모든 해역에 대한 방사능(월 3회) + 유해물질(월 1회) 주기적 검사
해역관리자 역할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관리 (지정확인서 발급, 검사여부 확인 등)		전국 단위해역 안전성 관리 (검사대상 선정, 시료채취 협조 등)
지원항목	안심마을 홍보용 포장재 지원 등 소비 활성화 지원		위해요소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어촌계(마을어업 등) 대상 교육 컨설팅 지원

주) 방사능 검사는 같은 내역사업 내 민간기관 활용 검사 내내역사업에서 수행하고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2025년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의 목적 및 방식이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수행 중인 타 사업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우선, 유해물질 검사의 경우 수산물 품질관리 세부사업[15]의 수산물 안전성조사 내역사업에서 시장 유통 전 양식장, 위판장 등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잔류여부 등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25년에는 예산 12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수산물 안전성조사 제도]

- 목적: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
- 조사대상: 생산·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
- 조사항목: 195 항목(중금속 5, 방사능 3, 유기물질 3, 동물용의약품 146, 금지물질 25, 패류독소 3, 식중독균 3, 기타물질 7)
- 조사장소: 양식장 13,732개소, 어선 39,260척, 냉장·냉동창고 791개소, 위·공판장 220개소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4)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국 연안 양식해역을 200개 해역으로 구분·구획함.

1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수산물 품질관리(3045-301)

그리고 지정(확인)서 발급의 경우 우리나라 모든 해역이 방사능 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 배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해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지정(확인)서를 별도 발급할 실익이 크지 않고, 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품질인증', '우수수산식품 등 인증' 등 수산물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위해요소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컨설팅의 경우 동일 세부사업 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내내역사업에서 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수산물 위생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16)]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식품공전 상 기준 및 규격이 있는 항목에 대해 조사하는 것인데 비해, 이 사업에서는 현재 식품공전 상 기준 및 규격은 없으나 설정이 검토되고 있는 유해물질 항목에 대하여 관리하려는 것이어서 차별성이 있다는 설명임.

또한 지정확인서는 양식장, 어촌계 직판장 등에 게시하여 소비자 대상 홍보를 하거나, 유통업체 등 거래처에 수산물을 납품할 때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유해물질과 관련한 일관성 있는 검사 및 관리를 위하여는 기준 및 규격의 유무에 따라 사업을 분리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음. 또한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면 추후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지정확인서는 현재 양식장·직판장·소매업체 등에 단순 게시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지정확인서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사업은 2025년 사업 추진 방향이 이미 수행 중인 타 사업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고, 사업의 목적도 신설 당시와 달리 모호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적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6) 2025년 예산안에 수산물 위생 안전 교육을 위하여 1억 1,000만원이 편성됨.

6.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은 전체 어업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특화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1,500만원(△30.5%) 감액된 11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음.[17)]

[2025년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어업인 삶의 질 향상	2,967	3,652	685	23.1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1,687	1,172	△515	△30.5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ㅇ **검진비 8억 500만원** - [54세・66세 709명 × 162,000원 + 51세 이상(54세・66세 제외) 9,666명 × 200,100원 + 병원선 검진 634명 × 80,000원] × 예상 수검률 74.9% × 국비 50% ㅇ **행정비 3억 6,70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은 2022년~2024년 수검 목표 인원 대비 실적이 저조한데, 2025년 수검 목표치(8,246명)가 최근 3개년 실제 수검인원 및 수검희망자 수를 고려할 때 과다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한편, 수검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은 2025년 수검 목표치를 2024년(11,764명)보다 하향 조정된 8,246명으로 설정하여, 검진비 8억 500만원 등 총 1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음.

1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어업인 삶의 질 향상(3440-312)(수산정책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시작 첫 해인 2022년부터 신청인원이 저조하여 연도 중(11월) 대상자 연령을 확대(50세부터 69세까지 → 45세 이상)하였음에도 실제 수검인원이 목표에 크게 미달(36.8%)하였고, 2023년에도 수검률이 37.4%에 불과하여 수검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그리고 2024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과의 연령 기준 통일 등을 위하여 수검대상 연령을 기존 45세 이상에서 51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수검대상 인원이 감소였음에도, 수검 목표치는 11,764명으로 크게 상향하였는데, 8월말 기준 수검인원이 목표치의 0.9%인 103명에 불과함.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수검목표 인원 및 실제 수검인원('24년 8월말 현재)]

(단위: 명, %)

연도	수검 목표 인원(A)	실제 수검인원(B)	수검률(B/A)
2022년	1,500	552	36.8
2023년	1,800	674	37.4
2024년	11,764	103 (병원선 검진 42 포함)	0.9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이 사업은 해당 사업연도 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2024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검 희망자가 각각 3,453명, 1,190명 및 4,850명으로 2025년 목표치인 8,246명에 크게 미달함.

이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주된 원인은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어업인이 많아 의료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바, 의료기관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시범적으로 충남지역에서 병원선을 운행하여 건강검진을 진행 중이고, 2025년부터는 병원선 운행 지자체를 확대(전남 2척, 경남 1척, 인천 1척)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며, 검진버스 활용 방안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병원선을 운행하여도 병원선 운행 시간 소요 등으로 연내 검진 가능한 인원이 한정되고(2025년 예산안에 634명으로 설정), 검진버스는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50명 이상의 검진인원을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수검인원과 병원선 및 검진버스 검진 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준으로 수검 목표치를 하향조정함과 더불어, 수검 실적 제고를 위하여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한 연내 집행 필요

가. 개 요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은 빈곤 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여 국제사회에서 친한세력을 확보하고 해외 수산자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억 1,100만원(3.0%) 증액된 449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음.[18)]

[2025년도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연안국과의 협력(ODA)	43,647	44,958	1,311	3.0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ㅇ **연안국과의 협력(ODA) 449억 5,800만원**
- 계속사업(28개) 384억 9,500만원
- 신규사업(7개) 64억 6,30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중 2024년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전년과 동액 또는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이 편성된 4개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연내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투발루 어촌특화개발’ 사업, ‘인도네시아 그린스마트 해양수산과학교육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강화’ 사업, ‘해수열 및

1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연안국과의 협력(ODA)(3542-302)(해양정책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피지 남태평양 대학교 그린 캠퍼스 시범사업’ 이상 4개 사업은 2024년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전년과 동액 또는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음.

[2024년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전년 대비 동액 또는 증액된 4개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8월말 기준)				2025 예산안
	본예산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투발루 어촌특화개발	1,600	1,756	156	8.9	2,200
인도네시아 그린스마트 해양수산과학교육센터 설립 및 역량 강화	1,700	1,997	-	0.0	1,700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강화	1,000	1,000	-	0.0	1,000
해수열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피지 남태평양 대학교 그린 캠퍼스 시범사업	1,494	1,494	-	0.0	2,40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당초 사업계획상의 연차별 사업비를 고려하여 전년과 동액 또는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그런데 4개 사업의 지연 사유는 대부분 해외사업자 미선정 또는 수원국과 세부사항 협의 미완료로 인한 것으로, 지연 사유를 고려하였을 때 향후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4개 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사유 및 예산 편성 근거]

내역사업명	집행 저조 사유	예산 편성 근거
투발루 어촌특화개발사업	해외건설비 단가 상승 등 외생적 사유로 인한 입찰공고 유찰 및 계약체결 지연	연차별 소요 반영
인도네시아 그린스마트 해양수산과학 교육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전년도 사업 이월로 인한 사업 순연 (’24.9월 현재 입찰 준비 중)	연차별 소요 반영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강화	해외건설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전년도 사업 이월 및 사업 순연	연차별 소요 반영
해수열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피지 남태평양 대학교 그린 캠퍼스 시범사업	수원국과 사업 세부사항 협의 중으로 ’24년 4분기 중 계약 체결 및 선금 집행 예정	연차별 소요 반영

자료: 해양수산부

따라서 투발루 어촌특화 개발 사업, 인도네시아 그린스마트 해양수산과학교육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강화 사업 및 해수열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피지 남태평양 대학교 그린 캠퍼스 시범사업은 사업 지연 없이

2025년 내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집행점검 강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 출>

8.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신규): 기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개편 필요

가. 개 요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은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확보를 위하여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및 폐어구 등의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0억 4,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9)]

[2025년도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감척어선 공공활용	-	3,045	3,045	순증

이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을 보조사업자로 한 민간경상보조 사업(국고보조율 100%)으로 편성되었음.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 세부내역]

ㅇ **불법어구 및 폐어구 수거 30억 4,500만원**
- 수리·정비·검사 등 10억 4,800만원= 3억 4,920만원 × 3척
- 불법어구 및 폐어구 수거·처리 19억 3,300만원
·기존 안강망 2척 12억 8.800만원 = 6억 4,400만원×2척
·신규 트롤 1척 3억 2,200만원 = 6억 4,400만원×6개월
·신규 안강망 2척 3억 2,200만원 = 6억 4,400만원×3개월×2척
- 운영비 6,40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024년에 시범사업으로 감척어선 2척(선령 31년~32년)을 확보하여 불법어구 수거 작업을 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감척어선 3척을 신규로 확보

1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감척어선 공공활용(3145-308)(수산정책실)

하여 총 5척으로 불법어구 수거 및 폐어구 수거 작업을 수행할 예정임.

[불법어구 및 폐어구 수거 작업을 위한 감척어선 도입 및 운영 계획]

<table>
<tr><th rowspan="2">시기</th><th colspan="4">'24년</th><th colspan="6">'25년</th></tr>
<tr><th>6월</th><th>7~8월</th><th>9월</th><th>10~12월</th><th>1·2월</th><th>3·4월</th><th>5·6월</th><th>7월</th><th>8·9월</th><th>10~12월</th></tr>
<tr><td>(시범사업)
근해안강망
2척
(기존)</td><td>감척어선 확보('24년 감척)</td><td>어선 검사 및 정비</td><td>선원 고용 선박 출항 준비</td><td>불법어구 수거</td><td colspan="2">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 전담
(1~4월)</td><td colspan="3">국내 불법어구(각망 등)·폐어구 수거 지원
(5~8월)</td><td>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 전담
(9~12월)</td></tr>
<tr><td>(본사업)
대형트롤
1척</td><td></td><td></td><td></td><td></td><td>감척어선 확보('24년 감척)</td><td>어선검사 및 정비</td><td>선원고용 선박출항 준비</td><td colspan="3">침적 폐어구 수거 전담
(7~12월)</td></tr>
<tr><td>(본사업)
근해안강망
2척
(신규)</td><td></td><td></td><td></td><td></td><td></td><td></td><td>감척어선 확보('25년 감척)</td><td>어선 검사 및 정비</td><td>선원 고용, 선박 출항 준비</td><td>불법·침적 폐어구 수거 (3개월)</td></tr>
<tr><td>예산</td><td colspan="4">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15억 9,000만원)</td><td colspan="6">감척어선 공공활용(30억 4,500만원)
* 신규 도입비 3척 / 운영비 36개월 분</td></tr>
</table>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은 불법어구 및 폐어구 상시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척어선을 활용할 예정이나, 이미 해양수산부가 다른 사업을 통해 불법어구 철거 및 폐어구 수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①사업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수행 중인 사업을 확대 수행하는 방안 또는 ②사업을 신설하되, 기존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중국 불법어구와 폐어구 등을 상시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감척어선을 보조사업자인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해당 선박을 불법어구 등의 상시 수거를 위해

운영할 계획임.

이를 위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는 이 사업에 활용될 감척어선 3척을 수리·정비·검사하기 위한 경비 10억 4,800만원, 불법어구와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경비 19억 3,300만원 등 총 30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다른 사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데, 불법어구 철거의 경우는 어업협정이행 세부사업[20]의 민간어업협력 내역사업에서, 폐어구 수거는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세부사업[21]의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처리 사업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불법어구 철거 사업은 민간대행사업으로 한국수산회가 불법어구 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은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처리 사업은 민간대행사업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은 152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기존 수행 사업과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 비교]

구분	불법어구 철거 사업 (기존)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처리 사업 (기존)	감척어선 공공활용 (신규)
예산액	4억 5,000만원	152억 1,900만원	30억 4,500만원
수거 대상	불법 범장망	유실·침적 폐어구	불법 범장망 및 유실·침적 폐어구
대상 해역	서·남해 EEZ 인근	연안 해역	서·남해 EEZ 및 원거리 해역
수거 실적	166톤 ('20~'23년 평균)	3,600톤 ('20~'23년 평균)	2,150톤 ('25년 목표)
투입 비용	271만원/톤	422만원/톤	184만원/톤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기존 불법어구 철거 사업은 매회 출항 시마다 민간어선을 임차하여 수거하고 있는데, 성어기(4월, 9~11월)에는 민간어선을 확보하기 어려워 적기 수거에 한계가 있어 중국 불법 범장망의 연중 상시 수거를 위한 전담 선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사업은 연안해역 위주로

20) 일반회계 - 어업협정이행(3132-300)

21) 수산발전기금 -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3167-316)

사업을 수행하여 연안 12해리 밖 원거리에서 추진하려는 신설 사업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과 불법어구 철거 사업은 수거 선박의 보유 주체와 수거 시기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사업의 목적과 사업수행방식이 동일함. 또한 두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 사업 수행 주체가 달라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음.

따라서 두 사업을 모두 실시하기보다는 기존 불법어구 철거 사업을 확대하여 불법어구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신규사업은 신설하지 않거나, 신규사업을 신설하되 기존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국가재정상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과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처리 사업을 비교해보면,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처리 사업의 경우에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연안해역을 벗어난 근해에서 폐어구 수거처리를 수행하고 있어 신설 사업과 사업대상 구역이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연근해어장 폐어구 수거사업 추진 현황('24년 9월말 현재)]

구분	합계	평균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목표 수거량(톤)	15,814	3,163	2,314	2,700	3,600	3,600	3,600
목표 수거면적(ha)	984,542	196,908	143,900	171,100	224,000	231,952	213,590
연안 대상지(개소)	232	46	51	42	51	53	35
연안 수거량(톤)	16,833	3,367	2,650	3,721	4,151	3,738	2,573
연안 수거면적(ha)	923,962	184,792	151,134	175,215	231,733	256,574	109,306
근해 대상지(개소)	3	1	-	-	1	1	1
근해 수거량(톤)	226	89	-	-	97	81	48
근해 수거면적(ha)	32,400	10,800	-	-	10,800	10,800	10,800

자료: 한국어촌어항공단

따라서 폐어구 수거와 관련하여서도 기존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처리 사업을 확대하여 수행하고 신규사업은 신설하지 않거나, 신규사업을 신설하되 기존 사업의 범위 및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9.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사업(신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계획 보완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사업은 청년 어업인 유입 및 안정적 정착 유도 등을 위해 간척지 등을 활용한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2)]

[2025년도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양식장임대	397	5,832	5,435	1,369.0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	5,000	5,000	순증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5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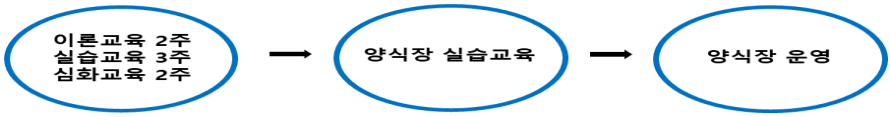
- 3개소×167억원×50%(국고보조율)×20%(1차년도 설계비)

※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200억원 2개소, 100억원 1개소로 추진 예정

자료: 해양수산부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보조율 50%)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3년(2025년~2027년), 총사업비는 500억원(지방비 포함)이고, 총 3개소를 조성할 예정임. 지방자치단체에서 귀어귀촌학교를 통해 양식장 운영을 위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양식단지 조성 완료 후에는 청년 어업인들에게 양식장을 임대하여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운영 계획]



(1단계) 양식어업 이론교육(7주) (2단계) 실습교육(6~12개월) (3단계) 양식창업

자료: 해양수산부

2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양식장임대(3347-367)(수산정책실)

나. 검토의견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아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정 예산 규모를 논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사업은 청년 어업인 유입 등을 위한 교육·임대형 양식기반 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에 걸쳐 3개소의 양식단지가 조성되며 2025년에는 1차년도 사업비 50억원이 편성되었음.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사업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구 분	2025	2026	2027	계
금액 (지방비 50% 포함)	100억원	150억원	250억원	500억원

자료: 해양수산부

그러나 아직 양식단지 조성 예정 면적, 양식단지 완공 후 매년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어업인의 수와 어업인별 임대면적에 대한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음.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양식단지는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계획이며, 매년 귀어학교 운영 등을 통한 귀어귀촌 청년어업인 수를 감안하여 임대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또한 양식단지에서 양식 예정인 수산물에 대해서도 아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향후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양식수산물을 선정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그러나 양식단지 조성 예정 면적, 양식단지 완공 후 매년 지원하고자 하는 어업인 수 및 어업인별 임대면적과 양식 예정 수산물은 양식단지 조성에 필요한 개소당 사업비를 산출하는 데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비가 필요 적정한 규모로 반영되었는지 파악하기 곤란함.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 예산의 적정 규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23)]

23) 10월 24일 해양수산부는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1개소(총사업비 200억원) 기준 양식단지 면적은 4ha(8개동, 총 60개 수조 조성 시)이고,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 등 37명에게 1인당 4개의 수조를 임대할 예정이며, 양식 예정 수산물은 새우, 넙치, 송어 등 대중성 품종으로 선정할 것이라 설명함.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세부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 사업에 대해 별도의 수요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실제 양식단지에서 양식장을 임대할 청년 어업인의 수요가 충분한지, 임대 예정 면적이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자료 제출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후 양식단지 인근에 청년어업인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도 계획에 보완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세 출>

10.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구축 사업(신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 사업 재추진 여부 결정 필요

가. 개 요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구축’ 사업은 연안침식 원인규명, 항만구조물 안전성 검증 등 방재연구와 해안·항만 건설기술의 검증 및 상용화 연구를 수행하는 대형 수리모형실험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억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4)]

[2025년도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구축	-	2,002	2,002	순증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건립 20억 200만원** - 실시설계비 10억원 - 공사비 10억원 - 시설부대비 20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24) 교통시설특별회계 -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구축(3440-312)(항만국)

나. 검토의견

첫째,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종전에 타당성재조사 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된 바 있으므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이 사업은 이미 추진된바 있는 사업으로, 2020년~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증액되어 2021년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였음.[25] 그런데 타당성재조사 시행 중 2023년 2월 경제성 분석 결과(B/C)가 0.23으로 낮아 타당성재조사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해양수산부가 타당성재조사를 철회하였음.

2025년 예산안에는 2차원 및 3차원 실험시설을 건립하려는 종전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차원 실험시설과 연구동을 우선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등 총 20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해양수산부는 향후 운영을 통해 필요 시 3차원 실험시설도 구축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2차원과 3차원 실험동을 동시에 구축하려던 계획에서, 2차원 실험동만 우선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타당성재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26][27]

---

25) 당초 2차원 실험동만 구축하려 하였으나(총사업비 452억원) 설계과정에서 3차원 실험동도 구축하는 것으로 변경(총사업비 1,166억원)되어 총사업비가 714억원 증가하였음.

26)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4.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27)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2차원 실험동만 구축하여도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였을 때 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성재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규모를 축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그러나 2차원 실험동 구축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5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타당성재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2023년에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에 면밀한 검토를 선행한 후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둘째, 이 사업은 2025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함께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실시설계비는 기본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 후 해당 사업 추진을 확정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토목공사 및 대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를 2025년도 예산안에 함께 반영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편성한 측면이 있는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29)]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기존 2차원 실험동에 대한 총사업비만 산정할 경우 이러한 기준에 미달함.

28)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일부 발췌]

> □ 실시설계비는 기본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평가) 후 해당사업 추진을 확정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
> □ 토목공사 및 대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공사비 반영

29)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연안 침식 등의 원인규명을 위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임에 따라 사업여건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하여 설계비와 공사비를 함께 계상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타당성재조사 후 공사발주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11. 항만보안시설 확충 사업: 현재 구축 중인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의 운영상 부작용 또는 성과 검토 후 이를 신규사업 추진 시 반영 필요

가. 개 요

‘항만보안시설 확충’ 사업은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이행과 우리나라 무역항에 대한 테러예방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 보안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유지보수하고 항만보안 관련 정책지원을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9억 5,500만원(58.9%) 증액된 106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30]

[2025년도 항만보안시설 확충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항만보안시설 확충	6,718	10,673	3,955	58.9
항만보안시설·장비 신설	4,228	8,183	3,955	93.5
무역항(부산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1,474	1,921	447	30.3
무역항(인천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1,050	2,128	1,078	102.7
무역항(울산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722	1,457	735	101.8
무역항(광양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	754	754	순증
무역항(평택·당진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	1,507	1,507	순증

내내역사업인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사업은 드론테러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 보완대책’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광양항 및 평택·당진항에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액 19억 2,100만원, 21억 2,800만원, 14억 5,700만원, 7억 5,400만원 및 15억 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30) 교통시설특별회계 - 항만보안시설 확충(5064-303)(해운물류국)

[무역항(부산항)·무역항(인천항)·무역항(울산항)·무역항(광양항)·무역항(평택·당진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무역항(부산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19억 2,100만원 ※ 2년차**
- 공사비 18억 9,300만원 + 감리비 2,370만원 + 부대비 470만원
○ **무역항(인천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21억 2,800만원 ※ 2년차**
- 공사비 20억 9,650만원 + 감리비 2,620만원 + 부대비 520만원
○ **무역항(울산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14억 5,700만원 ※ 2년차**
- 공사비 14억 3,500만원 + 감리비 1,850만원 + 부대비 390만원
○ **무역항(광양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7억 5,400만원 ※ 2025년 신규**
- 공사비 6억 1,500만원 + 설계비 1억 2,890만원 + 감리비 790만원 + 부대비 170만원
○ **무역항(평택·당진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15억 700만원 ※ 2025년 신규**
- 공사비 12억 3,000만원 + 설계비 2억 5,790만원 + 감리비 5,290만원 + 부대비 1,11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부산항 등 3개 무역항에 대한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후 운영상 부작용 또는 성과 등을 검토하여 신규 2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 시 이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안티드론시스템의 도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국가중요시설 드론 테러 보완대책’(2023. 2. 17.)에 따라 2024년부터 항만 처리 물동량과 수도권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항, 인천항 및 울산항 이상 3개 항만을 대상으로 안티드론시스템의 구축을 시작하였고, 2025년에는 광양항 및 평택·당진항 이상 2개 항만을 추가 대상지로 선정하여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이에 따라 2025년 예산안에는 기 추진 중인 3개 항만에 대한 2차년도 공사비 및 감리비 등 55억 600만원과 신규 2개 항만에 대한 설계비 및 공사비(장비구입비 포함) 등 1차년도 사업비 22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관련 2024년~2025년 예산안 세부편성 내역]

항만	총 사업비 (항만공사 분담 전)	국비			드론 탐지·식별				드론 무력화	
		소계	'24년	'25년	관제	RF 스캐너	레이더	EO/IR 카메라	재머	
소계	264.9억원	110.5억원	32.4억원	78.1억원	6	12	12	12	36	
부산항	67.9억원	33.9억원	14.7억원	19.2억원	2	3	3	3	고정3	휴대6
인천항	64.4억원	32.2억원	10.5억원	21.7억원	1	3	3	3	고정3	휴대6
울산항	44.2억원	22.1억원	7.2억원	14.9억원	1	2	2	2	고정2	휴대4
광양항	44.2억원	7.2억원	-	7.2억원	1	2	2	2	고정2	휴대4
평택·당진항	44.2억원	15.1억원	-	15.1억원	1	2	2	2	고정2	휴대4
단가	-	-	-	-	3.2억	3.5억	10억	2.8억	1.3억	0.65억

주) 항만공사 분담률 50% 적용. 안티드론시스템 구축공사는 2개년 사업이며, 광양항·평택당진항은 '25년 22.3억원, '26년 44억원 편성 예정임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구축하는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의 드론 무력화 방식은 재머를 이용한 소프트킬 방식의 방어체계로,[31] 전파 차단으로 드론을 무력화한다는 측면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GPS나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기기들이 재머의 영향으로 전파의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선박의 입·출항 등 항만의 고유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등 3개 항만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결과 선박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와 드론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의 대역이 달라 재머가 선박 운항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또한 소프트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한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드킬 방식(그물망 포획방식)도 일부 혼용하여 사용할 계획이라는 설명임.

그러나 재머를 이용한 안티드론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항만 고유의 기능인 선박 입·출항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에 대해 아직 충분한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국내공항에서도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나 재머는 도입하지 않고 레이더와 RF 스캐너 등만 도입·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31)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은 드론에 총탄, 레이저 등을 쏘아 드론을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과 전파 등을 이용해 드론의 비행을 중지시키는 소프트킬 방식으로 구분됨.

[국내공항의 안티드론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공항명	도입 장비
인천공항	레이더, RF스캐너, EO/IR 카메라, 통합관제솔루션
김포공항	RF스캐너, EO/IR 카메라
제주공항	RF스캐너, EO/IR 카메라

자료: 국토교통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 추진 중인 부산항 등 3개 무역항에 대한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상 부작용 또는 성과 등을 검토한 뒤 신규 2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 시 이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무역항 안티드론시스템의 당초 도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12.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실집행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거점 육성, 낙후된 생활인프라 개선 등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90억 4,000만원(151.0%) 증액된 2,145억원이 편성되었음.[32)]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어촌신활력증진	96,180	225,734	129,554	134.7
어촌신활력증진	85,460	214,500	129,040	151.0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ㅇ **2023년 계속사업비 1,567억 5,000만원**
  - 유형1 150억원(150억원×5개소×20%) + 유형2 819억원(70억원×30개소×39%) + 유형3 598억 5,000만원(35억원×30개소×57%)
- ㅇ **2024년 계속사업비 364억원**
  - 유형1 105억원(150억원×7개소×10%) + 유형2 70억원(70억원×10개소×10%) + 유형3 189억원(35억원×18개소×30%)
- ㅇ **2025년 신규사업비 213억 5,000만원**
  - 유형1 105억원(150억원×7개소×10%) + 유형2 35억원(70억원×5개소×10%) + 유형3 73억 5,000만원(35억원×14개소×15%)

자료: 해양수산부

3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어촌신활력증진(3301-303)(수산정책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후속 성격으로 2023년부터 추진되었고, 사업목표 및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따라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됨.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유형별 분류]

구분	(유형 1) 어촌 경제 플랫폼	(유형 2) 어촌 생활 플랫폼 조성	(유형 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지원대상	국가어항(연안항·무역항 어항구 포함), 지방어항 및 배후지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포구 및 배후마을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마을
사업목표	어촌 경제거점 조성	어촌마을의 생활서비스 제공 등 정주여건 개선	소규모 어항의 최소 안전 수준 확보
사업수행 주체	지방자치단체 * 민간투자자 연계	지방자치단체 * 민간앵커조직 연계	지방자치단체
사업기간	4년 (2025년부터 4년에서 5년으로 조정)	4년	3년
사업비	총 사업비 : 300억 원 이내 (민간 100억원 이상 별도) 재정지원 : 300억 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 50%, 자담 별도)	총 사업비 : 100억 원 이내 (국비 70%, 지방비 30%, 자담 별도)	총 사업비 : 50억 원 이내 (국비 70%, 지방비 30%)
추진방식	대상 거점어항 주변(5km, 5분 이내) 민간투자 사업을 기반으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재정지원은 소득·복지 복합시설 및 주거 등 생활인프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어항을 중심으로 마을간 교류, 주요 이용시설을 고려해 '어촌생활권'을 구분하고, 돌봄·복지 등 생활서비스 제공 어촌 앵커조직(민간)이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해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어업 필수시설 및 생활안전시설 개선
기존 어촌뉴딜 300사업과의 비교	신규 (민간투자 연계)	어촌공간 재생형사업(시범사업)의 본사업 ※ 2024년부터 어촌뉴딜300에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으로 이관됨	혁신어촌조성 내역사업과 유사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후속 성격 사업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의 추이와 유사하게 실집행단계에서 과도한 유보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어촌뉴딜300 사업의 내역사업인 혁신어촌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낙후된 항·포구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어촌의 재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2022년 300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어촌뉴딜300(혁신어촌조성) 사업은 국고보조율 70%, 사업기간은 3년이고 연부율이 1차년도 15~35%, 2차년도 36~45%, 3차년도 20~49%로 설계되었는데,[33] 연례적으로 실집행실적이 30%대 이하로 부진하여 매년 최저 1,229억 8,500만원, 최고 5,927억 9,800만원이 실집행단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2019년~2024 어촌뉴딜300(혁신어촌조성) 사업 실집행실적(2024년 9월말 현재)]

(단위: 백만원, %)

연도	해양수산부			최종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교부 현액	집행액 (C)			
2019	171,500	171,500	171,500	171,500	-	171,500	48,513	171,500	48,513	**122,985**	2	**28.3**
2020	430,500	430,500	430,500	430,500	122,985	553,485	166,867	430,500	99,460	**386,577**	41	**23.1**
2021	518,000	518,000	510,331	510,331	386,577	896,908	333,448	510,331	80,078	**561,026**	2,434	**15.5**
2022	514,500	514,500	474,492	474,492	561,026	1,035,518	434,648	474,492	80,078	**592,798**	8,071	**15.6**
2023	278,216	278,216	255,420	255,420	592,798	848,218	295,840	255,420	98,238	**549,089**	3,289	**35.3**
2024	163,863	163,863	131,090	131,090	549,089	680,179	146,235	131,090	4,302	-	-	**2.6**

자료: 해양수산부

33) <어촌뉴딜300 사업 연부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019년 선정사업	35%	45%	20%
2020년 선정사업	25%	40%	35%
2021년 선정사업	20%	40%	40%
2022년 선정사업	15%	36%	49%

자료: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혁신어촌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와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실집행단계에서의 이월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에 2024년 9월말 현재 각각 지방비 포함 3,068억 1,100만원(26.9%)과 3,036억 5,900만원(30.0%)의 사업비가 유보되어 있는 상황임.

[어촌뉴딜300 사업 관련 수탁기관 유보액(2024년 9월말 현재)]

(단위: 개소, 백만원)

선정연도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수탁지구수	교부액	집행액	유보액	추진 현황				수탁지구수	교부액	집행액	유보액	추진 현황			
					준공	공사	설계	기본계획					준공	공사	설계	기본계획
2019	34	321,143	311965	9,178	34	-	-	-	17 (6)	104,434	104,434	-	11	-	-	-
2020	55	482,323	407,437	74,886	33	22	-	-	52 (8)	416,173	400,604	15,569	33	11	-	-
2021	25	217,696	96,775	120,921	-	24	1	-	29	255,749	147,226	108,523	2	26	1	-
2022	16	117,432	15,606	101,826	-	5	11	-	26	234,934	55,367	179,567	-	19	7	-
합계	130	1,138,594	831,783 [73.1%]	**306,811 [26.9%]**	67	51	12	0	124 (14)	1,011,290	707,631 [70.0%]	**303,659 [30.0%]**	46	56	8	-

주) 한국농어촌공사의 수탁지구수 중 ( )에 표기된 지구는 지역역량강화사업(S/W) 부분 수탁임
자료: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한국농어촌공사

또한 2020년 선정된 사업대상지의 경우 2022년 사업이 완료되었어야 하나 2024년 9월말 현재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한 107개소 중 33개소(30.8%)의 완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2021년 선정된 사업대상지의 경우도 2023년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나 2024년 9월말 현재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대상지도 있는 상황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후속 성격으로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어촌뉴딜300 사업과 유사하게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집행단계에서 큰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2023년 사업 첫 해임을 감안하여도 실집행률이 24.2%에 불과하고 305억 4,400만원이 실집행단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유형)	해양수산부			최종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교부 현액	집행액 (C)			
유형1	6,953	6,953	6,518	6,518	-	6,518	1,285	6,518	1,285	**5,233**	-	**18.5**
유형2	20,972	20,972	20,384	20,384	-	20,384	4,536	20,384	4,536	**15,848**	-	**21.6**
유형3	13,716	13,716	13,716	13,716	-	13,716	4,253	13,716	4,253	**9,463**	-	**31.0**
합계	41,641	41,641	40,618	40,618	-	40,618	10,074	40,618	10,074	**30,544**	-	**24.2**

자료: 해양수산부

그리고 2024년 9월말 현재 예산액의 80.0%만 교부된 상황으로, 실집행실적이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25.6%에 불과하여 2024년에도 실집행단계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다음연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음.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실집행실적(9월말 현재)]

(단위: 백만원, %)

구분 (유형)	해양수산부			최종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교부 현액	집행액 (C)			
유형1	13,986	13,986	11,190	11,190	5,233	16,423	393	11,190	55		-	**0.4**
유형2	27,907	27,907	22,325	22,325	15,848	38,173	8,008	22,325	5,399		-	**19.3**
유형3	39,833	39,833	31,866	31,866	9,463	41,329	17,956	31,866	15,451		-	**38.8**
합계	81,726	81,726	65,381	65,381	30,544	95,925	26,357	65,381	20,905		-	**25.6**

자료: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도 어촌뉴딜300 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와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구분됨.

그런데 실집행단계에서의 이월 및 2024년 교부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에 2024년 9월말 현재 각각 지방비 포함 228억 9,200만원(88.0%)과 138억 2,400만원(79.9%)의 사업비가 유보되어 있는 상황임.[34)]

34) 2024년 9월말 현재 미교부된 예산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교부된 예산이 추가로 교부되면 한국어촌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관련 수탁기관 유보액(2024년 9월말 현재)]

(단위: 개소, 백만원)

선정 연도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수탁 지구수	교부액	집행액	유보액	추진 현황				수탁 지구수	교부액	집행액	유보액	추진 현황			
					준공	공사	설계	기본계획					준공	공사	설계	기본계획
2023	10	22,420	3,131	19,290	-	-	7	3	17	14,279	3,486	10,793	-	4	8	5
유형1	2	8,638	326.0	8,312	-	-	-	2	3	4,074	149	3,925	-	-	-	3
유형2	1	720	2	718	-	-	-	1	3	-	-	-	-	-	-	3
유형3	7	13,062	2,803	10,260	-	-	7	-	11	10,205	3,337	6,868	-	4	8	2
2024	3	3,604	2	3,602	-	-	-	3	10	3,034	3	3,031	-	-	-	10
유형1	1	2,104	-	2,104	-	-	-	1	2	-	-	-	-	-	-	2
유형2	-	-	-	-	-	-	-	-	-	-	-	-	-	-	-	-
유형3	2	1,500	2	1,498	-	-	-	2	8	3,034	-	3,031	-	-	-	8
합계	13	26,024	3,133 [12.0%]	**22,892 [88.0%]**	-	-	7	6	27	17,313	3,489 [20.1%]	**13,824 [79.9%]**	-	8	16	15

자료: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수탁기관의 유형별 집행실적을 보면, 2023년 선정된 사업대상지 중 유형 2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한 4개소의 실집행액 합계가 200만원에 불과함.

2024년 선정된 사업대상지의 경우 유형 1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한 3개소에서 모두 실집행실적이 전혀 없고, 유형 3의 경우도 10개소 실집행액의 합계가 200만원에 불과하여 실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이러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그동안 어촌뉴딜300 사업의 집행 및 사업 추진 지연과 관련하여 연례적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반복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유형 1과 유형 2는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 유형으로 사업 초기 시행착오가 발생하였고, 유형 3은 기존 어촌뉴딜300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그동안의 사업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임.

어항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에 유보되는 사업비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또한 유형 1의 사업 지연 상황을 고려하여 2025년 예산안부터는 유형 1의 사업기간을 종전의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따라 연부율도 조정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유형별 사업기간 및 연부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유형1		10%	10%	20%	30%	30%
유형2		10%	10%	39%	41%	-
유형3	'23 선정	13%	30%	57%	-	-
	'24 이후 선정	15%	30%	55%	-	-

자료: 해양수산부

그리고 지연 사업지를 대상으로 신규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어촌어항 재생사업 집행관리 강화방안'을 2024년 3월부터 수립·시행 중이라고도 설명함.

그러나 유형 3이 상대적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 모두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2024년 9월말 기준 수탁기관에서 큰 규모의 자금이 유보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어촌뉴딜 300 사업의 추이와 유사하게 실집행단계에서 과도한 유보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수탁기관에 과도한 유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별 실집행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행이 부진한 유형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연부율 조정을 검토하는 등 현실적인 실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 청년 귀어종합타운 조성 사업(신규): 유사 사업의 지연 사례를 고려하여 사업기간 및 연부율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청년 귀어종합타운 조성’** 사업은 만 40세 미만 귀어 청년, 신혼부부 및 가구원 등을 대상으로 주거, 어업 일자리, 어촌계 가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5)]

[2025년도 청년 귀어종합타운 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청년어촌정착지원	2,527	6,074	3,547	140.4
청년 귀어종합타운 조성	-	3,000	3,000	순증

해양수산부는 2029년까지 8개의 청년 귀어종합타운을 조성할 예정으로, 개소당 사업기간은 3년(1년차 20%, 2년차 40%, 3년차 40%)이고 사업비는 100억원(주거지원 90억원, 어선계류장 등 10억원) 내외임. 사업비 중 주거지원 관련은 유사 사업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의 개소당 사업비와 동일한 금액을 설정하였음.[36)]

[청년 귀어종합타운 조성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ㅇ **청년 귀어종합타운 조성 30억원(자치단체 자본보조)**
- 3개소×100억원×국고보조율 50%×1년차 연부율 20%

자료: 해양수산부

[청년 귀어종합타운 조성 사업 개요]

(사업내용) 어업현장과 마을 접근성이 좋은 어항 유휴부지 등에 타운하우스 등 주택단지(개소당 30호 이내)를 조성하고 신규 면허양식장 등 일자리 제공
・일자리 연계를 위한 어구보관창고와 어선계류시설 등 어업시설 설치
・어촌계-귀어인과의 협업 등을 통해 어촌계 편입을 보장하는 장치 마련
(거주대상) 만 40세 미만 귀어 청년, 신혼부부 및 가구원
(사업규모) 8개소, 개소당 사업비 100억원 내외(국비 50%)

자료: 해양수산부

3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청년어촌정착지원(3347-363)(수산정책실)

3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4160-433)

나. 검토의견

청년 귀어종합타운 조성 사업은 유사 사업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의 지연 상황을 참조하여 사업기간 및 연부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청년 귀어종합타운 조성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에 3개소 신규 조성을 위한 1차년도 연부율 20%를 반영하여 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음.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준비 시 주거문제가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하여 이 사업을 통해 어업 관련 일자리와 연계하여 청년 귀어인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귀어를 촉진하고자 함.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의 개소당 사업비, 사업기간 및 연부율 등 사업 관련 설계는 유사 사업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의 사례를 참조하여 설정하였다고 설명함.

[청년 귀어종합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비교]

구분	청년 귀어종합타운 조성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대상	만 40세 미만 귀어 청년, 신혼부부 및 가구원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또는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 양육 가정
사업내용	타운하우스 등 주택단지 조성, 신규 면허양식장 등 일자리 제공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 조성, 단지 내 육아, 문화·여가 등 커뮤니티시설 복합·설치
개소당 사업비	100억원 (주거지원 90억원, 어선계류장 등 10억원)	90억원
국고보조율	50%	50%
개소당 사업기간	3년 (1년차 20%, 2년차 40%, 3년차 40%)	3년 (1년차 20%, 2년차 40%, 3년차 40%)
2025년 신규 개소수	3개소	10개소
총 목표 개소수	8개소	35개소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해양수산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2022년 신규로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 시작 첫 해인 2022년부터 연례적으로 집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2022년 예산액 대비

실집행액 비율을 보면, 예산액 8억원(1개소) 중 2,200만원이 집행(집행률 2.7%)되었고, 2023년에는 예산액 48억원(5개소) 중 5억 9,300만원이 집행(12.3%)되었으며, 2024년에는 예산액 152억원(13개소) 중 8월말까지 5억 4,000만원이 집행(집행률 3.5%)되었음.

[2022년~2024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예산집행 현황(2024년 8월말 현재)]

(단위: 백만원)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년	**800**	800	800	800	800	**22**	778	
2023년	**4,800**	4,800	4,800	4,443	4,443	**593**	4,985	-
2024년	**15,200**	10,800	10,800	5,477	5,400	**540**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사업 지연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절차 지연 및 지방비 미확보, 사업대상지 변경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임.

이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과 동일하게 조성 부지를 확보하고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행정절차 지연 및 지방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유사하게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 사업은 유사 사업의 지연 상황을 참조하여 사업기간 및 연부율을 보다 현실화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산발전기금】

<지 출>

14.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 실제 융자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융자 규모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재해, 적조, 흉어, 수산물 가격의 급락 및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융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계획액 대비 200억원(△20.0%) 감액된 800억원이 편성되었음.[37)]

[2025년도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100,000	100,000	80,000	△20,000	△20.0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재해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규모 100억원**

- 최근 3년간('21~'23) 평균 재해로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 고려하여 산정

○ **경영여건 악화(비재해)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규모 700억원**

- 최근 3년간('21~'23) 긴급경영안정자금 평균 사업대상자(2,925명) × 1인당 평균 대출한도(4,600만원) × 최근 3년간('21~'23) 배정액 대비 대출 실행률 50.0%

자료: 해양수산부

37) 수산발전기금 - 재해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3465-303)(수산정책실)

나. 검토의견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전년 대비 200억원 감액된 8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최근 3년간의 실제 융자 실적과 산출근거를 고려하였을 때 융자 규모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융자 규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은 2024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 위축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800억원 증액된 1,0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00억원 감액된 8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를 융자 사유별로 구분하면 ① 재해 관련 융자 규모가 100억원, ② 경영여건 악화(이하 '비재해' 라 함) 관련 융자 규모가 700억원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21년~'23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의 실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① 재해 관련 융자의 실집행액은 연간 평균 49억 3,500만원, ② 비재해 관련 융자의 실집행액은 연간 평균 20억 4,200만원이고, 이를 합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체의 실집행액은 연간 평균 69억 7,700만원으로 2025년도 계획액 800억원의 8.7%에 불과함.

[최근 3년('21년~'23년)간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어가)

연도 (계획액)	① 재해 관련 지원				② 비재해 관련 지원			
	사유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사유 (융자건수)	배정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1년 (200억원)	괭생이모자반 피해	400	-	0.0	태안선박 화재피해	900	373	41.4
	집중호우 피해	1,600	292	18.3				
	고수온 및 태풍 오마이스 피해	900	207	23.0				
	고수온(7-8월) 2차 피해	2,400	212	8.8				
	멸치권현망 및 굴양식 어가 피해	13,800	12,190	88.3				
	소 계	19,100	**12,901**	67.5	**소 계**	900	**373**	41.4
	어가 수(어가당 지원액)			120(108)	어가 수(어가당 지원액)			14(27)
'22년 (200억원)	고수온(김,미역) 및 이상조류 피해	1,700	17	1.0	러시아수역 오징어조업 피해	2,200	511	23.2
	이상조류(해조류) 피해	110	-	0.0				

연도 (계획액)	① 재해 관련 지원				② 비재해 관련 지원			
	사유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사유 (융자건수)	배정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동해안산불 피해	160	-	0.0				
	어업재해(강풍) 완도지역피해	55	-	0.0				
	어업재해(고수온) 피해	350	-	0.0				
	태풍 힌남노 및 집중호우 피해	900	-	0.0				
	동해구중형트롤 어업인 경영위기	870	570	65.5				
	소 계	4,145	**587**	14.2	**소 계**	2,200	**511**	23.2
	어가 수(어가당 지원액)			21(28)	어가 수(어가당 지원액)			20(26)
'23년 (200억원)	저수온피해	840	-	0.0	오징어 어획부진 (근해채낚기)	6,000	3,364	56.1
	고수온 1차 피해	1,832	1,205	65.8	오징어 어획부진 (울릉군 연안복합)	2,280	1,668	73.2
	집중호우	281	-	0.0	오징어 어획부진	10,549	210	2.0
	고수온 2차 피해, 빈산소수괴	2,602	111	4.3				
	소 계	5,555	**1,316**	23.7	**소 계**	18,829	**5,242**	27.8
	어가 수(어가당 지원액)			**73(18)**	어가 수(어가당 지원액)			**228(23)**
합계('21~'23)		28,880	**14,804**	-	**합계(3년 기준)**	21,929	**6,126**	-
'21~'23 연간 평균		9,627	**4,935**	51.3	**'21~'23 연간 평균**	7,310	**2,042**	27.9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산출근거를 보면 해양수산부는 ① 재해 관련 융자 규모 100억원은 최근 3개년 평균 재해로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집행액 기준 96억원)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는 설명이나, 최근 3년간의 실집행액(49억 3,500만원)이 아닌 집행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실제 필요한 자금 대비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임.

② 비재해 관련 융자 규모에 대하여도 2025년부터 비재해 관련 융자 시에도 농신보 특례보증 적용을 검토 중으로 특례보증 적용 시 그동안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어가도 대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배정액 대비 대출 실행률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임.[38]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이 사업의 지원한도가 최대 3,000만원에서

38)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보증으로, 별도의 보증한도를 부여하고 보증지원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산출근거 중 최근 3년간 배정액 대비 대출 실행률은 실제로는 27.9%이나 50.0%로 반영되어 융자 규모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임. 그리고 지원한도 상향의 경우에도 2024년 지원한도 상향조정 이후에도 8월말 기준 지원실적이 70억 6,000만원이고, 어가당 지원액은 약 2,48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4년 8월말 기준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① 재해 관련 지원				② 비재해 관련 지원			
	사유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사유 (융자건수)	배정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4년 (1,000억원)	-	-	-	-	오징어 어획부진	17,030	7,060	41.5
	어가 수(어가당 지원액)			-	어가 수(어가당 지원액)			285(24.8)
합계		-	-	-	합계	17,030	7,060	41.5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 사업은 융자 규모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융자 규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완화하여 지원함.

15.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사업: 융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사업은 산지 및 소비지에서 수산물을 유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융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126억원(10.6%)이 증액된 1,312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39)]

[2025년도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118,686	118,686	131,286	12,600	10.6
도매시장 출하지원	14,100	14,100	19,100	5,000	35.5
온라인 도매시장 정산지원	-	-	5,500	5,500	순증

주) 2023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내역사업인 **‘도매시장 출하지원’**은 도매시장의 어대금 결제자금 및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자금 등을 융자하는 것으로 2025년부터는 수산물 온라인거래 결제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임.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50억원(35.5%) 증액된 191억원이 편성되었음.

[도매시장 출하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ㅇ **도매시장 출하지원 191억원**

- 어대금 76억원 = 2억 8,100만원×27개소
- 정가·수의매매 65억원 = 6억 5,000만원×10개소
- **수산물 온라인거래 결제자금 50억원 = 10억원×5개소**

자료: 해양수산부

또 다른 내역사업인 **‘온라인 도매시장 정산지원’**(신규)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수산물 판매자에게 신속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도매시장 정산소의 정산자금 운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5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39) 수산발전기금 -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3068-300)(수산정책실)

[온라인 도매시장 정산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온라인 도매시장 정산지원 55억원** - 수산물 온라인거래 정산자금 55억원 = **거래목표액 1,000억원** ÷ 회전율 18.25(무이자 20일) ※ 회전율 18.25 = 거래일수(365일) ÷ 무이자 기간(20일)

자료: 해양수산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2023년 11월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는데 2024년 9월말 현재 법률상 근거는 마련하지 못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지정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음.[40] 2024년 6월에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및 사업계획서 변경 등을 통하여 수산물에 대한 거래를 추가하고 명칭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7월부터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하여 수산물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적용 내용]

- 사업명: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 실증특례 지정번호: 2023-19-2호 - 실증특례 지정사실 ○ 유효기간 : 2023.10.04.~2025.10.03. ○ 해당 기술・서비스의 내용 :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판・구매자가 참여 가능한 온라인 도매 거래 시스템 - 이용자 유의사항 ○ (지역) 전국 어디서든 거래주체 간 거래 ○ (이용주체) 농수산물 도매거래 사업자 간 거래 (* 단,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거래 확보를 위해 각 거래 주체는 각각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로 승인받아야 함) ○ (품목) 청과부류, 축산부류, 양곡부류, 수산물 및 가공식품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별도 정책 수립 - 이용자 보호방안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전자상거래배상책임보험 가입 ○ 이의 및 민원 처리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자료:「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검토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4. 8.)

40)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이 중 실증특례는 법령규정이 모호・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2년간(최대 4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은 현행「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시장형태이므로 별도의 법률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나. 검토의견

첫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결제자금 및 정산자금 지원액을 각각 50억원 및 55억원 편성하였으나, 수산물의 2024년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실적 및 농축산물에 대한 융자 규모를 고려하면 융자 계획 규모가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임.

해양수산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부터 온라인 도매시장 결제자금과 정산자금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으로, 2025년 계획안에 각각 50억원 및 55억원을 편성하였음.

온라인 결제지원 자금은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 시 구매자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구매자에게 구매 결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온라인 도매시장 정산지원은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 시 구매자가 구매 확정 후 익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산자금을 지원하는 것임.

[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결제·정산지원 자금 개요]

□ **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결제지원 자금 개요**
- (지원목적) 온라인 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시 구매자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매 결제자금의 융자 지원
- (지원규모) 50억원
- (지원대상)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등록된 구매자
- (운용방안) 온라인 도매시장에 등록한 온라인 도매구매 업체당 최고한도 10억원 융자지원(1.5%, 1년 상환)

□ **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정산지원 자금 개요**
- (지원목적) 온라인 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시 구매자가 구매 확정 후 익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의 융자지원
- (지원규모) 55억원
- (지원대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온라인도매시장 정산소 운영기관)
- (운용방안) 온라인 도매시장에 등록한 온라인 도매 구매자에게 업체당 최고 10억원 여신 제공(개별 약정)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물의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는 2024년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 2024년 9월말 기준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수산물과 농축산물의 거래금액 및 물량을 보면, 수산물의 월 평균 거래금액은 8.7억원, 거래물량은 285.7톤임.

동일 기간 농축산물의 월 평균 거래금액은 489.3억원, 거래물량은 18,278톤으로 수산물의 거래는 농축산물 거래 대비 금액상으로는 1.8%, 물량상으로는 1.6%에 불과함.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농축수산물 거래 현황('24년 9월말 현재)]

(단위: 억원,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거래금액	거래물량	거래금액	거래물량	거래금액	거래물량	거래금액	거래물량	거래금액	거래물량	거래금액	거래물량	거래금액	거래물량	거래금액	거래물량	거래금액	거래물량
농축산물	65	2,057	85	2,725	117	4,338	237	9,425	327	13,379	431	20,340	466	20,970	441	15,773	561	18,093
수산물	-	-	-	-	-	-	-	-	-	-	-	-	10	223	2	236	14	398
합계	65	2,057	85	2,725	117	4,338	237	9,425	327	13,379	431	20,340	476	21,193	443	16,009	575	18,491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거래실적이 훨씬 많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2025년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의 결제지원 자금 및 정산지원 자금으로 각각 380억원과 220억원을 편성하였는데,[41] 2024년 거래 실적을 비교해보면 해양수산부의 융자 계획 규모가 다소 과다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임.

그리고 정산지원의 경우 해양수산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2025년 거래목표액을 오프라인 시장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어물 판매액(2022년 1,270억원) 수준을 참고하여 1,000억원으로 설정하였는데, 2024년 7~9월 3개월간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이 26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목표액이 과다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는 2024년 중도에 시작되었고, 거래 가능 품목이 농축산물에 비해 적으며, 현재 여신이 제공되지 않아 농축산물 대비 상대적으로 거래가 저조한 상황이나,[42] 2025년 거래 가능 품목이 확대되고 신규 이용자가 유치되면 거래가 충분히 활성화될 것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농축산물의 경우에도 2022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거래 규모가 4.5조원임에도[43] 2024년 1~9월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금액이 2,730억원에 불과하고, 농축산물과의 거래 실적 비교 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대비 과다한 금액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유사 사업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온라인 거래 출하촉진 사업은 도입 첫 해(2022년)에 대출신청업체의 담보 부족과 융자신청기간 부족 등으로 융자 실적이 저조

4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3033-305)

42)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하여 2024년에는 건어물, 전복, 천일염 등이 거래 가능하고, 2025년부터는 가공제품도 거래 가능 품목에 추가될 예정임.

43)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2024. 5. 1.)

하였던 사례가 있었는바, 해양수산부는 2025년 온라인 거래 결제자금 지원 사업 수행 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을 계획·추진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온라인 거래 출하촉진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2025년에 수행 예정인 온라인 거래 결제지원 사업(50억원)과 유사한 사업으로 2022년 신규사업으로 도입되었음.[44] 그런데 농산물 온라인 거래 출하촉진 사업은 도입 첫 해에 계획현액 300억원 중 112억원을 집행하고 188억원을 불용(집행률 37.4%)하여 융자지원 실적이 저조하였음.

이러한 실적 저조 사유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당시 기준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로 계획액보다 많은 317억 9,700만원의 대출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신청업체의 담보 부족과 융자신청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실제 연내 융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함.[45]

[2022년 농산물 온라인 거래 출하촉진 사업 시기별 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A)	시기	신청액	대출액(B)	대출실적(B/A)
2022년	30,000	상반기	13,250	1,200	4
		하반기	18,547	10,011	33.4
		소계	31,797	11,211	37.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 결제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도 융자 시 담보가 필요하고 담보의 종류에 따라 대출실행 소요기간이 최소 3주 이상이며, 담보가 부동산일 경우에는 외부 감정평가 실시 등이 필요함에 따라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됨.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의 온라인 거래 결제자금 융자 시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내용을 초기에 충실히 홍보하고 신청기간을 적절히 설계함으로써 신청업체들이 대출에 필요한 담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을 면밀히 계획·추진할 필요가 있음.

셋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안정적인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률상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4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3033-305)

45) 「202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Ⅳ)」(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8.) p.182

않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근거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특례의 기한이 2025년 10월 3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기한만료 전까지 법률이 마련되지 않으면 온라인 도매시장의 운영이 어렵게 되고, 이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현재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법률 제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향후 해양수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률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양경찰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수입은 68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10.1%) 증가함[1].

[202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62	68	6	10.1
총수입	62	68	6	10.1

202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지출은 1조 9,923억원으로 전년 대비 956억원(5.0%) 증가함.

[202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8,967	19,923	956	5.0
총지출	18,967	19,923	956	5.0

문의 : 양경화 예산결산조사관 yang717@assembly.go.kr (02-6788-568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68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10.1%) 증가함

[2025년도 해양경찰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62	68	6	10.1
합 계	62	68	6	10.1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1조 9,923억원으로 전년 대비 956억원(5.0%) 증가함

[2025년도 해양경찰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8,967	19,923	956	5.0
합 계	18,967	19,923	956	5.0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해양경찰청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3개(25억 1,8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

그 중 ‘차세대디지털VTS국제표준서비스및장비개발(R&D)’ 사업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근무자의 신속한 상황인지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디지털 관제시스템 및 미래형 교신체계 개발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2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AI기반해양재난대응체계CDX기술개발(R&D)’ 사업은 해양재난 상황의 다양화, 대형화로 현장대응 인력이 모든 상황을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 효율적 해양재난 대응을 위해 해양재난의 디지털 전환(CDX)을 통한 인공지능(AI) 융합기술 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최적화 기술개발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해양경찰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차세대디지털VTS국제표준서비스및장비개발(R&D)	1,200
2	해양경찰연구개발사업관리(R&D)	318
3	AI기반해양재난대응체계CDX기술개발(R&D)	1,000
총지출		2,518

한편, 해양경찰청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서부정비창운영’, ‘방제정건조’, ‘무선신호탐지기술통한선박식별기술체계개발(R&D)’ 사업 등 총 13개임.[2)]

[2025년도 해양경찰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서부정비창운영	8,320	23,843	15,523	186.5
2	방제정건조	9,560	20,084	10,524	110.1
3	무선신호탐지기술통한 선박식별기술체계개발(R&D)	1,302	2,440	1,138	87.4
4	IoT기반함정정비통합관제플랫폼 개발(R&D)	1,040	1,800	760	73.1
5	정보통신보안활동	890	1,396	506	56.9
6	VTS구축운영	26,421	41,068	14,647	55.4
7	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R&D) (해경청)	8,000	12,000	4,000	50
8	탄소중립해상환경변화에따른 방제대응기술개발(R&D)	985	1,465	480	48.7
9	해양경찰현장맞춤형연구개발 (오션랩2.0)(R&D)	1,082	1,492	410	37.9
10	경비대테러역량강화	13,262	17,907	4,645	35
11	지능형해양사고대응플랫폼구축 (R&D)	2,643	3,451	808	30.6
12	해양경찰서부정비창신설	58,822	71,051	12,229	20.7
13	함정유류관리	125,660	138,359	12,699	10.1

2)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해양경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① 해양주권 및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MDA(해양영역인식) 경비체계 및 위성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 ② 구조·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구조거점파출소 확대, 노후 헬기·구조정 교체 등 지원 ③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노후방제정 교체 등의 예산에 중점을 둔 점임. 또한 마약, 사이버범죄 등과 같이 현장에서 증거수집, 증거물 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장비 도입 및 지원을 위해 범죄수사활동에서 과학수사역량강화를 분리하였음

2025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최근 4년간 연례적으로 초과수납이 반복되고 있으나 2025년 수입예산안 증액 규모가 초과수납 규모에 미달하므로, 최근의 수납실적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서부정비창 운영 사업은 서부정비창 건물이 2025년 7월 완공예정이고, 신규 인력도 2025년 7월에서야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업무경비·특근매식비·공공요금 및 제세·일반수용비 및 관서업무추진비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함정건조 사업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수립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상의 2025년 함정 도입 및 노후대체 목표가 2025년 예산안과 괴리가 크게 발생하였는데,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재산이자수입: 최근 수납실적 등을 고려한 세입예산액 증액 필요

가. 개 요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정부출연금 및 국고보조금과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되는 세입과목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300만원(101.0%) 증가한 1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3)]

[2025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92	185	93	101.0

나. 검토의견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최근 4년간 연례적으로 초과수납이 반복되고 있으나 2025년 수입예산안 증액 규모가 초과수납 규모에 미달하므로, 최근의 수납실적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초과수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2023년의 수납실적은 423.0%로 예산 편성액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2024년에도 7월말 기준의 수납실적이 이미 335.9%로 예산

3) 일반회계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운영지원과)

편성액을 크게 초과하였음.

[2021년~2024년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실적(2024년 7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26	26	-	26	73	73	280.8	100.0	-	-
2022	87	87	-	87	115	115	132.2	100.0	-	-
2023	87	87	-	87	368	368	423.0	100.0	-	-
2024	92	92	-	92	310	309	335.9	99.7	1	-

자료: 해양경찰청

그동안 해양경찰청은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예산액을 2022년~2024년 수납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1억원 미만의 유사한 금액으로 편성하였다가 2025년에는 최근 3년간의 수납실적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9,300만원 증액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이는 2024년 7월 기준 수납액의 60.0%에 불과한 금액이고, 2021년~2023년 해양경찰청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상세내역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구개발비 이자 항목임.

[2021년~2023년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액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결산금액	상세내역		
			연구개발비 (R&D) 이자	국고보조금 이자	세입·세출금 이자수입
2021년	26	73	43	2	28
2022년	87	115	102	2	11
2023년	87	368	344	3	21

자료: 해양경찰청

그런데 해양경찰청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2021년 262억 8,400만원이었다가 2022년부터 크게 증가해 428억 2,100만원, 2023년은 521억 5,600만원, 2024년은 416억 1,700만원임. 또한 2025년에도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77억 6,7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이에 비례하여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수납액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초과 수납규모와 최근의 연구개발비 편성 규모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세입예산액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세 출>

2.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 설정을 위하여 국고보조율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은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선발한 후 연안해역 사고다발지역에 배치하여 예방순찰을 통해 연안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00만원(1.5%) 증액된 7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6,118	7,366	1,248	20.4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720	731	11	1.5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7억 3,100만원**

- 일반수용비(연안안전지킴이 관련 직접경비) 1,000만원 = 경찰서 20개소×50만원
- 민간경상보조 7억 2,100만원 = 194명×372만원

자료: 해양경찰청

나. 검토의견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의 보조율은 국고 100%이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도 연안해역 안전관리의 주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설정을 위하여 보조율을 조정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로

4) 일반회계 -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3001-300)(구조안전국)

비목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보조율은 100%이고, (사)한국해양안전협회가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5)]

[2021년~2024년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및 사업 예산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위촉인원	168명	166명	208명	194명
사업예산	5억 9,700만원	6억 1,700만원	7억 8,800만원	7억 2,000만원

자료: 해양경찰청

그런데「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연안해역 안전관리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고,[6)] 2021년 동법 개정(2021. 4. 13.)으로 연안안전지킴이의 활용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음.[7)]

2021년 법 개정안 논의 당시 해양경찰청은 향후 매칭사업을 시행하기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전 조사하여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음.[8)]

그럼에도 이 사업은 2025년까지도 국고보조율 100%로 예산을 편성하여「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2023년「민·관 참여형 연안안전관리체계 발전방안」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24년 3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는

5)「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6)「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 [2021년 법 개정안 논의 당시 해양경찰청의 향후 계획]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임.

그러나 법 개정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연안해역 안전관리의 주체임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부담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설정을 위하여 보조율을 일정 부분 하향 조정함으로써 예산액을 감액하고, 비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 비목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안안전지킴이 제도의 운영은 지역주민이 주축이 되어 지역안전에 기여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연안해역 안전관리의 한 주체이므로 소요 경비에 대한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안안전지킴이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 운용 인력이 제한되는 만큼 해양경찰청 자체 운영예산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요 경비 지원을 통해 운용인력을 증원한다면 전국 연안해역 위험구역(910개소)의 더 많은 점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도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 자체 운영예산 외에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 계획은 없으나, 매칭사업(국고:지방비 5:5)을 시행하기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전 조사하여 희망하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함.

자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21.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3. 경비대테러역량강화 사업: 드론 관련 직무교육 이수자를 드론 운영 직무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 등

가. 개 요

‘경비대테러역량강화’ 사업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체계 구축, 외국어선 감시·단속활동 강화, 해양테러 예방·진압 및 해상경호 업무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6억 4,500만원(35.0%) 증액된 179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5년도 경비대테러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경비대테러역량강화	13,262	17,907	4,645	35.0
드론운영	1,797	3,555	1,758	97.8
특공대 활동 지원	4,112	5,199	1,087	26.4

내역사업인 **‘드론운영’**은 불법 조업 외국어선 감시·추적 및 조난 선박 등 수색구조 활동을 위한 드론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5,800만원(97.8%) 증액된 35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드론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드론운영 35억 5,500만원**
- 드론운용 11억 5,500만원
- 드론도입 24억원

자료: 해양경찰청

또 다른 내역사업인 **‘특공대 활동 지원’**은 해상테러 예방·진압, 해상경호업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 대테러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특공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8,700만원(26.4%) 증액된 51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

9) 일반회계 - 경비대테러역량강화(3102-300)(경비국)

[특공대 활동 지원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특공대 활동 지원 51억 9,900만원**
- 특공대 활동 지원 16억 7,400만원
- 특공대 훈련장 운영 8억 6,000만원
- 특공대 훈련장 환경개선 20억 3,900만원
- 특공대 현장임무장비 구매 3억 6,000만원
- APEC 해상경호 3억 6,900만원

자료: 해양경찰청

나. 검토의견

첫째, 드론운영 사업은 2025년 드론 관련 직무교육을 위하여 3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존 직무교육 이수자 중 36.1%가 드론 운영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 직무교육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드론 관련 직무교육 이수자를 드론 운영 직무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양경찰청은 2021년부터 함정 탑재 드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드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3억 3,600만원이 드론 관련 직무교육을 위하여 편성되었음.

[2025년 드론 직무교육 관련 예산안 상세 산출내역]

○ **드론 직무교육 3억 3,600만원**
- 61명(직무교육 대상자) × 550만원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2021년 18명, 2022년 16명, 2023년 33명, 그리고 2024년 상반기 기준 16명 등 총 83명을 대상으로 드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 중 36.1%인 30명이 드론 운영 관련 직무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음.

[드론 관련 직무교육 실시 현황]

연도	집행액	교육대상자 수	교육 수료자 수	드론 운영 직무 종사 경험자 수	드론 운영 직무 종사 미경험자 수	현재 드론 운영 직무 종사자 수
2021년	9,400만원	18명	18명	14명	4명 (22.2%)	2명
2022년	9,300만원	16명	16명	11명	5명 (31.3%)	6명
2023년	1억 5,200만원	33명	33명	13명	20명 (60.6%)	11명
2024년 상반기	7,800만원	16명	15명 *미수료 1명	15명	1명(미수료) (6.7%)	15명
합계	4억 1,700만원	83명	82명	53명	30명 (36.1%)	34명

자료: 해양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드론 도입 이후 운영 미흡으로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10] 드론 운영 관련 직무교육의 실시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교육 수료 인력이 드론 운영 관련 직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교육 운영의 실효성 및 활용성이 저하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소지도 있음.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교육대상자 중 근무경력이 없는 직원들은 각 지방청별로 인력풀을 형성하여 차후 도입되는 드론의 운영요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양경찰청은 기존 드론 운영 관련 직무교육 이수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드론 관련 직무교육 이수자를 드론 운영 직무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특공대 활동 지원 사업은 2025년 APEC 해상경호를 위하여 안티드론 장비를 구입할 예정이나, 해양경찰청이 기 보유 중인 장비가 있고, APEC이 내륙지역에서 개최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해양경찰청은 2025년 APEC 개최에 따른 해상경호를 위하여 2025년 예산안에 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음.

10) [2022년~2024년 무인헬기 사고 현황]

[APEC 해상경호 관련 2025년 예산안(3억 6,900만원) 상세 산출내역]

- 일반수용비 2,900만원(사무용품 및 방한장비 구입, 백서 및 보고서 발간)
- 공공요금 300만원(전용회선 사용료)
- 특근매식비 5,200만원
- 임차료 6,600만원(사무실 및 보트보관소 임차)
- 유류비 2,200만원(보트 유류비)
- 기타운영비 2,200만원
- 국내여비 9,200만원(특공대 관련 여비)
- **자산취득비 8,300만원(안티드론 장비 구입)**

자료: 해양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PEC 해상경호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은 2025년에 신규로 안티드론 장비를 구입할 예정인데, 휴대용 드론 탐지 장비 1대임.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이미 각 지방청에 5대의 안티드론 건과 1대의 드론탐지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연월일	보유부서	내용	조사위 결과
’22.6.9	제주서 (3012함)	제작사 주관 함상교육 중 기체가 수평 비행(원인미상) 후 방파제 암벽 충돌·손상	미개최 ※ 제조사측에서 센서오류로 인한 사고로 인정
’22.10	태안서 (1506함)	해상 감시임무 종료 후 복귀 중 갑판 인근에서 복귀명령이 자동실행되어 소화포 관제탑 추돌	기체 안전장치 부족 해당상황에 대한 운용 매뉴얼 미흡, 운용자 숙련도 부족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
’23.1.10	군산서 (3010함)	군산 전용부두 내에서 무인헬기 숙달 훈련 차 비행 중 GCS, 조종기 통신 두절 발생, 제작사와 통화하며 해결 시도 중 해상으로 추락	원인 미상의 사유로 GCS와 기체간 신호 끊김 현상 발생 해당 상황에 대한 운용 매뉴얼 미흡
’23.3.4	서귀포 (5002함)	1차비행(13:35~14:10)을 종료하고 배터리 교체 등 기체 점검, 15:00경 이륙 후 15:19경 고도 60m에서 하강 중 원인 미상으로 기체가 시계방향으로 돌며 해상 추락	위치·고도·방향·자이로 기능 이상 및 모터, 센서오류 등 여러 복합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로 결론
’23.9.22	동해서 (3007함)	해상 순찰 중 모함과 3.8km 지점에서 통신두절, 해상에 추락	스와시 플레이트 서보 링키지 이탈로 인한 추락으로 추정
’24.3.6	태안서 (1506함)	교육·훈련 및 장비점검 차 비행 실시 중 기체와 로터 분리되면서 해상 추락	메인샤프트가 부러져 메인로터와 기체가 분리되면서 추락
’24.7.19	제주서 (3012함)	본함과 최대 약 9km이격하여 비행 후 복귀 중 본함과 380m 거리에서 신호 끊김·추락	조종기 안전장치 부족, 운용자 숙련도 부족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

[해양경찰청 안티드론 장비 보유 현황]

(단위: 대)

구 분	중부	서해	남해	동해	제주
안티드론 건	1	1	1	1	1
드론탐지기	-	-	1	-	-

자료: 해양경찰청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드론탐지기 1대당 30㎢ 탐지를 탐지할 수 있어 현재 보유 중인 드론탐지기 1대로는 탐지 면적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APEC 해상경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APEC은 경주의 내륙지역인 보문관광단지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육상에서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 등이 경호를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서부정비창 운영 사업: 실제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감액 필요

가. 개 요

‘서부정비창 운영’ 사업은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정비·수리에 필요한 운용장비를 도입하고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5억 2,300만원(186.5%) 증액된 238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2025년도 서부정비창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서부정비창 운영	8,320	23,843	15,523	186.5

[서부정비창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서부정비창 운영 238억 4,300만원**
- 운용장비 206억 700만원
- 운영경비 32억 3,600만원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은 현재 운영 중인 부산 정비창의 수리 수용한계가 초과되고 대형 함정 등의 위탁수리가 취소·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목포에 정비창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2025년이고 총사업비는 2,584억원임.

[서부정비창 주요 시설]

주요시설	규 모	비 고
항만시설	(대형) 의장안벽 2선석(380m) (중형) 쉽리프트 측면 2선석(170m) (소형) 부잔교 130m	의장안벽/호안 1,476m
상가시설	플로팅도크(5천톤급)	190m(L)×37m(B)
	쉽리프트(700톤급)	6선석 (수리3, 예비2, 비상1)
건축시설	본관·복지관, 보급창고, 수리·통신공장, 엔진 및 발전기 시운전실, 무기탄약고, 유류저장고, 숙영관 등	건축시설 25개동 (건물 3개동, 공장·창고 22개동)

자료: 해양경찰청

11) 일반회계 - 서부정비창 운영(3103-304)(장비기술국)

나. 검토의견

서부정비창 운영 사업은 서부정비창 건물이 2025년 7월 완공예정이고, 신규인력도 2025년 7월에서야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업무경비·특근매식비·공공요금 및 제세·일반수용비 및 관서업무추진비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련 예산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서부정비창은 2024년 9월 기준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2025년 7월 건물이 완공될 예정임. 2025년 서부정비창이 개창되면 서부정비창에서는 165명이 근무할 예정인데, 이 중 121명은 2024년 직제 개정을 통해 증원되어 2025년 신규채용하게 될 인원이고 나머지 44명은 2023년 직제 재정을 통한 증원, 부산정비창 및 본부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충원됨.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인력의 재배치는 2025년 1월~2월 정기 인사발령으로, 신규인력은 2025년 상반기 중 채용을 거쳐 7월 배치될 계획임.

그런데 해양경찰청이 2025년 서부정비창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운영경비 중 일부는 건물 완공 시기 및 신규인력 채용 시기를 고려하지 않아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임.

우선, 특정업무경비가 1억 4,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는 158명에 대한 12개월분의 특정업무경비임.[12)]

[서부정비창 운영 사업 특정업무경비 편성 내역]

· 대민활동비 8명×12월×20만원=1,920만원 · 치안활동비 21명×12월×17만원=4,284만원 · 복무지도활동비 1명×12월×10만원=120만원 · 특정업무경비 128명×12월×5만원=7,680만원

자료: 해양경찰청

2025년 1~2월 배치되는 44명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 단가가 5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인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는 12개월분으로, 나머지 인력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는 충원시기에 맞추어 6개월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특근매식비의 경우도 1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165명에 대한 8개월분의 특근매식비이므로, 특정업무경비의 경우와 같이, 44명에 대한 특근매식비는 12개월분으로, 나머지 인력에 대한 특근매식비는 충원시기에 맞추어 6개월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12) 해양경찰청은 서부정비창의 정원은 165명이나 서부정비창이 신설 관서로 인력배치가 유동적임을 감안하여 158명 기준으로 특정업무경비를 편성하였다는 설명임.

[서부정비창 운영 사업 특근매식비 편성 내역]

· 7,000원×165명×16회×8월=1억 4,500만원

자료: 해양경찰청

또한, 부산정비창의 경우 특근매식비 산정 시 매월 9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서부정비창은 이보다 1.8배 많은 16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부산정비창과 서부정비창의 업무가 크게 상이하다 할 수 없으므로 서부정비창의 특근매식비 산정 횟수를 부산정비창과 동일하게 9회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부산정비창 특근매식비 편성 내역]

· 7,000원×213명×9회×12월×0.904 = 1억 4,512만원

자료: 해양경찰청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면, 13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부정비창의 장비와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경우의 1년치 전기요금・가스요금・수도요금 및 통신요금을 8개월로 환산한 것임.

[서부정비창 운영 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편성 내역]

· 전기요금 1억 1,800만원×8개월=9억 4,400만원 · 가스요금 1,700만원×8개월=1억 3,600만원 · 수도요금 3,800만원×8개월=3억 400만원 · 통신요금 175만원×8개월=1,400만원

자료: 해양경찰청

그런데 서부정비창의 건물은 2025년 7월 완공될 예정이고, 플로팅도크는 2025년 3월, 그 외 주요장비는 2025년 7~8월 대다수가 도입 완료될 예정으로 현실적으로 2025년 7월 전까지 시설 및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요금 및 제세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플로팅도크 등 상가시설의 시운전이 2025년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8개월분의 공공요금을 편성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시운전은 정상적인 가동보다 운영시간 및 범위가 적을 수 밖에 없고, 플로팅도크를 제외한 주요장비는 2025년 7~8월 대다수가 도입될 예정이며, 2025년 7월에서야 운용 인력이 모두 충원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8개월분의 공공요금은 과다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일반수용비와 관서업무추진비를 보면 각각 3억 4,000만원과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부정비창(165명) 보다 많은 인력이 근무하는 부산정비창(215명)의 1년치 일반수용비 및 관서업무추진비 3억 314만원 및 405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임.

개창 초기 사무용품 등 구매, 기관 간 업무협조 등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25년 7월에서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함을 감안하면, 규모가 큰 부산정비창의 1년치 일반수용비 및 관서업무추진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편성된 것은 과다계상 소지가 있어 보임.

5. 함정건조 사업: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과 예산안 간 괴리 발생

가. 개 요

‘함정건조’ 사업은 경비함정을 신규증강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함정을 대체건조하며 노후 고속단정을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5억 8,000만원(△20.5%) 감액된 1,571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13)]

[2025년도 함정건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함정건조	197,717	157,137	△40,580	△20.5

[함정건조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25년 신규사업 1년차 사업비 16억 7,000만원**
- 단속전담함정 2척 건조: 3억 1,500만원
- 소형 P정 대체 2척: 2억 3,500만원
- 고속단정 대체 8대: 11억 2,000만원
○ ’20년 추경 진행사업 6년차 사업비 18억원
- 형기정 대체 2척: 18억원
○ ’22년 진행사업 4년차 사업비 1,011억 6,000만원
- 서해전력 증강 1척: 363억 6,000만원
- 대형함정 대체 1척: 378억 9,000만원
- 중형함정 대체 1척: 171억원
- 100톤 대체 1척: 83억 1,000만원
- 예인정 대체 1척: 15억원
○ ’23년 진행사업 3년차 사업비 294억원
- 서해전력 증강 1척: 175억원
- 100톤 대체 4척: 119억원

13) 일반회계 - 함정건조(3101-300)(장비기술국)

○ ’24년 진행사업 2년차 사업비 229억 5,100만원 - 서해전력 증강 1척: 82억 6,000만원 - 100톤 대체 10척: 111억 3,100만원 - 고속단정 7대: 35억 6,000만원 ○ 함정건조 지원 1억 5,600만원

자료: 해양경찰청

나. 검토의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수립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상의 2025년 함정 도입 및 노후대체 목표가 2025년 예산안과 괴리가 크게 발생하였는데,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2021. 4. 13. 제정, 2022. 4. 14. 시행)되었음.

해양경찰청은 제정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경찰장비법’ 이라 함) 제4조에 따라 2022년 11월 ‘제1차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2023년~2027년)’(이하 ‘기본계획’ 이라 함)을 수립하였음.[14]

1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중장기 추진목표
3.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5. 해양경찰장비의 기술혁신 및 실용화
6. 해양경찰장비 관리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
7. 해양경찰장비의 운용 및 정비 인력의 양성
8.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에는 「해양경찰장비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이 설정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상 2025년 함정 도입 및 노후대체 목표가 2025년 예산안과 괴리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기본계획상 2025년 목표와 2025년 예산안은 함정 종류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함정 도입 관련 기본계획과 2025년 예산안 비교]

구 분		기본계획	2025년 예산안	세부사업명
신규 증강	서해전력증강	1척	-	함정건조
	예인정	1척	-	
	단속전담함정	-	2척	
노후 대체	대형함정 대체	1척	-	
	100톤 대체	2척	-	
	형사기동정 대체	2척	-	
	소형 P정 대체	-	2척	
	고속단정 대체	-	8대	

자료: 해양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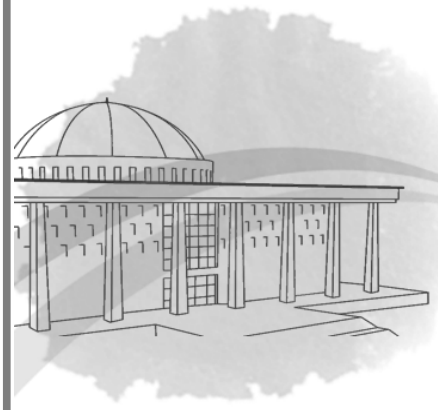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기본계획은 치안소요 및 노후장비 대체 등을 고려한 중장기 도입계획으로 정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계획대로 반영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2025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사업 중요도와 대체시급성을 고려하였기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기본계획이 중장기 장비 도입·관리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장비를 도입·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계획상 함정 도입 및 노후대체 목표와 예산안상 목표가 괴리가 크게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기본계획의 실효성도 저하시키는 것임.

또한 기본계획과 예산안이 함정 종류에 있어서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기본계획이 추진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없이 수립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해양경찰청은 기본계획상 함정 도입 및 노후대체 목표와 예산안을 일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의 추진가능성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총수입은 6조 9,375억원으로, 전년 대비 5,216억원(△7.0%) 감소함. 예산은 2조 6,8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01억원(△0.7%) 감소하고, 기금은 4조 2,49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15억원(△10.6%) 감소함.[1)]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27,087	26,885	△201	△0.7
기 금	47,505	42,490	△5,015	△10.6
총수입	74,592	69,375	△5,216	△7.0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총지출은 11조 5,0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1억원(0.2%) 증가함. 예산은 9조 1,5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3억원(1.4%) 증가한 반면, 기금은 2조 3,4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2억원(△4.2%) 감소함.

문의 : 김정환 예산결산조사관 na32@assembly.go.kr (02-6788-5680)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90,253	91,516	1,263	1.4
기 금	24,537	23,494	△1,042	△4.2
총지출	114,789	115,010	221	0.2

주) 2024년도 예산 총지출 금액은 우주항공청으로 이관이 완료(2024.5.17.)된 예산 399억원이 제외된 금액

나. 예산안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4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조 6,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423억원(0.5%) 증가함.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579	1,803	224	14.2
에특회계	62,161	61,350	△811	△1.3
소특회계	21,655	22,843	1,187	5.5
지특회계	708	530	△178	△25.1
합 계	86,103	86,526	423	0.5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5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1조 6,518억원으로 전년 대비 3,578억원(3.2%) 증가함.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55,100	60,870	5,770	10.5
에특회계	28,075	25,484	△2,591	△9.2
소특회계	17,346	18,228	882	5.1
지특회계	12,260	11,879	△381	△3.1
고특회계	159	57	△102	△64.2
합 계	112,940	116,518	3,578	3.2

주) 2024년도 본예산 총지출 금액은 우주항공청으로 이관이 완료(2024.5.17.)된 예산 399억원이 제외된 금액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개 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20조 3,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70억원(4.2%) 증가함.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전력기금	45,010	45,010	39,399	△5,611	△12.5
방폐기금	92,907	92,907	104,062	11,155	12.0
무보기금	55,510	55,510	57,807	2,297	4.1
산촉기금	2,024	2,024	2,352	329	16.2
합 계	195,450	195,450	203,620	8,170	4.2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71개(2,980억 6,3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빛 생태계 구축’ 사업은 OLED 이후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무기발광(iLED) 디스플레이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80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무탄소 에너지 보증’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보증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시장경제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2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희소금속산업경쟁력강화지원	1,190
2	한국형암모니아벙커링선박건조지원	500
3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25,213
4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2,000
5	전기차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고도화 사업(정보화)	475
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수임국활동지원	4,852
7	빅데이터기반상용배터리공정고도화플랫폼구축	2,400
8	미래 모빌리티 확산 제도 기반 지원	580
9	디스플레이아카데미구축	3,700
10	디지털유통물류센터표준모델확산사업	2,400
11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1,618
12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ODA)	413
13	IPEF청정경제촉진펀드조성	2,100
14	한국제품안전관리원지원	5,657
15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7,210
16	EV 핵심부품 안전성 고도화 시스템 기반구축	2,000
17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30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18	실도로 인프라 연계 자율주행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1,660
19	모빌리티 인증부품 산업육성 기반조성	2,000
20	미래차 첨단 ECU 생태계 활성화	2,000
21	No-Code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2,250
22	미래차 전용플랫폼 지원 XR기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	2,500
23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생산 기반구축	2,855
24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검증지원	3,000
25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 인프라 고도화	3,000
26	CVC투자연계대중견중소기업협력(R&D)	1,875
27	SDV 아키텍처를 위한 In-Vehicle 초고속 통신 반도체 기술 개발(R&D)	4,580
28	SDV용AI가속기반도체기술개발(R&D)	4,250
29	인체밀착형웨어러블기기용전고체리튬고분자배터리개발(R&D)	5,000
30	건설현장다목적고소작업을위한로봇플랫폼및XR기반인간로봇협업기술개발(R&D)	1,008
31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R&D)	3,300
32	국제표준 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R&D)	3,600
33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2,000
34	글로벌재활용규제대응플라스틱밸류업을위한혁신기술개발사업(R&D)	1,200
35	기업수요기반차세대연구자도전혁신산업기술개발(R&D)	4,000
36	농업기계디지털전환촉개방형ASW오픈소스및협력개발서비스플랫폼구축(R&D)	300
37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및활용기반구축(R&D)	5,170
38	바이오파운드리 핵심기기 및 장비 고도화 기술개발사업(R&D)	4,185
39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R&D)	17,800
40	산업AI용데이터전처리자동화기술개발(R&D)	3,200
41	산업현장맞춤형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R&D)	4,320
42	의료데이터합성기술및의료인공지능기술기반디지털의료제품개발사업(R&D)	2,800
43	폴리에스터혼방섬유의F2F(FiberToFiber)리사이클핵심기술개발(R&D)	4,000
44	첨단산업용시스템엔지니어링설계모델링기술개발(R&D)	1,600
45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사업(R&D)	7,714
46	차세대전차용하이브리드파워트레인개발사업(R&D)	3,000
47	자율형소프트로봇핵심기술국제공동연구(R&D)	3,150
48	AI자율제조SDM플랫폼기술개발사업(R&D)	9,200
49	전기차 배터리시스템 일체형 급속무선충전 기술개발(R&D)	4,000
50	제조데이터표준·인공지능활용제품전주기탄소중립지원기술개발(R&D)	3,500
51	제조안전고도화기술개발사업(R&D)	2,550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52	첨단바이오의약품비임상유효성평가기술및제품개발사업(R&D)	2,088
53	첨단 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R&D)	100
54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5,000
55	리튬기반배터리제조소및저장취급시설안전을위한기술개발(R&D)	800
[에특회계]		
56	친환경석유대체연료보급기반구축사업	1,645
57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구축	300
58	액화수소(LH2)인수기지핵심설비및시설안전기술개발(R&D)	3,000
59	저품위산화광대상니켈원료제조공정기술개발(R&D)	3,000
[소특회계]		
60	XR 디바이스를 위한 AM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R&D)	5,400
61	공간컴퓨팅구현을위한첨단XR디바이스부품통합형기술개발(R&D)	2,700
62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R&D)	18,000
63	차세대 모빌리티용 극한환경 적용 OLED 기술개발(R&D)	3,000
64	초고해상도 AMOLED 기반 초실감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 기술개발(R&D)	5,175
[지특회계]		
65	수소생산기지 구축 지원	200
66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R&D)	3,980
[전력기금]		
67	무탄소에너지 보증	42,000
68	극한환경대응차세대BESS고신뢰성검증및안전기술개발(R&D)	2,500
69	원전탄력운전기술개발(R&D)	3,500
70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직류송배전 감시 해석 기술개발(R&D)	4,500
71	차세대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고도화혁신지원(R&D)	2,000
총지출		298,063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 ‘전사적DX촉진기술개발(R&D)’ 사업 등 총 88개임.[3)]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	14	375	361	2,578.6
2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R&D)	5,600	38,131	32,531	580.9
3	전사적DX촉진기술개발(R&D)	1,793	7,524	5,731	319.6
4	친환경경량소재적용미래차부품 산업전환생태계기반구축	1,000	3,200	2,200	220.0
5	세포기반인공혈액(적혈구및혈소판) 제조및실증플랫폼기술개발사업 (다부처특위)(R&D)	1,215	3,200	1,985	163.4
6	민군기술협력(R&D)(산업부)	7,055	18,403	11,348	160.9
7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1,901	4,547	2,646	139.2
8	안전기반소형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및실증(R&D)	1295	3,083	1,788	138.1
9	나노융합현장수요기반 실증지원사업(R&D)	520	1,200	680	130.8
10	저가격・장수명나트륨이차전지 핵심소재및셀제조기술개발(R&D)	2,600	5,850	3,250	125.0
11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이차보전사업	2,490	5,494	3,004	120.6
12	난접근성특수화재진화를위한 고기능성소화탄및무인능동진압 기술개발사업(R&D)	960	2,000	1,040	108.3
13	수출주도미래차산업혁신성장기술지원	3,000	6,000	3,000	100.0
14	뿌리산업고도화를위한BIZ플랫폼구축	1,000	2,000	1,000	100.0
15	IOT기반함정정비통합관제 플랫폼개발(R&D)	500	1,000	500	100.0
16	5G기반이동형유연의료플랫폼 기술개발사업(R&D)	2,072	4,140	2,068	99.8
17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R&D)	10,777	21,107	10,330	95.9
18	대중견중소디지털협업공장 구축기술개발(R&D)	5,346	10,373	5,027	94.0
19	xEV보호차체얼라이언스기업지원 플랫폼구축	1,930	3,600	1,670	86.5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B)	증감 (B-A)	(B-A)/A
20	EV용고에너지밀도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평가기반구축	3,500	6,400	2,900	82.9
21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R&D)	15,984	28,433	12,449	77.9
22	무역보험기금출연	45,000	80,000	35,000	77.8
23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 R&D사업(R&D)	432	750	318	73.6
24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R&D)	9,045	15,587	6,542	72.3
25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건립	7,530	12,877	5,347	71.0
26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사업(R&D)	28,158	48,120	19,962	70.9
27	실리콘고함량음극극판 및 셀적용기술개발(R&D)	3,500	5,850	2,350	67.1
28	SDV전장부품보안평가센터구축	3,000	5,000	2,000	66.7
29	한미첨단분야청년교류지원	6,089	10,023	3,934	64.6
30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사업(R&D)	2,788	4,425	1,637	58.7
31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77,225	119,165	41,940	54.3
32	화합물전력반도체고도화기술개발(R&D)	14,000	21,170	7,170	51.2
33	e모빌리티전동기재제조산업확산 및실증지원기반구축	1,000	1,500	500	50.0
34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사업(R&D)	1,500	2,250	750	50.0
35	기판실장용산화물계초소형적층전고체전지(MLCB)개발(R&D)	4,521	6,670	2,149	47.5
36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지원(R&D)	3,888	5,700	1,812	46.6
37	바이오매스기반비건레더개발 및 실증클러스터구축(R&D)	3,420	4,920	1,500	43.9
38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1,393	1,965	572	41.1
39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연대협력지원사업(R&D)	4,500	6,300	1,800	40.0
40	K-Carbon플래그십기술개발사업(R&D)	12,420	17,300	4,880	39.3
41	시스템반도체수요연계온라인 플랫폼지원사업	8,050	11,150	3,100	38.5
42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R&D)	11,974	16,529	4,555	38.0
43	특장차수소파워팩기술지원기반구축	1,600	2,200	600	37.5
44	통상기반조성및역량강화	2,279	3,117	838	36.8
45	원전산업정책국기본경비	549	749	200	36.4
46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	879	1,199	320	36.4
47	울산자유무역지역표준공장증설	5,011	6,818	1,807	36.1
48	자동차보안취약점기반위협분석 시스템개발(R&D)	4,000	5,350	1,350	33.8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B)	증감 (B-A)	(B-A)/A
49	디지털전환기반의약품지능형 공정혁신기술개발사업(R&D)	3,600	4,800	1,200	33.3
50	방산항공우주용탄소소재 · 부품 랩팩토리조성사업	4,000	5,300	1,300	32.5
51	특장차안전신뢰성향상 및 기술융합기반구축(R&D)	1,652	2,183	531	32.1
52	자원산업정책국기본경비	548	718	170	31.0
[에특회계]					
53	시멘트산업이산화탄소저감 종합실증센터	1,075	5,912	4,837	450.0
54	폐갱도를활용한이산화탄소 육상저장시범사업	300	1,520	1,220	406.7
55	수소저장 · 운송클러스터구축사업	1,209	5,718	4,509	373.0
56	읍 · 면단위(중규모)LPG배관망 구축사업	31,426	67,348	35,922	114.3
57	차세대친환경바이오연료 생산기술개발(R&D)	3,626	6,994	3,368	92.9
58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구축	8,872	14,715	5,843	65.9
59	액화수소신뢰성평가센터구축	6,500	10,700	4,200	64.6
60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28,540	46,560	18,020	63.1
61	액화수소충전핵심부품 및 시설안전기술개발(R&D)	5,861	9,022	3,161	53.9
62	천연가스배관망수소혼입안전성검 증및안전기술개발(R&D)	7,500	10,290	2,790	37.2
63	에너지국제협력	2,990	3,943	953	31.9
[소특회계]					
64	투자연계형기술확보지원사업	749	1,449	700	93.5
65	열계면용방폭/방열세라믹갭필러 소재개발(R&D)	2,500	4,000	1,500	60.0
[전력기금]					
66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200	5,408	5,208	2,604.0
67	차세대그리드센터구축	300	5,790	5,490	1,830.0
68	포항지열발전부지안전관리사업	2,000	11,320	9,320	466.0
69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21,149	86,163	65,014	307.4
70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구축사업	146	529	383	262.3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B)	증감 (B-A)	(B-A)/A
71	차세대태양전지실증사업(R&D)	1,000	3,500	2,500	250.0
72	AI기반분산·예비전력안전관리통합플랫폼개발및실증(R&D)	1,200	4,164	2,964	247.0
73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8,463	18,336	9,873	116.7
74	LiB기반위험성평가및안정성강화기술개발(R&D)	3,250	5,000	1,750	53.8
75	ESS통합관리시스템구축	881	1,340	459	52.1
76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	100,000	150,000	50,000	50.0
77	태양열융복합산업공정열이용기술개발(R&D)	911	1,284	373	40.9
78	공공주도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지원	8,000	11,000	3,000	37.5
79	전기설비안전기반구축	860	1,160	300	34.9
80	현장수요대응원전첨단제조기술및부품.장비기술개발(R&D)	6,000	8,000	2,000	33.3
[지특회계]					
81	제조특화초거대제조AI서비스개발및실증	1,400	5,920	4,520	322.9
82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지원	1,720	5,653	3,933	228.7
83	주요기반시설지원	8,425	14,428	6,003	71.3
84	지역에너지절약시설보조(제주)	400	664	264	66.0
85	수소생산기지구축	8,120	12,834	4,714	58.1
[산촉기금]					
86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	90,000	120,000	30,000	33.3
[방폐기금]					
87	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환경장기변화예측기술개발(R&D)	3,600	7,631	4,031	112.0
88	방사성폐기물홍보	2,082	2,912	830	39.9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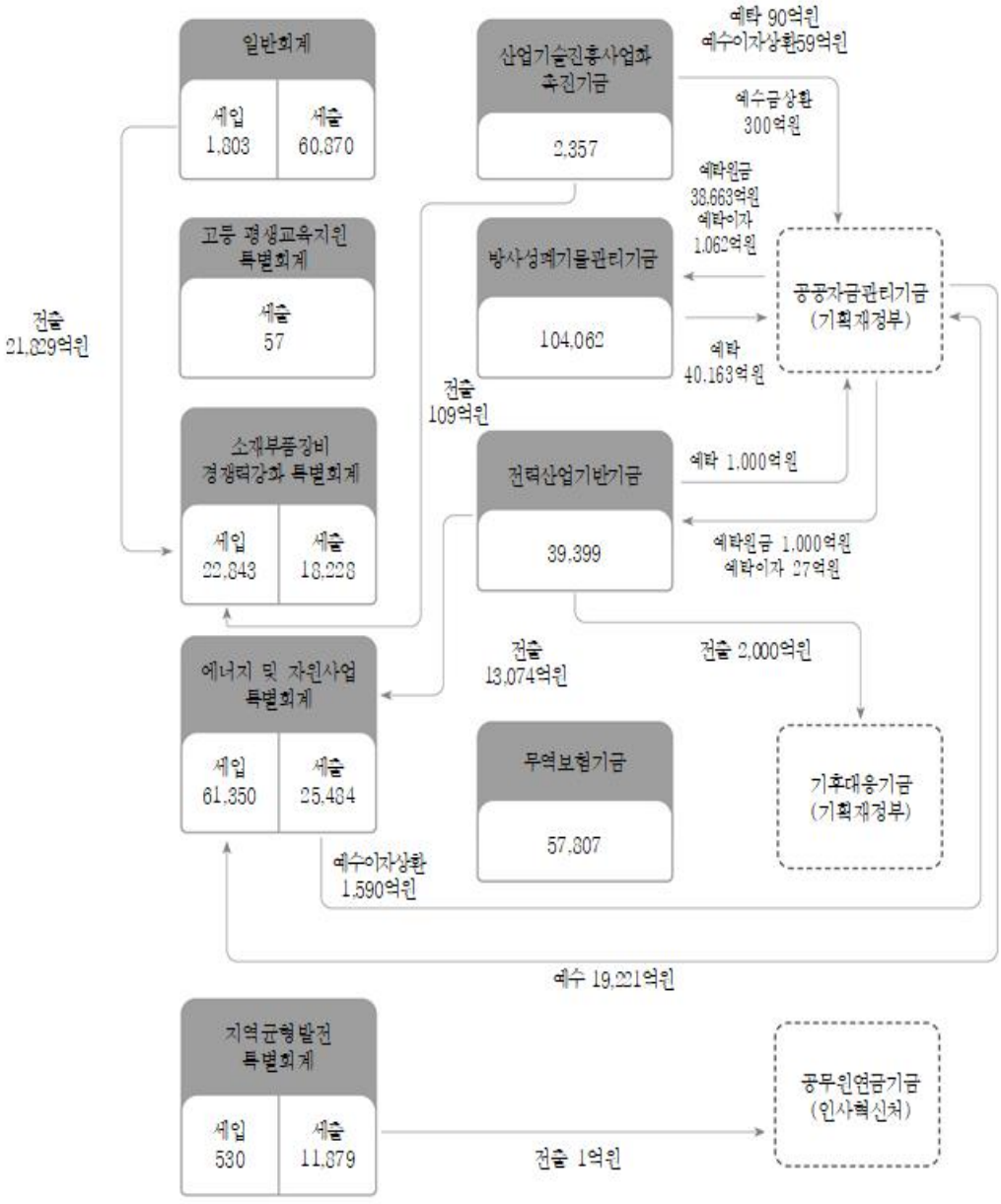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로 2조 1,829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1조 3,074억원, 산업기술진흥사업화촉진기금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로 109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이자 1,590억원이 상환되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으로 예수금 1조 9,221억원이 회수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000억원이 예탁되었고, 기후대응기금으로 2,000억원이 전출되었음. 또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금 90억원, 예수이자 59억원, 예수원금 300억원이 상환되었음.

그리고,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4조 163억원 예탁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3조 8,663억원의 예탁원금, 1,062억원의 예탁이자가 회수되었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예탁원금 1,000억원, 예탁이자 27억원 회수되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수금 1조 9,221억원이 상환되었음.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첨단산업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무탄소 에너지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ODA 분야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되었음.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4년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산업기술혁신 기반조성 사업 내 22개 과제에서 110억 4,200만원의 수익금이 총 사업기간 동안 직접비 등으로 투자되지 못한 채 연구수행기관에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적정 처리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5년도 일부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청산에 따라 매각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에서 누락하였으므로, 회수가능금액 규모를 계상하여 매각 및 수납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해당 세입을 수납하는 회계를 사전에 명시하여 국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셋째,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의 경우 2024년 9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 결과 총사업비가 편성 근거보다 감소하였고, 준공 시점도 2027년 중순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연부액 조정 및 2차년도 사업비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2024년 신규 국제협력 R&D 과제의 협약 체결 지연에 따른 2차년도 예산 감액 조정 필요

가. 개 요

2023년 8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R&D 중점 투자분야로 글로벌 연대를 토대로 한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R&D 확대를 제시하였음.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상 R&D 총액은 2023년 예산 대비 5.2조원(△16.6%) 감소하였으나, 국제협력에 배분된 R&D 예산은 1.3조원 증가한 1.8조원으로 편성되는 등 국제협력 분야 예산이 대규모로 증액편성된 바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 국제협력 R&D 12개 사업의 2024년 예산 대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도 예산안 기준 사업비는 전년 대비 949억 6,000만원(14.0%) 증액된 7,662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주요 국제협력 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산업기술국제협력	165,819	208,832	43,013	25.9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39,727	35,160	△4,167	△10.6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42,187	53,100	10,913	25.9
에너지국제공동연구	28,540	46,560	18,020	63.1
에너지인력양성	58,921	71,457	12,536	21.3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164,473	162,613	△1,860	△1.1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157,749	166,145	8,666	5.5
저품위 염호 대상 리튬 추출 및 소재화 기술개발	4,400	5,000	6,000	13.6
CCUS상용기술고도화및해외저장소확보를위한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	3,600	3,600	-	-
수요맞춤형바이오원부자재제조경쟁력강화	5,495	6,594	1,099	20.0
해외수출형고출력전기기관차구동변환플랫폼핵심기술개발및실증	2,774	2,774	-	-
혁신형융복합바이오의료제품기술개발및실증	3,700	4,440	740	20.0
합계	677,385	766,275	94,960	14.0

주) 주요 검토 대상 과제가 포함된 사업을 음영표시 하였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협력 대상 국가의 여건과 협의 진행상황에 따라 2024년 10월 말까지도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2024년 신규 과제가 있음에도 2025년도 예산안에 2차년도 과제비가 12개월분 모두 반영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들 과제에 대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① **‘산업기술국제협력(R&D)’** 사업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인력 · 정보 교류 등 전략적 기술협력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리더십 확보 및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이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은 정부가 협정에 따라 상대국 정부와 공동 운영하는 양자펀딩형,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에 따라 기술선도국과 협력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다자펀딩형, 혁신역량을 보유한 외투기업과 국내 산학연간 공동 R&D를 수행하는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형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에는 이들 세 유형의 과제에 대하여 모두 6개월분의 신규 과제비가 반영되었음.

그런데 양자펀딩형, 다자펀딩형 분야 내 각각 12건, 4건의 신규 과제가 2024년 10월 기준 협약체결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과제비 개월수 조정 없이 12개월분의 과제비를 2025년도 예산안에 모두 반영하였음.

[산업기술국제협력(R&D) 사업 내 신규과제의 협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신규과제 수	2024년 10월 기준 협약 미체결 과제 수	2024년 과제비	10월 말 기준 과제비 최종집행 금액	2025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양자펀딩형	25건	12건	2,100	-	12개월분
다자펀딩형	22건	4건	870	-	
글로벌기업산업기술 연계형	3건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2024년도 신규 과제 중 과제 협약이 10월까지 체결되지 못하는 등 추진이 지연된 과제들에 대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2개월분의 과제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②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사업은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전략적 협력에 기반한 공동연구를 통해 선진기술의 확보와 국내 에너지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0억 2,000만원(63.1%)이 증액된 46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2024년 신규 과제로 에너지기술선도국제공동연구 분야는 10개, 글로벌시장개척국제공동연구 분야는 9개를 계획하였으나, 2024년 10월 기준 이들 신규 과제

중 각각 5건의 과제가 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사업 내 신규과제의 협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신규과제 수	2024년 10월 기준 협약 미체결 과제 수	2024년 과제비	10월 말 기준 과제비 최종집행 금액	2025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에너지기술선도국제 공동연구	10건	5건	2,021	-	12개월분
글로벌시장개척국제 공동연구	9건	5건	1,7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산업기술국제협력(R&D) 사업과 마찬가지로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사업의 경우에도, 2024년도 신규 과제 중 과제 협약이 10월까지 체결되지 못하는 등 추진이 지연된 과제들에 대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2개월분의 과제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③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R&D)’** 사업은 디스플레이·반도체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전자부품 핵심 원천기술·상용화 기술개발 및 주력산업 제조공정 지능화를 위한 IT 융합 시스템·부품을 기술개발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억 6,000만원(△1.1%) 감액된 1,626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차세대우주항공용고신뢰성통신네트워크반도체기술개발’ 사업은 2024년 신규 과제 5개를 계획하고, 이들에 대한 9개월분의 과제비를 반영하였음.

그러나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예산편성근거에서 밝힌 바와 달리 과제 수를 4개로 조정하였고, 이들 4개 과제 모두 2024년 10월까지 과제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차세대우주항공융고신뢰성통신네트워크반도체기술개발(R&D) 사업 내 신규과제의 협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신규과제 수	2024년 10월 기준 협약 미체결 과제 수	2024년 과제비	10월 말 기준 과제비 최종집행 금액	2025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차세대우주항공융 고신뢰성통신네트워크 반도체기술개발(R&D)	4건	4건	3,000	-	12개월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차세대우주항공융고신뢰성통신네트워크반도체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해서도 2024년도 신규 과제협약 체결이 지연된 상황을 반영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2개월분의 과제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기술혁신 기반조성 사업의 총 사업기간 미사용 수익금에 대한 적정 처리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조는 이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4)]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시행 2019.11.12.)은 산업기술혁신 기반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음.

동 예규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 사업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총 수행기간 동안은 적립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성과활용기간[5)] 동안에는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에 투자하며, 연구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집행비 중 최고 1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6)]

---

4)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조(적용 범위)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산촉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 등
2.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등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경쟁력강화사업
6. <삭제>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
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에너지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11.~19. < 생 략 >

5) 성과활용기간이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 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있음.

6)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시행 2019.11.12.)
제49조(수익금의 사용 등) ① 수행기관의 장은 총사업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총수행기간 및 성과

나. 검토의견

2024년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 기반조성 사업 내 22개 과제에서 110억 4,200만원의 수익금이 총 사업기간 동안 직접비 등으로 투자되지 못한 채 연구수행기관에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적정 처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은 R&D 과제 수행기관이 산업기술혁신 기반조성 사업의 결과물인 장비 또는 시설을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직접비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지침에 따른 수익금의 관리대상 기간은 정부재정 투입을 통한 R&D 사업이 수행되는 총 수행기간과 R&D 사업 종료 이후 기간을 정하여 성과를 활용·환류하는 기간인 성과활용기간(통상 R&D 종료 후 5년)으로 나뉨.

이때, 총 사업기간 중 총 수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제의 직접비 중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및 장비, 재료비로 사용하여야 함. 또한, 이후 성과활용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금은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에 투자하며, 연구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집행비 중 최고 10%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총 사업기간 내 기간별 수익금 관련 규정]

구분	총 사업기간		사업기간 종료이후
	총 수행기간	성과활용기간	
사용여부	적립을 원칙으로 함	사용 가능	별도규정 ×
절차	필요시 전문기관 승인 후 차년도 사용	성과활용보고서를 통해 사용현황 및 계획 보고	
용도	인건비,학생인건비,연구시설 · 장비 및 재료비	인건비,유지보수,장비교체,재료비,운영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활용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는 장비요령 제4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총수행기간 :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제의 직접비 중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로 사용한다(당해연도 수익금은 차년도부터 투자)
2. 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에 투자하며, 연구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집행비 중 최고 10%를 넘을 수 없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협약에서 정한 목적외 용도로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4조 및 장비요령 제51조에 따라 처리한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 기반조성 사업 내 2024년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22개 R&D 과제들의 수익금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사업의 연구수행기관들은 총 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수익금 402억 4,900만원 중 직접비투자액으로 200억 9,000만원, 기타지출액으로 91억 1,700만원을 사용하고,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110억 4,200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임.

[2024년 종료과제 대상 수익금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대상	총 수행기간 수익금(A)	성과활용 기간 수익금 (B)	총 수익금 (C=A+B)	직접비 투자액 (D)	기타지출액 (E)	종료시 잔액 (C-D-E)
2024년 종료 과제 22건	6,220	34,029	40,249	20,090	9,117	11,04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까지 발생한 누적 수익금 중 최종적으로 기관에 보유된 수익금 잔액의 비율이 80% 이상인 과제 5건이 확인되었음.

[수익금의 80% 이상이 기관 내 보유된 사례(2024년 종료 과제 대상)]

(단위: 백만원)

기반구축 과제명 (연구개발기관명)	세부사업	총사업비 (사업기간)	성과 활용 기간	총 수행 기간 수익금	성과 활용 기간 수익금	직접비 투자액	기타 지출 액	종료 잔액
차세대차량융합부품 제품화지원기반조성 (경북IT융합산업 기술원)	시스템산업 기술개발기반구축(R&D)	16,750 ('14.09.01. ~'19.10.31)	5년	1,373	2,661	260	271	3,503
자동차고감성시스템 산업육성클러스터 구축사업 ((재)충남테크노파크)	창의산업 거점기관지원(R&D)	1,998 ('14.11.01 ~'19.04.30)	5년	29	579	-	-	608
웰에이징소재 개발지원센터구축 ((재)충남테크노파크)	창의산업 거점기관지원(R&D)	3,809 ('15.11.01 ~'19.12.15)	5년	23	131	-	-	155

(단위: 백만원)

기반구축 과제명 (연구개발기관명)	세부사업	총사업비 (사업기간)	성과 활용 기간	총 수행 기간 수익금	성과 활용 기간 수익금	직접비 투자액	기타 지출 액	종료 잔액
고기능성나노코팅상용 화지원기반구축 ((재)울산테크노파크)	창의산업 거점기관지원(R&D)	1,939 ('15.11.01 ~'19.10.31)	5년	29	32	-	-	61
국민 안전안심 소재부품산업 글로벌화 기반구축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기반구축(R&D	11,250 ('14.07.01. ~'19.04.30)	5년	669	730	267	-	1,13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R&D 규정 체제에서는 성과활용기간까지만 과제 관리 대상인 점, 성과활용기간 이후에는 장비소유권, 장비처분권 등 모든 권리가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점, 공동활용장비에 대한 지속적 지원 필요 등을 고려하여, 성과활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수익금은 연구기관에 귀속되어 관리·사용함이 타당하다면서도, 과제 최종평가시 성과활용기간 및 종료 이후 수익금 활용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과제에 재투자되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2024년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R&D 과제에 국한하였을 때에도 110억원 가량의 누적 수익금이 규정의 취지와 달리 해당 기반구축 과제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투자되지 않은 채 관리전환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3.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청산절차에 따른 세입 계상 필요

가. 개 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부처 및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임.

대표적인 계정으로는 지역지원계정과 지역자율계정이 있는데, 지역자율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지원계정은 부처가 직접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 중 2024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83억 8,300만원(△26.1%) 감액된 520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구성항목별 편성액은 기타재산이자수입 28억 5,4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491억 6,600만원임.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기타재산이자수입(A)	4,337	2,854	△1,483	△34.2
기타경상이전수입(B)	66,066	49,166	△16,900	△25.6
합계(A+B)	70,403	52,020	△18,383	△26.1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관 일부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의 청산에 따라 매각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에서 누락하였으므로, 회수가능금액 규모를 계상하여 매각 및 수납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해당

세입을 수납하는 회계를 사전에 명시하여 국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은 2023년 예산까지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수행되었다가, 2024년 예산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어 추진되었음.

이 사업은 매년 신규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고, 펀드운용기간(2020년 이전 출자가 이루어진 펀드의 경우 10년)이 도래하여 청산이 임박한 펀드들에 대하여 청산 후 국고 반납을 실시하였음.

실제로 2022년 결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2013년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수익증권 처분으로 인한 매도원금 수입 263억 2,200만원이 발생하자, 당초 세입예산에 미반영된 수입목인 기타유가증권매각대를 신설하여 수납한 바 있음.

[2022년 기타유가증권매각대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2								2023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기타유가증권 매각대	-	-	-	-	26,322	26,322	-	-	-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출자가 이루어진 펀드의 경우 펀드운용기간 10년이 도래하여 2025년에 청산이 실시될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휴먼에코타운(시화), 부평테크시티(부평), 성서드림타운(대구) 3건의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청산이 예정되어 있고, 이들 사업의 2023년 말 기준 공정가치 평가액은 264억원임.

[2025년 청산 예정인 펀드들의 공단 지분 공정가치 현황]

(단위: 백만원)

법인구분 (산업단지)	관련 펀드 조성 연도	누적 투자 현황			수익 관련 사항		
		산업단지 공단 지분 투자액	민간 지분 투자액	민간 그 외 자금 투자액 (대출 등)	공단 지분 투자액의 지분증권 공정가치 평가액 (2023년 말 기준)	누적 이익 잉여금 (2023년 말 기준)	청산예정 연도
휴먼에코타운 (시화)	2015	10,000	300	9,700	9,800	△6,834	2025
부평테크시티 (부평)	2015	8,500	11,500	13,000	8,300	△10,312	2025
성서드림타운 (대구성서)	2015	8,500	500	6,875	8,300	△1,048	2025
합계		27,000	12,300	29,575	26,400	△18,194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① 2024년 10월 현재 기준 세 사업의 청산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청산에 따른 세입 발생 시점이 2026년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② 동 세입을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어느 회계로 수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구하기가 어려워 2025년도 세입 예산에 미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2025년 청산이 예정된 펀드들에 대하여 청산계획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낳을 수 있고, 청산이 예정된 펀드들에 대하여 청산계획 없이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전 일반회계 재원으로 수행되던 사업이 타 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된 경우 수입 재원을 일반회계와 이관 이후 회계 중 어디로 귀속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국회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는 동 수납재원을 세입 예산에 계상하여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임.

4. ODA 사업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른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편성·교부 필요

가. 개 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업은 개도국 수요에 대응한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1억 7,100만원(△33.3%) 감액된 464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7)]

[2025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69,584	46,413	△23,171	△33.3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은 전력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개도국의 디지털·그린 분야 전력사업 지원 및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650억 1,400만원(307.4%) 증액된 861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5년도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21,149	21,149	86,163	65,014	307.4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이자 전담기관으로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 요령」에 따라 ODA 수행기관에 간접보조금을 재교부하고 정산 및 집행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협의의사록(RD; Record of Discussions)은 ODA 사업 협력대상국의 협력기관과 사업

7) 일반회계-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1931-302)(통상협력국)

8) 전력산업기반기금-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5807-302)(통상협력국)

의 목적 및 기간, 대상분야, 공여국 측 지원사항, 협력대상국의 부담사항 등 협력 내용에 대하여 합의한 사항을 모아서 정리하고 서명한 문서로, 실질적으로 해당 ODA 사업 시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임.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의 ODA 사업 추진 절차를 비교하면,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는 자체규정(KOICA 국제협력사업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분담사항을 세부 협의한 후, 협력대상국와 협의의사록을 체결하고 난 뒤에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미리 선정한 후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사전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의사록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9)]

뿐만 아니라, 협의의사록 체결 이전에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및 기자재 구매 등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업추진에 따라 협의의사록이 체결되기도 전에 기자재 구입 및 설계시공과 같은 자본적 경비가 집행되는 등 본사업에 착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음.

그러나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2023.8.)이 있은 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협의의사록 체결 이전 기자재 및 시설물 설치 공사 또는 건설공사 등의 본 사업 착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음.

---

9)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등) ① 장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선정 및 협약체결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협력대상국과 양국간 해당사업 수행 시 분담사항 확정 및 사업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협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협의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협의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협의의사록의 체결) ① 장관은 제23조의 사전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 부처와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의사록(ROD: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 부처와 협의의사록 체결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본사업 착수) ① 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후 기자재 및 시설물 설치 공사 또는 건설공사 등 본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의사록 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및 기자재 구매 등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대상국과 협의하여 사업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조정, 사업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내용(2024.1.15. 시행)]

기존	개정
제25조(본사업 착수) ① 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후 기자재 및 시설물 설치 공사 또는 건설공사 등 본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의사록 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및 기자재 구매 등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다.	**제25조(본사업 착수) ① 장관은 제24조에 따라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후 기자재 및 시설물 설치 공사 또는 건설공사 등 본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의사록 체결 이전에 본사업을 착수할 수 있으며 상세 요건, 절차와 범위는 별표 6을 따른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내 ODA 과제들의 협의의사록 체결을 전제로 2025년도 예산안에 본 사업비를 증액·반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4년 10월 기준 협의의사록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확인되므로 이들에 대한 2025년도 보조금의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업 내 2개 과제,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 내 2개 과제의 협의의사록이 10월 10일 기준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안에 기자재 구축 및 센터조성 등의 실질적인 사업비를 반영하였음.

먼저,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업 내 2024년도 신규 추진 과제인 ‘이집트 수에즈 운하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 과제’와 ‘과테말라 섬유TASK센터 조성 지원 과제’의 경우 협의의사록이 미체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보조금 예산안이 각각 39억 8,100만원, 37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4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업 내 과제별 협의의사록 체결 현황]

과제명	사업기간	체결일	협의의사록(ROD) 체결 계획	기투입 예산 및 2025(안)
이집트 수에즈 운하 그린 에너지 인프라 구축	2024~2027	미체결	문안 합의 후 이집트 내부 결재 중	2024년 330백만원 2025(안) 3,981백만원
과테말라 섬유TASK센터 조성 지원	2024~2027	미체결	과테말라 요청으로 수원기관 변경 협의 중 * 과테말라 경제부 → 과테말라 기술교육원(INTECOP)	2024년 1,901백만원 2025(안) 3,726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들 과제의 2025년도 사업비는 기자재 구축비가 각각 38억 600만원, 20억 9,400만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협의의사록 체결 전 기자재 구축 등의 본 사업 착수행위를 금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ODA 사업 개선방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업 내 협의의사록 미체결 과제]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 단가
이집트 수에즈 운하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	3,981
① 기자재 구축	3,806 LNG 벙커링 모듈 상세설계, 제작 및 설치 1식 x 3,806백만원
② 사업운영비	175 사업 협의, 현지 출장 등 1식 x 175백만원
과테말라 섬유 TASK 센터 조성	3,726
① 센터조성(리모델링)	903 건물 리모델링 및 감리 × 903백만원
② 기자재 구축	2,094 혼용율실, 가공실험실, 표준 실험실 기자재 구축, 염색/DTP 교육실, 마케팅실 장비 구축 등 × 2,094백만원
③ 교육훈련	420 초청연수, 섬유기술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420백만원
④ 사업운영비	309 인건비, 국외여비 및 기타 운영비 × 309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다음으로,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 내 협의의사록 미체결 과제인 ‘타지키스탄 수그, 고르노바닥산 태양광 발전 및 ESS 구축 과제’와 ‘인도네시아 서자와

주 AMI 보급 과제’는 각각 2022년, 2023년부터 추진된 과제임에도 2024년 10월 10일까지 협의의사록이 체결되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과제의 2025년도 보조금 예산안을 각각 125억 6,100만원, 127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2024년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 내 과제별 협의의사록 체결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체결일	협의의사록(ROD) 체결 계획	기투입 예산
타지키스탄 수그, 고르노바닥산 태양광 발전 및 ESS 구축	2022~2025	미체결	협의 중	2022년 350백만원 2023년 3,001백만원 2024년 1,000백만원 2025(안) 12,561백만원
인도네시아 서자와주 AMI 보급	2023~2026	미체결	협의중	2023년 409백만원 2024년 409백만원 2025(안) 12,758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사업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들 과제의 2025년도 사업비는 기자재구축비 외에도 발전소 시공 및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re)에 대한 설계·시공비가 반영되어 있는바, 협의의사록 체결 전 본 사업 착수행위를 금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ODA 사업 개선방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사업 내 협의의사록 미체결 과제]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 단가
타지키스탄 수그, 고르노바닥산 태양광 발전 및 ESS구축	12,561
① 설계/감리/시공	2,869 발전소시공 등 1식 x 2,869백만원
② 기자재구축	6,021 태양광모듈등 1식 x 6,021백만원
③ 교육훈련	159 초청연수 등 1식 × 159백만원
④ 사업운영비	3,512 인건비, 성과관리 등 1식 x 3,512백만원
인도네시아 서자와주 AMI 보급	12,758
① 설계/감리/시공	2,536 AMI 설계 및 DB 구축 등 1식 x 2,536백만원
② 기자재구축	8,582 AMI 기자재 및 서버, 운송비등 1식 x 8,582백만원
③ 교육훈련	294 초청 연수 및 세미나 등 1식 x 294백만원
④ 사업운영비	1,346 국외여비, 성과관리 등 1식 x 1,346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세 출>

5. 개별지원 사업: 사업방식 개선을 통한 연내 간접보조금 집행 제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개별지원’** 사업은 기업 맞춤형 서비스(해외지사화)로 해외무역관 전담 직원 등의 기업의 해외지사 역할 대행을 통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97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10)]

[2025년도 개별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수출지원기반활용	86,394	91,364	4,970	5.7
개별지원	29,736	29,736	-	-

개별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16년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조정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중소기업청의 해외민간네트워크 사업(2001년부터 시작),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의 해외마케터 사업을 2017년부터 이 사업으로 이관하여 편성하여 왔음.

이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개별지원 사업의 해외지사화 사업비 중 일부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에 재교부하고 있고, 간접보조사업자로서 두 기관은 해외지사화 사업의 보조금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를 매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제출하고 있음.

10) 일반회계-수출지원기반활용(1139-307)(무역투자실)

[2025년 개별지원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세사업 명	편성 근거
개별지원사업	○ 29,736백만원 - 해외지사화사업 : 29,736백만원(4,876개사×10.9백만원×5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4년 기준 자사의 해외지사화사업에 232억 1,600만원을 충당하여 사용하고, 남은 보조사업비 중 29억 1,600만원은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에, 36억 400만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간접보조금으로 재교부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OKTA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상용임금, 행사용역비 등을 이월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은 이를 감안하여 간접보조금의 현실적인 연내 집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당해연도에 교부된 보조금을 전액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OKTA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이 차년도 중순까지로 설정되어 매년 교부액의 약 1/3 수준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음.

[2021~2024년 간접보조사업자의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월 기준		
	교부액	집행액	이월액	교부액	집행액	이월액	교부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	교부액	집행액
중진공	4,679	2,431	2,190	3,968	2,155	1,742	3,909	2,145	1,375	3,604	2,503	1,447
OKTA	3,911	3,153	758	3,317	2,603	714	3,267	2,151	1,107	2,916	1,750	1,732
합계	8,590	5,584	2,948	7,285	4,758	2,456	7,176	4,296	2,482	6,520	4,253	3,17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4년 3월 제출한 2023년 말 기준 간접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전체 사업비 교부액 39억 900만원 중 직접 사업비는 37억 8,4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중 2023년 말까지 집행된 금액이 20억 6,000만원에 불과하였음.

[2023년 말 기준 교부금 정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과목	산출내역	교부금액	집행금액	2024년 이월액
직접비(A)	지원보조금	해외지사화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금 교부	3,555	2,007	1,553
	상용임금	법정고용부담금 등	88	2	86
	일반용역비	매칭페어 운영용역	140	50	90
	소계		3,784	2,060	1,724
간접비(B)			125	85	40
총 계			3,909	2,145	1,76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상용임금, 일반용역비와 같이 매년 인력을 채용하고 매칭페어 등의 정례적인 행사를 추진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집행실적이 저조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외지사화사업은 2개년도에 걸쳐 진행되어 당해 연도 예산을 차년도까지 집행하는 구조로 2022년 예산을 우선 활용한 것에 따른 것임”이라고 답변하였음.

연례적인 간접보조금의 이월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운영 직접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전년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간접보조금의 연내 집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기간 조정 등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6. 2024년 신규과제 협약 체결 지연에 따른 2025년도 계속과제 개월수 조정 필요

가. 개 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안 편성 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2025년 이전에 과제협약이 체결된 계속과제의 경우 정상 추진 상황을 전제로 그동안의 조정으로 2025년 1월부터 회계연도가 일치하는 과제의 경우에만 12개월분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R&D) 사업(3171-419)에서 2025년도 예산안 제출 시점까지 신규과제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9개의 과제에 대하여 10월 중 과제협약체결을 전제로 2025년도 예산안에 6개월분의 과제비만을 반영한 사례가 있음.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R&D) 사업의 연도별 과제비 편성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편성개월수	과제비	편성개월수	과제비	편성개월수	과제비	편성개월수	과제비
반도체 건식 식각장비용 내플라즈마 차세대 쿼츠글라스	9개월	600	6개월	550	12개월	600	12개월	400
차세대 디스플레이(QD 등) 소재・장비	9개월	600	6개월	600	12개월	600	12개월	400
고안정성 하이니켈 양극재 단결정화 제조기술 개발	9개월	900	6개월	800	12개월	1,300	12개월	400
고용량・고안정성 이차전지 음극용 폴리이미드 바인더 개발	9개월	900	6개월	800	12개월	1,200	12개월	500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편성개월수	과제비	편성개월수	과제비	편성개월수	과제비	편성개월수	과제비
인공지능 및 1nm 이하급 초미세 시스템반도체 소자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9개월	300	6개월	1,000	12개월	1,900	12개월	400
디지털트윈 기반 사용후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 구축	9개월	300	6개월	1,100	12개월	1,900	12개월	400
친환경 모빌리티용 배터리팩 제품화 지원센터 구축	9개월	300	6개월	1,050	12개월	1,900	12개월	400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소재·부품·장비 특화 인력양성	9개월	300	6개월	200	12개월	300	12개월	300
국가첨단전략산업 디스플레이 전·후방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	9개월	300	6개월	200	12개월	300	12개월	300
계	-	4,500	-	6,300	-	10,000	-	3,5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1)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19억 3,100만원(12.0%)이 증액된 3,904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11) 일반회계-자동차산업기술개발(R&D)(3551-301)(산업정책실)

[2025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348,493	390,424	41,931	12.0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이 사업을 통해 그린카 분야 총 83개 과제, 스마트카 분야 총 29개 과제를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였고, 과제협약체결 기간을 고려하여 9개월분의 과제비를 반영하였음.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신규과제 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개월)

구분	내용	신규 과제 편성 내역				
		구분	과제수	단가	개월 수	금액
그린카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차 요소부품 기술개발과 국내 내연기관 부품사의 미래차 전환 지원	신규①	32	4	9	9,600
		신규②	20	1,767	9	26,508
		통합형③	31	1,062	9	24,700
스마트카	국제 규제 및 표준에 대응하고, 자동차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신규①	12	2,249	9	20,244
		통합형②	17	1,333	9	17,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신규 과제에 대한 과제협약 체결 지연 소요 등을 고려하여 그린카 분야 신규 148개 과제 중 39개 과제, 스마트카 분야 신규 25개 과제 중 17개 과제에 대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10개월분의 과제비(그린카 분야 439억 5,700만원, 스마트카 분야 292억 3,800만원)를 반영하였음.

[2025년 그린카 및 스마트 분야 예산편성 근거]

(단위: 개, 백만원, 개월)

구분	예산편성 근거
그린카	① (그린카) 주요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량 연비와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고도화와 함께 시장점유율이 높은 엔진기반차의 성능을 개선하고 미래차 전환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169,886백만원 반영 - (계속) 74개 × 1,323.4백만 × 12/12개월=97,929백만원 **- (계속) 39개 × 1,352.5백만 × 10/12개월=43,957백만원** - (신규) 23개 × 1,666백만 × 9/12개월=28,000백만원 * 통합형 5개, 일반형 18개
스마트카	② (스마트카) 스마트카 개념 변화에 따라 최첨단 ICT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의 활용및 실증을 위한 기술개발로 산업생태계 고도화 지원에 115,684백만원 반영 - (계속) 38개 × 1,655.3백만 × 12/12개월 = 62,900백만원 **- (계속) 17개 × 2,064백만 × 10/12개월 = 29,238백만원** - (신규) 12개 × 2,616백만원 × 9/12개월 = 23,546백만원 * 통합형 5개, 일반형 7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에 반영된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사업 내 과제들 중에서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도 과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는 아래와 같음. 동 과제들은 2024년 4월 과제협약 체결을 전제로 9개월분의 신규과제비가 반영되었으나, 2024년 9월 말까지 과제협약체결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최소 6개월 이상의 과제 지연이 확정된 상황임.

[2024년 신규 과제 중 9월 말 기준 과제협약 미체결 과제 현황]

(단위: 개월, 백만원)

연번	과제명	2024		2025
		편성 개월수	과제비	편성 개월수
1	고투자율 연자성 소재 적용 CM Filter 기술개발	9	2,108	10
2	CO2 Zero 저비용 소형 상용수소엔진차량 개발	9	1,400	10
3	해외 인증 대응 Type-4 수소저장시스템 성능고도화 기술개발	9	2,000	10
4	에너지 효율 향상 대응 인체감응형 차세대 히팅 시스템 기술개발	9	2,000	10
5	구동력 향상을 위한 대형 EV용 통합 전동화 모듈 기술	9	2,000	10
6	리그노셀룰로오스 적용 탄소저감형 친환경/경량 복합재 기술 개발	9	2,000	10
7	미래차 전환 부품 기술개발(복수형 8개 이내)	9	2,400	10
8	(총괄)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제어기 및 검증 기술 개발	9	100	10

(단위: 개월, 백만원)

연번	과제명	2024		2025
		편성 개월수	과제비	편성 개월수
9	(1세부) 탑승자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제어기 개발	9	1,300	10
10	(2세부) 맞춤형 서비스용 제어기 탑재 및 서비스 실증	9	1,100	10
11	자율주행차 정면 충돌시 마주보기 착좌 승객 보호를 위한 에어백 시스템 개발	9	944	10
12	가상환경 기반 사이버보안 수준 검증 기술 개발	9	1,600	10
13	멀티코어 SoC 기반 이종 기능 수행을 위한 통합 제어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9	2,300	10
합계		-	21,252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안 상에는 동 과제들에 대해서도 10개월분의 과제비가 반영되어 있어 과제협약 체결 지연에 따른 과제비 감액 소요가 과소 반영되었음.

따라서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내 과제협약 미체결 과제들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상 과제비를 연내 집행가능한 과제추진계획에 맞추어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혁신형융복합바이오의료제품기술개발 및 실증(R&D)(2024년 신규)

'혁신형융복합바이오의료제품기술개발 및 실증(R&D)' 사업은 고성능 의약품·의료기기 융합기술을 통한 환자맞춤형 융복합 바이오의료제품 개발 및 제조·실증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국내 관련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선도 및 융복합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4,000만원(20.0%)이 증액된 4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12)]

[2025년도 혁신형융복합바이오의료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혁신형융복합바이오의료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R&D)	3,700	4,440	740	20.0

12) 일반회계-혁신형융복합바이오의료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R&D)(3651-441)(산업정책실)

이 사업은 2024년도 신규 R&D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에는 총 8건의 신규 과제비 9개월분이 반영되었으나, 글로벌 진출형 융복합 바이오의료제품 제조기술 고도화 분야의 1개 과제의 과제협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지연 소요를 반영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는 10개월분의 과제비가 반영되었음.

[2024년 예산 대비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00	○ 융복합 바이오의료제품 맞춤형 제조·실증 시스템 개발 : 1,400백만원 - 467백만원 x 4개(신규) x 9/12개월 ○ 글로벌 진출형 융복합 바이오의료제품 제조기술 고도화 : 2,300백만원 - 767백만원 x 4개(신규) x 9/12개월	4,440	○ 융복합 바이오의료제품 맞춤형 제조·실증 시스템 개발 : 1,690백만원 - 423백만원 x 4개(계속) x 12/12개월 ○ 글로벌 진출형 융복합 바이오의료제품 제조기술 고도화 : 2,750백만원 - 688백만원 x 3개(계속) x 12/12개월 **- 823백만원 x 1개(계속) x 10/12개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협약체결이 지연된 과제는 '근골격계염증 질환 치료를 위한 엑소좀 사전충전형 니들프리 주사기기 개발' 과제로, 2024년 9월 30일에 과제협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였으며, 지연소요를 반영하여 2025년에 이미 12개월분이 아닌 10개월분의 과제비를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음.

[협약체결 지연 과제의 2024~2027년 연도별 예산편성 계획]

(단위: 개월,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편성 개월수	과제비	편성 개월수	과제비	편성 개월수	과제비	편성 개월수	과제비
근골격계 염증 질환 치료를 위한 엑소좀 사전충진형 니들프리 주사기기 개발	9	600 백만원	10	700 백만원	12	800 백만원	12	800 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2024년에 편성된 과제비는 총 9개월분의 과제비로, 2024년 9월 말 과제협약이 이루어져 사실상 연구수행기간이 2개월 이상 지연되었음을 고려할 때 2025년도에 2

개월분의 지연소요만을 반영한 예산 조정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첨단민군융합기술개발(R&D)(2024년 신규)

‘첨단민군융합기술개발(R&D)’ 사업은 미래전장(戰場)과 민간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첨단장비의 인공지능(AI) 기반 제어기술 개발을 통해 방산 수출 증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48억원이 편성되었음.[13)]

[2025년도 첨단민군융합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첨단민군융합기술개발 (R&D)	4,800	4,800	-	-

이 사업은 2024년도 신규 R&D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에 신규과제 3개에 대한 6개월분의 과제비 48억원이 반영되었고, 2025년도 예산안에는 이들 과제의 정상 추진을 전제로 12개월분의 과제비가 반영되었음.

[2024년 예산 대비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800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4,800백만원 가. (다/상) 3개x3,200백만원x6/12=4,800백만원	4,800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4,800백만원 가. (기일치) 3개x1,600백만원x12/12=4,80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공고 및 선정평가(5~6월)를 거쳐 24년 7월 협약체결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탈락업체의 이의신청(7월)과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에 따른 전략기술 판정(7~9월) 등 추가 절차로 인해 불가피

13) 일반회계-첨단민군융합기술개발(R&D)(4541-409)(산업정책실)

하게 협약체결이 지연되었으며, 9월 말이 되어서야 사업비 전액(실집행액 포함)이 연구수행기관에 교부되었음.

그러나 2024년에 편성된 신규 과제의 과제비는 총 6개월분으로, 2024년 9월 말 과제 협약이 이루어져 사실상의 연구수행기간이 3개월 가까이 지연되었음을 고려할 때 2025년도에 12개월분을 전액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7.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 2024년도 신규 과제 추진 지연에 따른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은 초격차 급소기술[14] 및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 연구기관에 협력센터 추가 설치 및 이를 활용한 국내기업의 글로벌 R&D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77억원(83.0%) 증액된 1,052억원이 편성되었음.[15]

[2025년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산업기술국제협력(R&D)	165,819	208,832	43,013	25.9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57,500	105,200	47,700	83.0

이 사업은 해외 최우수 연구기관 내 협력거점을 설치하고, 국내 개발이 어려운 고난이도 R&D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 신규 추진 예정인 48개 과제에 대하여 계속과제비 960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2024년 대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안)	증 감
협력센터		18,000 (=6개x3,000)	1,200 (=2개x600)	△16,800
공동 연구 R&D	신규	**39,500 (=48개x822)**	8,000 (=8개x1,000)	△31,500
	계속	-	**96,000 (=48개x2,000)**	96,000
합계		57,500	105,200	47,7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4) 급소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기술적 난이도나 경제적 가치는 낮더라도 자체 수급이 어려워서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등 국가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술을 의미함.(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0)

15) 일반회계-산업기술국제협력(R&D)(3171-320)(산업혁신성장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내 국내 기업의 협력수요가 높은 최우수 연구기관 6개 센터(美 MIT, 예일, 존스홉킨스, 퍼듀, 조지아텍, 獨 프라운호퍼)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추가 2개소 선정을 위한 ‘협력센터’ 예산 12억원을 반영하였음.

이어서, 이들 협력센터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내용의 ‘공동연구 R&D’ 과제들을 2024년 신규 추진함에 따라 해당 과제들에 대한 2차년도 과제비 12개월 분을 2025년도 예산안에 960억원 규모로 반영하고, 2025년도 신규 과제비 8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음.

나. 검토의견

2024년 10월 기준 신규 공동연구 R&D 과제들에 대한 협약 체결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협약체결 지연 소요를 반영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과제비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안 편성 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2025년 이전에 과제협약이 체결된 계속과제의 경우 정상 추진 상황을 전제로 그동안의 조정으로 2025년 1월부터 회계연도가 일치하는 과제의 경우에만 12개월분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사업은 2024년도 예산 산출근거 상 총 48개 신규 과제에 대한 과제비 39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 10월 기준 신규 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실적은 0건임에도 불구하고,[16] 산업통상자원부는 과제비 개월 수 조정 없이 12개월분의 과제비를 2025년도 예산안에 모두 반영하였는바,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48개 과제의 과제비 예산에 대하여는 연내 집행가능한 과제추진계획에 맞추어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17]

---

16) 실제로 산업기술진흥원은 최초 사업공고(2024.1.18.)에서 7월까지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7월 내로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기한 연장공고(2024.5.24.)에서 지원대상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시점을 8월로 연장한 바 있음에도, 10월까지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17)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과제선정 시 우수성은 인정되나 보완이 필요한 후보과제 4건에 대하여 협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R&D) 사업 내 공동연구 신규과제의 협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신규과제수	2024년 10월 기준 협약 체결 실적	2024년 과제비	10월 말 기준 과제비 최종집행 금액	2025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R&D)	48건	-	39,500	-	12개월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력센터와 내용보완과 관련하여 조율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들 4개 과제에 대해서도 정상 추진을 전제로 2025년 예산안에 12개월분의 과제비를 반영한 바 있음.

8. 국가로봇테스트필드(R&D) 사업: 설계용역 체결 지연에 따른 2차년도 인프라 구축 사업비의 감액 조정 필요

가. 개 요

‘국가로봇테스트필드(R&D)’ 사업은 로봇 제품의 개발·실증·인증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가상환경/실환경 기반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하여 로봇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5억 3,100만원(580.9%) 증액된 381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18)]

[2025년 국가로봇테스트필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국가로봇테스트필드(R&D)	5,600	38,131	32,531	580.9

이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2024~2028년 총 사업비 1,998억원(국고 1,305억원, 지방비 520억원)을 투입하여 로봇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기술 실증 및 평가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원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할 계획임.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편성된 총사업비상 정부출연금 소요는 아래와 같음.

[2024~2028년 국가로봇테스트필드(R&D) 사업 총사업비 상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총합
총사업비	56,109	43,561	61,631	21,187	17,258	199,747
정부출연금 합계	5,600	38,131	57,655	16,305	12,806	130,497
로봇실증평가기술개발	1,900	9,981	11,448	10,581	10,075	43,985
실증인프라구축및운영	3,700	28,150	46,207	5,723	2,731	86,51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이 사업의 사업비는 2024년 신규 과제의 정상 추진을 전제로 총사업비상 2차년도 12개월분의 과제비가 각각 전액 반영되었음.

18) 일반회계-국가로봇테스트필드(3541-351)(산업정책실)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안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6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5,600백만원 가. 로봇실증평가기술개발 (1,900백만원) · 신규 2개×1,267백만원× 9/12 = 1,900백만원 나. 실증인프라구축및운영 (3,700백만원) · 신규 5개× 987백만원× 9/12 = 3,700백만원	5,6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38,131백만원 가. 로봇실증평가기술개발 (9,981백만원) · 신규 5개×2,155백만원× 9/12 = 8,081백만원 · 계속 2개×950백만원× 12/12 = 1,900백만원 나. 실증인프라구축및운영 (28,150백만원) · 신규 2개× 103.3백만원× 9/12 = 155백만원 · 계속 5개× 5,599백만원× 12/12 = 27,995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부지감정평가 및 부지구획 확정지연에 따라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된 실증인프라 구축 및 운영과제의 집행이 저조하였으므로,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된 구축비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정 규모 수준으로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R&D) 사업의 내역사업별 2024년 집행 및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로봇실증평가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19억원의 9개월분 과제비가 편성되었으나 2024년 8월 말까지 연구수행기관에 교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실증인프라구축 및 운영사업의 경우 37억원의 과제비 중 9억원만이 실집행되었음.

[2024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8월말)					2025예산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합계	5,600	5,600	900 [900]	-	-	38,131
로봇실증평가기술개발	1,900	1,900	- [-]	-	-	9,981
실증인프라구축및운영	3,700	3,700	900 [900]	-	-	28,15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 중 특히 실증인프라구축 및 운영 사업은 1차년도인 2024년 부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차년도인 2025년에 공사 계약 체결 및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2025년에 1차년도 공사비 264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음.

[실증연구인프라 구축 및 운영 과제의 2024~2028년 과제비 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국고	29.5	264.6	220.8	37.1	5.0
지방	500.0	20.0	-	-	-
민자	0.6	1.5	1.8	3.8	1.2
합계	530.0	286.1	222.6	40.9	6.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부지매입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2024년 9월 말 기준 산업통상자원부는 인프라 설계 용역사 선정 공고를 조달청에 의뢰 중인 상태로, 10월 10일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추진계획은 2024년 10월 설계용역 발주 이후 11월 설계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설계용역이 공고된 후에도 설계 착수까지 입찰공고(통상 40일), 낙찰자와의 협상 및 계약체결 등을 거치며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 11월 설계 착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사업추진계획상 설계용역 완료시점인 2025년 6월 이후 착공까지도 조달청 협의,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입찰공고(통상 40일), 낙찰자와의 협상 및 계약체결 등에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2025년 하반기 착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준공 시점 연기 또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현실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바탕으로 2027년 중순 이후까지 공사 진행을 전제로 한 연부액을 재산출할 필요가 있고, 해당 연부액을 기준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비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9.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자금 대출 수요를 감안한 적정 예산 규모 재산정 등

가. 개 요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는 고금리 상황에서 2024년도 R&D 수행 기업 중 계속과제 사업비 감액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사업화를 위한 자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원(7.7%)이 증액된 140억원이 편성되었음.[19)]

[2025년도 R&D 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R&D혁신스케일업융자 (이차보전)	13,000	14,000	1,000	7.7

이 사업은 2024년도 R&D 지출구조조정 예산 삭감 기조에 따라 예산이 감액된 2024년도 R&D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사업화를 위한 자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이후 실시된 이차보전지원 건들에 대한 12개월분의 계속 지원 소요를 반영한 것임.

[2024년 대비 2025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예산편성 현황]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이차보전금(320-05) : 13,000백만원 가.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12,500백만원) · 대출원금 4,500억원 × 5.5%p 보전 × 6/12개월 나. 기획평가관리비 (500백만원) · 사업 관리·감독을 위한 현장실태조사(사업비유용 방지) 실시	○ 이차보전금(320-05) : 14,000백만원 가.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13,750백만원) · 대출원금 2,500억원 × 5.5%p × 12/12개월 나. 기획평가관리비 (250백만원) · 사업 관리·감독을 위한 현장실태조사(사업비유용 방지) 실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9) 일반회계 - R&D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3174-412)(산업기반실)

이 사업의 수행 주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2025년 예산안 기준 2억 5,000만원의 기획평관리비를 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한 현지 조사 비용으로 편성하였음.

나. 검토의견

첫째,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천 완료한 대출원금 2,500억원 중 2024년 9월 말 기준 실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이 이루어진 금액은 1,934억 7,600만원이므로, 10월 대출승인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그에 맞추어 2025년도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4년 9월 기준 대출 실시액은 1,934억 7,6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산출 근거상 대출원금 2,500억원의 77.4%에 불과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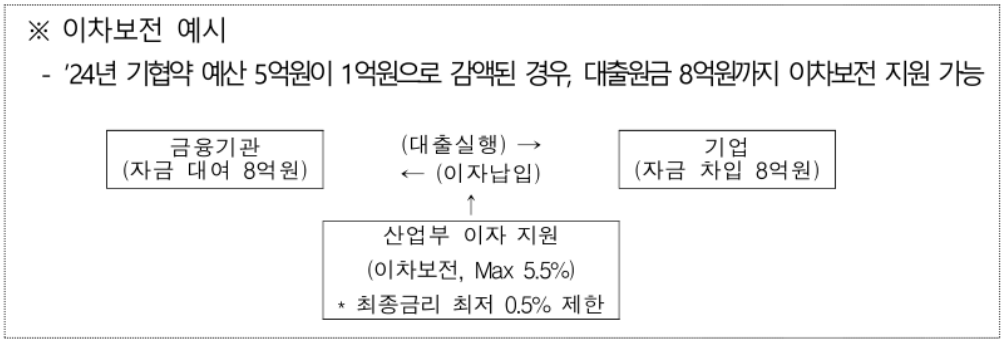
이를 고려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융자 추천 금액 전액을 대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반영된 2025년도 예산안상 대출원금 2,500억원 중 미승인액에 해당하는 이차보전지원 소요분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20]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대 지원금리 5.5%p를 기준으로 이차보전지원 금리를 산출하여 2025년도 예산안 산출근거에 반영하였으나,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변동금리로 책정된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상품의 대출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액 소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4년도 R&D 계속과제 중 감액된 사업비의 최대 200%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최종금리는 0.5% 이상으로 하여 최대 5.5%p의 금리에 대해 이차보전지원을 하고 있음.

20) 산업통상자원부는 R&D 과제 감액이 이루어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4년 9월까지 총 2,500억원 규모에 대한 융자추천을 완료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융자심사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실제 대출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금액이 약 500억원 가량 발생하였다고 설명하면서, 10월 말까지 총 2,300억원 정도의 대출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2024년도 R&D혁신스케일업융자 사업 공고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2025년도 예산안 산출근거상 반영된 5.5%p의 대출금리는 최대 지원금리로, 실제 지원금리 실적치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음. 실제로 2024년 9월 말 기준 대출승인이 이루어진 대출건들을 대상으로 이차보전지원금리의 가중평균 값을 산출하여 보면, 5.33%로 2025년도 예산안 산출근거상 지원금과 0.17%p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2024년 이차보전지원금리 실적치 적용 시 예산소요 재추계]

구분		대출원금 (백만원)	보전금리 (%p)	지원기간 (개월)	예산소요(백만원) (A×B×C)
2025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250,000	5.5	12	13,750
실적치 반영	①대출원금	230,000	5.5	12	12,650
	②금리 실적치		5.33	12	12,25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금리결정 방식은 변동금리 방식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금리 인하 추세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3.50%→3.25%, 2024.10.11.)에 따라 2025년의 보전금리 실적치는 2024년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음.

이를 고려할 때, 최대 지원금리인 5.5%p를 예산산출근거에 반영한 현재의 추계방식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적정 예산소요 수준으로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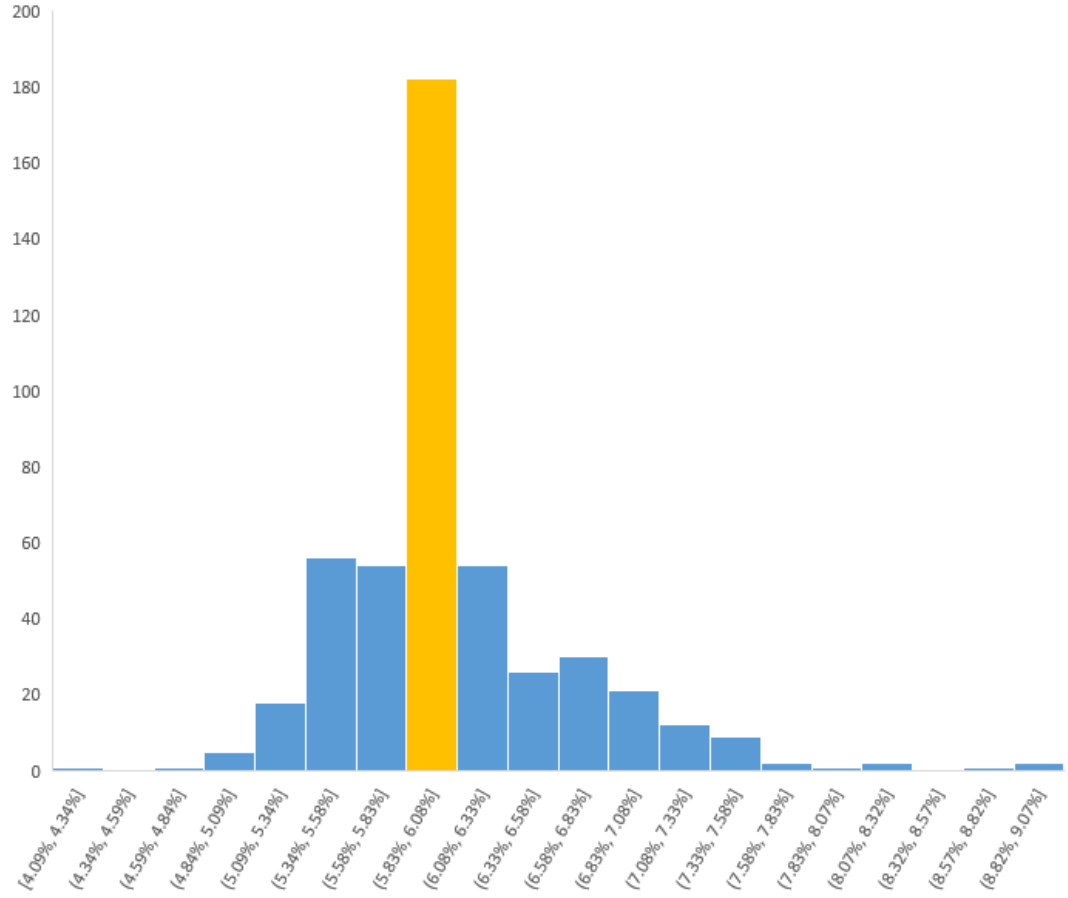
셋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대 이차보전지원 금리를 5.5%p로 설정하여 대다수의 대출승인건들에 대하여 최종 체감금리를 0.5%로 맞추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

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 책정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체감금리를 최소 0.5% 이상으로 고정하고, 은행들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금리가 6.0% 이하일 경우에는 0.5%로 맞추고, 6.0%보다 클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리인 5.5%p를 이차보전지원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음.

그런데 이에 따라 2024년 9월 말까지 대출승인 이루어진 실적 477건의 지원 전 원래의 대출금리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0.25%p를 계급 구간으로 설정하였을 때 180건 이상이 5.83~6.08% 사이에 분포하고 있음.

[2024년 9월 말 기준 대출승인 금리별 분포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기업들의 최종 체감금리를 0.5%로 맞추고 최대 5.5%p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동 사업의 방식이 지속될 경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수준의 대출금리가 6.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6.0%에 맞추어 대출을 실시할 유인이 제공될 수밖에 없음.

이를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제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R&D 감액 기업에 대한 지원이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10. e모빌리티전동기재제조산업 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 센터 구축 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반구축형 과제들에 대하여 관련 센터를 지방비로 구축하고, 해당 센터에 활용되는 장비들을 국비 R&D 사업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형태의 기반구축형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반구축형 과제들이 편성된 사업들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에서 센터 구축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장비 도입계획에 대한 점검 없이 2025년도 예산안에 장비비를 확대 반영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e모빌리티전동기재제조산업 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은 친환경차 사용 후 전동기 재제조를 위한 상태진단 및 성능 평가를 위한 장비구축 및 기업 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원(50.0%) 증액된 15억원이 편성되었음.[21)]

[2025년도 e모빌리티전동기재제조산업 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e모빌리티전동기재제조산업 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구축	1,000	1,500	500	50.0

나. 검토의견

건축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등 센터 구축 사전 준비절차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R&D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조정 없이 장비 구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e모빌리티전동기재제조산업 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 구축 사업은 2024년 예산에 신규 반영된 R&D 사업으로, 당초 계획상으로는 2024년 내 실시설계를 추진 및 완료하고, 2024년 예산에 반영된 국비 R&D 과제비로 2종의 시험 및 분석 장비를 도입할 예

21) 일반회계-e모빌리티전동기재제조산업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구축(3551-467)(산업정책실)

정이었음.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지자체와 건축면적에 관한 협의가 지연되면서 2024년 10월 현재까지 센터에 대한 설계용역이 진행되지 못하였음.

뿐만 아니라 당초 도입하고자 하였던 전동기 기본 상태 시험 장비와 전동기 코깅 및 회전체 분석 장비 2종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9월에 개최하였으나, 서류 미비 및 보완으로 인하여 10월 재심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연내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한 장비 도입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임.

[2024년 예산 대비 2025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00	① 장비구축 (700 백만원) · 사용 후 전동기 시험장비 및 상태진단 장비 2종 700백만원 - 전동기 기본 상태(인덕턴스,절연저항) 시험 장비 - 전동기 코깅 및 회전체 분석 장비 ② 기업지원 (270 백만원) · 사용 후 전동기 재설계 및 상태진단 기술지원 등 270백만원 ③ 기획평가비 (30백만원) · 1.000백만원 X 3% = 30백만원	1,500	① 장비구축 (1,050 백만원) · 사용 후 전동기 성능평가용 실시간 시뮬레이터 장비(1종) x 1,050백만원 = 1,050백만원 ② 기업지원 (407 백만원) · 전동기 재제조 상태진단 지원(5건) x 32.4백만원 = 162백만원 · 전동기 재제조 기술역량 강화 교육(10건) x 16.2백만원 = 162백만원 · 전동기 재제조 네트워크 구축(2건) x 40.5 백만원 = 81백만원 ③ 기획평가비 (45백만원) · 1.500백만원 X 3% = 45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현실적인 장비 도입 계획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 출>

11.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 융자취급수수료의 수취 및 자체수입 계상 방식 검토 필요

가. 개 요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수지차보전 지원 소요액을 편성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4억 4,500만원(△5.3%)이 감액된 790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22)]

[2025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83,506	79,061	△4,445	△5.3

이 사업은 수지차보전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하여 매년 지출총액(예상액)에서 자체수입(예상액)을 제외한 차액을 세출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되고 있음. 2025년도 수지차보전지원 소요액 산출근거에 활용된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수입 추계액은 아래와 같이 302억 1,600만원 수준임.

2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한국에너지공단 지원(5139-320)(에너지정책실)

[2024년 대비 2025년도 수지차보전지원 소요액 산출근거가 사용된 자체수입 추계]

(단위: 백만원)

항 목	2024년		2025년		전년대비 (B-A)
	예산 (A)	결산 (7월 말 기준)	요구	정부 확정안 (B)	
자체수입	29,057	18,632	23,052	30,216	1,159
ㅇ이월결산잉여금	4,838	4,838	4,838	4,838	-
(전기이월금)	4,838	4,838	4,838	4,838	-
(전전기이월금)	-	-	-	-	-
ㅇ이월사업비	-	-	-	-	-
ㅇ사업수입	21,484	13,087	20,317	21,512	28
(에너지진단)	1,602	184	1,551	1,551	△51
(열사용기자재검사)	10,565	6,891	10,291	10,291	△274
(고효율기자재인증)	1,864	1,219	1,060	1,758	△106
(융자취급수수료)	**1,585**	**1,292**	**1,832**	**1,895**	**310**
(건축물효율관리)	569	196	569	569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72	44	56	56	△16
(대한민국에너지대전)	1,000	437	616	901	△99
(에너지관리교육)	458	245	423	423	△35
(신재생설비인증)	622	644	660	809	187
(신재생공급인증서발급)	2,884	1,880	2,996	2,996	112
(탄소검증제)	263	55	263	263	-
ㅇ사업외수입	2,735	707	2,735	3,866	1,131
(지역난방배당금)	-	-	-	-	-
(이자수입 등)	2,735	707	2,735	3,866	1,131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자체수입 구성항목 중 융자취급수수료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정부의 융자사업을 위탁관리함에 따라, 융자잔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징수하여 자체수입에 계상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상 자체수입에는 18억 9,500만원이 반영되었음.

나. 검토의견

한국에너지공단은 융자사업 수행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직접융자금의 1.0%를 융자취급수수료로 수취하여 자체수입에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수행을 위한 직접비를 산출하여 사업출연금 등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통상 융자지원 사업은 개별 부처의 사업관리지침 및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융자

잔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 등의 일정 비율을 융자취급수수료로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위탁기관인 공공기관이 수취하게 됨.[23)]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단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고 있는 일부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 위탁기관인 공공기관이 융자원리금 상환액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로 수취하고, 남은 잔액을 융자원리금으로 국고로 수납하고 있어 법률상 근거 없이 세입을 자체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023년 한국에너지공단의 융자취급수수료 수납액 구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2023년 본예산	위탁기관 지급 비용			
			지급 비용명	산정 방식	실제 지원액 (2023년 기준)	위탁기관명
산업통상 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국내외유전개발)	172,716	융자취급 수수료 (이자 차액분)	융자잔액의 1.0%	1,214	한국에너지 공단
			융자취급 수수료 (감면)	감면원금의 1.0%	170	
	해외자원개발특별 융자 (해외광물자원개발)	2,624	융자취급 수수료 (이자 차액분)	융자잔액의 1.0%	281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구체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관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사업에 대하여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융자금의 대출 및 자금관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융자취급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융자잔액의 1.0%를 직접 기관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음. 그 결과, 2023년 기준 16억 6,500만원을 융자원리금 상환액에서 제외하여 자체수입에 계상하고, 남은 차액만을 국고로 반납하였음.

그러나 융자사업 내 편성된 융자금을 집행한 결과 발생한 이자수익은 전액 국고로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을 위탁관리하는 기관이 일반 시중 금

23) 각 부처는 기존 공공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지원 사업에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을 포함시켜 지원(기획재정부의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공단 등)하거나, 별도 사업비를 편성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사업관리 비용을 충당(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 통일부의 한국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있음.

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융자잔액의 1%를 융자사업의 수수료로 징수하여 자체수입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실제로 타 부처의 경우 기존 공공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지원 사업에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을 포함시켜 지원(기획재정부의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공단 등)하거나, 별도 사업비를 편성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사업관리비용을 충당(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17조는 한 회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융자 사업 수행에 따른 원리금 수익 중 일부를 세입에 계상하지 않은 채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계상하여 직접 지출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음.

더구나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를 관리하는 융자전담조직(해외자원융자팀)의 인원은 5명에 불과한데, 2025년도 예산안 기준 융자취급수수료 수입 예상액은 18억 9,5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사업관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한국에너지공단이 과다한 이익을 수취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음.[24)]

따라서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을 통해 발생한 원리금 수익 중 일부를 한국에너지공단이 융자취급수수료로 징수하고 자체수입에 계상하는 현재의 방식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별도 사업비 편성을 통해 사업관리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4) 유사한 사례인 환경부 소관 융자 및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경우,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청정대기 전환 시설 융자, 친환경설비투자 사업 및 과거 정책융자로 지원했던 사업에 대하여 기존 실시한 융자잔액의 0.1%를 융자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직접 기관 자체세입(환경정책융자금 운영)에 충당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면, 타 기관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1.0%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과다한 측면이 있음.

12.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사업: 자체수입에 전기이월금 반영 필요

가. 개 요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수지차보전 지원 소요액을 편성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1억 5,600만원(△ 4.7%)이 감액된 852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25)]

[2025년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89,374	85,218	△4,156	△4.7

이 사업은 수지차보전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매년 지출총액(예상액)에서 자체수입(예상액)을 제외한 차액을 세출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되고 있음.

[2024년 대비 2025년도 수지차보전지원 소요액 산출근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B)	증 감 (B-A)	(B-A)/A	주요 증감원인
수지차지원(A-B)	89,374	85,218	△4,156	△4.7	
〈 지출(A)〉	214,306	216,041	1,735	0.8	
□ 인건・경상비	144,654	150,011	5,357	3.7	・ 공통인상률(3.0%) 및 신규 인프라 운영비 등
□ 사업비	66,435	62,725	△3,710	△5.6	・ 종료・계속・신규 사업 반영
□ 예비비	3,217	3,305	88	2.7	・ 정부경영평가 성과급(B등급) 반영
〈 자체수입(B)〉	124,932	130,823	5,891	4.7	・ 과년도 추세치 반영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5143-301)(에너지산업실)

나. 검토의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지차보전 지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자체수입에 매년 전기이월금을 누락하여 편성하고 있으므로, 전기이월금을 자체수입에 적정 규모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과 「수지차 보전기관 예산요구서 작성요령」에서 수지차 보전기관은 결산잉여금을 차년도와 차차년도 수입에 반영하고, 임의처분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6)]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퇴직급여충당금,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명시된 인센티브 성과급 재원 또는 다음연도 세입예산 계상의 순위에 따라 사용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결산잉여금을 당해연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주무부처 승인을 얻은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당해연도에 발생할 결산잉여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전기이월금(전년도이월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할 결산잉여금을 추계하여 편성하고, 전전기이월금(전전년도이월액)은 전년도 확정 결산잉여금에서 당해연도 전기이월금을 충당 후 잔여재원을 편성함.

이때 전기이월금은 과거 3개년도 처분전 결산잉여금의 평균액 또는 증감률을 반영하여 추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6) 「수지차 보전기관 2025년도 예산요구서 작성요령」

□ 결산잉여금 임의처분 금지 ㅇ 결산잉여금 임의처분 기관은 차년도 예산 편성 시 해당 금액만큼 수지차 보전액 감액 조정

[전기이월금 및 전전기이월금 편성 방식]

- **전기이월금**: 당해연도('24년)에 발생할 결산잉여금을 추계하여 차년도('25년) 전기이월금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으로, 과거 3개년도 '처분전 결산잉여금'의 평균액 또는 증감률을 반영하여 추계
  (예시) '25년 정부안 편성 중에 '21년~'23년 처분전 결산잉여금의 평균액을 '25년 예산에 반영

- **전전기이월금**: 전년도('24년) 확정 결산잉여금에서 당해연도 수입('24년 전기이월금) 충당 후 잔여재원으로서, 다음 해('25년) 전전기이월금으로 편성한 금액
  (예시) '23년 최종 결산잉여금(35억 9,100만원)에서 '24년 전기이월금(25억 9,100만원) 충당 후 잔여재원(10억원)을 '25년 전전기이월금으로 편성

자료:「수지차 보전기관 2025년 예산요구서 작성요령」

그런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발생한 처분전 결산잉여금을 차기이월하여 자체수입에 계상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하에 모두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적립금에 충당하고 있음.

[2023~2025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자체수입 예산 대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항 목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7월 말 기준)	요구	정부 확정안
자체수입	129,277	124,839	124,932	78,402	130,823	130,823
ㅇ이월결산잉여금	-	-	-	-	-	-
(전기이월금)	-	-	-	-	-	-
(전전기이월금)	-	-	-	-	-	-
ㅇ이월사업비	1,548	1,548	-	-	-	-
ㅇ사업수입	126,537	121,335	123,516	76,685	128,867	128,867
(검사수입)	85,001	80,254	79,631	52,011	83,033	83,033
(기술컨설팅수입)	26,956	26,222	28,331	15,085	30,238	30,238
(연구개발수입)	5,597	6,407	6,571	2,636	6,613	6,613
(교육수입)	8,983	8,452	8,983	6,953	8,983	8,983
ㅇ사업외수입	1,192	1,956	1,416	1,717	1,956	1,956
(잡수입)	671	1,172	797	966	770	770
(이자수입)	521	784	619	751	1,186	1,186
(임의보유금)	-	-	-	-	-	-
(잉여금전입등)	-	-	-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월결산잉여금 미계상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기재부

에 제출함에 따라 예산당국 예산심의가 진행 및 완료되어 자체수입에 이월결산잉여금 계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답변하였음.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예상되는 결산잉여금 규모를 추계[27]하여 차년도 자체수입에 전기이월금으로 반영함으로써 수지차보전지원 소요액이 지침과 달리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7) 2021~2023년 처분전결산잉여금 평균액이 20억 2,600만원 수준임.

<2019~2023년 처분전 결산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948	855	-	2,107	3,971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13.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사업: 총사업비 확정 이후 연부액 재산정에 따른 2차년도 사업비 감액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은 정부 핵심광물(희소금속) 비축확대 정책 및 조달청 희소금속 이관에 따른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64억 1,600만원(415.6%)이 증액된 1,151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28)]

[2025년도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251,762	213,206	△38,556	△15.3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18,700	115,116	96,416	415.6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9월부터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였고, 2023년 12월 동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총사업비 2,416억 6,700만원으로 추산된 채로 통과하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부지매입비 124억 8,700만원과 시설부대경비 58억 5,300만원을 1차년도 사업비로 편성하였음.

2025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상 총사업비인 2,416억 6,700만원을 근거로 2차년도 사업비인 1,151억 1,600만원이 반영되었음.

2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5440-304)(에너지정책실)

[2024~2025년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 예산 편성 현황]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700	**전용 비축기지 구축 18,700백만원** · 부지매입비 : 12,847백만원 · 시설부대경비 : 5,853백만원	115,116	**전용 비축기지 구축 115,116백만원 (+96,416백만원)** · 부지매입비 : 27,951백만원 ·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등) : 4,562백만원 · 공사비 : 82,603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산출된 총사업비 상으로는 2024~2026년 동안 총 2,416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2026년 말 비축기지를 준공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2024년 10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변경 결과 총사업비는 2,255억 3,90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준공 시점도 2027년 중순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연부액 조정 및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수행하였고, 2024년 6월 기본계획 수립 결과 총사업비는 당초 2,416억 6,700만원 대비 49억 1,500만원 감소한 2,367억 5,200만원으로 추산되었음.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른 총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행기간		용역수행 기관	용역결과 총사업비	B/C	AHP
	착수	완료				
예비타당성 조사	2022.9	2023.12	한국개발 연구원	241,667	0.88	0.579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24.01	2024.06	㈜△△ 사무소	236,752	0.89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6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총사업비 변경 소요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은 기존 총사업비는 2,416

억 6,700만원을 기준으로 2차년도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변경 심의결과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최종 2,255억 3,9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 이는 기존 총사업비보다 161억 2,800만원이 감소한 수준임.

한편, 당초 총사업비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2024년 187억원, 2025년 1,151억원, 2026년 1,07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었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설계비 및 감리비 45억 6,200만원과 공사비 826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음.

[당초 총사업비 계획상 2024~2026년 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기간 (당초)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예산	2026년 조정액
		현행기준(A)	예산	8월 기준 집행액		
<총사업비(합계)>	2024~2026	241,385	18,700	18,700	115,116	107,569
1. 공사비		181,727	-	-	82,603	99,124
2. 보상비 - 토지매입비 - 기타		44,877	12,847	12,847	27,951	4,079
3. 시설부대경비		14,781	5,853	5,853	4,562	4,366
○설계비		8,132	5,853	5,853	1,540	739
○감리비		6,249	-	-	2,841	3,408
○시설부대비(관리비)		400	-	-	181	21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2024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4년 10월 설계발주 및 입찰공고를 수행할 예정이고, 2024년 11월 설계에 착수하여 약 10개월의 설계기간을 거쳐 2025년 9월 건설공사에 착수, 2027년 5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업추진계획]

• 2024.10월 : 설계발주 요청 및 입찰공고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체결(’ 24.6월)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발주의뢰 • 2024.11월 : 설계착수(설계기간 10개월) * (조달청 군산비축창고 발주공고 사례, ’ 22.4) 일반 1동, 특수1동 설계기간 7개월 ** 일반 8동·특수 4동(동일규격) 설계 약 10개월 예상. 타 대형공사(1년이상) 대비 단기간 설계가능 • 2025.9월 : 건설공사 착수(발주 2개월포함 및 공사기간 19개월) * 긴급히 비축공간 확보를 위해 일부창고 우선준공 추진으로 공사초기 집중투입 • 2027.5월 : 최종 준공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이 사업은 2024년 10월 8일 현재까지 설계용역이 공고도 되지 않았는데, 설계용역이 공고된 후에도 설계 착수까지 입찰공고(통상 40일), 낙찰자와의 협상 및 계약체결 등을 거치며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 11월 설계 착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사업추진계획상 설계용역 완료시점인 2025년 9월 이후 착공까지도 조달청 협의,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입찰공고(통상 40일), 낙찰자와의 협상 및 계약체결 등에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2025년 9월 착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를 고려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바탕으로 2027년 중순 이후까지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연부액을 재산출할 필요가 있고, 해당 연부액을 기준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비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29)]

29)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변경 심의 결과에 반영되어 있는 용도 변경에 의한 토지보상비 절감액 124억 7,900만원은 2025년도 예산안상 사업비에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4. 유전개발 사업: 매몰비용 최소화를 위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유전개발'** 사업은 우리나라의 석유위기 대응능력 강화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국내외 유전개발사업 및 생산광구 운영을 출자,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2억 6,700만원(28.7%) 증액된 505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30]

[2025년도 유전개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유전개발사업출자	48,140	50,557	2,417	5.0
유전개발	39,290	50,557	11,267	28.7

유전개발 사업의 2025년도 출자금 소요액 산출근거를 보면, 2024년 예산 대비 6-1 중·동부, 신규물리탐사연구선 실증, 베트남 15-1광구에 대한 출자금이 순감되었고, 국내대륙붕 유망구조 중 유망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8·6-1북부, 4·5광구, 1·2·3광구에 대한 출자금 505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3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유전개발사업출자(5444-301)(자원산업정책국)

[2024년 대비 2025년 유전개발 사업 출자금 편성 현황]

2024예산

국내 대륙붕 유망구조 탐사 및 안정적 해외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비 지원

(단위: 백만원)

구분	투자비	출자율	출자액
6-1중・동부	10,666	50%	5,333
8・6-1북부	2,182	50%	1,091
4·5광구	466	50%	233
1・2・3 광구	19,111	50%	9,555
신규 물리탐사연구선 실증	33,552	50%	16,776
베트남 15-1	31,512	20%	6,302
합계	97,489	-	39,290

* (내내역조정) 6-1중동부 5,333 → 445
8/6-1북부 1,091 → 5,979

2025예산(안)

국내대륙붕 유망구조 탐사 위한 투자비 지원

(단위: 백만원)

구분	투자비	출자율	출자액
8・6-1북부	99,440	50%	49,720
4·5광구	478	50%	239
1・2・3 광구	1,195	50%	598
합계	101,113	50%	50,55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가스전(2021년 생산 종료)에 이은 추가 석유・가스전 발견을 위해 동해에서 탐사를 지속 추진해왔음. 최초 심해 탐사가 이루어진 해는 2005년으로, 한국석유공사는 대륙사면(얕은 심해) 지역에 대한 3D탐사를 시작으로 2007~2016년 1차 조광계약, 2019~2023.1월 2차 조광계약에 따라 우드사이드社와의 공동탐사를 통해 동해 지역의 8광구, 6-1광구 북부 지역에 대한 탐사를 수행하였음.[31)]

이후 우드사이드社는 2022년 7월 철수 의향을 표시한 후, 2023년 1월 동해심해탐사 사업에서 철수를 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社 철수 이후 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에서 탐사사업을 지속 중이며, 또한 6-1광구 중・동부 지역에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단독탐사를 별도로 수행하여 왔음.

31) 한국석유공사는 탐사 수행 결과 '주작'(2012년), '홍게'(2015)에 대한 탐사 시추 과정에서 양질의 사암체 및 트랩(석유・가스를 가둬두는 구조)의 형성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밝힘.

[동해 심해 탐사 및 유망구조 도출 지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는 그동안의 탐사 작업을 통해 동해 심해에서 축적된 탐사 자료를 활용하여 유망성을 심층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ACT GEO社를 통해 심층평가를 추진하였고, 분석 결과 동해 심해에서 7개의 유망구조를 도출하였음.

한국석유공사는 ACT GEO社의 분석에 대하여 과거 축적된 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탐사자료를 해외 유력 전문기관에서 통합적·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평하면서,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분석 방법론의 신뢰성을 검증하였고, 2024년 5월에는 해외 메이저 업체를 통해 신뢰성을 추가로 검증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 예산에 당초 6-1중동부 광구 탐사를 위해 배정된 출자금 예산 53억 3,300만원을 내내역간 조정(감)하여 8·6-1북부 광구 출자금 예산을 59억 7,9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2025년도 예산안에는 8·6-1북부 광구에 대한 출자금을 497억 2,000만원 반영한 것임.

나. 검토의견

탐사시추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세부단계별로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한 사업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석유·가스 개발의 단계는 크게 탐사단계, 개발단계, 생산단계로 분류됨. 먼저, 탐사단계는 석유·가스의 생성, 이동, 집적 가능성이 높은 유망 구조를 파악하고 석유 부존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지질조사, 탄성파 탐사, 시추탐사 등의 기법이 활용됨.

이후 개발단계는 탐사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매장량, 생산량을 유추하고 개발 경제성 평가, 개발계획 수립, 생산시설 건설, 생산정 시추 등을 수행하는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생산단계 석유·가스 생산 예측 및 최적 생산을 위한 저류층 관리, 생산증진, 생산시설 유지관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임.

[석유·가스개발단계별 개념]

탐사단계	지질조사	지형을 통해 지하 지질구조(습곡, 단층, 균열대 등)를 추정하고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을 예측하는 작업
	탄성파탐사	인위적으로 탄성파를 발사하여 지하지층 경계면에서 돌아오는 반사파를 기록하고 자료처리, 해석작업을 거쳐 유망구조 도출
	시추탐사	지질조사 및 탄성파 탐사를 통해 도출한 유망구조에 대해 굴착을 시행함으로써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작업
개발단계	매장량·생산량 유추	
	개발 경제성 평가	
	개발계획 수립	
	생산시설 구축	
생산단계	저류층 관리	
	생산증진	
	시설 유지·관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내내역간 조정에 따른 출자금 조정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변경 전			내역변경 후		
	투자비	출자율	출자액	투자비	출자율	출자액
6-1 중·동부	10,666	50%	5,333	890	50%	445
8·6-1북부	2,182	50%	1,091	11,958	50%	5,979
4·5광구	466	50%	233	466	50%	233
1·2·3 광구	19,111	50%	9,555	19,111	50%	9,555
신규 물리탐사연 구선 실증	33,552	50%	16,776	33,552	50%	16,776
베트남 15-1	31,512	20%	6,302	31,512	20%	6,302
합계	97,489	-	39,290	97,489	-	39,29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 내내역간 조정을 통해 마련한 정부출자금 예산 59억 7,900만원을 이용하여 글로벌 시추 기업과 2024년 4월부터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12월부터 시추를 시작할 예정임.

2024년 10월 현재 한국석유공사는 1차공 탐사시추를 위한 기본계획을 잠정 마련한 상황으로 사고예방대책, 사후복구계획 등을 추가 보완하여 세부 시추계획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요청할 예정임.

[2024년 10월 22일 기준 기체결한 1차공 시추탐사 관련 국제 용역 계약 현황]

(단위: 천달러)

구분	계약명	계약 금액	계약체결 (예상)일자	용역수행 기간	시추탐사 단계
기체결한 계약 (2024. 10.22.)	시추선 검사 등	283	2024-07-31~2024-08-01	2024-07-31~2024-12-31	시추작업 이전 단계
	시추선 및 보급선 용선	54,689	2024-04-19~2024-08-22	2024-04-19~2025-04-30	시추작업 단계 (시추선 현장작업 약 41일)
	시추 용역 및 장납기 자재 등	20,051	2024-02-19~2024.10.04.	2024-02-20~2025-06-30	시추작업 단계
	합계	75,02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연중 내내역간 조정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1차공 탐사시추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1차공 시추 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1차공 시추결과 등을 고려하여 후속 시추계획이 수립된 이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즉, 후속 시추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한국석유공사의 자본사정을 감안할 때 자체재원 외에 외부로부터 재원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재정투입이 요청될 수도 있음.[32)]

따라서 이와 같은 시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향후 한국석유공사는 시추단계별로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하게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탐사자료 업데이트 및 정밀분석을 통한 유망구조 평가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음.

32)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20년 부채가 자산을 앞지른 이후 2023년 말까지 4년 연속으로 자본 잠식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부채는 19조 5,781억원으로 자산(18조 2,295억원)을 1조 3,486억원 웃도는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전력산업기반기금】

<지 출>

15. 무탄소에너지보증 사업(신규): 旣조성재원 우선활용 방안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무탄소에너지보증'** 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후테크 산업 성장지원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및 기후테크 산업육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1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3)]

[2025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무탄소에너지보증	-	-	42,000	42,000	순증
무탄소에너지 보증	-	-	10,000	10,000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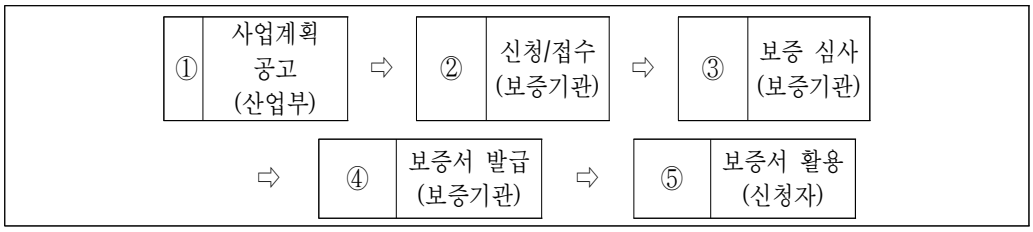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자연적으로 재생이 가능한 태양광, 수력,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청정수소, 암모니아, 원자력 등 탈탄소에너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임.

이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신규 출연금 10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기후 관련 기술개발 능력과 유망성에 대한 역량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증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로 사업이 수행될 예정임.

33) 전력산업기반기금-무탄소에너지보증(5202-326)(재생에너지정책관)

[무탄소에너지보증 사업추진체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 산출근거상 신재생에너지 연관산업과 탈탄소에너지 연관산업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각 산업군에 속한 벨류체인기업 662개소, 108개소를 대상으로 필요한 평균 보증비용 총액을 1,289억 5,800만원으로 추산하였음. 해당 금액에 대하여 12.5배수의 보증배수를 적용하여 100억원의 신규 출연금 소요를 도출하였음.

[2025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table>
<tr><th>예산</th><th>산출내역</th></tr>
<tr><td>10,000</td><td>o 무탄소에너지 밸류체인[제조-건설-공급(발전)] 전반기업에 보증지원
[보증기관 지원기업 및 보증비용 산출]
(단위: 개소,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밸류체인 기업</th><th>BB+이하 기업*(추정치)</th><th>평균 보증비용</th><th>필요 보증비용</th><th>계</th></tr>
<tr><td>신재생에너지 연관산업</td><td>662</td><td>99.3</td><td>1,237</td><td>122,834</td><td rowspan="2">128,958</td></tr>
<tr><td>탈탄소에너지 연관산업</td><td>108</td><td>16.2</td><td>378</td><td>6,124</td></tr>
</table>
* NICE 채권신용등급 기준, (BB+이하 기업)/(BBB-이상 기업) = 0.15
o 12.5배수 운용시 128,957백만원 ÷ 12.5 = 10,316백만원 → 10,000백만원</td></tr>
</tabl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녹색보증 사업을 편성하고, 2023년까지 총 1,350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50:50의 비율로 출연하여 2024년 8월 말 기준 총 6,408억 6,200만원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을 공급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의 녹색보증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무탄소에너지 보증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온실가스감축 Scope 2 이행기업, 클

린테크 중소・중견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폭넓은 보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음.

뿐만 아니라 녹색보증이 발전기업의 시설자금 채무보증이나 신재생에너지기업의 생산・운전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에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무탄소에너지 보증은 RE100 이행을 위한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보증, 무탄소에너지기업의 생산・운전자금에 대해서도 채무보증이 가능하여 보증내용도 다양해졌다는 입장임.

[녹색보증사업(2023년 종료)과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 간 비교]

구분	녹색 보증	무탄소에너지 보증
보증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중소·중견기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기업 포함	▸무탄소에너지 발전사업자 ▸K-RE100 중소・중견기업 ▸무탄소에너지(설비 제조) 중소·중견기업
보증내용	▸발전기업의 시설자금 채무보증 - 임대사업자(산단 지붕임대 태양광) 미포함 ▸신재생E기업의 생산·운전자금 채무보증	▸발전사업자의 시설자금 채무보증 ▸K-RE100 기업의 REC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보증 ▸무탄소설비 제조기업의 ·운전자금 채무보증
보증조건	▸보증료율 0.2%p 차감	▸보증료율 최대 0.5%p 차감 추진
운용배수	▸운용배수 7배수	▸운용배수 12.5배수
예산규모	▸(2021)500억원 → (2022)450억원 → (2023)400억원	▸(무탄소)100억원, (해상풍력)320억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무탄소에너지 보증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연관산업에 대한 보증 지원 소요로 편성된 출연금 소요는 기존의 녹색보증 사업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기출연한 보증 여력을 통해서도 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규 출연금 편성에 앞서 기존 보증 재원의 우선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2025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 사업의 예산안 산출근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벨류체인 기업 662개소에 대하여 평균 보증 비용 12억 3,700만원을 적용하여 총 필용보증비용을 1,228억 3,400만원으로 산출하였음.

이에 비해 탈탄소에너지 연관산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연관산업보다 벨류체인기업 수가 저조하고, 평균 보증 비용 또한 3억 7,800만원에 불과하여 총 필요보증비용이 61억 2,400만원으로 추산되었음.

[보증기관 지원기업 및 보증비용 산출]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벨류체인 기업	BB+이하 기업(추정치)	평균 보증비용	필요 보증비용	계
신재생에너지 연관산업	662	99.3	1,237	122,834	128,958
탈탄소에너지 연관산업	108	16.2	378	6,12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연관산업은 기존의 녹색 보증의 보증대상과 중복되는 산업군으로, 녹색보증은 이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시설자금 및 생산·운전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녹색보증 사업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총 1,350억원에 이르는데, 이들 기금에 대한 보증 운용배수가 7배수로 운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 8월 말 기준 총 보증공급 목표량은 9,450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에 비해 실제 보증공급 잔액은 8월 말 기준 6,408억 6,200만원에 불과한 상황임.

[2021년 최초 녹색보증 사업 추진에 따른 보증 공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출연금	신규보증 공급액			보증공급 잔액(연말)	보증료 수입	대위 변제액
			계	발전 기업	산업 기업			
2021	신보	25,000	189,052	4,090	184,962	184,841	1,965	-
	기보	25,000	175,209	33,160	142,049	164,361	116	-
	합계	50,000	364,261	37,250	327,011	349,202	2,081	
2022	신보	22,500	170,029	10,871	159,158	322,201	3,567	-
	기보	22,500	111,796	19,319	92,477	221,047	1,352	1,060
	합계	45,000	281,825	30,190	251,635	543,248	4,919	1,060
2023	신보	20,000	151,664	12,915	138,749	434,736	3,916	9,952
	기보	20,000	97,114	10,009	87,105	247,353	1,979	7,190
	합계	40,000	248,778	22,924	225,854	682,089	5,895	17,142
2024. 8	신보					417,411	2,360	-
	기보					223,451	2,110	3,149
	합계					640,862	4,470	3,14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무탄소에너지 보증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연관산업에 대한 보증 지원 소요로 편성된 출연금 소요는 기존의 녹색보증 사업을 통해 두 기금에 기출연한 보증 여력을 통해서도 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규 출연금 편성에 앞서 기존 보증 재원의 우선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6. 해상풍력맞춤형보증지원 사업(신규): 사업계획 및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해상풍력맞춤형보증지원’** 은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전용 보증제도를 신설하여 국내 해상풍력의 보급·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32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4]

[2025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무탄소에너지보증	-	-	42,000	42,000	순증
해상풍력맞춤형 보증지원	-	-	32,000	32,000	순증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대한 출연금 32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출연금을 신용보증기금에 재출연하고, 지원대상 해상풍력 기업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면 신용보증기금이 이 해당 확인서 및 보증심사를 근거로 보증을 지원하는 구조임

[해상풍력 보증사업 추진체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PF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한 정책보증을 지원하여 해상풍력 발전의 보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임.

국내 해상풍력은 2022년 도입된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35]제도로 인하여 해상

34) 전력산업기반기금-무탄소에너지보증(5202-326)(재생에너지정책관)

풍력을 통해 생산된 전력에 대한 구매단가가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장기간(20년) 보장됨에 따라 사업성 및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졌음.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개발사 추계에 따른 자체 내부투자수익률(IRR)은 약 7~1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금조달 시장에서 외국계 자본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국내 자본 참여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장기간·대규모 자금투입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큰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인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임.

나. 검토의견

첫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책적 지원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보증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3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하여 보증지원 출연금 3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업경제 및 탄소감축 효과 등 정책적 지원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임.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산업경제 및 탄소감축 효과 등 정책적 지원 타당성을 고려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겠다는 이 사업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최근 유럽연합(EU)는 대만의 해상풍력 자국 공급망 우대정책(LCR; Local Content Requirement)이 국가 간 공정무역에 위배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해결 협의를 공식 요청한 바가 있음.[36]

대만은 2016년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선언한 이후 LCR비율 강화를 추진하여 왔는데, 2025년까지 진행 예정인 5.6GW 규모 해상풍력 보급 사업에 대하여 LCR 비율을 60%로 제시하고, 국산 공급망 육성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대만의 LCR 자격 요건과 해상풍력 단지의 입찰 기준

35)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하여 비용효율적인 보급을 기대할 수 있고, 선정된 사업은 장기간(20년) 고정가격으로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 측면에서 예측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되어 풍력발전 확대에 참여 가능함.

36) European Commission, ‘EU Challenges Taiwan’s discriminatory rules on offshore wind projects,’ 2024.7.26. <2024.10.29. 방문>
https://policy.trade.ec.europa.eu/news/eu-challenges-taiwans-discriminatory-rules-offshore-wind-projects-2024-07-26_en

은 수입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산업경제 및 탄소감축 효과 등 정책적 지원 타당성을 고려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할 예정인 3개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모두 2025년 내 인허가 및 상세설계 완료 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내 착공이 가능한 프로젝트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도 예산안 산출근거상 반영된 PF 대출 예상금액 4조원에 대하여 2025년 착공을 준비 중인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3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2025년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현황]

사업명	설비용량 (MW)	PF 예상금액 (억원)	진행단계	향후 주요 일정	착공 예정 시기
A해상 풍력	600	31,558	환경영향평가 완료 군 작전성 협의 진행중(연내 완료예정)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진행중(연내 완료 예정)	상세설계 ('25.상반기) 공사계획 인가('25.7월)	2025. 7월
B해상 풍력	104	5,310	환경영향평가 완료 군 작전성 협의 진행중	공유수면 점·사용허가('25.4월), 상세설계('25.4월), 공사계획 인가('25.10월)	2025. 10월
C해상 풍력	99	3,574	환경영향평가 완료	군 작전성 협의('25.3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25.7월), 상세설계('25.7월), 공사계획 인가('25.4분기)	2025. 4분기
합계	803	40,44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B해상풍력과 C해상풍력은 개별 인허가 중 환경영향평가만 완료된 상황으로, 2024년 10월 이후 2025년까지 군 작전성 협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상세설계를 마무리하여야 2025년 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특히 국방부의 군 작전성 협의의 경우, 협의 진행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 대비 변경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협의가 완료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의 소요가 있을 수 있는 등 착공 시점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

PF 대출이 실행되어 보증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프로젝트 착공 시점으로, 만약 행정절차 및 설계용역사, 시공사 선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2025년 내 착공이 불가능해질 경우 2025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보증재산의 보증공급량이 당초 계획보다 미달성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군 작전성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행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당한 프로젝트의 2025년 연내 착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1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반구축 사업: 보조금 예산편성에 따른 원활한 사업관리 수행 필요

가. 개 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반구축’ 은 일부 지자체(전북, 광주, 경북, 경남)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건축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6억 7,000만원(△19.1%) 감액된 28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37)]

[2025년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반구축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기반구축	3,500	3,500	2,830	△670	△19.1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 경남종합지원센터에 대한 3차년도(최종연도) 보조금 28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경남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설계용역이 2024년 현재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는 센터 구축이 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경남종합지원센터는 2023년도 계획에서 최초 사업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설계비 2억 4,0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았음. 이후 2024년도에는 1차년도 공사비 32억원이 편성되어 교부받았고, 2025년도 예산안에는 경남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최종년도 공사비 28억 3,000만원이 편성된 것임.

37) 전력산업기반기금-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반구축(5203-322)(에너지정책실)

[2025년도 예산안 기준 2023~2025년 경남 종합지원센터 재원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안)
국비 지원 금액	-	-	240	3,200	2,830
근거	-	-	설계비	1차년도 공사비	2차년도(최종) 공사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사업계획상 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2024년 4월 29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가 2024년 9월 20일까지 진행된 상황임.

이에 따라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2025년 1분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2차년도 최종 공사비가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점을 감안할 때 원활한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8.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사업: 과제비 이월이 발생한 과제들에 대한 사업관리 철저 및 적정 예산 반영 필요

가. 개 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및 미래기술 선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연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76억 700만원(△2.4%)이 감액된 3,141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38]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신재생에너지핵심 기술개발(R&D)	321,710	321,710	314,103	△7,607	△2.4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나. 검토의견

R&D 사업 내 계속과제 중 시설장비구축 과제들의 경우 2023년 과제비가 2024년으로 이월된 현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과제 실집행을 제고하는 한편 이에 따른 차후 년도 R&D 예산 감액 조정 소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분야의 시설장비 구축을 위한 R&D 과제를 매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이 사업에 편성된 다수의 시설장비 구축 과제들의 경우 2023년 과제비가 2024년도로 다수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중 이월액이 10억원 이상인 시설장비 구축과제는 27개이고, 이월 총액은 672억 400만원임.

38) 전력산업기반기금-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5703-301)(에너지정책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R&D 사업 내 시설장비구축 과제들의 이월 현황(이월액 10억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내역사업	과제명	2024년 전년도 이월액 (국비)
1	재생에너지공급망구축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 실증단지 필수 기반인프라 구축	7,683
2	수소	12.5MW급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 기술 개발	7,661
3	AC/DC Hybrid 배전망 운영기술	AC/DC 하이브리드 배전망 운영시스템 기술개발	4,318
4	수소	암모니아 기반 청정 수소 생산 1,000 Nm3/hr 규모 Pilot 플랜트 실증화 기술 개발	4,246
5	AC/DC Hybrid 배전망 요소기기	특고압 직류배전용 계측·진단 및 신뢰성 평가 기술개발	3,880
6	수소	수소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00 kg/day급 탄소배출 저감형 고효율 중대형 개질기 기술 개발	3,747
7	풍력	해상풍력 대단지의 하부구조물 시공비 절감을 위한 프리파일링 국산화 기술 개발	3,707
8	AC/DC Hybrid 배전망 운영기술	AC/DC 하이브리드 배전망 설계 및 해석 기술개발	2,949
9	신재생에너지연계 해상변전소용 핵심 전기기기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연계 해상변전소용 핵심 전기기기 기술개발	2,347
10	AC/DC Hybrid 배전망 운영기술	AC/DC Hybrid 배전망 안전운영 기술	2,278
11	풍력	해상풍력단지 해저전력망 구축을 위한 핵심기자재 및 평가기술 개발	1,907
12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간 연계 (섹터커플링) 기술개발	집단에너지 연계 전기보일러 구동 전력-열 변환 및 저장 기술개발	1,358
13	AC/DC Hybrid 배전망 요소기기	특고압 직류배전용 20MW급 MMC 방식 컨버터스테이션 기술개발	1,875
14	풍력	MW급 부유식 해상풍력 탈착형 계류시스템 개발	1,864
15	수소	액체수소 운송을 위한 3,000kg 용량 탱크 트레일러 개발 및 실증	1,525
16	AC/DC Hybrid 배전망 요소기기	특고압 직류배전용 멀티터미널 제어시스템 고도화 및 컨버터스테이션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1,466
17	연료전지	최대이륙중량 200kg급 비행체용 순정격출력 30kW급 연료전지 파워팩 시스템 개발	1,448
18	수소	액체수소 운송선박 핵심시스템(화물창, BOG 처리시스템, CHS시스템) 국산화 모델 개발	1,402
19	연료전지	수소지게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 기반 신뢰성 검증 기술 개발	1,384
20	신재생 연계 ESS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신재생에너지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1,327

(단위: 백만원)

연번	내역사업	과제명	2024년 전년도 이월액 (국비)
21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	건물 실물모형(mock-up) 기반 통합 성능 평가를 위한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	1,322
22	연료전지	분산형 연료전지 시스템 신뢰성 평가 기술 개발	1,283
23	연료전지	농업용·물류운송 드론용 순정격출력 15kW급 연료전지 파워팩 시스템 개발	1,222
24	태양광	양면형 모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1,187
25	AC/DC Hybrid 배전망 요소기기	특고압 직류수전용 2MW급 모듈형 컨버터스테이션 기술개발	1,165
26	태양광	차세대 탠덤 상부셀용 건식공정과 소재를 적용한 MW급 장비 개발	1,112
27	태양광	대면적 결정질/박막 실리콘 이종접합(HJT) 태양광 모듈 핵심소재·장비·공정 기술 개발	1,024
합계			66,68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이들 과제비 이월 사유들을 살펴보면, 2024년 10월 현재 기준으로도 이월발생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수소 분야의 경우, ‘12.5MW급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 기술개발’ 과제, ‘수소가격경쟁력강화를 위한 2,000kg/day급 탄소배출저감형 고효율 중대형 개질기 기술 개발’ 과제의 경우 실증부지 변경 및 지자체 인허가 지연으로 실증설비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2023년에 편성된 과제비 중 구축비 76억 6,100만원, 37억 4,700만원이 이월되었으나, 2024년 10월 기준으로도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25년 과제비의 정상적인 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임.

따라서 과제비 이월이 발생한 세부 과제들의 2024년 10월 기준 이월 사유 해소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정상 추진 여부를 바탕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후속 과제비의 적정 규모를 재산출할 필요가 있음.

【무역보험기금】

<수 입>

19.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계획 정확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기타재산이자수입’ 은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또는 유가증권 운용 등을 통한 이자수입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816억 500만원(49.4%) 증가한 2,46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39)]

[2025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165,345	165,345	246,950	81,605	49.4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높은 시중금리 및 채권수익률 개선으로 인한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액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통화금융기관 예치액, 국공채 등 채권, 그 외 수익증권에 대한 목표수익률을 전년 대비 상향 조치하여 편성하였음.

[2024년 대비 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4계획(수정)	165,345	ㅇ 통화금융기관 예상 평잔(1,451,248백만원)×목표수익률(**2.87%**)=41,651백만원 ㅇ 국공채 등 채권 예상 평잔(717,819백만원)×목표수익률(**2.37%**)=17,012백만원 ㅇ 수익증권 예상 평잔(2,814,827백만원)×목표수익률(**3.79%**)=106,682백만원
2025계획안	246,950	ㅇ 통화금융기관 예상 평잔(1,692,188백만원)×목표수익률(**3.07%**)=51,950백만원 ㅇ 국공채 등 채권 예상 평잔(272,368백만원)×목표수익률(**3.39%**)=9,233백만원 ㅇ 수익증권 예상 평잔(4,231,578백만원)×목표수익률(**4.39%**)=185,767백만원

39) 무역보험기금-기타재산이자수입(54-546)(무역투자실)

나. 검토의견

2024년 8월 말 기준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액이 3,550억 5,100만원으로 계획액 대비 214.7%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계획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무역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상 기타재산이자수입 편성 당시 통화금융기관 예상평잔에 대한 목표 수익률을 2.87%, 국공채 등 채권 예상 평잔에 대한 목표수익률을 2.37%, 수익증권에 목표수익률을 3.79%로 계상한 바 있음.

그런데 2024년 무역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3년 12월에 무역보험공사는 2024년 자금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는데, 해당 자금운용계획상 목표수익률은 4.09%로 설정되었음.

특히, 해당 자금운용계획에서 무역보험공사가 밝힌「시나리오별 최적 자산배분(안)」의 기준이 된 자산군별 기대수익률을 살펴보면, 확정금리 자산군의 기대수익률이 3.1%로 되어 있어 통화금융기관 예치액에 대한 목표 수익률 2.87%보다 0.23%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채권을 제외한 국내주식, 해외채권, 대체투자, 해외주식은 기대수익률이 3.8%~8.3%로 수익증권 예상 평잔에 적용된 목표수익률 3.79%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연간자금운용계획 상 자산군별 기대수익률(2023.12. 작성)]

(단위: %)

자산군	기대수익률
확정금리	3.1
국내채권	3.4
국내주식	6.3
해외채권	3.8
대체투자	4.3
해외주식	8.3

주) 기대수익률은 거시경제요인과 프리미엄 building block 방식으로 추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

이와 같이 2023년 12월 무역보험공사가 자체 수립한 2024년도 자금운용계획 상 기대수익률이 2023년 5월 수립된 2024년도 무역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상 기타재산이자수입의 편성근거로 활용된 자산군별 목표수익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2024년 8월 말 기준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액은 3,550억 5,100만원으로 이미 계획현액 1,653억 4,500만원 대비 수납률이 214.7%에 이르고 초과수납액이 1,897억 600만원

에 달하고 있음.

[2023~2024년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당초	수정					
2023	102,815	102,815	102,815	208,825	208,825	203.1	100.0
2024	165,345	165,345	165,345	355,051	355,051	214.7	1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

따라서 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계획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 일반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의 적정 규모 검토 필요

가. 개 요

‘일반회계전입금’ 은 무역보험 지원확대 및 기금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정부출연금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50억원(77.8%) 증가한 800억원이 편성되었음.[40]

[2025년도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일반회계전입금	45,000	45,000	80,000	35,000	77.8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무역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일반회계전입금 소요로 95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이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500억원이 감액되어 450억원으로 편성된 바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방산수출 지원, 중소형 조선사 선수금 특례보증 지원 소요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금을 2024년 대비 350억원 증액된 800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나. 검토의견

무역보험기금은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매년 현금수지 흑자가 발생하였고, 2024년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초과 수납액이 8월 말 기준으로도 1,897억 600만원을 기록하였으므로, 2025년 일반회계전입금의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무역보험기금의 자금운용상 특성은 거액보험금 지급과 현금흐름 불확실성으로 요약됨. 먼저 무역보험은 수입자로부터의 대금미회수 위험 및 수입국의 전쟁, 모라토리엄(비상위험)을 담보함에 따라 거액의 보험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또한, 통상의 보험과 달리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보험금 지출규모의 변동폭이 크고, 보험사고 확률추정 및 보

40) 무역보험기금-일반회계전입금(91-911)(무역투자실)

험금지급 규모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기금 내 일반회계전입금을 편성하여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정부출연금으로 조달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이후 최근 5년간의 무역보험기금 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을 제외하면 2020년 이후 매년 현금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7,659억원의 현금수지 흑자가 발생하였음.

[최근 5년 무역보험기금 수지 현황(현금주의)]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정부출연금	1,350	5,731	3,500	912	500
수입	8,437	6,711	7,456	8,668	11,927
지출(보험금)	10,301 (8,378)	5,159 (3,385)	6,280 (4,471)	6,721 (4,960)	4,768 (3,007)
현금수지	△514	7,283	4,676	2,859	7,65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

더구나 2020년 이후 현금수지 흑자는 거래보험금 지급의 기간 변동성에 따른 일시적인 흑자로만 설명되기보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매년 12월에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자금운용계획 간의 괴리에 따른 구조적 오류에 기인한 측면이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2024년 당초 무역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정부출연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950억원을 반영하였음. 그런데 해당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확정되기 이전 무역보험공사가 2023년 12월 자체적으로 수립한 2024년 자금운용계획상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출연금 수입 950억원을 비롯한 현금 유입이 지출을 3,490억원 가량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어 있음.

[2024년 항목별 현금수지 전망(2023.12.기준)]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	비 고
연초 자금규모(A)			56,233	'23.11월말 기준 예상금액
정부출연금(B)			950	-
수입(C)	보 험 료		5,868	각 사업단위별 예상액 반영
	회 수 금		1,657	"
	환변동보험		117	현재 익스포져 기준
		· 환수금 · 거래이익	67 50	
	운용수입		2,040	-
	소 계		9,683	-
지출(D)	보 험 금		5,360	각 사업단위별 예상액 반영
	환변동보험		104	현재 익스포져 기준
		· 보험금 · 거래손실	29 74	
	기타경비		1,679	기금관리비(1,239억원) 사업비(440억원)
	소 계		7,143	-
현금수지(B+C-D)			3,490	-
연말 자금규모(A+B+C-D)			59,723	-

주 1) 2024년 환율가정: 1,314원
2) 2024년 예상평잔: 57,978억원 = [56,233억원('24년 초) + 59,723억원('24년 말)] / 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매년 12월 수립하는 자금운용계획상 현금수지 예상액과 관련 가정을 기초로 정부출연금 지급 소요를 면밀히 검증하고, 국회의 예산심의 단계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4년 기타재산이자수입의 8월 말 기준 초과수납액이 이미 1,897억 600만원에 달하고 있는 등 무역보험기금 내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2025년도 계획안에 반영된 일반회계 전입금의 적정 규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는 기업들의 무역보험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보험사고 발생 시 무역보험공사가 책임져야 할 유효계약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기금 건전성을 평가하는 무보 기금배수[41]는 2023년말 기준 25.8배로 OECD 공적수출신용기관 평균(18.5배) 및 유사기관(신보 7배, 기보 8.1배)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안정적인 정부 출연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41)

<최근 5년 무역보험기금 기금배수 현황>

(단위: 억원, 배)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책임잔액(A)	743,251	733,979	803,900	865,524	1,009,241
기금총액(B)	19,696	24,534	30,385	34,118	39,187
기금배수(A/B)	37.7	29.9	26.5	25.4	25.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보험공사

특허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특허청 소관 총수입은 6,459억원으로, 전년 대비 9억원(0.1%) 증가함.[1)]

[2025년도 특허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6,450	6,459	9	0.1
총수입	6,450	6,459	9	0.1

2025년도 특허청 소관 총지출은 5,6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억원(2.8%) 증가함.

[2025년도 특허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5,485	5,641	156	2.8
총지출	5,485	5,641	156	2.8

문의 : 김정환 예산결산조사관 na32@assembly.go.kr (02-6788-5680)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5년도 특허청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개 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8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억원(△1.4%) 감소함.

[2025년도 특허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7,923	7,811	△112	△1.4
합 계	7,923	7,811	△112	△1.4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특허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개 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7,883원으로 전년 대비 40억원(△0.5%) 감소함.

[2025년도 특허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7,923	7,811	△112	△1.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72	72	순증
합 계	7,923	7,883	△40	△0.5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특허청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1개(31억 8,3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신규 편성된 ‘특허데이터기반 경제안보체계 구축’ 사업은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유출방지 등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1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특허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특허데이터 기반 경제안보체계 구축	3,183
총지출		3,183

한편, 특허청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발명장려문화 조성’ 사업, ‘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정보화)’ 사업,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등 총 5개임.[3)]

[2025년도 특허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발명장려문화 조성	3,222	4,305	1,083	33.6
2	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정보화)	11,630	15,840	4,210	36.2
3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1,686	2,286	600	35.6
4	본부 기본경비(자본)	607	814	207	34.1
5	서울사무소 기본경비(자본)	37	88	51	137.8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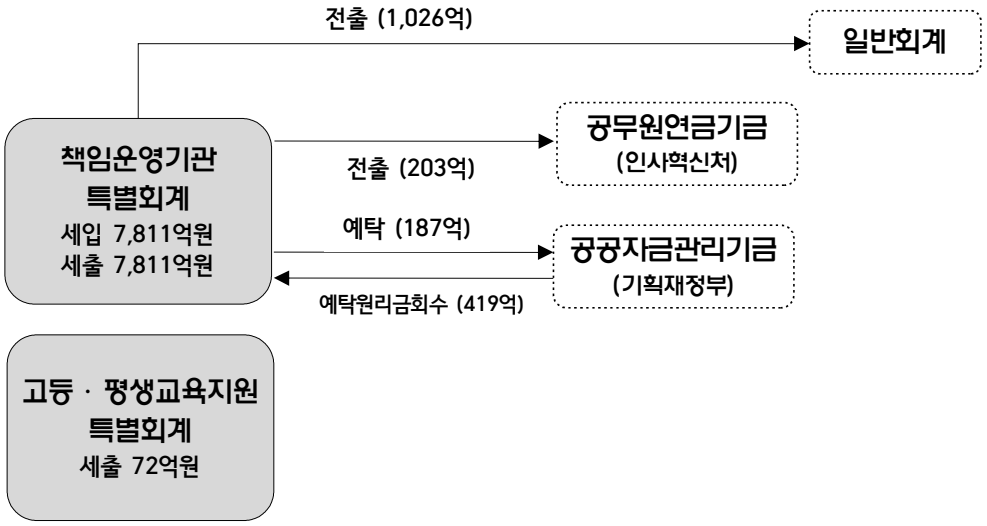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특허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2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회계로 1,025억 7,900만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03억 4,400만원이 전출되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87억 2,500만원이 예탁되었음.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378억 7,400만원의 예탁 원금이 상환되고, 40억 600만원의 이자가 수입되었음.

[특허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특허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①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국내특허심사지원 및 상표조사분석 사업 확대, ②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 확대, ③ AI심사지원시스템 학습데이터 구축 등 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정보화) 사업 확대, ④ 미상환 부실 IP담보대출의 담보물인 특허권을 매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확대, ⑤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유출방지 등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특허데이터기반 경제안보체계 구축 사업 신설, ⑥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사업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편성한 것을 들 수 있음.

2025년도 특허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특허동향조사 업무의 위탁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재위탁비율이 과다하고 사업비 관리가 미흡함에도 2025년도 예산안에서 과제 수와 단가를 확대하였는바, 증액된 예산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및 관련 동향조사 협력기관들의 수익으로 흡수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담보IP 매입을 위해 2025년도 예산안에 15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8월 말 현재 발명진흥회에 남아있는 출연금 집행잔액이 168억 8,700만원에 이르고 있고, 집행잔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또한 6억 6,900만원에 달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규 출연금 편성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 출>

1. 모태조합 출자 사업: 기출자한 자금의 투자집행 비율 제고 필요

가. 개 요

‘모태조합 출자’ 사업은 특허 활용률 제고 및 K-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등을 위해, 지식재산(IP)에 직접투자하여 로열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IP직접투자 펀드」를 조성·운용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4억원(△.29.8%) 감액된 80억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모태조합 출자 사업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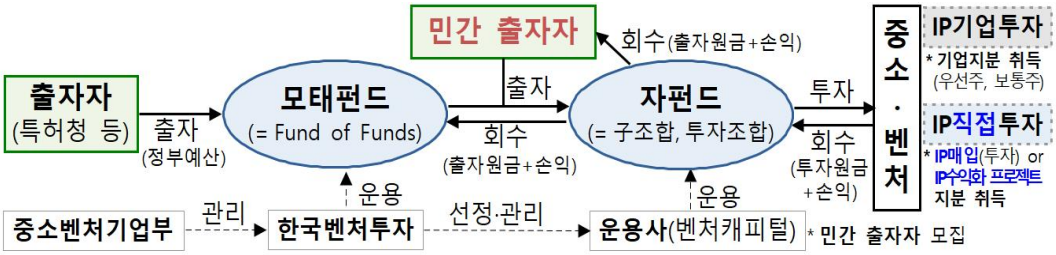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모태조합 출자	11,400	8,000	△3,400	△29.8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특허청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에 출자를 하게 되면, 한국벤처투자가 자펀드를 선정하고, 해당 자펀드(운용사)에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자펀드를 결성하게 됨. 이후 자펀드 운용사는 사전에 정해진 존속기간만큼 자펀드를 운용하게 됨. 통상 펀드의 존속기한은 8년(투자 4년+회수 4년)이며, 존속기한이 도과하여 청산된 펀드로부터 발생한 회수금은 다른 자펀드에 재투자됨.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모태조합 출자(1332-304)(산업재산정책국)

[모태조합 출자 추진 체계]



자료: 특허청

2025년에 반영된 예산으로 특허청은 IP자체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려는 IP직접투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임.

특허청은 IP 직접투자가 가능한 프로젝트가 기존 연간 16개에서 11개로 감소하였다는 판단 하에 2025년 펀드조성 규모를 160억원으로 낮추고, 정부출자비율 50%를 곱하여 80억원을 편성하였음.

[모태조합 출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2024년) 228억원 펀드 조성 → (2025년) 160억원 펀드 조성
** 기업·프로젝트별 평균 투자금액(15억원)을 고려할 때, IP직접투자가 가능한 프로젝트가 기존 연간 16개에서 11개로 감축(최소한의 마중물 역할 수행 → 점진 확대 추진)

구 분	2024예산	2025예산안
□ 모태조합 출자	11,400백만원	8,000백만원
(1) 모태조합 출자	IP직접투자 펀드 신규 조성 (민간자금 포함 228억원 규모)	IP직접투자 펀드 신규 조성 (민간자금 포함 160억원 규모)

자료: 특허청

나. 검토의견

특허청이 2020년 이후 2024년까지 IP직접투자를 위해 출자한 출자금의 결성현황에 따르면 미투자금액에 따른 투자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특허청은 신규 출자금 편성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출자한 자금의 실제 투자집행 비율 제고를 우선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허청은 IP직접투자를 위해 2020년 240억원, 2021년 300억원, 2022년 360억원, 2024년 114억원의 정부출자금을 집행하여 모태펀드에 출자하였음. 이들 출자금이 실제 결성으로 이어져 투자 집행으로 이어진 성과를 살펴보면, 2021년 출자에 따른 결성액 504억원 중 실제 투자집행액은 2024년 8월 말 기준 314억원에 불과하였고, 운용비용으로 50억원이 지출되었으며, 남은 140억원의 투자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유사하게 2022년의 경우에도 결성액 602억원 중 투자집행액은 185억원에 불과하였고, 운용비용으로는 60억원이 지출되었으며, 남은 357억원의 투자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5)]

[2020~2024년 정부출자에 따른 모태펀드 특허계정 내 투자운용 현황(2024.8월말 기준)]

(단위: 억원)

연도	분야	결성규모			투자 집행액 (B)	미투자 금액 (C=A-B)	운용 비용 (D)	투자 여력 (C-D)	투자 잔여 기간
		정부 출자금	민간	총액(A)					
2020년	IP기반 스타트업육성	50	40	90	76	14	9	5	1년미만
	IP직접투자	240	167	407	369	38	41	0	1년미만
	공공IP 사업화	185	303	488	464	23	49	0	1년미만
	특허기술사업화	300	1,762	2,062	1,635	427	206	220	1년미만
2021년	IP직접투자	300	204	504	314	190	50	140	4년미만
	IP크라우드 펀딩	75	65	140	81	59	14	45	2년미만
	특허기술 사업화	125	3,800	3,925	3,113	812	393	419	2년미만
2022년	IP기반 지역기업	225	203	428	205	223	43	180	3년미만
	IP기반 창업기업	90	67	157	56	100	16	85	2년미만
	IP직접투자	360	242	602	185	417	60	357	4년미만
	특허기술사업화	125	2,136	2,261	629	1,632	226	1,406	3년미만
2023년	특허기술사업화	300	283	583	130	453	58	394	5년미만
2024년	IP직접투자	114	결성중						

자료: 특허청

5)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모태펀드의 사업구조상 우수 투자대상을 발굴한 후 투자하는 과정을 투자기간(통상 3년~4년) 동안 결성액 소진 시까지 반복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투자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소정의 미투자금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임

또한, 2024년에 IP 직접투자를 위해 신규 편성된 출자금 114억원의 경우에는 2024년 9월말까지 민간출자자 모집이 진행중임에 따라 펀드 결성이 아직 완료되지 못한 상황임.

2021~2024년 기출자한 자금의 투자여력이 남아있거나 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도 신규 출자될 금액까지 고려한다면, 기출자금의 투자집행 비율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특허청은 추가적인 신규 출자에 앞서 기출자된 펀드 자금 내 남아있는 투자여력이 2025년 내에 실제 투자로 이루어지도록 자펀드를 조기에 결성하고, 투자집행 비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R&D 특허동향 심층분석(신규) 사업: 예산 증액에 따른 사업 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가 R&D 특허동향 심층분석’** 사업은 국가 R&D 과제 기획 시 특허동향 심층분석을 통한 중복연구 방지 및 과제 기획방향 수정·보완 등 R&D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고, 특허정보의 분석·활용을 통한 R&D 전략수립 지원 및 기획 내실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4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6)]

[2025년도 국가 R&D 특허동향 심층분석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특허기술조사분석(R&D)	15,206	15,610	404	2.7
국가 R&D 특허동향 심층분석	-	4,440	4,440	순증

주) 특허청은 다른 내역사업인 공공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에 2024년 예산 기준 20억 8,200만원을 국가 R&D 특허동향조사 123개 과제에 대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음

다른 내역사업인 ‘공공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은 국가 R&D 특허동향 심층분석 사업 신규 편성이 있기 전까지 특허동향조사를 수행하던 사업으로, 특허청은 이 내역사업에서 산업재산 융합데이터 통합분석 예산을 제외한 특허동향조사 관련 예산(2024년 기준 20억 8,200만원)을 신규 내역사업인 국가 R&D 특허동향 심층분석으로 이관하여 편성한 것임.

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기술조사분석(R&D)(1233-301)(산업재산정책국)

[2024년 대비 2025년 내역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구분	2024년	2025년(안)
공공 R&D 특허기술동향 조사	· **특허동향조사: 123개 과제 지원×28백만원×50% : 1,722백만원** · 부처 자체 이행 제고 : 360백만원 · 산업재산 융합데이터 통합분석 : 710백만원	· 산업재산 융합데이터 통합분석 : 810백만원 *** 특허동향조사 및 부처 자체 이행 제고는 국가 R&D 동향조사 심층분석 내역사업으로 확대 개편**
국가 R&D 특허동향 심층분석	-	· **특허동향 심층분석: 200개 과제 × 44백만원 × 50%**

자료: 특허청

이에 따라 2024년 대비 2025년 특허동향 심층분석 과제 수는 123개 과제에서 200개 과제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지원단가 또한 기존 2,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일괄 인상되었음.

구체적인 사업구조를 보면, 특허청은 사업주관기관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매년 선정하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각 부처 소관 전문 연구기관이 R&D를 기획, 평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별 과제 내용에 대한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소요가 발생할 경우 이 사업의 일반연구비와 해당 전문 연구기관의 자체 기획평가관리비를 50:50으로 매칭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특허청에 따르면 2024년까지 이 사업은 기획형 과제와 평가형 과제 각각에 대하여 지원단가를 차등 적용하여 연중 수시로 지원대상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2025년에는 국가전략기술 등의 연구분야에서 대규모 R&D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와 협의하여 과제당 지원 단가를 산출할 계획이라고 함.

[2024년 기준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의 지원방식 및 단가]

구분		분석 기간	분석비용 (과제단가)	지원금	지원 시기
기획형	정성분석 (A타입)	3개월	3,000만원	특허청 50% 지원	연중 수시 (예산 소진시 접수 마감)
	핵심특허분석 (B타입)	2개월	2,000만원		
	정량분석 (C타입)	1개월	1,000만원		
평가형	종합지표형	1개월	250만원		
	기본지표형	1개월	200만원		

자료: 특허청

나. 검토의견

위탁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재위탁비율이 과다하고 사업비 관리가 미흡함에도 2025년도 예산안에서 과제 수와 단가를 확대하였는바, 증액된 예산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및 관련 동향조사 협력기관들의 수익으로 흡수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특허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4년까지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수행을 위해 편성된 일반연구비를 전액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지급하였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연말까지 해당 예산을 전액 소진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반납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이 사업은 일반연구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특허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7]에 따라 다른 법령(「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제2호[8])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8)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④ 전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지원**

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매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연구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제출한 사업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지출한 사업비는 31억 5,100만원으로 2023년 결산 기준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음.

[2023년 일반연구비 미정산에 따른 교부액 중 미반납잔액]

(단위: 백만원)

특허청 교부액 (2023년 결산 기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A-B
	교부액	매칭액	총 예산현액 (A)	실집행액(B)	
1,715	1,715	1,455	3,170	3,151	19

주) 일부 지자체 R&D 과제에 대해서는 전액 특허청이 지원함에 따라 매칭액이 교부액 대비 2억 6,00만원 미달하였음

자료: 특허청

특히, 실집행액 31억 5,100만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협력기관 용역비인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여덟 차례에 걸쳐 총 23억 7,700만원의 용역비를 단가계약을 통해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특허동향조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아닌 협력기관 단위로 재위탁되어 수행되고 있는 상황임.

[2023년 한국특허전력개발원 협력기관 용역비 청구 및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지급차수	차수별 총 지급금액
1	협력기관 용역비 지급(1차)	15(2건)
2	협력기관 용역비 지급(2차)	188(13건)
3	협력기관 용역비 지급(3차)	315(15건)
4	협력기관 용역비 지급(4차)	60(4건)
5	협력기관 용역비 지급(5차)	158(11건)
6	협력기관 용역비 지급(6차)	293(14건)
7	협력기관 용역비 지급(7차)	1,222(539건)
8	협력기관 용역비 지급(8차)	128(6건)
합 계		2,377(604건)

자료: 특허청

뿐만 아니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제출한 2023년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의 지출내역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 중 1억 8,000만원을 기관의 간접비로 계상하여 기관의 공통운영경비에 충당하고 있음.

[2023년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내 간접비 계상 현황]

(단위: 백만원)

지출건명	지출결의금액	지출결의일자
'23년 공공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간접비 대체(1~3월)	43	3.6
'23년 공공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간접비 대체(4월)	14	3.6
'23년 공공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간접비 대체(5월)	14	3.6
'23년 공공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간접비 대체(6~7월)	29	3.6
'23년 공공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예산 통합에 따른 간접비 집행 내역 대체	11	12.21
'23년 공공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간접비 대체(8~12월)	68	12.22
합계	180	

자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또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연말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자 지자체 특허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컨설팅 용역을 2023년 11월 3일 계약 체결하여 2023년 12월 18일에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대금 1억 8,100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음.

[2023년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내 사업내용과 무관한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지출건명	지출결의금액	지출결의일자
지자체 특허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컨설팅 용역 제안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결과 보고	5	11.3
지자체 특허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컨설팅 용역 잔금 지급의 건	176	12.4
합 계	181	

자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이와 같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실제 특허기술동향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한 산출 및 검증절차 없이 지원대상과제 수와 단가만을 확대할 경우, 과거보다 심화된 분석을 수행하겠다는 당초 사업목적과는 달리 증액된 예산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및 관련 동향조사 협력기관들의 수익으로 흡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특허청은 특허기술동향조사의 단가와 지원대상 과제수를 확대하기에 앞서,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을 위한 사업비의 지출 증빙 및 정산을 철저히 하고, 해당 사업비에 간접비를 계상하여 기관의 자체운영경비에 충당하거나 연말에 사업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낮은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등의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출연금 잔액 및 누적 이자수익액을 감안한 신규 출연금 교부 필요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은 미상환 부실 IP담보대출의 담보물인 특허권을 매입·활용하여 은행권의 부실대출 회수위험을 낮추고, 혁신 중소기업 대상 IP담보대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원(35.6%)이 증액된 22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5년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1,686	2,286	600	35.6

이 사업은「발명진흥법」제32조의2[10)]에 따라 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전담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운영 중이며, 정부와 은행이 각각 50%씩 출연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감독하고 있음.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기업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IP회수전문기관((주)△△)의 예비평가·가치평가 등을 토대로 대출을 실행하고, 이후 기업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 결정된 손실보전율로 회수전문기관이 해당 담보 IP를 매입 결정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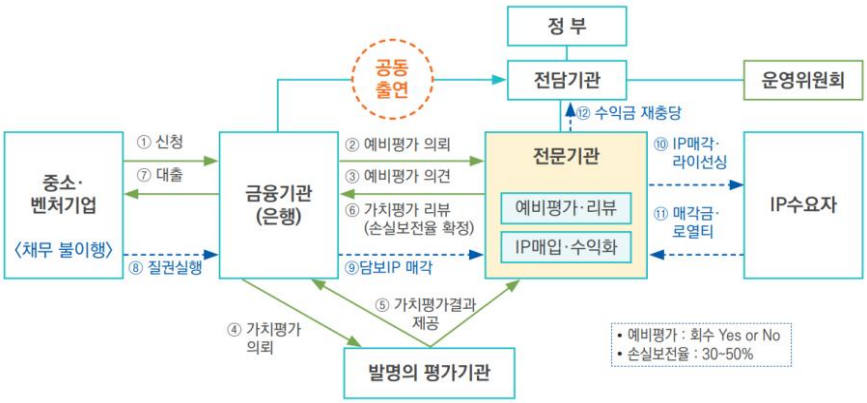
이때, 매입한 IP는 회수전문기관이 아닌 별도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하게 됨. 회수전문기관은 매입한 IP를 향후 수요자에게 매각하거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매입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

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1332-306)(산업재산정책국)

10)「발명진흥법」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실시)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의 구조]



자료: 특허청

이 사업은 2024년도 담보IP 매입을 위해 편성된 사업출연금이 전년 대비 6억원 증액되었고, IP평가분석 및 사업운영을 위한 출연금은 각각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2025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담보IP 매입 : (2024) 900백만원 → (2025) 1,500백만원 (증 600백만원)**
- 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해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은행의 회수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부실 대출의 담보물인 IP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
- 산출근거 : (2024) 부실액 4,500백만원* x 정부지원율 20%(손실보전40%×정부출연50%) = 900백만원 → (2025) 7,500백만원** x 정부지원율 20%(손실보전40%×정부출연50%) = 1,500백만원

* 전년말 회수대상 IP담보대출 잔액 2.254조원 x 부실률 0.2%

** 전년말 회수대상 IP담보대출 잔액 2.3487조원 x 부실률 0.53% x 실매입률 60%

■ IP평가분석 : (2024) 675백만원 → (2025) 675백만원 (전년동)
- IP담보대출 전 사전평가(예비평가 및 가치평가 리뷰)를 위한 평가검증 비용,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용역 등 회수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확산 비용
- 산출근거 : (2024) [평가검증 800백만원 + 운영확산 550백만원] × 50% = 675백만원 → (2025) [평가검증 800백만원 + 운영확산 550백만원] × 50% = 675백만원

■ 사업운영 : (2024) 111백만원 → (2025) 111백만원 (전년동)
- 회수지원 정책수립·집행, 사업운영위원회 및 IP금융 실무협의회 운영, 전문기관 평가·관리, 사업성과 조사분석 등을 위한 사업운영 비용
- 산출근거 : (2024) 사업운영비 222백만원 × 50% = 111백만원 → (2025) 사업운영비 222백만원 × 50% = 111백만원

자료: 특허청

나. 검토의견

담보IP 매입을 위해 2025년도 예산안에 15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8월 말 현재 발명진흥회에 남아있는 출연금 집행잔액이 168억 8,700만원에 이르고 있고, 집행잔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또한 6억 6,900만원에 달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규 출연금 편성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허청의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은 2020년 최초 사업출연금이 편성된 이후로 2023년까지 신규 출연금 예산 편성액이 실제 담보IP 매입비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저조함에 따라 교부된 출연금의 이월액이 연례적으로 누적되어 왔음.

구체적으로 2021~2024년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에 편성된 사업출연금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담보 IP 매입실적 저조로 인하여 정부출연금과 민간출연금을 합한 출연금 수입 185억 3,000만원 중 33억 9,200만원만이 집행되고 잔액 214억 7,3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된 이후 2024년 8월 말까지 해당 미집행분 중 44억 8,600만원이 순감소하고 168억 8,700만원이 여전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임.

[2021~2024년 사업출연 계정의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8
출연금	전기 이월금(A)	6,235	21,373	24,043	20,025
	출연금(정부+민간)(B)	18,530	7,500	1,550	3,372
	실집행액(C)	3,392	4,830	5,568	6,510
	잔액(D=A+B-C)	21,373	24,043	20,025	16,887
이자	전기 이월금(E)	11	14	20	417
	발생이자(F)	18	21	397	252
	사용이자(G)	15	15	-	-
	잔액(H=E+F-G)	14	20	417	669

자료: 특허청

뿐만 아니라, 출연금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지적사항에 따라 2023년부터 이자수익이 높은 계좌에 여유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2024년 8월말 기준 누적 이자수입이 6억 6,900만원에 이르고 있음.

이에 대해 특허청은 담보IP의 부실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2025년 담보IP 매입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11] 최소한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 부실률 증가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 출연금 편성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1)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IP담보대출 부실률이 2023년 1.05%에서 2024년 상반기 2.55%로 약 2.4배 증가함에 따라 출연금 소진이 가속화되고 있고, 2024년 예상되는 출연금 잔액은 2023년 200억 2,500만원에서 112억 2,500만원으로 약 8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출연금 잔액이 대부분 소진될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임.

<2021~2024년 IP담보대출 부실률 추이>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6
부실률	1.07	1.56	1.05	2.55

4. AI 심사지원시스템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 사업과의 연계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AI 심사지원시스템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은 특허·상표·디자인 심사 업무에 가장 필요한 선행발명 검색에 인공지능(AI) 도입 및 이를 위한 학습데이터 구축 마련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7억 6,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2)]

[2025년도 AI 심사지원시스템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특허정보활용인프라구축	11,630	15,840	4,210	36.2
AI 심사지원시스템 학습 데이터 구축	-	2,768	2,768	순증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거절 여부를 판단했던 심사정보(의견제출통지서)에는 거절에 사용한 선행발명 등이 명시되어 있음. 특허청은 의견제출통지서에 포함된 선행발명에 관한 기술 문헌 자료 20만건의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구축하고, AI 모델구현에 최적화된 학습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임.

[2025년 AI 심사지원시스템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AI 심사지원시스템 학습 데이터 구축 : (2024) 미반영 → (2025) 2,768백만원, 순증
- (요구) AI 데이터자동생성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초기 학습데이터(수작업 20만건) 구축을 위한 예산 필요
- (산출) 초기 학습데이터 구축 비용 2,768백만원

자료: 특허청

특허청은 AI를 활용한 선행발명 검색을 위해 특허 행정에 특화된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자동생성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주된 활용처로 구축된 학습데이터는 민간 개방을 통해 관련 산업 및 연구계가 AI 기반의 새로운 IP 정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1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정보활용인프라구축(1332-302)(산업재산정책국)

나. 검토의견

첫째, 특허청은 별도의 ISP 수립 없이 AI 심사지원시스템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단순 데이터 구축 사업이 아닌 데이터 추출 및 자동생생을 위한 AI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과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구축 시 원칙적으로 ISP 또는 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 예외적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민간부분이 제안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단순기능개발, 단순물품구매 등 별도의 ISP·ISM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에 한해 ISP·ISMP 수립 제외가 가능함.

[ISP·ISMP 수립 제외 유형]

ISP 수립 제외 유형	내용	예시
단순시스템 도입	입력, 조회, 출력 등의 단순 기능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시스템	기관 홍보용 홈페이지, 설문 시스템 등
단순기능 개발	기존 시스템에 일부 기능을 개선 또는 추가하는 사업, 내부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	관리시스템 개선 사업 등
운영·유지	기존 시스템을 운영·유지하는 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등
단순물품 구매	사무기기(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 장비구매 위주의 사업	시스템 SW 구매 사업, PC 구매 사업 등
시설 구축	정보시스템이 아닌 단순시설 또는 특수장비를 도입(구매)하는 사업	회선 증설, 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등
DB 구축	시스템 구축 없이 인력 투입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온라인)화하는 사업	연구자료 기록물 DB구축 사업, 문헌자료 디지털화 등
민간투자형 SW 사업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ISP 기본 구성항목을 갖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한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특허청은 AI 기술을 반영·검토한 데이터 자동구축 체계가 부재할 경우, 방대한 양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 사업의 필

요성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 사업은 단순히 수기로 의견제출통지서에 포함된 선행발명에 관한 문헌자료를 DB화하는 것이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자동생성세계 구축’을 통해 심사자료의 데이터를 DB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이를 고려하면, AI 심사지원시스템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은 시스템 구축 없이 단순 인력 투입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는 DB 구축 사업 등 ISP 수립이 면제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더구나 특허청이 제출한 「2025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청은 의견제출통지서뿐만 아니라 이미지 검색 및 상표 식별력 등에 관련된 학습용 데이터를 망라한 총 179만건의 데이터 구축에 대하여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책정하고 있어,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상 반영된 사업의 내용과 규모가 상이한 측면이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13)]

[2024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보고서 상 2025년 신규로 반영된 AI 검색지원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

(단위: 백만원)

실행계획 사업명	적용사업명 (시스템)	사업 내용	해당 예산	사업 형태
AI 검색지원 학습데이터 구축	AI 검색지원 학습데이터 구축	ㅇ AI 특허검색, 이미지 검색 및 상표 식별력, 통지서 작성 등 관련 학습데이터 총 179만건 구축	2,000	신규

자료: 특허청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소관 사업으로 초거대 AI확산 생태계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도 예산안에 총 42종의 신규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356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이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부터 정보통신진흥기금 소관으로 초거대AI 확산 생태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3) 이에 대해 특허청은 당초 신규사업 설명자료에서 설명한 바와 달리, 동 사업이 AI 심사지원시스템 구축 단계 이전에, 최적의 AI 선행발명 검색 모델을 연구・개발하여 성능을 검증하는 연구・실증 단계에서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학습데이터 구축을 통해 연구・실증이 완료되면, AI 심사지원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우선적으로 수립한 후, 수립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라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초거대 AI확산 생태계조성 사업 예산 세부내역]

구분	2024년	2025년(안)
예산 규모	558억원	356억 4,000만원
산출내역	· 초거대 AI 데이터(70종×720백만원) 구축(50,400백만원) · AI허브 운영관리 및 데이터 개방·활용(5,400백만원)	· 초거대 AI 데이터(42종×720백만원) 구축(30,240백만원) · AI허브 운영관리 및 데이터 개방·활용(5,400백만원)

자료: 특허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부터 정보통신진흥기금 소관으로 초거대AI 확산 생태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대학·중소기업 등이 자체 구축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하여 AI Hub(aihub.or.kr)에 개방하는 것으로, 연도별 AI 허브 이용 현황이 2023년 기준 103만 2,000여명에 이르고 있음.

[2023년까지 누적 활용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누계
활용도(다운로드)	13만회	9.2만회	16.4만회	38.6만회
방문자(명)	98만명	102.9만명	103.2만명	304.1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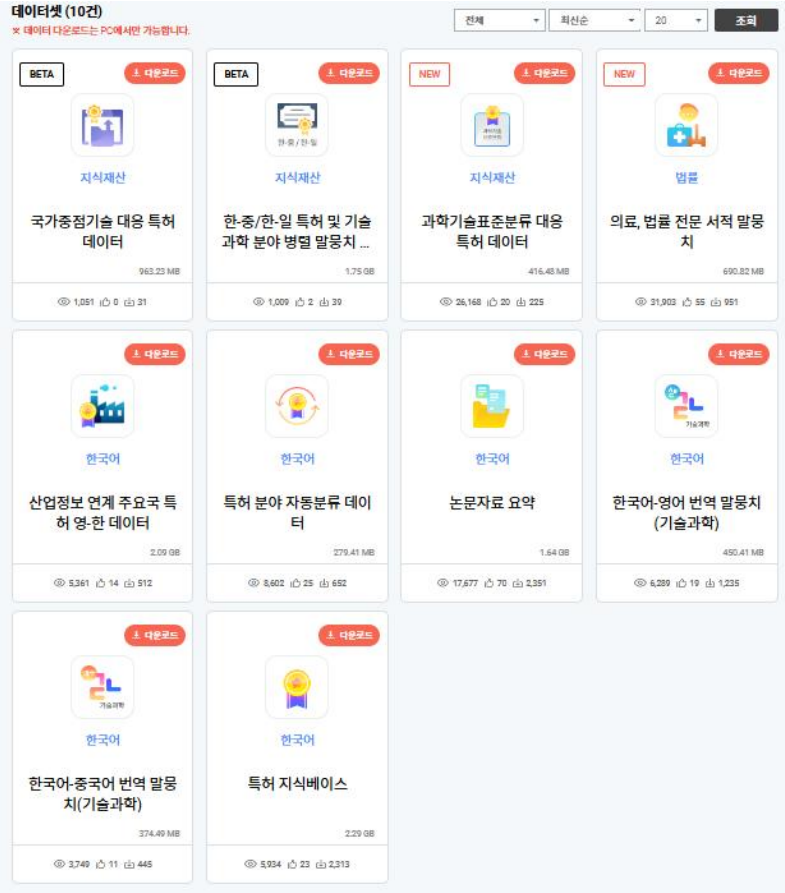
자료: 특허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이 사업의 목표를 의료·법률 등 전문 서비스 영역 등의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특허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AI 심사지원시스템 학습데이터를 이 사업을 통해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허청은 사업설명자료에서 학습데이터는 민간 개방을 통해 관련 산업 및 연구계가 AI 기반의 새로운 IP 정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민간 개방에의 접근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기구축된 대규모 플랫폼인 AI Hub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더욱이 2024년 10월 기준 AI Hub는 국가중점기술 대응 특허데이터, 과학기술표준분류 대응 특허 데이터, 산업정보 연계 주요국 특허 영-한 데이터, 특허 분야 자동분류 데이터 등을 이미 공개하고 있어, 기존 제공 데이터셋과의 통합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특허청 단독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기존의 추진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AI Hub에서 '특허'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2024.10.기준)]



자료: 특허청

따라서 특허청은 2025년도 예산안에 신규 반영한 AI 심사지원시스템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의 신규 추진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초거대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 출>

5.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예산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및 지역주력산업에 특화된 IP전문인력 양성(학·석·박) 및 지역 IP교육 확산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별 IP중점대학을 운영·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72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4]

[2025년도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	7,220	7,220	순증주)

주)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은 ’25년부터 고특회계로 세부사업 신설하여 이관됨

특허청은 대학(원) 지식재산교육의 하나로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할 지역에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권역의 他대학·기관·기업·고교 등에 지식재산 교육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이하 “중점대학”)을 선정하여 최대 10년동안 연 5.5~7.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임.

이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중점대학은 지식재산 강좌를 전담할 전담교수(3명 이상), 중점대학 운영을 지원할 전담직원(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부지원금의 30% 이상을 연차별 대응투자하여 참여교수 인건비, 직접비(교육시설 임대료, 특허검색 유료 DB 사용료, 장학금 등)로 집행하여야 하며,

1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1237-325)(산업재산정책국)

이 사업에 따른 정부지원금은 지식재산 전담교수·전담직원 인건비(보수, 복리후생비),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경비(교육과정 개발, 장학금, 산학협력프로젝트 운영 등),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비용, 기타 간접경비로 각각 사용하게 됨.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 (2025) 7,220백만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 (2025) 7,220백만원 - 2년차 이상 9개 대학(기존) × 802백만원 = 7,220백만원 * 2025년부터 고특회계로 세부사업 신설하여 이관됨 (기존 : 특허청 책특회계 / 세부사업명 : 대학(원) 및 실무형 IP인재 양성)

자료: 특허청

2025년은 신규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선정 없이 기존 선정대학 9개에 대하여 8억 200만원의 지원단가를 책정하여, 72억 2,0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을 편성하였음. 특허청이 보조금 전액을 발명진흥회에 교부하면, 발명진흥회는 대학 1개당 5,000만원을 운영비로 할당하고 남은 차액을 각 중점대학에 보조금으로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수행됨.

나. 검토의견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중점 대학들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인건비의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해당 인건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운영비나 자산취득비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인력 계획에 근거한 보조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중점대학은 정부지원금을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유형자산취득비(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비용), 기타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특허청은 중점대학 선정시 1차년도 배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후 매년 정부지원금 배분계획을 제출받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2021~2023년 사업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인건비의 집행률은 2022년 선정된 충남대의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10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운영비, 유형자산취득비율은 대체적으로 100%를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2021년 최초 중점대학 선정 이후 2024년 9월 말까지의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선정연도	학교명	지원연도	정부 지원액 (예산 기준)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유형 자산 취득비	기타 운영비	보조금 전체 집행률
2021	경상 국립대	2021	550	66.8	93.8	54.7	189.7	93.6	100.0
		2022	550	89.5	163.0	75.6	-	106.9	100.0
		2023	750	94.3	119.5	97.4	95.0	93.8	100.0
		2024	750	64.6	44.6	40.0	-	24.5	47.3
	충북대	2021	550	53.9	119.7	440.5	140.6	87.8	100.0
		2022	550	67.2	209.0	107.8	99.0	102.6	100.0
		2023	750	81.4	151.6	85.0	66.2	101.0	100.0
		2024	750	64.5	45.4	40.6	30.0	49.9	51.3
	전남대	2021	550	33.1	90.6	100.0	521.4	85.7	100.0
		2022	550	64.6	197.7	72.5	301.8	89.3	100.0
		2023	750	80.3	140.6	90.9	100.0	95.8	100.0
		2024	750	68.9	36.6	40.3	31.3	19.9	45.0
2022	충남대	2022	550	100.0	91.4	221.0	157.1	85.1	100.0
		2023	750	98.2	144.5	63.6	100.0	88.5	100.0
		2024	750	67.5	65.5	37.2	100.0	22.0	56.1
2023	경북대	2023	550	85.9	137.7	23.3	139.9	110.0	100.0
		2024	750	66.6	67.7	30.7	91.2	50.9	61.5
	강원대	2023	550	67.1	155.7	54.0	100.0	91.2	100.0
		2024	750	73.9	39.6	40.2	98.3	17.3	50.8
2024	부산대	2024	550	51.9	25.2	-	76.6	24.5	37.5
	전북대	2024	550	43.1	38.3	-	44.3	22.8	36.3
	제주대	2024	550	42.4	27.5	-	100.0	20.8	34.1

자료: 특허청

특허청에 따르면 대학의 자율성 존중, 집행의 탄력성 확보 측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일부 허용하고 있는데, 전담인력의 채용 지연 및 중도 퇴직으로 인해 외부 대체인력을 일시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운영비를 초과집행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활동 축소로 인해 온라인 기자재 및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여 자산취득비를 초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대다수 중점 대학이 당초 예산 계획과 달리 인건비 집행잔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운영비와 자산취득비의 당초 계획 대비 초과집행을 통해 보조금 전체 실집행률을 100.0%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의 정산 및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특허청 및 발명진흥회는 대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현실성·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평가·선정하고, 현실성을 반영한 사업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인력운용 및 항목별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수입은 9조 4,9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15억원(12.1%) 증가함. 예산은 2,708억원으로 전년 대비 573억원(26.8%) 증가한 반면, 기금은 9조 2,194억원으로 전년 대비 9,642억원(11.7%) 증가함.[1)]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2,135	2,708	573	26.8
기 금	82,553	92,194	9,642	11.7
총수입	84,688	94,902	10,215	12.1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지출은 15조 2,92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23억원(2.3%) 증가함. 예산은 3조 6,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8억원(5.1%) 증가한 반면, 기금은 11조 6,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5억원(1.4%) 증가함.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35,004	36,772	1,768	5.1
기 금	114,493	116,148	1,655	1.4
총지출	149,497	152,920	3,423	2.3

나. 예산안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708억원으로 전년 대비 573억원(26.8%) 증가함.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952	2,498	546	28.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3	210	27	14.8
합 계	2,135	2,708	573	26.8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조 6,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8억원(5.1%) 증가함.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0,342	32,267	1,925	6.3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731	357	△374	△51.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931	4,148	217	5.5
합 계	35,004	36,772	1,768	5.1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개 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21조 9,566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9억원(0.7%) 증가함.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111,389	111,389	115,622	4,233	3.8
기술보증기금	31,543	31,543	33,080	1,537	4.9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75,085	75,085	70,864	△4,221	△5.6
합 계	218,017	218,017	219,566	1,549	0.7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9개(664억 6,7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은 2023년도 35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가 2024년도 미편성된 사업으로, 최근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매출 증대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2025년도 예산안은 200억원이 편성되었음.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R&D)’은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장관회의’ 관련 사업인 ‘중소벤처 분야다자협력촉진’은 2025년도 예산안에 15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특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선도기업(R&D)’은 2025년도 예산안에 21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중소기업밀집지역위기대응기반구축’은 종전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한 것임.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20,000
2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R&D)	1,650
3	중소벤처분야다자협력촉진	1,580
4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13,505
5	구미전자공고 생활관 개축	1,55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21,560
7	중소기업밀집지역위기대응기반구축	3,783
8	상권활성화사업(제주)	97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증축	1,863
총지출		66,467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기술보증기금출연, 지역특화제조데이터활성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사업 등 총 21개임.[3)]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기술보증기금출연	20,000	40,000	20,000	100.0
2	지역특화제조데이터활성화	2,000	6,000	4,000	200.0
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423,205	567,983	144,778	34.2
4	국제중소기업협력ODA(ODA)	10,227	19,792	9,565	93.5
5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12,385	18,395	6,010	48.5
6	글로벌창업생태계촉진	1,500	50,410	48,910	3,260.7
7	벤처기업경쟁력강화	6,179	28,282	22,103	357.7
8	중소벤처행정정보화(정보화)	6,928	11,156	4,228	61.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	지식산업센터(자율)	63,770	85,699	21,929	34.4
10	산학연CollaboR&D(R&D)	27,143	56,966	29,823	109.9
11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19,619	30,857	11,238	57.3
12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4,961	10,261	5,300	106.8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3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10,578	78,378	67,800	641.0
14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200,500	382,450	181,950	90.7
15	밸류체인안정화자금(융자)	138,200	200,000	61,800	44.7
16	재도약지원자금(융자)	531,800	750,100	218,300	41.0
17	재도약촉진	10,779	41,549	30,770	285.5
18	전남연수원건립	166	8,013	7,847	4,721.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9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125,354	210,940	85,586	68.3
20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52,403	83,422	31,019	59.2
21	소상공인재기지원	166,308	274,806	108,498	65.2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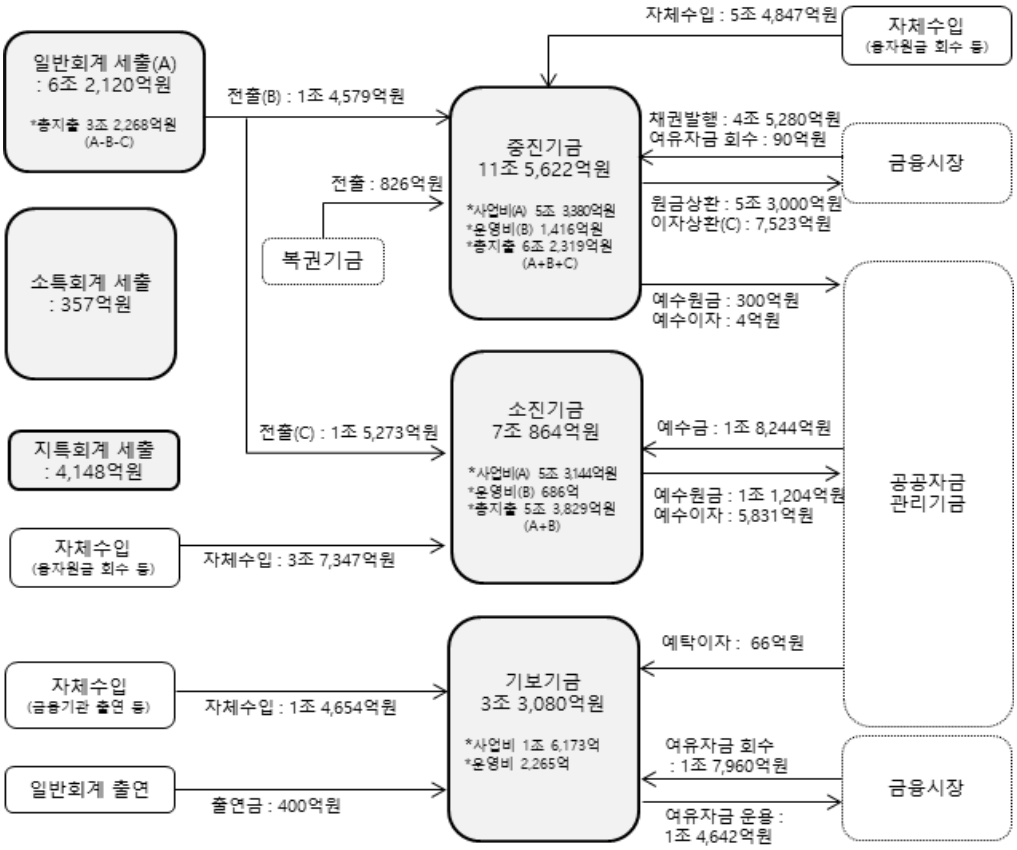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기술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1조 4,579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1조 5,273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원금 300억원 및 예수이자 4억원을 상환하고, 복권기금에서 826억원이 전입됨.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원금 1조 1,204억원 및 예수이자 5,831억원을 상환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금 1조 8,244억원을 받음. 아울러, 기술보증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탁이자 66억원을 받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사업이 증액되고 딥테크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신설되었고,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바우처,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되고, 소상공인지원(융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확대되었음. 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점프 업 프로그램이 신규 편성되고, 동반성장 네트워크 론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에 필요한 기본재산 확충의 방식으로 계정간 전용을 고려해볼 수 있고, ‘매출채권보증보험출연’ 사업은 사고율 추이를 과다계상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한 조정이 필요함.

둘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은 딥테크 10개 분야에 대한 패키지 연계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딥테크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 사업은 대기업의 사업수요에 부합하는 스타트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만큼 대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자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일한 사업 대상에 대해 직접융자와 이차보전을 병행하는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민간 플랫폼사가 소상공인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책임성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배달료·택배비 등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긍정적인 도입 취지가 있으나,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기여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계정 간 전용 검토 필요

가. 개 요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는 보증사업의 대위변제금 지급 등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조성을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0억원(△50.0%) 감액된 400억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신용보증기금출연	80,000	40,000	△40,000	△50.0

이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 중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보증의 대위변제를 위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에 추가재원으로 출연될 계획임.

나. 검토의견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로 인한 기본재산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용보증기금의 계정별 운용배수의 편차가 큰 상황을 고려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대환보증 계정 등 운용배수가 낮은 다른 보증계정에서의 전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일반회계-신용보증기금 출연(1231-881)(글로벌성장정책관)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 대출(최대 4,000만원)에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0년 5월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약 7조 4,648억원의 보증이 공급되었음.

[최근 5년 간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의 보증 현황]

(단위: 억원, 개사, %, 배)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7월
보증잔액	32,689	71,552	65,082	44,785	30,732
순 증	32,689	38,862	△6,470	△20,297	△14,053
업체 수	200,733	380,926	355,751	314,240	284,226
보증공급	32,927	41,377	35	226	83
보증부실	73	1,251	2,539	5,886	2,673
부실률	0.2	1.7	3.9	13.1	14.9
대위변제	14	800	1,719	4,840	2,867
변제율	0	1.12	2.6	10.8	16.0
출 연 금	4,600	1,500	-	-	769
정 부	4,600	1,500	-	-	769
금융회사	-	-	-	-	-
특별출연	-	-	-	-	-
- 순자산	3,734	3,078	1,527	△1,100	△1,610
- 운용배수	8.8	23.2	42.6	-	-

주) 부실률 = 보증부실금액/보증잔액, 변제율 = 대위변제금액/보증잔액
자료: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실제 보증심사는 시중은행이 대리한 상황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보증으로서 동 보증의 출시 시점부터 보증부실의 우려가 제기되었음.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대위변제액는 2020년 14억원, 2021년 800억원, 2022년 1,719억원, 2023년 4,840억원, 2024년 7월 기준 2,86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은 동 보증의 대위변제액 규모가 2024년 말에는 4,978억원, 2025년에는 3,03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함.

[2024년 7월 기준 신용보증기금 보증계정별 보증 현황]

(단위: 억원, 개사, %, 배)

구 분	2024년 7월					
	일반보증	소상공인 위탁	대환보증	유동화회사보증		계
				일반	채권시장안정	
보증잔액	623,568	30,732	13,760	27,831	111,085	806,975
순 증	5,354	△14,053	2,484	1,603	△4,639	△9,252
업체 수	220,406	284,226	25,378	21	46	530,077
보증공급	385,753	83	3,318	7,468	18,663	415,285
보증부실	13,010	2,673	783	365	317	17,148
부실률	3.6	14.9	9.8	2.3	0.5	3.7
대위변제	11,352	2,867	636	328	315	15,497
변제율	3.1	16.0	7.9	2.0	0.5	3.3
출 연 금	9,478	769	-	-	-	10,248
정 부	-	769	-	-	-	769
금융회사	7,333	-	-	-	-	7,333
특별출연	2,145	-	-	-	1	2,146
- 순자산	77,305	△1,610	6,390	9,239	30,476	121,800
- 운용배수	8.1	-	2.2	3.0	3.6	6.6

주) 부실률 = 보증부실금액/보증잔액, 변제율 = 대위변제금액/보증잔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7월 현재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이 심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순자산은 (-)인 상황으로, 2025년 동 보증의 대위변제 수요에 대응하여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위탁보증 계정의 기본재산을 확충할 필요성은 있음.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대위변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위변제를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7월 일반보증 계정에서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으로 1,000억원을 계정간 임시 전용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음.[5]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의 기본재산을 확충하고자 함.

5)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계정간 전용 시 일반보증 계정에서 1,000억원을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으로 임시 전용하였음
* <금융위원회 운용지침> 일반보증 계정에서 1,000억원을 전용하되, 향후 정부출연 확정 시 전용분을 원래 계정으로 재전용할 것

그러나 기본재산 확충방법으로 소상공인 위탁보증에 대해 정부재정인 출연금을 투입하는 방안 외에, 상대적으로 운용배수가 낮거나 기본재산이 과도하게 적립된 다른 계정에서의 전용을 통해해당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말 보증계정별 운용배수에 대해, 일반보증은 8.6배, 일반 유동화회사보증은 3.9배, 채권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은 3.4배로 예상되는데, 신용보증기금의 법정 운용배수 한도(20배)[6]를 고려할 때 계정간 전용 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보증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025년 연말 신용보증기금 보증계정별 보증 예상]

(단위 : 억원, 개사, %, 배)

구 분	2025년 12월(예상)					
	일반보증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환보증	유동화회사보증		계
				일반	채권시장안정	
보증잔액	613,000	2,845	85,843	35,933	93,413	831,033
순 증	△5,000	△18,802	△6,993	5,636	△13,977	△39,136
보증공급	599,893	-	-	17,033	36,476	653,403
보증부실	25,913	2,622	9,328	969	5,000	43,832
부실률	4.2	92.2	10.9	2.7	5.4	5.3
대위변제	22,107	3,031	6,623	787	4,145	36,693
변제율	3.6	106.5	7.7	2.2	4.4	4.4
출 연 금	12,722	400	-	-	-	13,122
정 부	-	400	-	-	-	400
금융회사	11,710	-	-	-	-	11,710
특별출연	1,012	-	-	-	-	1,012
- 순자산	71,393	△4,019	△3,436	9,208	27,443	100,589
- 운용배수	8.6	-	-	3.9	3.4	8.3

주 1) 2024년 7월 임시 계정전용(일반보증 → 소위탁) 1,000억원 반영시, 소위탁 순자산 △3,019억원, 일반보증 순자산 7조 373억원
2) 2025년 12월말 예상현황은 2024년 5월말 신용보증기금 변경계획을 기준으로 예상치를 작성
3) 부실률 = 보증부실금액/보증잔액, 변제율 = 대위변제금액/보증잔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의 경우, 재무구조가 충분히 건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동 재원의 활용을 검토해볼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보임. 해당 계정은 대위변제에 대한 과거 경험률을 지나치게 높게 추산함에 따라 대위변제 예산 편성액 대비 실

6) 「신용보증기금법」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이 연례적으로 매우 낮고, 대위변제 불용액이 동 계정의 기본재산으로 적립되면서 운용배수가 3배 수준에 불과하여 계정의 재무구조가 충분히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임.

[2021~2024년 신용보증기금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1	256,055	-	256,055	-	256,055	150,542	58.8	58.8	-	105,513
2022	181,211	-	181,211	-	181,211	49,025	27.1	27.1	-	132,186
2023	328,007	△100,000	228,007	-	228,007	34,590	15.2	15.2	-	193,417
2024.7.	397,104	-	397,104	-	397,104	68,203	17.2	17.2	-	-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대환보증 계정 역시 지금까지의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 추이를 고려할 때 2025년 대환보증의 대위변제에 필요한 기본재산보다 과다하게 적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계정에서의 기본재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7월 현재 대환보증 계정의 기본재산은 6,390억원인데, 보증잔액 순증 추이를 고려할 때 2024년 연말 보증잔액은 1조 5,534억원으로 예상되고, 2025년 예상 대위변제율 11.9%을 고려할 때 대위변제액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1,854억원으로 추산됨. 이를 감안하면 대환보증의 대위변제 후에도 4,238억원의 기본재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재원의 추가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일반보증과 유동화회사보증 계정에서의 재원 전용은 각각 중소기업의 보증여력 보전과 경제위기 시 유동화회사보증 운용배수의 급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 계정에서의 재원 전용은 어렵다는 의견이나, 운용기한이 2024년 말 종료될 예정인 대환보증은 당초 공급목표 9조 5,000억원 대비 누적 공급액이 1조 5,731억원에 불과하여 대환보증 계정의 잔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임.

2.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 사업: 실제 사고율 추이를 고려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사업에 수반되는 매출채권보험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순증된 200억원이 편성되었음.[7)]

[2025년도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	20,000	20,000	순증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이란, 판매기업(보험계약자)이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향후 대금 미회수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신용보증기금(보험자)이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2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관련 운용·관리, 대위변제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8)]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사업개요]

○ (사업내용) 판매기업(보험계약자)이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향후 대금 미회수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신보(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제도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
○ (가입한도) 업체당 100억원 이내
○ (보험료) 0.1%~5.0% (2023년 평균 0.27%)
○ (보 험 금) 가입 보험금액을 최고 한도로 실제 손해금액의 80%를 보상
○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관리주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7) 일반회계-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1232-301)(글로벌성장정책관)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① 정부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계정 업무 개요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매출채권보험계정의 사고율이 과다계상되어 2025년 출연금 예산안이 적정 운용배수(12.5배) 유지에 필요한 출연금보다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사고율을 고려하여 출연금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이 공적 보험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출연금을 편성하여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있음. 참고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9는 법적 운용배수를 17배로 정하고 있음.[9)]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부터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의 사고율을 매년 2.0%로 추산하여 운용배수 및 기본재산 확충에 필요한 출연금 규모를 산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동안 실제 보험사고율은 1.4% 이내로 낮은 상황이고,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고 보험사고율은 1.7%에 불과하였음.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9(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6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61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사고율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보험사고율(실제)	1.4%	1.6%	1.7%	1.4%	1.0%	0.9%	1.4%	0.9%
보험사고율(예측)	2.8%	2.8%	2.5%	2.0%	2.0%	2.0%	2.0%	2.0%
예산액	120,000	-	-	28,000	55,000	55,000	35,000	-

주) 2017년, 2020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기준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8월까지의 사고율 실적이 0.9%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고율 추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2024년 사고율을 2.0%, 2025년 사고율을 2.0%으로 가정하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운용배수를 13.3배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2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였음.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재무상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획)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8월말)	
인수총액	210,000	213,715	212,000	215,318	212,000	154,314	213,000
인수잔액(A)	53,474	53,819	54,095	57,015	56,243	64,408	56,338
보험사고(B)	1,069	486	1,082	790	1,125	372	1,127
(사고율)(B/A)	2.0	0.9	2.0	1.4	2.0	0.9	2.0
수입(C)	1,318	1,373	1,104	1,326	858	660	1,044
정부출연금	550	550	350	350	-	-	200
보험료	588	549	594	572	594	420	607
운용수익 등	180	274	160	404	264	240	237
지출(D)	1,312	939	1,274	1,177	1,219	796	1,224
보험금	883	473	826	622	756	343	786
관리업무비	301	284	304	289	315	163	324
비상준비금 등	128	182	144	266	148	290	114
증감(C-D)	6	434	△170	149	△361	△136	△180
기본재산(E)	3,937	4,645	4,008	4,794	4,434	4,659	4,254
운용배수(A/E)	13.6	11.6	13.5	11.9	12.7	13.8	13.3

주) 2025년 예산은 2024년 사고율이 2.0%임을 가정하고 계상한 것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의 보험사고율이 연례적으로 과다추계 되었으므로, 실제 보험사고율 추이를 고려하여 매출채권 보험의 적정 운용배수 유지를 위한 출연금 편성 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과거 보험사고율 추이를 고려하여 2024년, 2025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의 예상 사고율을 다시 추산해보면, 2025년 예산안과 같이 출연금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더라도 운용배수가 13배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024년과 2025년 사고율을 1.2%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편성을 통한 기본재산 확충이 없더라도 운용배수는 12.3배로 예상되고, 2024년과 2025년 사고율을 1.5%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 확충이 없이도 운용배수는 12.9배 수준으로 13배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됨.

[2024년~2025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재무상태 예상]

(단위: 억원, %)

구분	2024년 (예상)			2025년 (예상)*		
	사고율 2.0% 가정	사고율 1.5% 가정	사고율 1.2% 가정	사고율 2.0% 가정	사고율 1.5% 가정	사고율 1.2% 가정
인수총액	212,000	212,000	212,000	213,000	213,000	213,000
인수잔액(A)	56,243	56,243	56,243	56,338	56,338	56,338
보험사고(B)	1,125	844	675	1,127	845	676
(사고율)(B/A)	2.0	1.5	1.2	2.0	1.5	1.2
수입(C)	858	859	893	846	848	873
정부출연금	-	-	-	-	-	-
보험료	594	594	594	607	607	607
운용수익 등	264	265	299	239	241	266
지출(D)	1,219	1,054	988	1,252	1,085	1,009
보험금	756	660	602	762	666	608
관리업무비	315	315	315	324	324	324
비상준비금 등	148	79	71	166	95	77
증 감 (C-D)	△361	△195	△95	△406	△237	△136
기본재산(E)	4,434	4,600	4,700	4,194	4,363	4,464
운용배수(배)(A/E)	12.7	12.2	12.0	13.4	12.9	12.6

주 1) 2025년도 예상치는 2024년 연말 기준 사고율을 1.5%로 가정하여 산출
2) 2025년도 예산안과 달리 정부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여 수입액을 작성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연례적으로 과다추계된 매출채권보험계정의 실제 사고율을 고려하여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영안전망으로서의 매출채권보험 사업은 필요하며, 보험사업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율이 예상보다 낮게 유지될 경우 당초 인수 목표를 초과하여 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험 계정을 운용할 계획으로, 출연금의 감액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정책 패키지 사업으로서 다른 지원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10대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1,000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9억원(27.1%) 증액된 1,309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10)]

[2025년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창업사업화지원	377,656	403,567	25,911	6.9
초격차 스타트업 1000+	103,096	130,996	27,900	27.1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은 딥테크 분야[11)]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육성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초격차 분야 중에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우량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고, 사업화자금 등 창업자금과 R&D 지원, 기술보증, 수출바우처 등을 지원함.[12)]

이 사업은 그 중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창업 후 10년이 넘지 않은 해당 분야의 우량 기업에게 연간 최대 2억원(평균 1.5억원)의 범위 내에서 3년간 지원하고, 지원종료 후 최대 연간 5억원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추가 후속지원도 제공함. 특히 다른 창업 지원사업과 달리, 직접적인 사업화자금 지원 외에도 정책자금 융자, 기술보증, R&D 지원, 수출바우처 등 다른 창업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심사 간소화 및 가점 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연계지원하고 있음.

---

10) 일반회계-창업사업화지원(5132-302)(창업정책관)

11) 딥테크(deep tech) 분야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분야로서 특정 분야의 기술 중에서도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기술분야를 의미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우주항공, 해양,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차세대원전, 사이버보안 등이 있음.

12) 동 사업은 2020~2022년 ‘BIG3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사업’,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분야) 사업’,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로 지원분야가 각각 3개, 5개, 10개로 확대되었음.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개요]

분야별	지원 요건	직접사업(사업화자금)			연계지원사업
		연간 지원액 (평균)	지원기간 (최대)	기업 부담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창업 후 10년 이내 (해당 분야일 것)	1.5억원[1)]	3년[2)]	30%	연계지원 우대 (정책자금, 기술보증, R&D, 수출바우처 등) + 창업 프로그램

주 1) 기본지원에 한함(추가 후속지원 제외)
2) 추가 후속지원(최대 2년) 가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사업은 한정된 분야에 대한 정책 패키지라는 사업목적이 내실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융자, 기술보증, R&D지원 및 수출바우처 등 다른 지원사업과의 연계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초격차 스타트업 1000+사업은 다른 정책패키지와의 지원연계가 사업의 핵심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패키지 지원 활용비율이 낮고, 특히 신규 분야일수록 패키지 지원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임.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연계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종류별로 살펴보았을 때 정책자금융자는 10.5%, 기술보증은 18.9%, R&D 지원은 13.5%, 수출바우처는 13.5%로 연계지원활용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구체적으로는, ① 정책자금 융자의 경우,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분야는 지원실적이 전무했고, 빅데이터・AI 분야 역시 지원실적이 1건에 불과하였음. ② 기술보증의 경우,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분야는 지원실적이 전무하였고, 양자기술 분야는 지원실적이 1건에 불과하였음. ③ R&D 지원의 경우, 양자기술 분야는 지원실적이 전무하였고,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분야의 지원실적은 1건에 불과하였음. ④ 수출바우처의 경우,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분야의 지원실적은 전무하고, 우주항공・해양 분야의 지원실적은 1건임.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연계 지원현황]

(단위: 개, %, 백만원)

구 분 (지원기간)	전체 지원기업 (A)	정책자금 융자			기술보증		
		지원기업 (B1)	지원율 (B1/A)	평균 지원액	지원기업 (B2)	지원율 (B2/A)	평균 지원액
시스템반도체	66	3	4.5	300	14	21.2	902
바이오헬스	156	10	6.4	315	36	23.1	1,299
미래 모빌리티	91	14	15.4	419	16	17.6	1,531
친환경에너지	55	8	14.5	983	11	20.0	1,631
로봇	57	13	22.8	215	11	19.3	1,060
빅데이터・AI	35	1	2.9	1,000	4	11.4	628
사이버보안・네트워크	21	2	9.5	200	2	9.5	1,045
우주항공・해양	12	2	16.7	300	-	-	-
차세대원전	5	-	-	-	-	-	-
양자기술	5	-	-	-	1	20.0	1,235
계	503	53	10.5	426	95	18.9	1,256

구 분 (지원기간)	전체 지원기업 (A)	R&D 지원			수출바우처		
		지원기업 (B3)	지원율 (B3/A)	평균 지원액	지원기업 (B4)	지원율 (B4/A)	평균 지원액
시스템반도체	66	9	13.6	125	9	13.6	36
바이오헬스	156	19	12.2	122	15	9.6	34
미래 모빌리티	91	16	17.6	127	10	11.0	33
친환경에너지	55	7	12.7	127	9	16.4	34
로봇	57	6	10.5	124	15	26.3	36
빅데이터・AI	35	8	22.9	134	5	14.3	28
사이버보안・네트워크	21	1	4.8	143	4	19.0	33
우주항공・해양	12	1	8.3	120	1	8.3	45
차세대원전	5	1	20	120	-	-	-
양자기술	5	-	-	-	-	-	-
계	503	68	13.5	120	68	13.5	3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연계지원 실적이 부진한 딥테크 분야는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등 2024년도 사업에 새롭게 추가된 산업분야로 나타남.[13)]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개편내역]

연 도	2020~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사업명	BIG3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사업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신산업 분야) 사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좌동
지원분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우주항공·해양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차세대원전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좌동
	총 3개	총 5개	총 10개	10개

주) 일반(초격차) 분야 한정. 소부장 및 비대면 분야는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한 총 1,000개사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이고, 이를 위해서는 소수의 유망 스타트업 1~2개 아니라 해당 산업군의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정 분야를 선별하여 정책 패키지 지원을 연계하는 주된 목적은 한정된 자원의 집중 투입을 통해 미래산업의 창업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동시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연계지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이 단순히 사업화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정책패키지와의 연계지원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신규 스타트업은 2024년 4월 19일에 협약을 체결하여 R&D, 정책자금 등 연계지원을 신청하기에 기간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또한, 이 사업의 딥테크 분야는 금융위원회 소관의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 펀드’ 및 ‘원전산업성장펀드’에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이 있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창업 후 10년 이내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투자지원과 이 사업을 함께 연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기업이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업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중 산업은행 출자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연도	총 조성규모	2025년도 예산안	투자방식	투자대상
혁신 성장 펀드	2023~2027	15조원	2,000억원	블라인드 프로젝트	(혁신산업펀드) 혁신성장분야, 신성장 4.0, 글로벌초격차 등 (성장지원펀드) 창업후 3년 이상 경과, 기업가치 500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등
반도체 생태계 펀드	(기존) 2023~2025 (추가) 2025~2027	(기존) 3,000억원 (추가) 8,000억원	300억원	블라인드 프로젝트	반도체 제조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및 스케일업·인수합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중소·중견기업
원전산업 성장펀드	2025	1,000억원	400억원	블라인드	원전 관련 설계·기자재·정비등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

자료: 금융위원회 예산안 설명자료를 재가공

4. 딥테크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신규): 대기업과의 협업 지원 시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기여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딥테크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 은 검증된 벤처·스타트업을 발굴·추천하여 대기업 수요에 기반한 매칭 후 딥테크 벨류업 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업을 지원하려는 신규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순증된 7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4]

[2025년도 딥테크 스타트업 벨류업 프로그램 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민관협력창업자육성	184,506	186,281	1,775	1.0
민관협력오픈이노베이션지원	11,143	20,000	8,857	79.8
딥테크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	-	7,000	7,000	순증

‘딥테크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 은 기존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지원 사업과 달리, 대기업의 스타트업 추천에 따라 스타트업 기업의 리스트를 제공하여 대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연계·협력에 필요한 탐색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이 있음. 2025년 예산안은 딥테크 스타트업 50개사에 대해 1억 4,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70억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의 자부담 없이 전액 국고지원으로 창업진흥원에 출연할 계획임.

이 사업은 ① 추천 요청, ② 리스트 제공, ③ 밋업(meet-up), ④ 협업으로 진행될 예정임. ① 대기업은 밸류업 허브센터(공모로 선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스타트업 추천을 요청하면, ② 허브센터는 기본 그룹(초격차 1000+, 스케일업 팁스, 아기유니콘, 팁스)과 지방중기청장이 추천하는 지역 창업·벤처기업 중에서 선별하여 리스트를 제공하고, ③ 대기업은 이 중 협업 희망 스타트업을 선정(2~3배수)하여 허브센터에 통보하며, ④ 밸류업 특화 및 공통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14) 일반회계-민관협력창업자육성(5132-302)(창업정책관)

[딥테크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 개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딥테크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대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스타트업을 추천하고 스타트업이 이에 맞는 개념실증 및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기업이 자사의 사업수요 충족을 넘어서 스타트업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직·간접 투자지원 등 구체적인 성장 기여방안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4년 상반기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로부터 현장의 수요제기에 따라 추진된 신규사업으로,[15]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탐색비용으로 인한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긍정적인 사업목적이 있음. 대기업이 자사의 수요에 맞는 스타트업 기업 추천을 요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별하여 대기업에게 리스트를 제공하는 경우 탐색비용이 감소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수요에 맞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스타트업 역시 대기업 수요에 맞는 개념실증(PoC)[16] 등을 추진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사업[17]처럼 대기업·스타트업의 비용부담 없이 100% 국비 출연사업으로 계획되고 있음.

---

15)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4년 3월 지역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서 건의되어 시작된 사업임. 대기업의 기술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역량 있는 스타트업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고, 스타트업 발굴 담당자는 제대로 된 기업을 찾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수기업 데이터를 목록화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에 제공하는 협업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제기되었음.

16) 개념실증(PoC; Proof of Concept)은 특정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이 실제 구현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소규모 실험적 프로젝트로, 본격 사업 도입 이전에 수행하는 사전 테스트임.

17)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개요

이에 대기업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 부담 차원에서 협업 스타트업 대상 직·간접투자 등 스타트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을 넘어 철저히 대기업과 스타트업 양측 기업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할 정도로[18] 시장성 및 사업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그런데 대기업 입장에서 자사가 원하는 비공개 수요기술을 획득하거나 스타트업의 제안을 받아 자사의 사업수요 충족에는 적극성을 보일 유인이 있지만, 스타트업의 성장에도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음.

2024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기업에 사전조사한 결과, 대기업이 원하는 비공개 수요기술을 매칭하거나 우수 스타트업의 제안을 매칭하는 것에는 대부분 관심을 보이나, 스타트업의 글로벌 동반 진출에는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지원유형		지원내용
① 문제해결형		■ 민·관 협력을 통해 전략형 협업이 필요한 분야 발굴·기획 및 전략적 협업과제 출제·공모를 통해 스타트업 발굴지원
② 자율제안형	②-1 민간연계형	■ 수요기업 자체 또는 공동(목적, 분야, 지역 등) 오픈이노베이션 공모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스타트업 중 우수 스타트업 추천시 후속 연계 정부지원
	②-2 클러스터 연계형	■ 앵커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 간 공동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스타트업 중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 내 스타트업과의 협업 추천 시 정부지원
③ 수요기반형		■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Pool내의 스타트업간 니즈(Needs)가 부합하는 경우, 협업관계(MOU) 구축 및 협업지원금 지원

18)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최고의 대기업-벤처·스타트업이 만나 함께 도약하는 계기를 만든다”, 2024.8.21.

[대기업-스타트업 개방형 혁신 수요분야 조사결과]

대기업명	대기업이 원하는 비공개 수요기술 매칭	우수 스타트업의 제안 매칭	글로벌 동반 진출 지원
A사		O	
B사	O	O	O
C사	O	O	O
D사	O	O	
E사	O	O	
F사	O	O	
G사	O	O	O
H사	O	O	O
I사	O	O	
J사	O	O	
K사		O	O
L사	O	O	
M사	O	O	
소계	84.6%(11/13)	100%(13/13)	38.5%(5/13)

주) 중소벤처기업부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사전조사 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2024.6)의 유선 수요조사 결과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를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딥테크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참여 대기업 공고 시 대기업 자체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 보유여부를 평가하고, 대기업이 참여 스타트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계획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 사업은 스타트업 1개사당 1억 4,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데,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 사업 지원내용이 대기업이 원하는 개념실증과 시제품 등을 만드는 것이라면 여기에 대기업도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 등의 연계 지원 또는 직·간접투자 등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또한, 이 사업을 통해 대기업이 원하는 스타트업의 비공개 기술의 협업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기술·영업비밀 등이 대기업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사실상 유출되지 않도록[19] 기술보증기금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수행하는 기술보호·기술신탁 등의 사업에 필요한 수수료를 감면하고 관련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스타트업의 기술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20]

19) 디지털타임스, “법 있으면 뭐하나...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매년 수백억”, 2024.10.6.

20)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 집중지원을 통한 공정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임.(관계 부처 합동,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방안」, 2024.10.1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 출>

5. 지식산업센터(자율):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지식산업센터(자율)’ 사업은 비수도권지역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19억 2,900만원(34.4%)이 증액된 856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21)]

[2025년도 지식산업센터(자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지식산업센터(자율)	63,770	63,770	85,699	21,929	34.4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 편성되어, 예산안 편성 및 심사를 통해 건립지역과 예산을 결정하였으나, 2023년부터 지역자율계정에 편성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포괄보조사업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식산업센터(자율)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비수도권 지역에 임대 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에게 사업 공간 제공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시행주체) 지자체(자치단체자본보조), 건립비의 70% 이내(160억 한도)
○ (추진배경) 2009년 고위당정회의에서 비수도권 지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2012년부터 추진
○ (추진현황) 총 57개 센터(완료 19, 건립 중 38 / 2024년 신규 11)
* 세종·제주 계정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 지식산업센터(자율)(5153-303)(지역기업정책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현황]

구 분	1차 (2012~2016)	2차 (2015~2018)	3차 (2016~2019)	4차 (2017~2020)	5차 (2018~2021)	6차 (2019~2022)
지 역	부산(북구) 대구(북구) 광주(동구)	대구(수성) 대전(동구) 경남(진주)	대구(달서) 충북(청주) 전북(전주)	울산(남구) 전북(전주) 경북(포항)	부산(남구) 강원(원주) 충남(천안) 전남(고흥)	강원(춘천) 전북(남원) 전남(나주) 전남(영광) 경남(창원)
센터 수	3	3	3	3	4	5
진행 사항	운영 중	운영 중	운영 중	운영 중	운영 중	운영 4, 공사 1
구 분	**7차 (2020~2023)**	**8차 (2021~2025)**	**9차 (2022~2026)**	**10차 (2023~2027)**	**11차 (2024~2028)**	
지 역	부산(강서) 대구(북구) 광주(북구) 충북(제천) 충남(홍성) 전북(전주) 전남(광양)	충북(충주) 충북(영동) 충남(아산) 충남(서천) 전남(화순) 경북(경산)	광주(남구) 강원(강릉) 충남(금산) 전북(김제) 전북(순창) 경북(영천) 경남(김해)	광주(북구) 울산(울주) 충남(천안) 전남(순천) 경남(밀양)	광주(광산) 대전(중구) 대전(유성) 충북(청주) 충북(보은) 충북(증평) 충남(공주) 충남(보령)	전북(익산) 전남(목포) 경남(양산)
센터 수	7	6	7	5	11	
진행 사항	공사 중	공사 4, 설계 2	설계 중	설계 중	설계 준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지식산업센터(자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단계에서의 집행부진 및 예산 이월 상황과 현재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의 적정 규모로 예산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지역자율계정에 편성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교부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집행가능 규모에 비해 많은 예산을 교부 받고 연내 집행하지 못한 채 실집행 단계에서 이월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예컨대, 2023년 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이 교부된 30개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중 19개의 건립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70% 미만이고, 이 중 6개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보다 당해연도 집행액이 적어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재이월되었으며, 4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집행액이 전무하였음.[22] 또한, 15개의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사업은 2023년 교부된 국비 보조금의 80% 이상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2024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단계에서의 집행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2024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전년도 이월액 830억 9,200만원이 본예산 637억 7,000만원보다 많은 상황으로, 이를 연내 집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2024년 7월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551억 100만원을 교부받고, 전년도 이월액 830억 9,200만원을 더한 교부현액 1,381억 9,300만원 중 333억 1,000만원만 집행하였음.

특히, 2021~2023년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전년도 이월액에 비해 당해연도 이월액이 연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이월액이 누적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현액 대비 실집행액 비율을 살펴보면, 2024년 7월 기준으로 24.1%에 불과한데, 2021년에는 52.5%, 2022년에는 51.3%, 2023년에는 60.0%로 낮은 상황임.

[2021~2024년 지식산업센터(자율)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C)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B/A)	실집 행률 (B/C)
	본예산	추경(A)									
2021	61,998	61,998	50,648	50,648	37,527	88,175	46,333	41,842	-	74.7	52.5
2022	61,804	48,804	61,154	61,154	41,842	102,996	52,871	49,615	510	108.3	51.3
2023	123,408	123,408	123,408	123,408	49,615	173,023	89,931	83,092	-	72.9	60.0
2024.7.	63,770	63,770	55,101	55,101	83,092	138,193	33,310	-	-	52.2	24.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2) 2023년 보조금의 재이월 사업(6개): 광주창업기반성장지원센터, 아산공공임대형지식산업단지, 화순바이오헬스지식산업단지, 제천천연물지식산업단지, 금산공공임대형지식산업단지, 김해오픈이노베이션지식산업단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0원 사업(4개): 화순바이오헬스지식산업단지, 강릉공공임대형지식산업단지, 금산공공임대형지식산업단지, 김해오픈이노베이션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자율계정 특성 상 중앙 부처 차원의 실집행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건축 공사 시에 행정절차 지연 및 건설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사업진도와 집행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증가할 수준으로 사업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34.4%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2025년 예산안 역시 연례적인 추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액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이미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일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지속적인 구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공실률 관리를 위한 이 사업의 추진계획 조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4년 8월 현재 19개소의 지식산업센터가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고, 해당 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17.7% 수준임.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공공임대형으로 민간 지식산업센터에 비해 임차료 등의 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10% 이상인 지식산업센터가 19개소 중 13개소에 달할 정도로 현재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높은 상황임.

[2023~2024년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공실 현황]

(단위: 개소, %)

연번	지자체	센터명	개소일	2023년 (연말기준)						2024년 (8월기준)					
				전체 실수	입주 기업 수	입주 실수	공실 수	입주 율	공실 률	전체 실수	입주 기업 수	입주 실수	공실 수	입주 율	공실 률
1	부산 북구	부산지식산업센터 (금곡점)	2017.3.	68	39	66	2	97.1	2.9	68	36	68	0	100	0
2	대구 북구	대구지식산업센터	2016.11.	46	25	37	9	80.4	19.6	46	28	39	7	84.8	15.2
3	광주 동구	I-PLEX광주 (광주지식산업센터)	2016.7.	63	54	59	4	93.7	6.3	64	55	56	8	87.5	12.5
4	대구 수성구	SW융합 테크비즈센터	2019.3.	50	31	36	14	72.0	28.0	50	34	38	12	76.0	24.0
5	대전 동구	대전지식산업센터	2020.4.	51	29	48	3	94.1	5.9	51	31	47	4	92.2	7.8
6	경남 진주	진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2020.1.	60	30	53	7	88.3	11.7	60	31	56	4	93.3	6.7
7	대구 달서구	제봉뜰 두류봉제 지식산업센터	2021.1.	29	28	29	-	100	0.0	20	19	20	0	100	0

(단위: 개소, %)

연번	지자체	센터명	개소일	2023년 (연말기준)						2024년 (8월기준)					
				전체 실수	입주 기업 수	입주 실수	공실 수	입주 율	공실 률	전체 실수	입주 기업 수	입주 실수	공실 수	입주 율	공실 률
8	충북 청주	미래누리터	2019.12..	38	23	38	-	100	0.0	38	23	37	1	97.4	2.6
9	전북 전주 (덕진구)	전주 혁신창업허브	2020.8.	55	44	49	6	89.1	10.9	55	46	49	6	89.1	10.9
10	울산 남구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2020.10.	56	26	38	18	67.9	32.1	56	30	41	15	73.2	26.8
11	전북 전주 (완산구)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2022.5.	31	22	31	-	100	0.0	31	19	28	3	90.3	9.7
12	경북 포항	포항지식산업센터	2021.3.	52	25	50	2	96.2	3.8	52	21	43	9	82.7	17.3
13	부산 남구	부산지식산업센터 (우암점)	2023.6.	40	9	11	29	27.5	72.5	40	12	16	24	40.0	60.0
14	강원 원주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2021.12..	83	31	77	6	92.8	7.2	69	35	69	0	100	0
15	충남 천안	충남지식산업센터	2023.1.	53	25	43	10	81.1	18.9	53	29	43	10	81.1	18.9
16	전남 고흥	고흥 드론센터	2021.10.	22	19	19	3	86.4	13.6	22	16	16	6	72.7	27.3
17	전북 남원	남원 화장품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	2022.7.	36	24	28	8	77.8	22.2	36	23	25	11	69.4	30.6
18	전남 영광	영광 e-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2023.8.	47	19	23	24	48.9	51.1	47	21	25	22	53.2	46.8
19	강원 춘천	춘천ICT벤처센터	2024.4.	-	-	-	-	-	-	70	34	43	10	81.1	18.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현재 운영 중인 지식사업센터의 공실률도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2024년 9월 현재 38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설계 또는 공사 중인 상황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추가구축 수요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9월 현재 설계·공사 중인 지식산업센터 현황]

(단위: 년, 백만원)

연번	지방자치단체	지식산업센터 명	선정년도	사업기간	국비	지방비	총비용
1	나주시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2018	2019-2024	16,000	10,600	26,600
2	창원시	창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2018	2019-2024	16,000	12,400	28,400
3	부산광역시	에코델타 지식산업센터	2019	2020-2026	15,960	14,340	30,300
4	대구광역시	북구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2019	2020-2025	16,000	7,000	23,000
5	광주광역시	창업기업성장 지원센터	2019	2020-2025	16,000	29,000	45,000
6	제천시	제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2019	2020-2024	16,000	13,300	29,300
7	홍성군	내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2019	2020-2024	16,000	11,290	27,290
8	전주시	전주 기술창업성장 지원센터	2019	2020-2024	16,000	13,000	29,000
9	광양시	광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2019	2020-2024	12,812	8,838	21,650
10	충주시	충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2020	2021-2025	16,000	11,800	27,800
11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2020	2021-2024	11,978	11,100	23,078
12	아산시	아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2020	2021-2026	16,000	17,000	33,000
13	서천군	서천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2020	2021-2025	16,000	7,000	23,000
14	화순군	화순 바이오헬스융복합 지식산업센터	2020	2022-2025	16,000	23,764	39,764
15	경산시	경산 지식산업센터	2020	2021-2025	16,000	33,861	49,861
16	광주광역시	광주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2021	2022-2026	16,000	20,400	36,400
17	강릉시	강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2021	2022-2026	16,000	9,000	25,000
18	금산군	금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2021	2022-2026	16,000	9,000	25,000
19	김제시	김제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2021	2022-2025	16,000	13,800	29,800
20	순창군	순창 마이크로바이옴 지식산업센터	2021	2022-2025	10,755	8,450	19,205
21	영천군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센터	2021	2022-2026	16,000	18,800	34,800
22	김해시	김해 오픈이노베이션 지식산업센터	2021	2022-2026	16,000	31,100	47,100
23	광주광역시	AI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2022	2023-2027	16,000	14,147	30,147
24	울산시	탄소중립 에너지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2022	2023-2027	16,000	10,900	26,900
25	천안시	천안 지식산업센터	2022	2023-2027	16,000	19,596	35,596
26	순천시	순천 생물전환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2022	2023-2027	16,000	16,000	32,000
27	밀양시	밀양 지식산업센터	2022	2023-2027	16,000	9,000	25,000
28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지능형 가전지식산업센터	2023	2024-2028	16,000	8,000	18,024
29	대전광역시	대전 중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2023	2024-2028	16,000	6,800	18,024
30	대전광역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2023	2024-2028	16,000	16,000	18,024
31	청주시	청주 지식산업센터	2023	2024-2028	16,000	12,000	18,024
32	보은군	보은 지식산업센터	2023	2024-2026	10502	4,501	12,526
33	증평군	증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2023	2024-2028	16,000	12,236	18,024
34	공주시	공주 지식산업센터	2023	2024-2028	16,000	13,100	29,100
35	보령시	보령 지식산업센터	2023	2024-2028	12,600	5,400	14,624
36	익산시	익산 지식산업센터	2023	2024-2028	16,000	33,500	18,024
37	목포시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2023	2024-2028	16,000	9,825	18,024
38	양산시	양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2023	2024-2028	16,000	14,000	18,02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교부받는 지역자율계정 특성 상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안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지식산업센터의 적정 공급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수 입>

6. 기타재산이자수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배당금 수취실적을 고려한 수입 계획안 증액 조정 필요

가. 개 요

‘기타재산이자수입’ 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원금회수금 및 배당금, 한국거래소 및 한국벤처투자 등의 보유지분에 대한 배당금, 사업수행을 위해 일시 보유하는 사업대기성자금의 단기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6억 5,900만원(53.3%) 증가한 76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23)]

[2025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4,986	4,986	7,645	2,659	53.3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025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계획안은 2024년도 계획액에 비해 26억 5,900만원(53.3%) 증가한 76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보유자금 평잔 및 예치금리 상승으로 인해 예치금 수익 등 이자수입이 2024년 17억 9,900만원에서 2025년 43억 9,500만원으로 25억 9,600만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창투사 배당금 등 예상액은 2024년 31억 8,600만원에서 2025년 32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음.

23)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기타재산이자수입(54-546)(벤처정책관)

[2025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계획안 세부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4계획 (수정)	4,986,000	- 예치금 수익 등 : 보유자금 평잔(88,000백만원) × 예치금리(2.045%) - 창투사 배당금 등 예상액 : 31억 8,600만원
2025계획안	7,645,000	- 예치금 수익 등 : 보유자금 평잔(119,100백만원) × 예치금리(3.690%) - 창투사 배당금 등 예상액 : 32억 5,0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한 한국거래소 및 한국벤처투자의 배당금 수취 실적을 고려하여 수입계획안을 적정 규모로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국거래소(지분율 3%), 한국벤처투자(지분율 100%) 및 창업투자조합의 보유지분에 대하여 매년 배당금을 수취하고 있고, 이는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기타재산이자수입에 인식됨.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계획안 편성 시, 창업투자조합 배당금 3억 9,000만원, 한국거래소 배당금 17억 6,800만원, 한국벤처투자 배당금 10억 9,200만원을 합하여 배당금 예산액 3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2025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한국거래소 및 한국벤처투자 배당금 수취실적을 고려할 때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한국거래소로부터의 배당금은 2022~2024년 8월 현재 지속적으로 30억원을 초과하고 있고, 한국벤처투자로부터의 배당금도 2023년 31억원, 2024년 21억 7,000만원 수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5년 수입 계획안에 비해 많은 수준의 배당금을 연례적으로 수취하고 있음.

[2021~2024년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배당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8
창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출자액 현재가치	6,055	6,271	6,491	6,491
	창업투자조합 배당금(A)	763	856	198	327
	창업투자조합 원금 회수금(B)	-	-	-	-
한국거래소 배당금(C)		2,184	3,034	3,034	3,411
한국벤처투자 배당금(D)		1,350	650	3,100	2,170
출자, 투자수입 합계액(A+B+C+D)		4,297	4,540	6,332	5,90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2021년 이후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연례적으로 계획액 대비 수납액이 2~3배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 간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 계획안 및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2021	1,800	1,800	1,800	6,683	6,683	371.3	100.0	-	-
2022	1,800	1,800	1,800	7,192	7,192	399.6	100.0	-	-
2023	4,924	4,924	4,924	11,634	11,634	236.3	100.0	-	-
2024	4,986	4,986	4,986	8,801	8,801	176.5	100.0	-	-
2025(안)	7,645	7,645	7,645	-	-	-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배당금 징수실적을 고려하여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기타재산이자수입을 적정 규모로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24)]

24) 2021~2024년 평균 배당금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경우, 창업투자조합 배당금은 5억 3,600만원, 한국거래소 배당금은 29억 1,600만원, 한국벤처투자 배당금은 18억 1,800만원으로 총 배당금 예상액은 52억 7,000만원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20억 2,000만원 증액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 출>

7. 정책자금이차보전지원 사업: 직접융자와 이차보전사업의 병행 및 이차보전지원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정책자금이차보전지원’**은 민간금융 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利差補塡)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지원 사업 등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606억 8,600만원(10,014.3%)이 증액된 612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25)]

[2025년도 정책자금이차보전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10,578	10,578	78,378	67,800	641.0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600	600	61,286	60,686	10014.3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까지 사업대상 및 목적에 따라 개별 융자사업[26)]에 산재되어 있던 이차보전 사업을 2025년부터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세부사업(1253-301) 내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일괄하여 편성하였음.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2024년까지 정책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경비성 사업으로 6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도 계획안에서는 이에 더해 이차보전금 606억 8,600만원이 추가되어 총 612억 8,600만원이 편성된 것임.

25)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1253-301)(중소기업정책실)

26)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 내 개발기술사업화 내역사업,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사업 내 혁신성장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유망기업,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사업 내 수출기업글로벌화 내역사업

[2025년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이차보전 사업 개편 현황]

(단위: 억원)

(현행)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 지원 대상	계획액	신규 공급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 지원 대상	계획액	신규 공급
혁신창업 사업화자금	개발기술 사업화	R&D 계속 종료비 부족기업 등	120	4,300	⇨	정책자금 지원성과 향상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통합)	좌동	151.9	1,526
신성장 기반자금	혁신성장 지원	업력 7년 이상 기업 (최근 3년 이내 시설도입)	42	1,600				좌동	454.9	1,400
	제조현장 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 기업 등	27	882				좌동		900
	Net-Zero 유망기업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기술 사업화 기업	12	183				좌동		201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	수출기업 글로벌화	1년간 수출 10만 달러 이상 기업 등	111.3	2,280				좌동		2,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및 2025년 정책자금 이차보전지원 내역사업의 세부편성내역]

2024년도 계획 (6억원)	2025년도 계획안 (612억 8,600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억 7,900만원 - 외부전문가 평가 수당 : 1,160개사 x 200천원 - 기타 운영 경비 : 34부서 x 1,38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억원 - 외부전문가 평가 수당 : 1,104개사 x 200천원 - 기타 운영 경비 : 34부서 x 2,33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5,300만원 - 이차보전 콜센터 : 5,300천원 x 10개월	○ 일반용역비(210-14) : 5,300만원 - 이차보전 콜센터 : 5,300천원 x 10개월
○ 관리용역비(210-15) : 1억원 - 시스템 유지보수 : 8,300천원 x 12개월	○ 관리용역비(210-15) : 1억원 - 시스템 유지보수 : 8,300천원 x 12개월
○ 국내여비(220-01) : 168,000천원 - 수요발굴, 평가, 사후관리 등 여비: 2,800개사 x 2명 x 3만원	○ 국내여비(220-01) : 147,000천원 - 수요발굴, 평가, 사후관리 등 여비: 2,450개사 x 2명 x 3만원
소계: 6억원	소계: 6억원
-	**○ 이차보전금(320-05) : 606억 8,600만원** -(신성장, 신시장) 454억 9,000만원 (신규) 450,133백만원 x 0.5(평잔) x 3%(이차보전율) + (기존) 1,291,267백만원 x 3% (이차보전율) - (개발기술) 151억 9,600만원 (신규) 152,600백만원 x 0.5(평잔) x 5.5%(이차보전율) + (기존) 200,000백만원 x 5.5% (이차보전율)
합계: 6억원	합계: 612억 8,6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첫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융자와 이차보전 병행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체계를 개편하였다는 입장이나, 2025년도 계획안 역시 세부사업만 분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병행 지원체계는 유지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 융자와 이차보전을 병행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까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 융자사업만 편성하고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023년부터 융자사업과 이차보전 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에서 병행하여 편성하였음.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기금의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27][28]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신시장진출자금(융자) 및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에서 재정융자와 이차보전 사업을 병행하였음.

국회와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융자 및 이차보전 병행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체계를 개선하도록 지적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 융자 및 이차보전 병행지원 관련 지적사항]

구 분	주요 지적 내용
2022년 결산 산자중기위 검토보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금관리주체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감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융자 사업의 이차보전 전환기준을 감안하여 이차보전과 재정융자를 병행하고 있는 사업의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예산안 산자중기위 검토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융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의미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차보전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융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 대상자간 형평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27) 융자사업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
○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 수혜자 확대 및 지출 효율화 도모
○ 복지성 지원 등 민간대체가 어렵거나, 재원절감 효과가 없는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 검토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2.3., p.31.)

28) 이차보전사업 전환은 4대 재정혁신과제로 선정됨. 이차보전 사업전환의 세부내용으로, ① 지출규모는 절감하되 수혜규모는 유지·확대, ② 코로나19 등 과정에서 증가한 정책금융 융자사업들에 대한 이차보전 방식 전환, ③ 담보능력이 우수한 우량기업들에 대한 지원의 경우 이차보전방식 전환, ④ 직접융자방식(전대방식 포함)과 이차보전 방식에 따른 소요비용 비교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방식적용 등의 방침을 마련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 2022.5.)

구 분	주요 지적 내용
2023년 결산 예결위 검토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목적과 지원대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각종 융자사업의 지원 방식이 직접융자와 이차보전을 병행하는 대신,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게 지원방식을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2년도 감사원 국가 결산검사보고서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민간금융시장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융자에 필요한 원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국채발행 감소, 기금간 자금조정 등의 지출구조조정 효과가 있는 반면, 원금 회수없이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지출만이 발생하므로 사업량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등의 단점도 있다. 한 사업에 대해 효율적·합리적인 기준없이 기금의 재정상황 등만을 고려하여 재정융자와 이차보전방식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계획안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이차보전사업을 통합 편성하여 융자 지원체계를 개선하였다는 입장이나, 실제로는 동일한 세부사업 내에서 융자 및 이차보전사업을 수행하던 종전 방식만 변경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정책자금의 융자 및 이차보전을 병행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종전과 차이가 없음.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사업 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4년 기준)	구분	2024년		2025년	지원대상	지원내용
			계획액	집행액 (2024.8.)	계획액		
신성장기반자금	혁신성장 지원	융자	825,250	712,009	690,750	융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시설자금 필요기업	(융자)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
		이차보전	10,800	4,580	15,300		
		전체	836,050	716,589	706,050	이차보전: 업력 7년 이상 중 최근 3년 이내 시설 도입기업으로 운전자금 필요기업 (민간금융 활용 가능기업)	(이차보전) 최대 3%p 이내
	제조현장 스마트화	융자	469,500	392,820	466,610	융자: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중 시설자금 필요기업	(융자) 정책자금 기준금리
		이차보전	6,720	2,853	9,390		
		전체	476,220	395,673	476,000	이차보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중 운전자금 필요기업 (민간금융 활용 가능기업)	(이차보전) 최대 3%p 이내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4년 기준)	구분	2024년		2025년	지원대상	지원내용
			계획액	집행액 (2024.8.)	계획액		
	Net-Zero 유망기업	융자	94,000	66,373	93,750	융자: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 친환경 제조전환 추진기업 중 시설자금 필요기업	(융자)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
		이차보전	2,674	1,227	3,250		
		전체	96,674	67,600	97,000	이차보전: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 친환경 제조전환 추진기업 중 운전자금 필요기업 (민간금융 활용 가능기업)	(이차보전) 최대 3%p 이내
	스케일업 금융	융자	100,000	14,400	60,000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융자) 신용평가등급별 및 발행증권별 차등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융자	100,000	94,010	200,000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융자) 정책자금 기준금리
	수출기업 글로벌화	융자	139,370	89,968	182,450	융자: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 (시설, 운전자금 필요기업)	(융자) 정책자금 기준금리
		이차보전	11,130	4,531	17,550		
		전체	150,500	94,499	200,000	이차보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 중 민간금융을 활용한 운전자금 필요기업	(이차보전) 최대 3%p 이내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창업기반 지원자금	융자	1,835,800	1,547,938	1,335,800	융자: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	(융자) 정책자금 기준금리 - 0.3%p
	개발기술 사업화	융자	200,000	167,833	300,000	융자: 개발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융자) 정책자금 기준금리
		이차보전	12,000	319	15,196		
		전체	212,000	168,152	315,196	이차보전: 2024년 R&D 계속·종료비 부족기업 (민간금융 활용 가능기업)	(이차보전) 5.5%p

주)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구분은 2024년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된 기준에 따라 작성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융자재원 한계를 보완하고 고금리 시기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이차보전을 도입하였으며, 정책목적에 따라 융자와 이차보전의 지원 대상과 용도를 구분하여 운영 중이라는 입장임. 즉, 수출·고용창출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크면서 기업규모나 담보력 면에서 민간금융 이용이 용이한 중소기업은 이차보전을, 기술사업성이 우수하나 저신용·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직접융자 중심으로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 경상지출에 해당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이차보전 방식은 적은 예산으로 재정융자와 동일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재정지출 축소가 가능하나, 결과적으로 원금 회수 없이 재정지출만 발생함.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정부가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이유는[29] 본질적으로 정부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하여 중소기업에 융자를 수행하고, 원리금 회수 시 이자수익을 바탕으로 기금운영 재원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융자 부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를 고려할 때, 경상지출 성격의 이차보전 방식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재원조달 구조에 부합하지 않고 장기적 재정 누수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이차보전 지원방식은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자금 상환이 가능한 우량기업이 선별되어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반면, 신용도 등이 취약하여 지원 필요성이 더 높은 대상에게 더 높은 융자금리를 부과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음.

특히,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되었던 2022년 이후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3%대에서 5%대로 가파르게 상승하여 이차보전 지원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성과 타당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2024년에는 매월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차보전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채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2022~2024년 중소기업 대출금리 현황]

(단위: %)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52	3.59	3.57	3.67	3.79	4.06	4.36	4.65	4.87	5.49	5.93	5.76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67	5.45	5.28	5.14	5.23	5.37	5.32	5.24	5.34	5.35	5.42	5.31
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28	4.98	4.93	4.81	4.85	4.79	4.69	4.59	-	-	-	-

주)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3.3.2.1.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둘째,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의 이차보전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이 사업은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고,[30] 이차보전 지원액의 규모 역시 2024년 집행액을 고려할 때 일부 과다추계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계획액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민간금융 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 지원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지원 사업(시스템 유지보수, 콜센터 등의 운영비용 등)으로, 이차보전 지원금과는 사업목적과 내용이 상이함.

따라서, 이 사업의 이차보전 지원금 606억 8,600만원은 사업목적 상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아니라 다른 세부사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융자)(1261-305)’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에 더해, 2024년 이차보전 계획액 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2025년 이차보전지원금의 계획액 규모는 실제 집행가능한 규모에 비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차보전 사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기준 신성장기반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계획액 201억 9,400만원 대비 집행액은 86억 6,000만원으로 2024년 8월 기준으로 42.9%만 집행되었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계획액 113억원 대비 집행액은 45억 3,100만원으로 40.7%만 집행되었으며,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계획액 120억 대비 집행액은 3억 1,900만원으로 2.7%만 집행되었음.

30) 정책자금 이차보전(융자)(1261-305)

이 중 혁신창업화사업자금 내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사업은 2024년도 계획안에 연내 4,300억원의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것으로 편성되고, 2025년도 계획안에는 2024년 기존대출 2,000억원과 2025년 신규대출 1,526억원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것으로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2024년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R&D)가 감액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대출 시 최대 5.5%p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 지원실적은 계획 대비 미미하고 2025년도 예산안의 R&D예산안이 2023년도 수준으로 원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도 신규 신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개발기술사업화 이차보전 내내역사업의 이차보전 현황 및 예상]

(단위: 억원, %)

구 분			24.2사분기	24.3사분기	24.4사분기 (예상)	2025 (예상)	누적
개발기술	신규	이차보전 대상 대출금액	963	502	27	1,526	3,018
		이차보전율	5.5	5.5	5.5	5.5	-
		이차보전액	3	18	21	152	194
	누적	이차보전 대상 대출금액	963	1,465	1,492	1,526	3,018
		이차보전율	5.5	5.5	5.5	5.5	-
		이차보전액	3	21	42	194	194

주) 신규는 해당 분기에 신규 이차보전지원에 편입된 대출에 대해 작성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8.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사업: 2024년 신규 사업의 실적 점검 후 점진적 확대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동반성장네트워크론’**은 발주서를 기반으로 수주기업에 납품 전 생산자금을 지원하고 납품 후 발주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인 동반성장네트워크론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400억원(40.0%)이 증액된 1,400억원이 편성되었음.[31)]

[2025년도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밸류체인안정화자금	138,200	138,200	200,000	61,800	44.7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100,000	100,000	140,000	40,000	40.0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025년도 동반성장네트워크론 내역사업 세부편성내역]

○ 융자금(1,395억원)
- 139,500백만원(265백만원×526개사)
  * 단가 : 2022~2023년 정책자금 건당 지원금액 2억 6,500만원(9조 9,869억원/3만 7,73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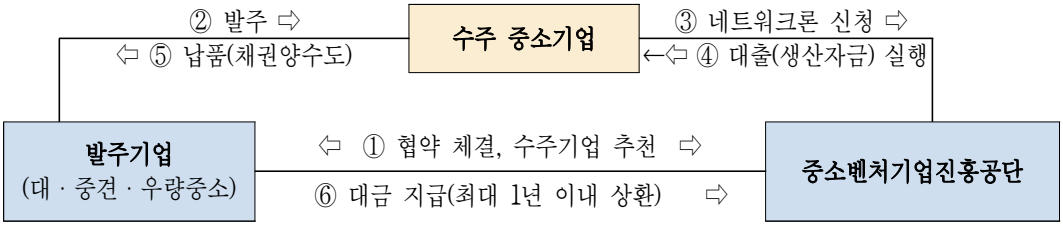
○ 지원체계 구축(5억원)
- 전용 플랫폼 운영 용역비(민간협업방식) 2억 4,000만원
- 자금 사후관리,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타기관(금융결제원, KODATA 등) 정보 활용비 6,000만원
- 홍보물 제작, 업무협약, 평가위원회 운영 등 기타운영비 3,900만원
- 연계시스템 및 운영서버 유지보수 용역비 1억 600만원
- 수요발굴, 업무협약 등 출장비용 500만원
- 대·중견기업 전용 평가모형 개발 연구용역 5,0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중견·우량중소기업(발주기업)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수주)중소기업이 납품 전 초기 생산단계에 발주서만으로 생산자금을 융자받고, 발주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융자액을 상환하는 제도로, 2024년 신규 사업으로 1,000억원이 편성되었음.

31)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밸류체인안정화자금(1261-307)(중소기업정책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개요도]



주 1) 수주기업 : 계약(발주서)에 근거하여 발주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2) 발주기업 : 수주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종전의 매출채권 팩토링은 중소기업이 물품의 "납품 이후"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출채권을 양수하고 구매기업에 대금 상환을 청구하는 제도인 것에 반해,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소기업이 물품의 "납품 이전" 생산자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산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및 매출채권 팩토링 비교]

구 분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매출채권 팩토링
특징	납품 전 생산자금 대출	납품 후 매출채권 매입 통한 유동화 지원
지원방식	· (납품 전) 발주서 근거로 수주기업에 생산자금 신용 대출 ·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	· 판매기업 납품 후 확정 매출채권을 양도받아 유동화 지원, 구매기업에 상환 청구
지원대상	· (발주기업) 대 · 중견 · 우량중소기업 · (수주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협약 체결한 발주기업 추천 중소기업	· (구매기업) 대 · 중견 · 중소기업 · (판매기업)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지원기간	· 365일 이내(15일 단위 선택)	· 90일 이내
지원금액	· 발주금액의 80% 이내	· 매출채권액(세금계산서) 총액 이내
지원한도	· (발주기업) 연 100억원 · (수주기업) 연 15억원	· (구매기업) 연 30억원 · (판매기업) 연 10억원
지원효과	· 발주서를 바탕으로 생산자금 확보	·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로,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은 총 147건, 610억 9,659만원의 생산자금 대출을 지원하였고, 1건당 평균 대출액은 4억 1,562만원, 평균 대출 기간은 198.7일임.

[2024년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대출 세부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기준: 2024.9.30.)

분류	2개월 이내	2~3개월	4~6개월	6~9개월	9~12개월	1년	합계
대출기간	45일, 60일	75일, 90일	120일, 135일, 150일, 165일, 180일	195일, 210일, 240일, 270일	285일, 300일, 315일, 330일, 345일	365일	-
대출건수	12	28	57	8	11	31	147
(비중)	8%	19%	39%	5%	7%	21%	100%
대출액	3,563	8,283	21,087	5,572	4,941	17,650	61,096
(비중)	6%	14%	35%	9%	8%	29%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를 재가공

나. 검토의견

이 사업은 2024년 신규 편성되어 아직 사업기간이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었는데, 대출자금의 공급실적,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도 계획안 편성의 필요성 및 적정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전용플랫폼 구축이 완료된 2024년 5월에야 생산자금 대출자금 집행을 개시하였는데, 8월까지는 대출자금 집행액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었으나 9월 집행액이 크게 증가하였음.[32]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의 참여기업이 증가할수록 신속 집행이 가능하므로, 향후 집행속도 역시 점진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전망함.

이 사업은 생산자금 대출지원 시 대출기간이 365일 이내에서 15일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데, 수주기업의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금 상환 후 대출금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고, 협약 참여 발주기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 대출가능액은 계획액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이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인 관계로 아직 대출 부실실적이 없어 구체적인 대출 부실가능성을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수주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대출 부실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감

32) 2024년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대출액 누적집행액: (5월) 144억원 → (6월) 212억원 → (7월) 265억원 → (8월) 350억원 → (9.27) 611억원

안할 필요가 있음.[33]

한편 이 사업의 발주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우량중소기업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되는데, 협약 체결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추진실적이 달라질 수 있음. 참고로, 2024년 9월말 현재 51개사(대기업 6개사, 중견기업 16개사, 중소기업 29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즉, 이 사업은 대출자금의 월별 공급 실적, 대출 부실률 및 협약·참여기업 수 등에 따라 대출공급 가능 규모 및 대출공급 예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2024년 신규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워 2025년도 계획액의 적정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2026년부터 사업수요에 부응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계획액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3) 수주기업이 납품을 미이행하고 생산자금 대출액을 상환하지 않거나, 발주기업이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생산자금 대출액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 부실로 작용할 수 있음.

9. 점프업 프로그램 사업(신규): 사업전환 대상이 아닌 이 사업의 법적 근거 검토 및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사업전환촉진’**은 중소기업의 사업구조전환을 위한 구조혁신 진단, 계획수립 지원 및 평가, 점프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299억 100만원(407.3%)이 증액된 372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34)]

이 중 점프업 프로그램 관련 내내역사업인 ‘점프업 프로그램 디렉터, 오픈바우처 및 네트워킹 지원’ 284억원과 ‘점프업 프로그램 신규체계 구축 및 운영’ 15억원은 2025년도 계획안에 신설되었음.

[2025년도 점프업 프로그램 관련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재도약촉진	10,779	10,779	41,549	30,770	285.5
사업전환촉진	7,342	7,342	37,243	29,901	407.3
점프업 프로그램 디렉터, 오픈바우처 및 네트워킹 지원	-	-	28,400	28,400	순증
점프업 프로그램 신규체계 구축 및 운영	-	-	1,500	1,500	순증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점프업(Jump-Up) 프로그램이란, 유망 중소기업이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스케일업(Scale-Up; 기업규모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려는 종합적인 정책패키지 사업임.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역량과 성장의지를 갖춘 중소기업 100개를 선발하고,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금융지원·연계지원 등 범부처 정책패키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임.

34)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재도약촉진(5161-302)(중소기업정책실)

[점프업 프로그램 목표 및 전략]

목표	민·관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으로 미래 신성장 분야의 중견(후보)기업으로 도약	
지원 전략	(1)	혁신역량과 성장의지를 갖춘 중소기업 100개 선발
	▪ AI+현장	AI 기반의 정량 평가 및 민간역량을 활용한 현장평가
	▪ 심층토론	기업별 발표·토론 방식으로 심층평가
	(2)	성공적 스케일업 위한 전용 프로그램 신설
	▪ 디 렉 팅	디렉터 & 서포터를 매칭, 솟주기 맞춤형 지원
	▪ 바 우 처	오픈팹 바우처를 신설, 스케일업 도전 마중물 제공
	▪ 네트워킹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 제공
	(3)	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범부처 정책 패키지 지원
	▪ 금융지원	대규모 자금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금융 패키지 지원
	▪ 연계지원	핵심기술 확보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 연계

자료: 관계 부처 합동, 「유망 중소기업의 Scale-Up을 위한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 2024.8.

이 사업은 중소기업 100개 사에 대해 ① 전담 디렉터 24억원(기업당 2,400만원), ② 네트워킹 10억원(기업당 1,000만원), ③ 오픈바우처 250억원(기업당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스케일업 전용 프로그램 예산안 284억원과, 이 사업의 운영지원비용 15억원으로 총 299억원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첫째, 이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과 달리 중소기업의 사업확대(Scale-up)를 위한 사업으로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2025년 계획안과 같이 '재도약촉진' 사업에 편성된 것은 사업 목적에 비추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세부사업인 재도약촉진 사업(5161-302)은 중소기업이 경제환경 및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개선이 필요하거나, 사업을 전환하거나, 재창업하는 경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전환' 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위한 계획수립 지원, 정보 제

공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음.[35)36)]

그런데, ‘점프업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사업확대)’에 해당하고,「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37)]

---

35)「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전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다.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사업 분야”란 미래 유망업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분야
나.「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
다.「산업융합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
라.「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 분야
마.「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사업 분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

36) 사업전환촉진사업 개요

○ 목적: 경제환경 및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한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도모
○ 지원근거:「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전환유형: 기존 업종전환·추가만을 허용하던 사업전환 범위를 품목전환, 제공방식 변화까지 사업전환 범위로 인정(2023년 개정)

구 분	주요 내용	전환비율
업종전환	현재 영위 업종 사업 폐지 →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100%
업종추가	현재 영위 업종 축소 또는 유지 →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신사업추가	신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 추가, 새로운 제공방식 도입	-

* 전환비율 : 전환·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지원대상: ①경제환경 변화로 경쟁력 확보가 어렵거나, ②미래 유망업종·국가 전략업종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신청기업의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전환계획 승인 이후에는 정책자금 융자, R&D 등을 연계 지원

기 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본사)	→	평가위원회	→	기 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 원스탑 신청 시 사업전환 계획 제출		사업전환계획 타당성 평가 (현장실사) 후 추천		사업전환계획 예비심사		사업전환 평가위원회 최종승인		계획 이행 (3년)		연계 지원 (융자)		이행 실적 조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7) 이 사업이「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분야를 축소·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의 비중을 증가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는데, 이 사업의 계

즉, 이 사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사용범위 중 하나인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규정에서도 사업 수행을 위한 명확한 근거규정은 없는 상황임.[38]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사업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지출사업이라는 점에서 기금 재원을 사용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고, 특히 사업전환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전환촉진’ 내역사업에 편성한 것은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보임.

둘째, 이 사업의 ‘디렉팅’과 ‘오픈바우처’는 기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 및 ‘수출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고, 특히 네거티브 방식의 오픈바우처는 사용제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보조금의 부정 사용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디렉팅’은 ① (전담디렉터) 기업인 민간투자사 등을 통해 스케일업 전략을 관리하고, ② (전략서포터) 신사업·신시장 진출 등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며, ③ (기술서포터) 스케일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획 및 기술 솔루션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오픈 바우처’는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각종 사업화 비용의 70%를 매년 2억 5,000만원씩 3년간 최대 7억 5,000만원 형태로 지원하되, 네거티브 통제 방식을 도입하여 지원 금액(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서비스와 서비스 수행기관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39]

한편 일반회계의 세부사업인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40]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진단을 거쳐 기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5억 8,600만원(10%) 증액된 613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

획안에서는 사업분야의 변경을 대상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3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9.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
13.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협업사업의 지원

39) 중소벤처기업부는 오픈 바우처의 사용제한 대상으로 인건비, 식비를 예시로 들고 있음.

40) 일반회계-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4835-301)(지역기업정책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전략 컨설팅, 융복합컨설팅 등,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획득 관련 기술지원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점프업 프로그램의 ‘디렉팅’ 사업과 유사하고,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지원을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픈 바우처’와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 주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재기컨설팅 : 일부 업종(주점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컨설팅(4)	▲경영기술전략, ▲융복합컨설팅 ▲산업안전, ▲(탄소중립 전용)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컨설팅 전용)재기컨설팅
기술지원(4)	▲시제품제작, ▲(탄소중립 전용)시스템 및 시설구축, ▲기술이전, ▲IP 획득 및 시험·인증
마케팅(3)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지원

○ 지원금액 : 기업당 50백만원 한도(정부지원금 기준)
○ 보조율 : 매출액에 따라 40~85% 차등 지원
* 3억원 이하(85%), 3~10억원 이하(75%), 10~50억원 이하(65%), 50~120억원 이하(45%), 120억 초과(40%)
** 재기컨설팅 바우처의 경우 별도의 보조율 적용
○ 2025년 예산안: 611억 8,600만원 (2,631개사×33.7백만원×66.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의 또 다른 내역사업인 ‘수출바우처 ’[41]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운송비, 법률자문, 컨설팅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14개 분야의 서비스를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57억원(14%) 증액된 1,27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컨설팅, 특허·지재권, 기술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오픈 바우처’와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41) 일반회계-수출지원기반활용(3131-301)-수출바우처(글로벌성장정책관)

[수출바우처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른 차등지원)
ㅇ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홍보, 특허・지재권, 해외규격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14개 분야의 서비스를 패키지식(수출바우처)으로 지원
ㅇ 지원금액 : 기업당 3,000~1억원 한도(정부지원금 기준)
ㅇ 보조율 : 전년도 수출액에 따라 30~100% 차등 지원
ㅇ 2025년 예산안: 1,275억 6,000만원

[2025년도 수출바우처 지원대상 및 한도]

구간	지원 대상	보조금한도 (백반원)	지원 업체수	예산 (백만원)	정부보조율
내수기업	전년도 직수출실적 '0' 인 내수 중소기업	30	1,120	29,500	* 매출액 기준 차등지원 -(100억원 미만) 70% -(100~300억원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튼튼한 내수기업	TIPS, 예비・아기유니콘, 간접수출기업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내수기업	45	1,000	27,000	
수출 초보기업	전년도 직수출실적 '10만달러 미만' 인 중소기업	30	500	18,000	
수출 유망기업	전년도 직수출실적 '10~100만달러 미만' 인 중소기업	45	400	22,000	
수출 성장기업	전년도 직수출실적 '100만~500만달러' 인 중소기업	70	270	15,360	
수출 강소기업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만달러 이상' 인 중소기업	100	50	1,700	
테크서비스 전용	테크서비스・기술 보유 중소기업	50	400	14,000	70%

주) 수출 고성장기업의 경우 한도 우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이 사업의 '오픈 바우처'는 기존 사업이 메뉴판식 바우처(파지티브 방식) 지원을 하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이 미지원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기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사업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임.

그러나 네거티브 방식의 보조금은 사용제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용제한이 사실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중소기업이 사업화 필요경비를 명분삼아 단순 운영경비성 지원에 악용할 소지가 있음.[42]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점프업 프로그램의 사업계획 및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바우처 형태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2) 중소벤처기업부는 건별 거래 내용, 거래기관의 적절성 등을 검토・승인 후 바우처를 집행토록 하여 부정사용・오집행 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으로, 인건비, 식비, 출장비 등 경상적 경비와 스케일업 전략 이행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집행은 불가하다는 의견임. 다만, 경상적 경비 및 스케일업 전략 이행에 직접적 관련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술보증기금】

<지 출>

10. 업무용부동산취득 사업: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아닌 기술보증기금의 본사 소재 지역 합숙소 취득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업무용 부동산 취득’ 사업은 기술보증기금이 원격지에 부임한 직원의 주거 안정화와 잦은 영업점 및 합숙소 이전에 따른 소모성 경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자가영업점 및 자가합숙소를 취득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64억 3,900만원(1,752.7%)이 증액된 385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43)]

[2025년도 업무용부동산취득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업무용부동산취득	2,079	2,079	38,518	36,439	1,752.7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중 기술보증기금의 직원 합숙소 15개소를 취득하기 위하여 25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업무용부동산취득 중 직원 합숙소 매입 계획액 세부내역]

(단위: m^2, 백만원, 명)

지 역	전용면적	개수	입주인원	매입가[1)]	부대비용[2)]	지출총액
전 국	85m^2이내 (아파트)	1개소	3명	460	40	500
	35m^2이내 (소형아파트)	14개소	14명	1,870	168	2,038

주 1) 국민은행 제공 본점 인근 아파트(범천동) 시세정보 참조
2) 취득 관련 부대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은 매입가의 9.0% 적용
3) 아파트는 1개소에 2~3인이 거주하고, 소형아파트는 1개소에 1인이 거주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43) 기술보증기금 - 업무용부동산취득(2441-308)(창업벤처혁신실)

나. 검토의견

기술보증기금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아니라 1989년 설립 당시부터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지 근무 등을 이유로 지역본부가 아니라 본사 근처에 합숙소 목적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기술보증기금은 원격지 근무가 빈번한 기술보증기금 특성상 직원의 주거안정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합숙소 취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실제로는 대부분 본사가 소재한 부산 지역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음.

합숙소 입소자격은 합숙소 소재지에 생활근거를 두지 아니한 단신부임자(독신 직원 포함)이거나 합숙소 소재지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으나 통근거리가 편도 30km를 초과하거나 대중교통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자임.

기술보증기금은 2025년도 계획안 편성 시 부산광역시 소재 11개소를 포함해, 대전·대구·울산광역시 소재 주택을 매입하여 이를 직원 합숙소로 활용할 계획임.

[2025년도 기술보증기금 합숙소 관련 세부매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소재지	매입비용 (부대비용 포함)
소형아파트 (1인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구, 남구 소재 10개소	1,555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1개소	77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2개소	264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1개소	142
아파트 (2~3인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1개소	5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1~2024년 8월 기술보증기금 합숙소 매입 내역을 살펴보면, 총 45건의 합숙소 소재지의 경우 부산광역시는 35개소, 대구광역시 3개소, 대전광역시 3개소, 광주광역시 2개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1개소, 세종특별자치시 1개소인 상황으로, 본사 소재지 근처에 대부분의 합숙소를 마련하였음.[44)]

44) 참고로, 기술보증기금은 본사 근처 자가합숙소를 총 53개 보유하고 있음.

[최근 4년간 기술보증기금 합숙소 매입내역]

(단위: 백만원, %, 명)

연번	연도	매입가	부대 비용	지출 총액*	소재지(시군구)	면적(㎡)	입주인원
1	2021	410	53	463	부산시 부산진구	84.96	3
2	2021	83	6	89	부산시 부산진구	28.76	1
3	2021	85	6	91	부산시 부산진구	28.76	1
4	2021	81	5	86	부산시 부산진구	28.76	1
5	2021	97	5	102	부산시 부산진구	27.03	1
6	2021	88	6	94	부산시 동구	28.98	1
7	2021	89	6	95	부산시 동구	28.98	1
8	2021	89	6	95	부산시 동구	28.98	1
9	2021	89	6	95	부산시 동구	28.98	1
10	2021	320	11	331	부산시 부산진구	59.94	2
11	2022	88	6	94	부산시 동구	31.61	1
12	2022	87	5	92	부산시 동구	29.64	1
13	*2022*	*388*	*52*	*440*	*광주시 광산구*	*84.4*	*3*
14	*2022*	*345*	*51*	*396*	*강원도 원주시*	*84.88*	*3*
15	*2022*	*83*	*2*	*85*	*대구광역시 동구*	*23.37*	*1*
16	*2022*	*90*	*2*	*92*	*대전시 서구*	*18.03*	*1*
17	*2022*	*107*	*3*	*110*	*세종시*	*22.69*	*1*
18	*2022*	*65*	*3*	*68*	*광주시 광산구*	*19.13*	*1*
19	2022	83	5	88	부산시 동구	29.64	1
20	2022	80	5	85	부산시 부산진구	28.76	1
21	2023	640	85	725	부산시 남구	84.98	3
22	2023	79	4	83	부산시 동구	29.64	1
23	2023	77	4	81	부산시 동구	29.64	1
24	2023	79	5	84	부산시 부산진구	28.76	1
25	2023	83	5	88	부산시 부산진구	28.6	1
26	2023	80	5	85	부산시 동구	31.61	1
27	2023	80	5	85	부산시 동구	31.61	1

(단위: 백만원, %, 명)

연번	연도	매입가	부대비용	지출총액*	소재지(시군구)	면적(㎡)	입주인원
28	2023	80	5	85	부산시 동구	29.64	1
29	2023	80	5	85	부산시 동구	29.41	1
30	2023	80	5	85	부산시 동구	29.64	1
31	2023	76	2	78	부산시 부산진구	24.2	1
32	2023	76	2	78	부산시 부산진구	24.2	1
33	2023	71	4	75	부산시 부산진구	28.76	1
34	2023	138	8	146	부산시 부산진구	22.42	1
35	*2023*	*75*	*2*	*77*	*대전시 유성구*	*23.35*	*1*
36	*2023*	*125*	*7*	*132*	*대구시 중구*	*26.18*	*1*
37	2024	110	6	116	부산시 부산진구	25.89	1
38	2024	135	8	143	부산시 부산진구	22.42	1
39	2024	130	8	138	부산시 부산진구	29.7	1
40	2024	130	8	138	부산시 부산진구	29.7	1
41	*2024*	*121*	*7*	*128*	*대구시 중구*	*26.18*	*1*
42	2024	135	8	143	부산시 동구	29.12	1
43	2024	138	8	146	부산시 동구	29.58	1
44	2024	135	8	143	부산시 동구	29.58	1
45	*2024*	*76*	*6*	*82*	*대전시 유성구*	*23.35*	*1*

주) 기울임 표시는 부산시 이외의 지역의 합숙소 매입현황을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순환근무로 인해 기술보증기금의 지역본부에 단신 근무하게 된 직원 거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숙소를 매입하는 것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

그러나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기술보증기금[45]이 원격지 근무를 이유로 본사 소재지 인근의 합숙소를 매입하는 것은 일반회계로부터 재원을 전입 받는 기술보증기금으로서 효율적 재원 활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45) 기술보증기금은 1988년 설립 당시부터 본사가 부산에 있었고, 2011년 부산 중구 중앙동에서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하였으나, 본사는 부산시 중심에 계속 위치하였음.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본사 근처의 자가합숙소를 취득한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46]를 들어 본사 근처의 합숙소 취득이 기술보증기금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임.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본사 소재지가 비수도권으로 이전된 경우로서 설립 당시부터 본사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움.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원격지 근무 중인 직원의 주거안정 및 근무여건 개선을 이유로 본사 소재지의 주택을 주로 매입할 것이 아니라, 본사 외의 지역본부 및 지점 소재지도 함께 고려하여 합숙소 매입·운영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6) 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 한국남부발전(부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진주), 한국예탁결제원(부산)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 출>

11.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 사업(신규): 민간투자 후 정부 보조금 지급 방식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혁신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은 성장단계의 기업가형 소상공인[47]에게 투자자(창업기획자, VC 등)가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최대 3배까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화 자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3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8]

[2025년도 혁신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52,403	52,403	83,422	31,019	59.2
혁신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	-	-	30,000	30,000	순증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47)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LICORN: 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을 “기업가정신 및 장인정신을 가진 창의기반의 소상공인이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추구하여 가치혁신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차원에서, 생활(non-tech) 분야에 제조기반, 서비스혁신(로컬・온라인・IT 접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군”으로 정의함.

생활기반 (Non-Tech)		기술기반 (Tech)
기업가형 소상공인	생계형 소상공인	
▸생활문화지역 기반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적용, ①기업 또는 ②앵커스토어*로 성장 지향	▸구조조정, 취업 등의 문제로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창업(프랜차이즈 등)	▸유망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창업기업에 자본을 집약하여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4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4131-316)(소상공인정책관)

[혁신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 사업 개요]

○ (목적) 소상공인 중 소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선발, 브랜딩·마케팅·제품 고도화 등을 집중 지원,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지원 ○ (대상) 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 (내용) 성장단계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투자자(창업기획자·VC등)가 선 투자 하는 경우, 최대 3배(2억원 한도)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스케일딥 립스) 최초 투자금의 최대 3배 사업화 자금(1억원 한도) * 자부담 30% : 현금 10%, 현물 20% - (스케일업 립스) 2차례 이상의 투자 및 스케일업 립스 받은 후속투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배 사업화 자금(2억원 한도) * 자부담 30% : 현금 10%, 현물 20% ○ (운영사 모집) 창업기획사, VC, 기업 등의 우수 소상공인 선별능력과 자금을 보유한 기업을 립스 운영사로 선발 - 선발된 운영사별로 투자할 소상공인 모집 후 자체자금으로 투자 ○ (립스 투자 소상공인 선발) 립스 운영사에서 투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통해 사업화 자금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이 사업은 현행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와 사업목적과 지원대상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식은 소상공인・민간 투자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간투자 후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 사업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선투자를 받아 검증되었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 중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모델의 성장성・안정성・수익성 등에 대한 서류・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49] 2단계에 걸쳐 사업화 자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려는 사업임.

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건을 고려하면,[50] 이 사업은 현행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등을 통해 사업화자금을 보조받은 소상공인이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후, 창업기획자나 벤처캐피탈 등 민간자금을 투자받으면 이에 더해 다시

49) <성장형 유망 소상공인 선별 계획안>

구분	선발 주체	주요내용	(후보)선정
1단계	민간 투자사 (운영기관)	■ 선 투자된 소상공인에 기업정보 및 투자정보를 전문심의위원회에 제공	약 5배수
2단계	전문심의 위원회	■ 선 투자여부, 참여자격, 적합성 등 평가 ■ 우수 BM 평가 / ■ 현장 실사	약 2배수
3단계	전문심의 위원회	■최종 발표 평가 및 심층 면접	최종 선정

50) 지원 대상은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로컬크리에이터, 강한소상공인 등 기존 보조사업에서 선정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우대하겠다는 계획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소상공인 육성 관련 유사사업 비교]

사업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혁신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
지원대상	지역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기반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별도 선정절차를 통해 선정된 운영기관(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先투자 받은 소상공인
최대 지원금	최대 4천만원	최대 1억원	최대 2억원
지원 용도	지역성 접목을 위한 제품개발 및 BM고도화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의 사업모델 협업 및 융합	매장확대, 글로벌진출 등 사업확장
자부담 비율	자부담금 20%	자부담금 없음	자부담금 30%
운영기관 신청조건	공공기관·단체, 대학 등	창업기획자, 창업보육 기관 등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
사업절차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자금지원	서류·발표평가 → 아이디어 선발 → 창작자, 스타트업과 팀빌딩 → 피칭 오디션 → 자금지원	先투자·추천 → 서류평가 → 현장실사 → 발표평가 → 최종선정 및 자금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 사업은 민간 투자기관을 통해 성장성이 유망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민간이 보유한 보육·투자기능을 연결하며, 생활형 소상공인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인하려는 취지인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현행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와 사업목적과 대상이 유사한데, 보조금 지급사업을 신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기존 융자사업을 평가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먼저 모색할 필요가 있음.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51]는 민간투자사의 선투자 시 투자액에 매칭하여 정책자금(융자)를 소상공인시장공단이 직접대출 방식으로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과 유사한 성격이 있는데,[52] 매칭융자 이외에 신규 보조사업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1)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지원(융자)-성장기반자금)

참고로 매칭융자 사업은 2023년에는 계획액 400억원 중 285억 7,800만원(71.4%)이 집행되고, 2024년 10월 중순 기준 계획액 400억원 중 216억 2,200만원(54.1%)이 집행됨.[53]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당초	실적		
	계획액(A)	집행액(B)	건수(C)	집행률(B/A)
2023년	40,000	28,578	131	71.4
2024년 8월	40,000	11,182	34	28.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음으로, 이 사업은 이미 보조금 등을 받아 성장한 소상공인을 우대하여 그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다시 보조금을 거듭 지원하려는 사업인데, 보조금은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융자와 달리 그 성격상 사용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성과평가 역시 불투명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54]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의 보조금은 제품개발, 마케팅 등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에 한정하겠다는 의견임. 그러나, 메뉴판식 바우처가 아닌 이상 사업화 자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따져 보조금을 정산하는 것이 어려워 사실상 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보조금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목적) 민간투자사의 先투자·펀딩 시 정책자금을 後매칭융자로 지원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
○ (대상) 민간투자사로부터 先투자·펀딩 받은 소상공인
○ (내용) 민간투자사가 先투자·펀딩 시 투자금의 최대 5배까지 매칭융자(정책자금) 지원
- (대출한도) 기업 당 투자금액의 2.5~5배 지원
- (자금용도)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사업장 건축·확보, 기계·설비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금리)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8년(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52) 두 사업은 별도 선정절차를 통해 선정된 민간 투자기관에게 선 투자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투자금액에 매칭하여 융자(최대 5배, 5억원) 또는 보조금(최대 3배, 2억원)을 지급하며, 정책자금을 사업화에 활용(융자: 시설자금·운전자금 모두 가능, 보조금: 사업화 자금 용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함.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융자 프로그램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실시하므로 민간 투자사에게 보육 의무를 부여할 수 없으나,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민간 투자사에게 보육의무를 부여하여 운영할 계획임.

53)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0월 말 기준 약 277억원을 소진할 계획임

54) 한정된 기금 재원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에게 여러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수혜하도록 사업을 설계하는 방향에 대해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의 검토 역시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음.

참고로, 과거 중소벤처기업부는 생활혁신형 창업자에 대해 정책자금(최대 2,000만원) 융자 후 성공·실패판정에 따라 상환비율 차등화하는 '성공불융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 해당 사업은 융자 후 상환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실패·불성실경영실패[55] 등의 비중이 20% 가량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56]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민간 투자기관(창업기획가, 벤처캐피탈 등)이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하고, 투자한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및 보육 역할도 수행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민간 투자기관이 소상공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57]

이 사업은 매칭융자와 달리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어 소상공인의 상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소상공인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보조금 중 일부를 민간 투자기관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페이백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의 부정수급 가능성도 염두하여 보조금 회수조치 등을 포함하여 사업설계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55) <성공불융자의 성공·실패 등 판정 기준>

구 분		판단 기준	생존기간 (대출일~)	원금상환비율	조치 사항
성공판정		경영지속 및 경영지표 달성	-	100%상환	정책자금 추가 대출지원 및 R&D, 마케팅 등 우대 지원
실패판정	고의실패	고의실패 사유에 해당	-	100%상환	향후 3년간 정책자금 대출 신청 제한
	성실경영실패	- 정상적인 창업 및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영지표 미달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1년 이내	60%상환(40%면제)	대출원금에 대해 발생하는 판정일까지의 이자 및 판정으로 확정된 대출원금에 따른 판정일 이후 이자 정상상환
			2년 이내	50%상환(50%면제)	
			3년 이내	40%상환(60%면제)	
			3년 초과	100%면제	

56) <성공불융자 성공·실패 판정 추진 경과>

(단위: 건)

판정연도	성 공	고의실패	불성실경영실패	성실경영실패	합 계
2020	-	118		72	190
2021	296	547	1	1,767	2,611
2022	152	327	4	1,495	1,978
2023	53	137	1	556	747

57)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사가 전담하며, 소상공인이 사업실패 시 이에 투자한 투자사에 대한 패널티(운영사 운영비 감액, 차년도 운영기관 선정 등에 제한 등)를 부여하겠다는 의견임.

12.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신규): 민간 플랫폼사가 소상공인 육성에 참여할 유인 및 책임성에 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분야별 탑티어 플랫폼사를 선정하여 플랫폼사가 브랜드 소상공인을 발굴하도록 하고, 해당 플랫폼사가 브랜드 소상공인을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탑티어 플랫폼사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TOPS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1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8)]

[2025년도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내내역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소상공인성장지원	294,625	294,625	265,485	△29,140	△9.9
소상공인역량강화	21,542	21,542	240,674	219,132	917.2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	-	15,000	15,000	순증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 분야별 탑티어 플랫폼사를 선정하여, 플랫폼사 MD와 공동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브랜드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민간 플랫폼사 매니저가 1:1 온-오프라인 컨설팅 및 플랫폼 고유 홍보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며, 정부지원금 및 플랫폼사 인프라를 활용하여 브랜드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약 3,000개사의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지원금 500만원(민간 1:1매칭 추가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을 편성함.

5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소상공인정책관)

[기존 유사사업과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 비교]

구분	기존 유사사업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 (TOPS 프로그램)
지원대상	· 온라인 진출 희망 소상공인 * 해외 OEM 가능	· 고유 브랜드·스토리·콘텐츠 보유 소상공인 * 자체브랜드, Made in Korea, 직접생산 등
선정방식	· 평가위원회 개최 * 전문가 pool 활용	· 민간 플랫폼 공동 평가위원회 개최 * 10개 플랫폼사 MD가 지원할 기업 직접 참여
사업방식	· 1차례 선정 후 일괄 지원	· Pre-TOPS → TOPS 단계별 지원 - (Pre-TOPS) 1:1 컨설팅 진행 및 성과측정 - (TOPS) TOPS 소상공인 인증 및 집중지원
지원금액 지원비율	· 기획전 개최, 홍보·마케팅 위주 지원	· 소상공인 직접 지출 비용(판매자 부담 비용) · 플랫폼사 1:1 매칭 상생 지원 활용(마케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플랫폼의 시장성과 자율성을 활용하면서도, 민간 플랫폼사가 이 사업의 수행을 통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의 성장에 제대로 기여하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와 플랫폼 선정, 사업관리 과정에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이 민간 플랫폼사와 공동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을 선별적으로 선발하고, 플랫폼사의 단계별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픈마켓·식품·생활리빙·뷰티·패션 등 각 분야의 주요 플랫폼의 특화 프로그램(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 분야별 플랫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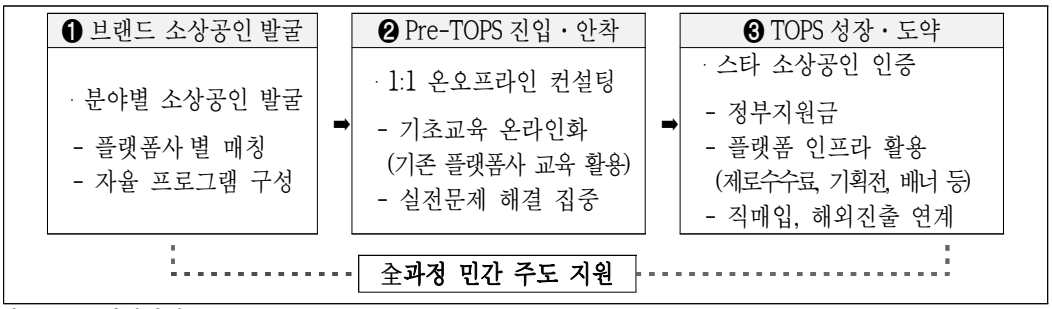
카테고리	특화 프로그램(안)
오픈마켓	· 기업가형 소상공인 신규 온라인 판로 개척 *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 인증 셀러 등
	· 숨은 소공인(장인) 제품 온라인 직접 판매(D2C) * 소공인 특화사업 참여업체, *** 소공인 셀러

카테고리	특화 프로그램(안)
식품	· 직접 생산 식품 소상공인 전용관 운영 * 우수 소상공인 직매입 적용(새벽배송, 오프라인 매장 입점)
	· 지역 농수산물 직접생산자 *** 매출 활성화 * 직매입 활용 ***** 적용 검토
	· 식품 소상공인 *****, ***쇼핑몰 신규 입점 * 직매입 검토중
생활·리빙	· 리빙 소상공인 리뷰콘텐츠 활용 소기업 성장 * 사용자 실사례 적용 리뷰, 챌린지 이벤트 활용 등
뷰 티	· 뷰티 소상공인 성공 부스팅 프로그램 * ** 전용 한정판 ****** 출시(품평단 피드백, 기획전 등)
패 션	· 패션업 소상공인 *** 브랜딩 프로그램 * *** 에디션(한정판) 등 연계 검토

주)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랫폼별 특성과 강점을 반영하여 정책대상과 정책수단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는 의견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 사업은 주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분야별 민간 플랫폼사 10개사(안)를 선정한 이후, 민간 플랫폼사 주도로 소상공인이 선정되고 지원내용이 결정되므로, 사업설계와 민간 플랫폼 사의 선정 과정에서 이 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한 사업임.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 개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의 상생협력·사회공헌 차원에서 추진되는 다른 민관 협력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플랫폼 사가 우수셀러를 육성하여 매출액과 수수료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로 작용하므로 민간경쟁·수익성 추구동기가 상대적으로 강함.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에서 민간 플랫폼에게 ① 지원대상의 소상공인 선정, ② 플랫폼 MD(Merchandiser, 상품기획가)의 1:1 컨설팅 진행, ③ 마케팅 지원·프로모션 진행 등을 기대하고 있음.

그런데 ① 소상공인의 선정은 플랫폼사가 비교적 전문성이 있고 수익성 추구가 중요한 과정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② 플랫폼 MD의 1:1 컨설팅의 경우 중개업자인 플랫폼사 간에 컨설팅·보육 전문성이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목적의 컨설팅인만큼 공공성·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고, ③ 마케팅 지원 등은 플랫폼 사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 지원에 더해 일부 자부담할 필요가 있음.

특히, 플랫폼 사 간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플랫폼사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타 플랫폼으로의 입점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끼워팔기, 마케팅·할인비용 전가 등)[59][60]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설계가 필요함.

또한, 종전의 온라인판로지원 사업에서 소상공인의 티몬·위메프 등의 플랫폼 입점에 각종 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플랫폼사 선정 과정에서 운영역량과 재무건전성을 엄격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사업은 민간 플랫폼 사의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설계되어 민간의 수익성 추구 및 자율성이 크게 강조된 사업인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플랫폼 사의 선정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59) 아시아경제, “입점업체에 갑질, 공정위 링에 오른 000”, 2024.9.23.
연합뉴스, “행사독점, 할인차액 미환급... □□□□ 과징금 19억원·고발”, 2023.12.7.
이투데이, “‘△△△ 할인행사 안돼’, ◇◇◇◇, 입점업체에 갑질 의혹 논란”, 2024.2.6.

6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13.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신규):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의 적정성 검토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배달・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통한 매출 확대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배달・택배를 활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2,037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61]

[2025년도 배달·택배비 지원 내내역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소상공인성장지원	294,625	294,625	265,485	△29,140	△9.9
소상공인역량강화	21,542	21,542	240,674	219,132	917.2
배달・택배비 지원	-	-	203,700	203,700	순증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 기준)인 소상공인(개인・법인사업자) 중 배달・택배 방식을 활용하는 소상공인 약 67.9만명에 대하여 배달료 사용증빙 시 최대 30만원을 신청주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배달・택배비 지원대상을 활동 기업 중 매출액 1억 4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로서 배달・택배를 활용할 전 업종의 소상공인을 약 67만 9,000명으로 산출하였음.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인원 산출내역]

(단위: 명)

전체 소상공인	정책자금제외업종 비활동기업 제외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주요업종 (제조,도소매, 음식,정보통신)	지원대상 (주요업종×42%*)
7,335,397	5,337,186	3,097,282	1,616,671	679,001

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통계청 서비스업실태조사의 음식업・도소매업 배달 판매 비중 42%를 적용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6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소상공인정책관)

배달·택배비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이는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와 자체조사 결과를 기초로 소상공인의 배달료 및 택배비 2022년 대비 2023년 상승분(67.2만원)의 절반수준을 반영한 것임.

[연도별 배달료·택배비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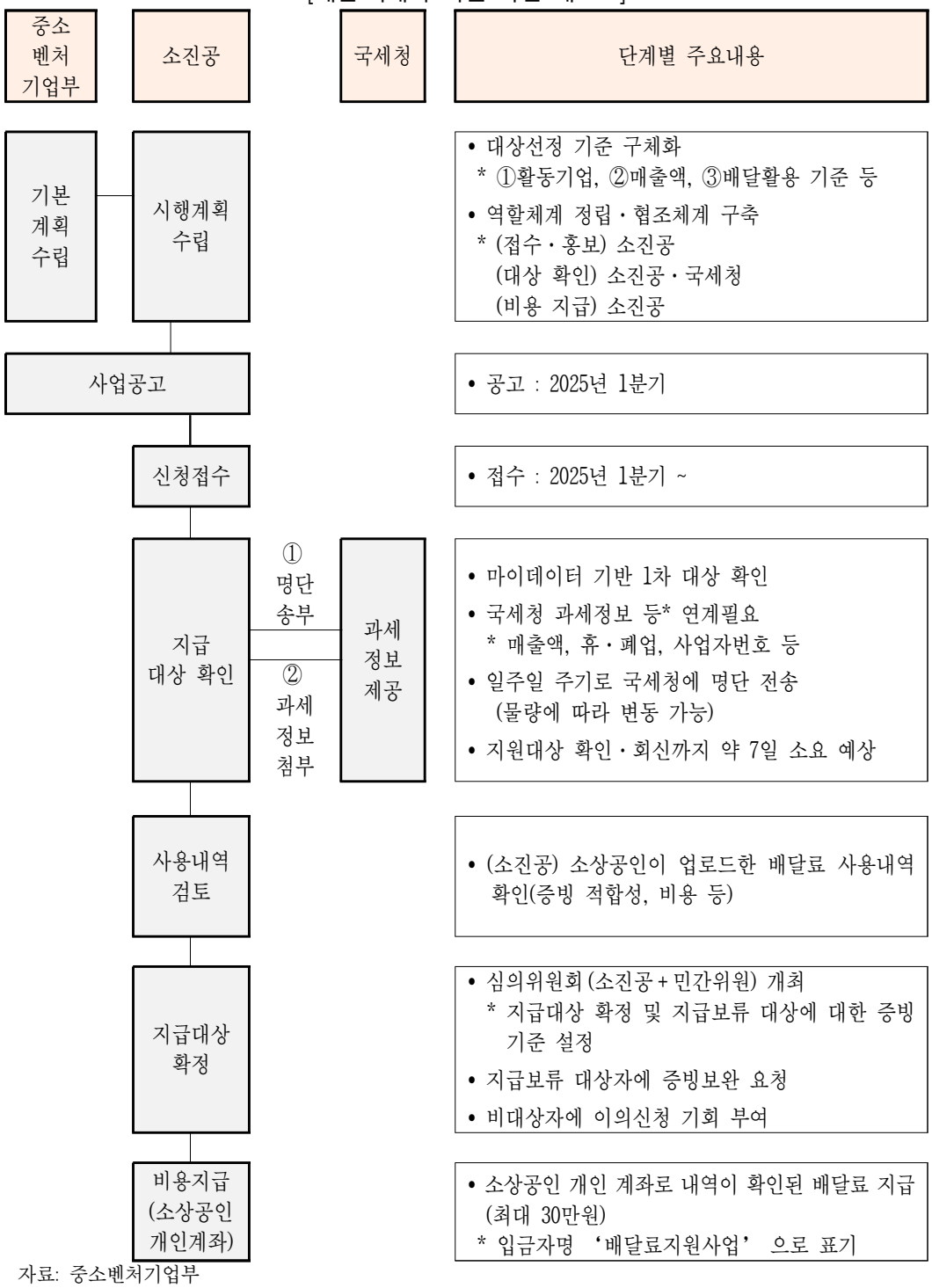
연도별	2022년	2023년	전년대비 증감
배달료	1,267만 2,000원	1,334만 4,000원	67만 2,000원 (+5.3%)
택배비	1,066만 8,000원	1,106만 6,000원	39만 8,000원 (+3.7%)

주 1) 배달료: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를 중소벤처기업부가 활용하여 산출함
2) 택배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0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산출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를 중소벤처기업부가 활용하여 산출함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2025년 1사분기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할 계획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으로부터 배달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면,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자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한 후, 사용내역 등을 검토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소상공인의 개인 계좌로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개요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긍정적인 도입 취지가 있으나,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7월 「자영업자·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소상공인의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플랫폼 상생협력 및 배달료 신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 사업은 이를 반영하여 편성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이후 배달규모가 급증하면서 배달료·택배비 등 관련 비용이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 플랫폼 간 경쟁(무료배달·할인 등)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확대되어 부담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배달비의 경우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은 배달의존도가 높아 관련 비용 지출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택배료의 경우 소비자의 온라인 소비가 전 업종에서 증가하여 상품전달을 위한 택배(배송) 물량이 증가하였다는 것임.

이 사업은 최근 소상공인이 주로 활용하는 플랫폼수수료 및 배달료로 인해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에서[62][63][64]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인바, 긍정적 측면이 인정됨.

그러나 이 사업은 당초 사업목적 대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로 온전히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의 전가'[65] 현상으로 인해 배달플랫폼 등 온라인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제도가 안착되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024년 7월 배달플랫폼 1위 기업이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44% 인상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이 크게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한 소상공인의 배달 이용에 대한 보조금은 결과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플랫폼 업체에 대한 수요를 견고히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66]

---

62)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사업은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중 배달비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소상공인이 배달비 지원을 통해 배달비 부담이 경감된 상태로 배달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결국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양자는 연관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63) SBS, "점주 부담 수수료 올리는 배민... 배달 음식값도 오르나", "배달의민족, 수수료 9.8%로 인상... 자영업자 반발", 2024.7.11.
경향신문, "배민 배달 수수료 기습 인상에 '화들짝'... 정부, 소상공인 지원안 마련 속도 낸다", 2024.7.18.

64) 2024년 10월 현재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는 배달의민족(9.8%), 쿠팡이츠(9.8%), 요기요(9.7%)임.

65) 보조금의 전가 현상이란, 보조금이 당초 목표하였던 법적 수혜대상에 온전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조정 과정을 통해 보조금의 일부가 다른 대상에게 귀속되는 효과를 의미함.

즉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높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플랫폼 업체를 활용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해당 플랫폼에서의 높은 가격에 부담을 겪고 소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간플랫폼 수요가 감소하고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가격조정 메커니즘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3사의 최혜대우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고, 「플랫폼법」의 제정 또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임.[67]

둘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이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과 같이 신청 부진으로 인해 사업자를 확대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사업은 이 사업과 유사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신청 시 최대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을 사후적으로 보조하는 사업인데, 신청 부진 등으로 인해 계획 대비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은 당초 전년도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52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58만 8,000명이 신청하고 31만 6,000명에게 632억 4,000만원만 지원되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년도 매출액 기준은 6,000만원으로, 다시 1억 400만원으로 2차례 상향 조정하였으나, 2024년 8월 기준 신청자수는 75만 7,000명, 지원건수는 48만 7,000명이고 지원금은 973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는바, 지원금 집행액은 당초 계획액 대비 38.6%에 불과함.

---

66) 뉴시스, “정부 배달비 지원 2,000억, 배민·쿠팡 배 불려주는 꼴”, 2024.10.8.
경기일보, “‘7천억 영업이익’ 배민 수수료 인상안 거센 ‘후폭풍’”, 2024.7.14.

67) MBN, “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안 기대 못 미치면 입법 통한 제도개선도 강구’”, 2024.10.6.
서울경제, “프랜차이즈협회, 공정위에 배민 신고... 비싼 수수료에 이중가격제”, 2024.9.27.

[2024년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지급대상 변화표]

구분	공고일	전년도 매출액 기준	소상공인 수(추정)주)	지원금액
개시	2024.2.15.	3,000만원 이하	126만 5,000명	최대 20만원
1차 변경	2024.7.8.	6,000만원 이하	198만 7,000명	
2차 변경	2024.9.2.	1억 400만원 미만	258만 3,000명	

주) 소상공인 수는 사실상 비활동사업체를 제외하기 위해 전년도 매출액 0원인 자를 제외하고, 한국전력의 사업장용(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주택용 중 비구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자를 추산한 것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현황]

(단위: 억원, 만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12월 (예상)	2024년 전체
교부액 (중소벤처기업부 →소진공)	2,520	-	-	-	-	-	-	-	-	2,520
소진공 집행액	-	-	229	303	37	63.4	148	193.5	1,546	2,520
전기요금 지원 신청건수	-	19.4	32.4	4.5	1.2	1.3	14	2.9	60	135
전기요금 지원건수	-	-	11.4	15.2	1.8	3.2	7.4	9.7	77	12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 사업은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과 사업대상(간이과세자인 개인・법인사업자) 사업목적(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사업방식(신청서 접수 및 확인 후 계좌 송금) 및 주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실제 시행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종전 사업추진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4.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소상공인 융자의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한 부실 이연 우려 및 K-커머스론의 금리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소상공인지원(융자)’ 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 계획액 3조 7,100억원 대비 600억원(1.6%) 증액된 3조 7,7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68)]

[2025년도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소상공인지원(융자)	3,710,000	3,710,000	3,770,000	60,000	1.6
일반경영안정자금	1,110,000	1,110,000	1,220,000	110,000	9.9
특별경영안정자금	1,800,000	1,800,000	1,600,000	△200,000	△11.1
성장기반자금	800,000	800,000	850,000	50,000	6.25
상생성장지원자금	-	-	100,000	100,000	순증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025년 계획안을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①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무관하게 일반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으로, 2025년 계획안에는 전년 대비 1,100억원 증액된 1조 2,200억원이 편성되었고, ②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 등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2025년 계획안에는 전년 대비 2,000억원 감액된 1조 6,0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③ 성장기반자금은 제조업, 스마트설비·기술 도입, 혁신형 소상공인 등의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2025년 계획안으로 전년대비 500억원이 증액된 8,500억원이 편성되었고, ④ 상생성장지원자금은 소진공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에 입점한 소상공인에 전용자금(K-커머스 론)을 대출하는 신규 정책자금으로 2025년 계획안은 1,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6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지원(융자)(4151-301)(소상공인정책실)

나. 검토의견

첫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소상공인 융자가 갈수록 부실화되는 상황에서 대출부실을 미래로 이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를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2024.7.3.)하고, 2024년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대출)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고, 기존 상환연장 대상요건 중 '업력 3년 이상,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음.

이를 통해, 경영애로[69]를 겪고 있지만 상환가능성[70]이 있는 소상공인은 직접대출 형태의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71] 또한,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약정하여 이용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하도록 하였음.[72]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연장 부담완화 예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69)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됨.

70)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됨.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함.

7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드립니다", 2024.8.16.

72) 종전에는 과거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여, 저금리 시기에 대출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해 금리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었음.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금융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부실률이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환기간의 연장은 현재 도래할 부실을 미래로 이연하는 효과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자금 부실률이 2021년 1.6%, 2022년 2.8%, 2023년 10.0%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이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이유로 대규모로 공급한 정책자금(거치기간 2년)의 원금 상환이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이 동 정책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기 때문임.

[2018~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유형별 정책자금 부실현황]

(단위: 백만원, 건)

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정책자금 합계	대출잔액	1,342,806	1,724,046	2,831,219	5,414,170	7,869,926	8,256,585
	부실금액	50,334	63,639	67,859	85,717	219,497	823,997
	부실률	**3.8%**	**3.7%**	**2.4%**	**1.6%**	**2.8%**	**10.0%**
일반경영 안정자금	대출잔액	43,575	54,760	403,747	1,293,510	1,276,679	1,006,361
	부실금액	2,903	3,050	536	10,996	29,632	111,986
	부실률	6.7%	5.6%	0.1%	0.9%	2.3%	11.1%
특별경영 안정자금	대출잔액	40,733	130,664	944,658	2,722,968	3,993,065	4,459,097
	부실금액	0	1,553	15,391	38,040	155,144	600,245
	부실률	0.0%	1.2%	1.6%	1.4%	3.9%	13.5%
성장기반 자금	대출잔액	1,258,498	1,538,622	1,474,370	1,360,675	1,361,652	1,458,911
	부실금액	47,431	59,036	51,932	36,630	25,137	63,603
	부실률	3.8%	3.8%	3.5%	2.7%	1.8%	4.4%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자금	대출잔액	0	0	8,444	37,017	83,665	278,937
	부실금액	0	0	0	51	1078	6063

(단위: 백만원, 건)

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부실률	-	-	0.0%	0.1%	1.3%	2.2%
기타	대출잔액	0	0	0	0	1,154,865	1,053,279
	부실금액	0	0	0	0	8,506	42,100
	부실률	-	-	-	-	0.7%	4.0%

주) 부실건수 산식: 당해연도 발생한 사고발생계좌건 - 당해연도 발생한 사고해제계좌건 - 회수된 원금상환건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부실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역시 부실금액이 증가하고 부실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음. 물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 연장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부실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미래로 이연된 부실이 한꺼번에 실현되어 오히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73]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시 상환가능성에 대해 상환연장제도 수혜기업의 부실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심사 기준을 고도화하는 등 정책자금의 부실이 미래로 이연·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리스크 관리에 임하는 한편,[74]

채권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체 재무건전성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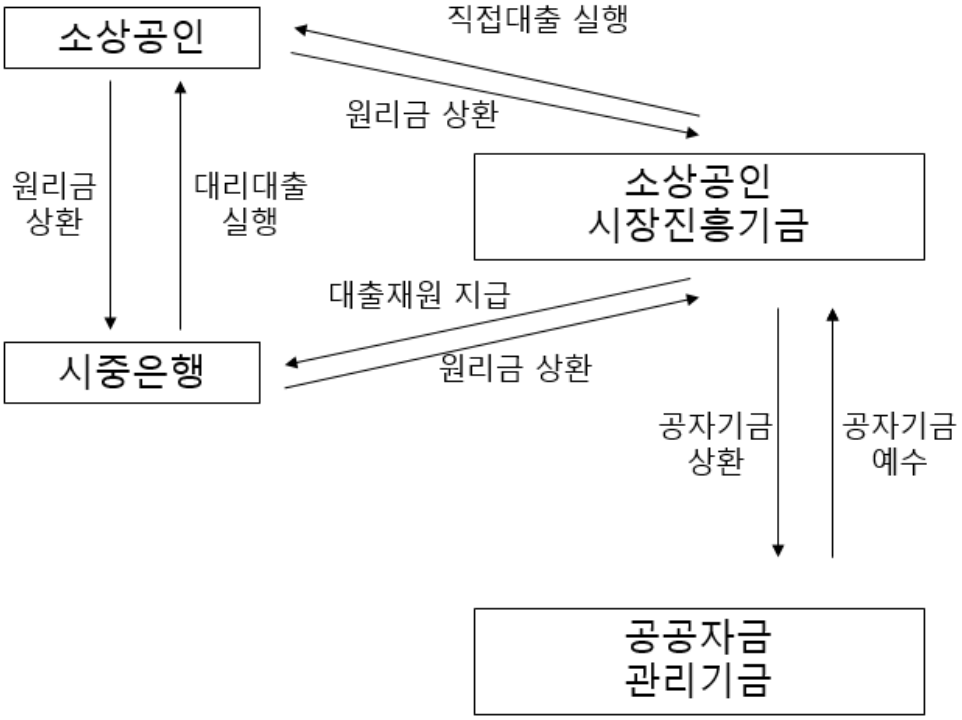
다음,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이 이연됨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기금 수입이 감소하여 공자기금 예수 원리금의 상환이 어려워지고, 향후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환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소상공인에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면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73)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책자금의 부실화를 용인하고, 부실채권을 신속히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조정 및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건전성 및 소상공인의 재도전 차원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음.

74)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은 경영애로 및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선별된 채무자에 한하여,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제도로, 월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정상상환을 지속하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신청 조건·심사 없이 거치기간을 부여한 코로나19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와는 구별된다는 의견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정책자금 운용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재가공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확대로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는바, 2025년 계획안 기준 기금의 자산은 15조 9,535억원, 부채는 22조 471억원으로 순자산이 △6조 937억원으로서 음(-)의 값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24년 기금운용계획 △5조 8,957억원 대비 1,980억원 적자가 증가한 것으로 재무건전성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025년 이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및 기타민간이자수입의 징수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 규모를 늘려 차환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규모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둘째, 상생성장지원자금(K-커머스 론)은 플랫폼 입점이라는 소상공인의 선별적 지원 요건의 적합성 및 대출규모와 지원금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플랫폼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권익향상을 유도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2025년 계획안에 상생성장지원자금(K-커머스 론)을 1,000억원 신규 편성하였음.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에 입점하는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0.2%p)로 대출(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1억원)하는 신규 내역사업임.

[상생성장지원자금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권익향상 등 상생지원*을 유도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입점 소상공인 글로벌 진출 지원, 정산기일 단축 노력 및 계획, 판촉비·홍보비 할인, 제품 인증지원, 우수 소상공인 특판 등 ㅇ 지원 대상(안) - 일반유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중 ① 자체 브랜드를 활용*하여 온라인 진출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② 플랫폼사의 교육·컨설팅을 받고 플랫폼에 신규 입점한 소상공인 ③ 온라인플랫폼 내 우수판매자로 선정·지정된 소상공인 ④ 온라인 매출이 지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 브랜드 소상공인(TOPS 유형): 민간 플랫폼社에서 발굴·인증하고 정부와 협업 육성하는 TOPS 프로그램 선정 소상공인은 한도를 2배로 우대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 (대출한도)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TOPS프로그램 유망 소상공인은 대출한도(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우대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ㅇ 2025년 계획액: 1,000억원 (5,000만원×2,000개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상생성장지원자금은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데, 온라인플랫폼 입점에 필요한 시간·비용이 크지 않아 입점사실 자체가 우수 소상공인을 선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플랫폼사의 교육·컨설팅, 우수판매자 지정 등은 플랫폼사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플랫폼의 상생 추진계획 및 우수판매자 평가 기준을 실효성 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금리 측면에서도, 이 사업의 대출 공급규모는 1,000억원이고,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만 가산한 금리를 적용할 예정인데, 종전의 유사 정책자금 및 다른 정책자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금리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성장기반자금’ 내역사업 내 혁신성장촉진자금의 경우 온라인 매출액이 있는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여 이 사업과 대출방식,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은 동일하고 금리만 기준금리에 0.4%p를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음. 동 사업의 경우 2024년 8월 기준으로 계획액 2,600억원을 초과한 3,779억원의 대출이 계획 대비 과다공급된 상황으로, 이미 0.4%p 가산금리만으로도 대출수요가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에서 0.2%p를 추가적으로 낮출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참고로, 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무관 소상공인)과 성장기반자금의 소공인특화자금(업력무관 소공인)의 가산금리가 0.6%p이고, 혁신성장촉진자금(혁신형・스마트기술도입 소상공인) 및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민간 투자자 투자・펀딩 받은 소상공인)의 가산금리가 0.4%p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낮은 가산금리(0.2%p)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이 사업의 대출공급규모 및 가산금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별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음.

15.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94억원 증액된 3,907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75]

[2025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내역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420,669	420,669	465,205	44,536	10.59
온누리상품권 발행	351,348	351,348	390,748	39,400	11.21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76]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기관으로서 총괄적인 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지류상품권은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고 16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비즈플레이(주)가 운영하고, 충전식 카드상품권은 KT&비씨카드 컨소시엄이 취급하고 있음.

---

7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4154-304)(소상공인정책실)

76)「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시중 금융기관(지류) 및 전용 모바일앱(모바일·카드형) 등을 통해 판매되고, 개별가맹점에서 사용됨. 개별가맹점의 소상공인은 직접 금융기관에서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 등)을 통해 환전을 대리요청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게 됨.

이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5조 5,000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3,907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4년 5조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 편성된 3,513억 4,800만원에 비해 11.2% 증액된 것임. 구체적으로는, 2025년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1조 7,000억원, 디지털(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3조 8,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임.[77]

[2025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내역사업 세부산출내역]

(단위: 억원)

구분		세부 산출근거			계획액 (A×(B+C))
		발행액 (A)	할인보전금 (B)	발행·운영수수료 (C)	
지류	비할인	8,000	-	2.8%	224
	5% 할인	9,000	5%	2.8%	702
	소계	17,000	-	-	926
디지털 (모바일 ·카드형)	5% 할인	23,000	5%	0.58%	1,283.4
	10% 할인	15,000	10%	0.58%	1587
	소계	38,000	-	-	2870.4
기타운영비		-			111.08
합 계		55,000	0~10%	0.58~2.8%	3907.4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가공

나. 검토의견

2024년도 9월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미교부(미집행)액 및 온누리상품권의 시중 유통액(누적 미회수액)을 고려하여 2025년 계획안을 집행 가능한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① 온누리상품권이 계획대로 발행되어야 하고, ② 발행 후 판매 및 판매 후 금융기관으로의 회수가 이루어져야 함.

77) 모바일형 및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각각의 발행 목표는 없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먼저, 온누리상품권 발행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4년 9월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교부현액 3,094억 5,400만원 중 2,638억 6,300만원을 집행하여 455억 9,100만원이 유보되어 있고, 이에 더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아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미교부한 금액(미집행액)은 1,360억 4,800만원으로 당초 계획안의 38.7%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추가적으로 교부할 수 있는 상황임.

만약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말에 모두 교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를 연내 모두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단계에서 차년도로 이월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단계에서의 2022년도 이월액은 1,088억 3,800만원, 2023년도 이월액은 941억 5,400만원이었음.

[2024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2024.9.30기준)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당초	수정 (A)						교부 현액	집행액 (C)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351,348	351,348	215,300	215,300	94,154	309,454	263,863	215,300	208,619	-	-	59.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음으로 온누리상품권의 미회수액은 온누리상품권이 판매된 이후 소비되지 않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발행 후 소비로 이어지지 못한 규모를 의미하는데, 2024년 9월 말 기준 누적 미회수액은 1조 4,244억원으로, 해당 금액만큼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여력이 남아 있는 상황임.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회수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발행액	누적 발행액 (A)	판매액	누적 판매액 (B)	누적 미판매액 (A-B)	회수액	누적 회수액 (C)	누적 미회수액 (B-C)	누적 미판매 +미회수 [(A-B)+(B-C)]
2021년	31,573	156,331	31,721	149,323	7,008	33,809	143,034	6,289	13,297
2022년	35,391	191,722	27,034	176,357	15,365	25,260	168,294	8,063	23,428
2023년	20,242	211,964	28,537	204,894	7,070	30,563	198,857	6,037	13,107
2024년 9월	31,873	243,837	38,572	243,466	371	30,365	229,222	14,244	14,615

주)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발행과 판매가 사실상 동시에 일어나므로, 온누리상품권 미판매액은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발행(한국조폐공사 발행) 후 미판매액(금융기관의 미판매 보유분)을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온누리상품권 발생사업은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2025년도 계획안을 집행 가능한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